제2기 방송위원회

방 송 백 서

(2003.5～2006.4)

방송위원회
(www.kbc.go.kr)

발 간 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방송인 여러분.

저희 제2기 방송위원회 위원들이 우리나라 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방송위원회에 몸담은 것이 2003년 5월 10일의 꽃이 만발하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3년 후의 다시 그 계절이 되어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2기 방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3년 동안 급변하는 방송환경 하에서 방송과 시청자를 위한 최선의 정책방안을 찾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나, 과연 시청자나 방송인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떨지 걱정도 됩니다.

지난 3년의 재임기간 동안 사회의 개혁의 흐름에 못지않은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우리 방송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라는 화두의 중심은 언제나 시청자 권익의 제고와 방송의 발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제2기 방송위원들은 방송 정책을 다루어 오면서 항시 시청자 주권의 제고와 권익신장, 그리고 방송산업의 진흥이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살피면서 균형감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급변하는 방송환경 변화에서 부딪힌 문제들에 매달리느라 정작 우리나라 방송의 백년대계를 위한 큰 그림은 미처 그리지를 못하지 않았나 하는 때늦은 자괴감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지난 3년간의 재임활동 전반을 정리하면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3기 방송위원회와 방송계의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이 백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차기 위원회와 우리나라 방송의 發展 路程에 하나의 里程標로 기능하기를 기원하는 바 입니다.

이제 3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재임기간 동안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는 마음으로 이 백서를 발간합니다.

2006년 5월 9일

제2기 방송위원회 위원장 노 성 대

방송위원회 위원 및 사무총장

노성대 위원장

이효성 부위원장

박준영 상임위원

성유보 상임위원

양휘부 상임위원

민병준 위원

윤종보 위원

류숙렬 위원

조용환 위원

표철수 사무총장

목 차

제1장
방송환경의 변화

제1절 방송개념의 변화 ····· 18

1. 방송·통신의 융합 ····· 18
2. 신 개념 방송의 출현 ····· 22
3. 방송 수신행태의 변화 ····· 27
4. 방송 콘텐츠 시장의 변화 ····· 28

제2절 방송매체 변화의 방향 ····· 30

제3절 방송환경 변화의 과제 ····· 32

제2장
방송위원회 회의 운용

제1절 전체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용 ····· 34

제2절 평가 및 발전방향 ····· 39

제3장
매체환경 변화와 방송정책

제1절 방송·통신 융합과 정책방안 ····· 42

제2절 21세기 방송과 중·장기 정책방향 ····· 46

제3절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시대의 개막 ····· 49

1. 위성DMB ····· 49
2. 지상파DMB ····· 52
제4절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정책 ····· 56
제5절 디지털방송 정책 ····· 59
1. 디지털방송 전환 종합계획 ····· 59
2. 지상파TV 디지털방송 정책 ····· 64
3.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결정 ····· 68
제6절 케이블 공공시범서비스 정책 ····· 71
제7절 방송편성 정책 ····· 73
1.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고시 ····· 73
2.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점검 ····· 80
3. 방송광고 편성기준 제시 ····· 86
4. 프로그램 편성분석 ····· 90
5.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확대 ····· 93
제8절 지역방송 광역화 정책 ····· 95
제9절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 ····· 99
제10절 재난방송 관리체계 구축 ····· 108
제11절 평가 및 발전방향 ····· 112

제4장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법제 정비

제1절 방송법령 정비 ····· 120
제2절 제 규칙의 제·개정 ····· 128

제5장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추천, 승인, 등록 및 행정제재

제1절 허가추천 및 승인 ····· 132

1.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 132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 140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 142
4.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추천 ····· 143
5.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 144

제2절 재허가 추천 및 재승인 ····· 147

1.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 147
2.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 152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 153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 155

제3절 등 록 ····· 157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 157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 ····· 159

제4절 행정제재 ····· 160

1. 지상파방송사업자 행정제재 ····· 160
2. 위성방송사업자 행정제재 ····· 162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제재 ····· 163
4.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행정제재 ····· 165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행정제재 ····· 166

제5절 평가 및 발전방향 ····· 168

제6장
방송사 경영진 선임

가. 한국방송공사 ····· 175
나. 방송문화진흥회 ····· 176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 177

제7장
방송의 고품질화 및 공익성 제고

제1절 평가를 통한 고품질화 ····· 180
1. 방송사업자 평가 ····· 180
2. 방송평가제 개선 ····· 182
3. 수용자참여 방송평가시스템(KI)의 도입 및 운용 ····· 184
제2절 심의를 통한 고품격화 ····· 189
1. 방송프로그램 심의 ····· 189
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 189
나. 심의원 운용 ····· 191
다. 방송사 자체심의의 내실화 ····· 193
라. 방송프로그램 내용분석 ····· 195
마. 방송관계자와의 협의체제 구축 ····· 199
바. 심의관련 제 규정의 개정 ····· 202
사. 방송프로그램 심의제재 현황 ····· 203
2.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 208
3. 방송광고 심의 ····· 210
가. 방송광고 심의제도 및 개선방향 ····· 210
나. 방송광고 법정 시간, 횟수, 방법 준수 ····· 211
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현황 ····· 215
제3절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립 ····· 227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 227
2. 선거방송 심의기준 정비 ····· 230
3. 심의의결 현황 ····· 231
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231
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232
제4절 방송언어의 순화 ····· 233
제5절 우수프로그램 지원 ····· 237
1.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 ····· 237
2. '방송위원회 대상' 시상 ····· 238
제6절 평가 및 발전방향 ····· 242

제8장
시청자 주권 및 방송접근권 제고

제1절 시청자불만의 처리 ····· 248
1.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운용 ····· 248
2. 시청자불만처리 현황 ····· 249
3.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활성화 ····· 251
4. 정보공개 ····· 252
제2절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254
1.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 254
2.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 ····· 256
3.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지원 ····· 257
4.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운용 ····· 259
5. 시청자평가원 활동 지원 ····· 261
제3절 평가 및 발전방향 ····· 263

제9장
방송발전기금 운용 및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제1절 기금관리 기본계획 ····· 266

1. 기금운용의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266
2.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방안 ····· 268

제2절 방송발전기금 운용현황 및 평가 ····· 272

제3절 방송영상산업 육성 ····· 276

1. 외주제작 기본정책 ····· 276
2. 방송영상산업 발전 지원 ····· 280
3. 방송영상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96

가. 프로그램제작비 융자 ····· 296
나.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 ····· 297
다. 대학 방송실습기자재 지원 ····· 298

제4절 방송 전문인력 연수 ····· 300

제5절 평가 및 발전방향 ····· 305

제10장
방송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제1절 방송에 관한 연구·조사 ····· 308

1. 조사연구 사업 ····· 308
2. 방송정책연구 ····· 322
3. 방송산업실태조사 ····· 327

제2절 방송정책자료 발간 ····· 332

1.「방송연구」 발간 ····· 332
2.「방송조사자료」 발간 ····· 339

제3절 평가 및 발전방향 ····· 341

제11장
남북 방송 및 대외협력·교류

제1절 남북 방송교류 ····· 346
1.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 지원 ····· 346
2.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용 ····· 353
제2절 대외협력·교류 ····· 355
1. WTO DDA 협상 ····· 355
2. 외국 방송당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 359
3. 국내 프로그램 및 DMB 해외진출 지원 ····· 364
4. 국제방송컨퍼런스 ····· 368
5. MIPTV/Milia2005 '한국의 날' 개최 ····· 371
6.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 375
제3절 평가 및 발전방향 ····· 377

부 록

1. 제2기 방송위원회 연표(2003. 5. 10~2006. 4. 30) ····· 380
2. 제 소속위원회 운용현황 ····· 389
가. 법정 소관위원회 ····· 389
1) 보도교양심의위원회 ····· 389
2) 연예오락심의위원회 ····· 389
3)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 ····· 390
4) 방송평가위원회 ····· 390
5)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 391

6)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 391
7)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392
8)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 392
나. 직무특성에 따른 소관위원회 ····· 393
1)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 393
2) 분쟁조정위원회 ····· 393
3) 행정심판위원회 ····· 394
4) 규제심사위원회 ····· 394
5) 법률자문위원회 ····· 395
6) 방송언어특별위원회 ····· 395
7)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위원회 ····· 396
8) 국내제작애니메이션판정위원회 ····· 396
9)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 397
3. 방송위원회 발간자료 ····· 398
4. 부서별 정책자료 ····· 405
5.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2003~2005) ····· 412
6. 방송위원회 대상 프로그램(2003~2005) ····· 419
7. 주요 보도자료 ····· 425
8. 주요 사진자료(2003~2006.4) ····· 445
9. 방송매체별 사업자 현황 ····· 456
10. 지역별 방송사업자 현황 ····· 457
11. 유료방송 서비스별 지역 가입자 현황 ····· 458
12. TV 수상기 등록 현황 ····· 459
13. TV 보급률 ····· 460

제 1 장
방송환경의 변화

제1절 방송개념의 변화 / 18
제2절 방송매체 변화의 방향 / 30
제3절 방송환경 변화의 과제 / 32

21세기 초 현재의 우리나라 방송환경은 1927년 이 땅에서 처음으로 방송이 시작된 이후 79년의 방송 발전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격변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미 1975년에 Merill & Lowenstein은 「Media, Message and Men」에서 어느 국가에서나 매스미디어는 엘리트 단계에서 대중화 단계를 거쳐 전문화 단계로 성장한다고 예견한 바가 있는데,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매체 환경이 이와 같은 전문화 단계로의 본격적 진입 단계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지상파 및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소출력라디오방송, 그리고 인터넷 방송, 모바일방송과 같은 통신망이용 방송서비스 등을 통하여 양방향화, 탈지역화, 개인화의 다매체 다채널 환경으로 시험과 도전, 그리고 경쟁 속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송환경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은 매체 외연의 확대로, 방송·통신의 기술과 기능 융합으로 매체는 점차 방송, 인터넷, 전화, 전자홈쇼핑 등이 모두 가능한 통합 다기능 개인 정보 매체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매체·채널의 증가와 양방향화, 개인화, 그리고 통신망이용 방송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방송환경은, 종래 일방향으로 다중을 대상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방송의 역할과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수용자가 정보 접근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의 중요성 보다는 매체산업 측면의 관심이 증대되어, 방송의 '공적 서비스' 에 대한 논리적 기반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은 이제까지 주파수 대역의 한정성과 방송신호의 송·수신에 소요되는 고비용, 그리고 방송을 거대 영향 매체로 인식하는 관념 등의 역사적, 기술적 요인들로 인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아 왔으나, 이제는 방송

도 주파수 대역 한정성 문제의 해소와 컴퓨터 작업에 의한 제작경비의 경감 등으로 신문, 잡지 등 여타 매체 산업과 같은 여건으로 변하고 있다. 즉, 유료TV와 가용 주파수 대역의 급증은 종래의 방송규제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규제 정책의 초점도 점차 프로그램 내용과 광고에 대한 직접규제에서 매체간의 경쟁 문제와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 통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방송의 발전역사를 살펴보면, 1927년 2월 16일 최초의 라디오방송이 1kw출력으로, 590대의 라디오 수신기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래, TV방송은 1956년 5월 12일 200대의 수상기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 케이블TV, 2001년 말 디지털지상파방송, 2002년 초 디지털위성방송, 2005년 말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작하여, 방송이 도입된 지 근 80년 만에 매체환경적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하였으며, 이제는 일면 세계속의 매체 선진국으로서 세계의 방송을 선도하는 위치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추세로 보아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0년에는 무려 200개 이상의 다양한 채널이 지상파, 위성, 케이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절 방송개념의 변화

기존의 방송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은 시대 상황적 요인들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첫째, 단말기가 과거에는 특정 형식의 메시지와 신호의 전송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어떠한 형식의 메시지 전달도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메시지 성격이 '개인적'인 것은 '통신', '공공적'인 것은 '방송'으로 구별하던 개념 영역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셋째, 디지털 환경에서는 시·청각과 같은 메시지 전달 특성에 따른 구별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데이터 등을 각각 분리하여 규제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다.

넷째,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구별하던, 메시지를 송·수신 및 녹음·녹화하는 장비와 기술의 차이가 사라진 점이다.

1 방송·통신의 융합

이제까지의 방송과 통신은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왔다. 방송은 한 곳에서 다중(point to mass)으로, 통신은 한 곳에서 한 곳(point to point)으로 행해지는 전송 서비스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IT기술의 발전과 방송, 통신 매체의 기능 확장으로 인하여 상호 경계 구분이 어려워지고, 또한 기존 양 영역의 매체가 상호 융합 기능함으로써 서비스도 수용자 특성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 가능한 멀티캐스팅(multicasting)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와 같은 IT기술의 발전, 특히 '정보고속도로'라 일컬어지는 인터넷의 발전은 방송 등 전통적 매체의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융합(convergenc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1)]

가. 전통적 개념의 방송

전통적 의미의 방송은 희소한 전파자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유·무선을 통하여 정보를 일방향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파의 희소성에 의거하여, 公衆이 전파의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전파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도출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전파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방송의 공익성 논리가 등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 1월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의 舊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방송의 정의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방송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방송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舊 방송법 제2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제한된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지상파방송에 국한된 좁은 의미로 방송의 개념을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송이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개념은 법적인 차원에서 재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논란을 거듭한 후, 새로 제정 공포된 통합방송법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의 방송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새로운 방송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방송의 개념은 지상파방송·유선방

1) T. Baldwin, C. Steinfield & D. S. MacVoy, Convergence (Newbury Park : Sage, 1996).

송·위성방송의 개념을 통합한 상대적으로 폭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기술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방송의 영역을 확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公衆이나 시청자에게 일방향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전통적인 방송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이 전송되는 웹 캐스팅(webcasting)이나 방송망을 통해서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것 등과 같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환경은 이러한 법제적 차원의 방송개념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며 앞서 나가고 있다.

나. 전통적 개념의 통신

한편 전통적 의미의 통신은 개인간의 자유롭고 편리한 정보교환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규제나 심의보다는 보편적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에서 형성되어 온 것들이었다.

제도적으로 통신 영역은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에 초점을 두어 왔는데, 전기통신은 '전기통신 네트워크로의 접속'과 그 '네트워크를 통하여 행해지는 통신'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통신 영역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법제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통신개념은 '전기통신'에서 출발한다. 2001년에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舊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을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그 밖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舊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통신의 기술적 특성과 전기통신 사업 영역에 중점을 둔 협의의 정의였다.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이 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전기통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술적 개념영역의 확장일 뿐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상호작용이라는 본래의 개념에는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개념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정보통신'개념으로 크게 확장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통신영역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역시 특정한 송신자와 수신자를 전제하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통신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 방송·통신의 융합

전통적 의미의 방송과 통신은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융합된다. 기술융합(convergence of technology), 시장융합(convergence of market), 서비스융합(convergence of service)이다. 기술융합은 방송망 및 통신망이 발전하여 하나의 전송로처럼 활용 가능해지는 네트워크의 융합에서 출발한다. 즉, 방송망의 경우에 네트워크의 융합은 방송국들이 한정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시청자를 향해 단일 방향으로 방송신호를 송신하던 것이, 디지털화와 더불어 보다 다양한 채널로 더 많은 정보들을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통신망의 경우에는 음성정보만이 양방향으로 소통되던 저속·저용량의 전송로가 고속·광대역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융합은 나아가 단말기나 전송기술의 융합과 같은 관련 기술 차원의 융합을 촉진한다.

한편 시장융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융합(설비융합, 망융합)과 다른 미디어사업자간의 상호소유를 통해 겸업 혹은 겸영이 가능하게 되는 소유의 융합(소유 및 기업의 융합)을 의미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융합이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으로 각각 분

리, 규율되어온 음성·영상 및 데이터 서비스 등이 섞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이 전화네트워크나 케이블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고, 방송신호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되며, 케이블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동전화로 영상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융합은 매체환경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첫째, 매체시장 구조의 변화이다. 신규투자와 인수, 합병이 일어나고, 융합된 시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모색된다.

둘째, 기존 매체간 경쟁 구도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셋째, 융합은 기존 규제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특히, 영리사업 제한 규제 및 융합 영역에 있어서의 상이한 규제 문제, 그리고 매체산업 융합을 관장하는 규제기구의 구조 변화에 대한 요구이다.

넷째, 융합은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창출한다.

결국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기술적, 산업적 영역의 차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 분야를 나누고 서로 다른 규제기준을 적용해왔던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신 개념 방송의 출현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적극적 정책지원과 투자 등을 통하여 고도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였다. 전국이 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고 각 가정들도 DSL과 케이블TV망을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는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었다. 2005년 6월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 3,257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가구 1,226만, 이동전화 가입자는 3,7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보통신의 생활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방송의

본격화와 함께 방송 매체도 점차 양방향(interactive) 기능으로 변화하는 등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문화 매개체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05년은 위성 및 지상파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방송의 본격 등장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가 더욱 가속화된 해이다.

이와 같은 방송·통신의 융합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방송이 우리의 생활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특징은 영상·오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를 동시에 송출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다채널로 방송하는 뉴미디어로, 고속의 이동환경에서도 수신품질이 우수하여 고품질의 음성 및 영상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수신이 가능하며, 상향링크 확보가 가능하므로 휴대폰 등의 겸용단말기를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

2005년 3월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위성·지상파 DMB방송이 도입되었고, 위성DMB 방송사업자로는 SKT의 자회사인 TU미디어가 2004년 12월에 허가되어, 2005년 1월 10일부터의 시험방송에 이어 2005년 5월부터 본격적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상파DMB 방송사업자도 2005년 3월에 선정되어, 2005년 12월부터 지상파DMB의 본방송이 시작되었다.

2005년 2월부터는 디지털위성방송(SkyLife)을 통하여 MBC와 SBS의 지상파TV방송의 프로그램도 시청이 가능해졌고, 3월에는 디지털TV를 통하여 상품구매, 극장표 예매, 금융업무까지도 가능한 TV전자상거래(T-Commerce)를 매개할 홈쇼핑 데이터방송 채널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방송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엄청난 변화의 격랑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DMB 기능의 휴대용 단말기를 통하여 활동하면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을 즐길 수 있는 매체환경이 현실화되었다.

<방송유형별 특성 비교>

구 분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형태	고정・이동(무료)	고정수신(유료)	고정・이동(유료)	이동수신(유・무료)
이용장소	실내・외	실내	실내・외	실내・외
서비스	전국(권역별)	전국(권역별)	전국	전국(권역별)
수신기	TV수상기・차량용	TV수상기	TV수상기・차량용	개인・이동형 단말기

나. IPTV(Internet Protocol TV)

IPTV(초고속인터넷방송)는 TV 프로그램을 기존의 공중파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이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여 신호변환 장치인 셋톱박스에 연결된 TV나 PC모니터를 통하여 방송과 동영상,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의 방송이다.

이러한 인터넷 방송은 생동감 있고 입체적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친근감이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고, 저렴한 콘텐츠 비용 및 방송비용으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제작과 방송이 가능하고, 광고와 전자상거래의 동시 실시로 광고이익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방송이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VOD, PPV) 서비스는 DVD급 고화질과 CD급 고음질의 영화, 교육, 스포츠 등 각종 콘텐츠를 개인별 취향에 맞게 맞춤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동영상 콘텐츠를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멀티캐스팅 서비스도 도입되어 지상파와 위성방송의 재전송도 서비스될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데이터방송을 통하여 뉴스・날씨・교통・지역정보 등 생활정보와 은행・쇼핑몰 등과 연계된 T커머스, 게임・노래방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다.

일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케이블방송과 인터넷망을 통한 IPTV

는 차이가 없는 동일한 형태의 방송이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사업자들도 기존 이동전화의 동영상 서비스에 추가하여 통신망을 통한 주문형 비디오 사업과, 인터넷을 통한 IPTV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2005년 9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본격적 IPTV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

다. WiBro(Wireless Broadband)

WiBro(무선휴대인터넷방송)는 2.3GHz대역의 무선인터넷방송으로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 중에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이동통신 기술이다.

이와 같은 WiBro는 고속주행중 접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월 일정의 이용료로 인터넷에 무제한 접속이 가능하다. 이 분야의 사업허가는 2005년 1월 20일 이뤄져, 2006년초 시범서비스가 시작되고, 2006년 상반기에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중소 도시에서의 WiBro의 이용도 2008년부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라.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SDPA(고속데이터방송)는 2000년 12월 15일 정부가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즉 IMT-2000서비스 중 비동기방식 서비스인 W-CDMA(Wideband-CDMA)의 version 5에 해당하는 기술로, 최대 14.4Mbps의 하향 데이터 속도와 2.3Mbps의 상향 데이터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방송서비스 방식이다.

W-CDMA 시스템은 유럽식 GSM 기반의 핵심망을 가지고 있어서, 2세대의 주류를 이루었던 GSM망을 대체할 3세대 기술의 핵심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3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초기 진입 단계에서 동기식에 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HSDPA 기술이 개발 종료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도입이 활성화 중에 있는 기술이다. 특히, 획기적인 전송률 향상과 더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품질 보장형 IP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에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JUNE이나 Fimm 등의 동기식 IMT-2000 서비스 방식보다 하향 전송속도가 5~7배나 빨라 JUNE이나 Fimm보다 더욱 고품질의 TV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SK텔레콤이 2006년 4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며, 2006년말 전국 84개 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KTF도 2006년 6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고, 2006년말 전국 54개 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 Podcasting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와 마이크,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녹음용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누구나 방송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이 자신만의 방송을 녹음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이를 다른 접속자들이 내려받아 MP3 플레이어에 저장한 뒤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른바 'podcasting'이 새로운 미디어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2월 영국의 <Guardian>지가 애플컴퓨터사의 MP3 플레이어인 'iPod'와 방송을 뜻하는 'broadcasting'의 합성어인 'podcasting'이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하면서, "MP3 플레이어 보급과 무료 녹음용 소프트웨어가 확산되고, 인터넷에서 웹블로깅(webblogging)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아마추어 라디오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오디오블로깅(audio blogging)', '포드캐스팅(podcasting)', '게릴라미디어(guerrilla media)' 등의 용어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1인 방송의 개념이 소개된 이후 그 보급은 급속히 이루어져 2004년 9월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Google'에서 'podcasting'을 검색한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28건에 불과하였으나, 한 달 만인 10월말에는 7

만3천 건으로 늘었고, 2006년 4월말 현재에는 그 수가 9,910만 건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4월말 현재 16만5천 건에 이르고 있다.

1인 미디어인 블로그(blog)가 일반인을 '기자'나 '평론가'로 만들었다면, 포드캐스팅은 막대한 시설투자와 각종 규제로 막혀 있던 방송에 대한 진입장벽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Christian Science Monitor>는 "이와 같은 포드캐스팅을 통하여 수많은 유사 방송국과 방송 프로그램이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3 방송 수신행태의 변화

광대역통합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환경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디지털 정보·콘텐츠가 통합적으로 유통된다. 대용량 전송과 처리능력을 바탕으로 다수가 동시에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고, 대용량 방송프로그램을 저장한 후 원하는 시간에 시청하는(time-shift) 선택형 개인별 방송이 확산되면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구분은 더욱 어렵게 된다. 인터넷, 디지털방송, 녹화기능을 통합한 셋톱박스나 PC단말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향유하는 서비스를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방송, 통신, 인터넷이 상호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융합되는 현상인 매체 융합은 새로운 서비스와 단말기의 개발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즉, 매체 융합을 통하여 전송망과 방송설비, 단말기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신규투자가 촉진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장르의 콘텐츠가 개발되고 기존 형태의 콘텐츠도 변환되어 새로운 미디어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모든 분야의 외연의 확장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기기의 창출 및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기기의 일반화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와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등으로 불리는 소형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가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장 장치인 플래시메모리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들 소형 휴대 단말기의 대중화로 이제는 누구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가 있다. 또한 향후 이들 PDA, PMP와 MP3 기기 등의 단말기간 상호융합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방송사의 경우 교육방송(EBS)이 2005년 3월부터 개인휴대단말기(PDA) 수능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u-러닝(ubiquitous learning)' 방송사업을 2년간 시범 실시한다고 2005년 1월 20일 발표하였다. u-러닝은, 인터넷에 접속해 원하는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는 'e-러닝'에서 한발 나아가, 공간과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차세대 온라인 학습체계이다. EBS는 우선 전국적으로 6개 고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전교생에게 ID를 부여해 수능강의 콘텐츠를 전송받아 이용하도록 하면서 학습효과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4 방송 콘텐츠 시장의 변화

정부는 방송을 포괄하는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을 통하여 방송, 정보통신, 인터넷, 가전, 음향기기 등 가정 내 모든 전자, 전기, 통신제품의 기능을 디지털기술로 통합하는 홈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은 IMT2000, 홈 네트워크 등으로 속도, 용량, 통합성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방송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표준화질(SD)에서 고화질(HD)방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영상콘텐츠 진흥의 정책목표 때문이다. 디지털로 제작된 콘텐츠는 방송, 통신, 인터넷용으로 쉽게 전환되고 광대역통합망을 통하여 전송되기 때문에 콘텐츠의 방송

용과 통신용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이 완료되고 광대역통합망이 1,000만 가구에 이르게 되는 2010년에는 one-source, multi-use의 방식에 따른 통합적 콘텐츠들이 광대역통합망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사용되고 공유될 것이다. 즉, 콘텐츠는 적은 추가비용 투입을 통하여 여러 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디어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제2절

방송매체 변화의 방향

향후 디지털 방송의 전개는 방송의 외연적 확장뿐 아니라 방송의 질적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업자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도 전통적 방송서비스뿐 아니라, 통신형 방송서비스(VOD) 내지 公演性을 지닌 통신서비스(webcasting), 정보의 처리와 가공 등 편성·제작 개념이 도입된 부가정보서비스, TV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그 서비스 제공은 공공적이나 내용은 사적인 이중 기능의 경계영역적 서비스를 망라하는 종합적 디지털 광대역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 기초하여 살펴 볼 때, 향후 방송을 비롯한 매체의 발전추이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2)]

(1) 디지털 매체의 진화는,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 콘텐츠와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입수하고자 하는 인간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한다. 따라서 통신, TV, 인터넷 등이 상호 융합하여 하나의 다기능 통합 미디어로 진행되고,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서 마이크로 미디어(micro media)와 글로벌 미디어(global media)가 출현한다.

(2) 기술의 진보방향은 융합·이동성·개인화의 방향으로 발전한다. 단말기의 경우 현재의 아날로그TV와 CATV는 디지털TV를 거쳐 HDTV와 인터넷TV로 분리된 다음, 2010년경에는 양방향TV(Interactive TV)로 발전할 전망이다.

2) *Regulation and Competition Issues in Broadcasting in the light of Convergence (OECD, 1998).*

(3) 정보의 디지털화로 영상·음성·문자가 하나의 코드로 통합됨으로써 컴퓨터·가전·통신기기의 복합, 그리고 인터넷망을 중심으로 한 방송망·위성망·데이터망·전화망·무선망 등의 망 융합, 또한 정보·교육·오락의 콘텐츠 통합이 이루어지며, 융합된 기기·망·콘텐츠 부문은 다시 네트워크화에 의하여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고급 복합기기, 종합 콘텐츠·서비스제공 등의 산업이 새로이 부각된다.

(4) 대중의 개인화(mass individualization) 경향으로 개성추구, 개별소비, 개인공간 추구 욕구가 증폭됨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정보획득이 용이하도록 개인화로 진전된다. 따라서 가전(家電)에서 개전(個電)으로의 가상 통합 개인 네트워크 서비스(virtual integrated private network service)와 개인 맞춤형 콘텐츠 생산이 보편화된다.

(5) 이러한 기술적 환경변화로 미래의 매체산업 구조는 수용자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된다. 수용자 맞춤형 인프라 산업, 공급 산업, 욕구해결형 산업 등으로의 개편이다.

(6) 다매체 시대의 가치사슬(Value Chain)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강압(Push)사슬에서 수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접근(Pull) 사슬로 변화한다. 즉,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수용자 중심 생산방식으로의 변화이다.

(7) 미래의 매체 발전방향은 이동성(Mobile), 무선성(Wireless), 개인화(Personal)를 중심으로 한 5가지 핵심개념(MAGIC), 즉, 이동 멀티미디어(Mobile Multimedia),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 가능한 매체(Anytime, Anywhere, Anyone), 세계 어디서나 이동 사용이 가능한 매체(Global Mobility Support), 무선 통합 서비스 매체(Integrated Wireless Solution), 개별 맞춤형 서비스 매체(Customized Personal Service)로 요약된다.

제3절

방송환경 변화의 과제

다매체 시대는 방송 산업에 필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보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의 발전은 방송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방송과 인터넷의 융합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전통적 방송과 인터넷의 서비스 융합은 PC-TV 또는 TV-PC라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를 만들고, 유·무선 서비스를 통한 양방향적 기능 때문에 머지않아 이 같은 새로운 매체가 전통적인 방송서비스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과 PC 기능의 발달로 인한 방송영역의 확장과 시장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 규제체계와 매체 수용 행태에도 새롭고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매체환경의 변화는 매체사업자와 매체수용자 쌍방 모두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매체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self regulation)의 문제를, 그리고 매체수용자에게는 콘텐츠와 매체 선별에 있어서의 자율방어(self protection)의 문제이다.

아울러 이제까지의 방송에 대한 접근개념에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이제까지 방송은 희소한 전파자원을 국민으로부터 수탁받아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하여 서비스하는 사회적 公共財(public goods)로서의 위상이 확고하였으나, 앞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이 창출되고 기능할 방송의 성격과 역할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 문화 소비재(sociocultural consumption goods)중의 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개념전환의 문제이다.

제2장
방송위원회 회의 운용

제1절 전체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용 / 34
제2절 평가 및 발전방향 / 39

제1절

전체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용

1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신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와 더불어 다매체·다채널 시대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 등에 따른 방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관련한 새로운 방송 패러다임에 대처하는 등 명실상부한 방송정책 총괄 규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왔다.

방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정책기능과 규제기능 그리고 준사법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27조(위원회의 직무)에 의거, 방송의 기본계획,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 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방송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 방송발전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무로 하고 있으며, 각종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법 제30조 및 방송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위임한 특정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처리로 행정효율화 제고를 위해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요의안을 사전 심의하는 등

전체회의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직무는 방송법 제27조 및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전체회의 및 상임위원회 직무>

전체회의	상임위원회
1. 방송법 제27조 및 제32조가 규정하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사업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사무소 및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6. 소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원회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8. 상임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9. 기타 법령에 명시되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추천, 변경승인,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재허가추천, 변경허가추천에 관한 사항 3.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 법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 송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승인 및 약관변경명령에 관한 사항 6.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7. 법 제33조의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법 제100조제1항의 제재조치 중 긴급을 요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에 관한 사항 8.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및 결정,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종교 및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의 출연승인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및 승인조건 관련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관

	한 사항 11.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설립허가, 잔여재산 처분허가, 허가취소는 제외한다) 12.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3.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추진실적

제2기 방송위원회 출범 이후 2006년 3. 21. 현재 전체회의는 160회를 개최하여 총 1,55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상임위원회는 241회를 개최하여 총 1,2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2기 방송위원회·상임위원회 심의·의결 건수('06. 3. 21현재)>

구 분	방송위원회	심의·의결 건수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건수
2003. 5.~	19차~54차	316	47차~97차	276
2004	1차~61차	610	1차~88차	345
2005	1차~52차	476	1차~80차	525
2006	1차~13차	153	1차~22차	76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은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사무처 및 위원회 산하 소관 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 토론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법정 소관위원회 구성·운용

방송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집행을 위한 전문적인 보좌기구 설치

필요에 따라 2005년 4월 법정 위원회로 승격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비롯한 6개의 법정 소관위원회를 구성·운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6월 중 방송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현재 방송사업자간 분쟁 조정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정 소관위원회로 승격되어 '방송분쟁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구성·운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투명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실질적 업무보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정 소관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주요 직무
방송평가위원회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 운영
심의위원회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 운영(보도교양·연예오락·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수렴,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 운영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구성, 운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각종 선거시 구성, 운영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남북방송교류 및 각종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

3 향후과제

향후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방송위원회기본규칙'의 개정·보완을 통하여 방송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청자의 정보접근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절

평가 및 발전방향

1 평 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관 법정 위원회는, 국가 방송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발전방향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방송위원회기본규칙'의 개정, 보완을 통하여 방송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청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 3 장

매체환경 변화와 방송정책

제1절 방송·통신 융합과 정책방안 / 42
제2절 21세기 방송과 중·장기 정책방향 / 46
제3절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시대의 개막 / 49
제4절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정책 / 56
제5절 디지털방송 정책 / 59
제6절 케이블 공공시범서비스 정책 / 71
제7절 방송편성 정책 / 73
제8절 지역방송 광역화 정책 / 95
제9절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 / 99
제10절 재난방송 관리체계 구축 / 108
제11절 평가 및 발전방향 / 112

제1절

방송·통신 융합과 정책방안

1 사업개요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방송망과 통신망이 융합되고, 하나의 단말기로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IPTV, 인터넷방송, VOD, 모바일방송 등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으며, 단말기 통합현상과 방송·통신 복합사업자의 등장 또한 미래형 시제에서 이제는 하나의 현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듯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방송과 통신에 대한 행정기관과 관련 법제는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어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IPTV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한 법제 정비가 지연되고,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선진 각국들이 방송통신감독기관을 통합하거나, 방송통신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관련 법제정비 및 구조개편 방안 등 범국가적 차원의 능동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참여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 관련기구를 일원화하고, 방송통신전문가, 정부부처, 관계기관대표, 시청자대표 등을 망라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설정 및 관련법 정비를 추진할 것"임을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추진실적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004년 3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위원회는 동 방송법 개정을 통해 종래 망의 구분의 따른 분류방식을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및 데이터방송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방송법 개정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규제체제 정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현상에 따른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관계 부처와의 정책협력을 강화하였는데, 지난 2003년 8월이후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디지털방송 추진, DMB, IPTV 등 현안사항을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방송통신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에 참여하여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4년에는 '방송통신 융합시대 제도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토론회, 2005년에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서비스 분류 및 공정경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에는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2회 연속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지난 2004년 영국,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등 선진 각국의 방송통신구조개편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해외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전문가 자문 그룹인 「미래방송제도 포럼」을 운영하여 방송통신구조개편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방송통신구조개편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의 TF(2005년 방송통신구조개편 TF, 2006년 방송통신융합실무준비TF)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관계 부처와 방송통신구조개편 논의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3월 이후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을 운영하면서 방송통신구조개편 관련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향후과제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통신구조개편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 융합 환경에서 DMB를 포함한 기존의 방송·통신 산업과 IPTV, WiBro 등 신규 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 관계법 정비와 함께 현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단일 통합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방송 및 통신산업의 일

관성 있고 균형적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체계적 정책수립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확대하여 고도화된 방송·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엑세스의 실현을 위해서도 방송통신 관계법을 정비하고 방송·통신의 통합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송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특별법('정보미디어사업법안', (가칭)'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별도법을 제정할 경우에 규율 대상 서비스의 범위가 모호하고, 현행 방송·통신 관계법 체계와의 혼선으로 인해 기존의 방송·통신 사업과 신규 서비스 사업간에 규제 적용상의 불균형과 중첩 문제가 발생하며, 관계기관 또는 업계간의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의 방송통신구조개편 논의 추진을 통해 신규 서비스만이 아니라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틀을 설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2절

21세기 방송과 중·장기 정책방향

1 사업개요

전 세계적으로 방송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념적 측면에서도 전통적으로 방송이 지향했던 사회, 문화적 가치와 방송 시장의 확대 및 다면적 경쟁관계의 형성으로 경제, 산업적 가치가 서로 융화되고 있으며, 정책 및 규제 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방송구도에 더해져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아울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 방송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방송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급격히 변모하는 방송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송내용의 고품격화, 방송서비스의 고품질화, 방송기술의 고도화, 방송 산업의 효율화 등 중장기적인 방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정책자문 연구위원회 성격의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시청자 복지 제고를 중심축으로 급격히 변모하는 방송의 산업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고 무한 경쟁시대에 방송 산업의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2 추진실적

위원회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비한 중장기 비전의 필요성에 따라 그동안 학계, 연구소, 현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룹별 심층 의견조사(Focus Group Interview) 및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사안들에 대한 기초 작업을 진행해왔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바탕으로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는 방송위원회 및 외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총 18인(위원장: 이효성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2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별로 세부적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다시 전체회의를 통해 정리하였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운영된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에서는 총 18회 회의(전체회의 4회, 워크숍 1회, 분과회의 13회)가 개최되었다.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는 방송발전과 관련한 제 이슈 중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체계 정비',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방송 콘텐츠 활성화', '시청자 복지 제고' 등을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하였고, 각 분과별로 정책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분과에서는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조 마련,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지역 프로그램 유통 여건에 대한 개선사항을 세부 과제로 선정하였고, 시청자 복지 제고를 위해 방송에 대한 접근권 강화,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시청자 참여권 강화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제2분과는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체계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추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방안, 방송통신관련 법제정비, 신규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등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 정책대안을 마련하였으며, 방송콘텐츠 활성화와 관련하여 콘텐츠 제작, PP 경쟁력,

수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세부 과제로 선정, 정책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회의는 중점과제 및 세부 과제를 정하는 한편 각 분과에서 논의된 정책방안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최종 방안을 마련하였다.

3 향후과제

중장기 방송발전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중장기 정책방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 정책의 구체화 작업과, 향후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중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방송통신 구조개편의 추이를 반영하여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틀을 재설정하고, 관련 산업 및 국민의 복리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제3절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시대의 개막

1 위성DMB

가. 사업개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방송·통신의 융합을 가속화하여 기존의 고정 시청형 방송 개념에 이동성·고품질·양방향성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주었고, 이러한 방송의 유비쿼터스화를 주도한 매체 중 하나가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이다.

이 중 위성DMB는 방송·통신 융합의 결실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이동형 방송매체로서, ITU에 의해 방송위성용으로 확보된 2,605~2,655 ㎒ 대역을 SKT와 KT에서 확보함으로써 도입 시도가 가시화되었다.

나. 추진실적

위성DMB의 본격적인 도입 추진을 위해 2002년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서비스의 정의, 유형, 가용주파수 및 채널, 사업자의 지위 및 선정방식 등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3년 2월 도입방안을 확정·공표하였다.

본 도입방안에서는 DMB 도입을 통해 방송 시·청취자의 채널 선택권을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방송산업의 기반 확대 및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적

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고, 허가추천의 기본방향으로 방송서비스 간 차별화를 통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하고, 방송의 공익성 확보와 신규 서비스로서의 산업적 측면 조화 도모,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채널 구성,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 의해 DMB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위성DMB의 도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그간의 검토를 바탕으로 2004년 3월 22에 방송법을 개정하여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의 근거규정을 기초로 DMB의 도입을 위한 전담 TFT를 운용하면서 도입 시기, 소유 및 겸영규제, 채널 편성 및 운용 규제 등의 정책적 사항 등과 방송법시행령의 개정 등을 검토하였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 9월 17일에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틀로 담아내게 되었다.

곧 이어 준비사업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04년 10월 8일에 종합적인 선정방안을 결정, 공표하였고, 11월 10일 단독으로 허가추천 신청한 TU미디어㈜에 대해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2004년 12월 21일 세계 최초의 위성DMB사업자로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채널의 다양성 확보 및 사업계획의 충실한 이행 등을 허가추천 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기본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위성DMB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주요 경과>

○ WRC-92(세계전파통신회의), 2,535~2,655MHz 대역의 1차 업무로 기존의 고정용 업무, 이동용 업무 외에 방송위성용 업무 포함, 분배권고
○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운영(2002.8~2002.12)
- DAB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디지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3.1.9)
○ DMB 도입방안 발표(2003.2)
○ 위성DMB 정책방안 마련 전문가토론회 개최(2003.11.27)
- 위성DMB방송사업 허가추천 추진 방안
○ 위성DMB 정책방안 마련 전문가토론회 개최(2004.2.15)
○ 위성DMB 정책간담회 개최(2004.2.17)
○ 방송법 개정·시행(2004.3.22)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근거규정 마련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TFT 운용(2004.3.~4.)
○ 방송법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청취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준비사업자 추진현황 의견청취
- KT(2004.5.14) / TU미디어(2004.5.18)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4.6.30)
○ 방송법시행령 개정·시행(2004.9.17)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채널정책방안 관련 준비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2004.9.21)
- TU미디어, KBS, MBC, SBS,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재송신 승인여부 의결(2004.10.5)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을 불허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허가추천시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방안 의결·공표(2004.10.8)
- 일간신문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신청공고(2004.10.11)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신청요령 설명회 개최(2004.10.13)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신청서류 접수(2004.11.10)
- 신청법인 : 티유미디어주식회사(TU Media Corp.)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운영(2004.12.7~12.10)
○ 티유미디어주식회사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선정(2004.12.14)

다. 향후과제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은 제2기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최초의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이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도입으로 국가적으로는 방송통신의 융합미디어 기술을 선도하고, 수용자에게는 이동형 서비스의 다양한 매체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내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된 이 매체가 조속히 방송시장에서 뿌리내리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상파DMB

가. 사업개요

위성DMB와 함께 이동형 방송의 한 축을 이루는 지상파DMB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제도적인 도입을 위한 노력은 2000년 이후에 주로 추진되었다.

2001년에 운영되었던 제2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는 디지털오디오방송(DAB)의 국내 도입일정, 사업자 허가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표준기술, 가용주파수 확보 여부, 방송망 구성형태 등의 선결과제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2002년 이후에 이어가기로 하였다.

나. 추진실적

2002년 말, 기술기준이 유럽의 Eureka-147로 확정되고,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DAB를 'DMB'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서비스의 개념, 사업자 구도, 무료 서비스 성격, 추진일정 등을 규정하여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04년

3월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개념이 방송법에 도입되고, 그 해 9월 방송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구체화됨으로써 법적인 도입 기반이 마련되었다.

곧 이어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의 합의를 통해 지상파DMB 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하기로 결정, 준비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04년 11월 22일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 기본방안'을 마련, 공표하여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였다. 이에는 지상파DMB 도입의 정책 목표, 허가단위 및 허가대상 사업권 수, 겸영제한, 사업자 구도, 도입일정 등이 포함되어 이후의 사업자 선정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11월 26에는 '채널구성 기본방향'을 공표하여 TV • 라디오 • 데이터방송 채널을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율로 구성토록 하되, TV채널 1개에서는 DTV 프로그램이 일정 정도이상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였고, 전문가 토론회, 유관부처와의 업무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27일에는 '사업자 선정 종합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종합정책방안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청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확보, 지상파DTV방송프로그램의 이동수신 활용, 국내 방송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외에 허가추천 단위 및 사업권 수, 허가추천 신청 자격, 사업자 선정방안, 방송의 공공성 • 공익성 확보방안, 시청자 권익 보호방안, 채널 정책방안,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공정경쟁 확보방안, 방송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기여방안, 심사기준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방안에 기초한 세부 심사기준 및 방송, 회계, 경영, 법률,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2005년 3월 28일 지상파TV사업자군 및 비지상파TV사업자군에서 각각 3개의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비지상파 계열 사

업자군의 법인 설립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허가추천이 완료되어, 2005년 12월 1일 공식적으로 지상파DMB 본방송이 개시되었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대상 법인 현황>

지상파TV 사업자군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비지상파TV 사업자군	(주)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주), 케이엠엠비(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주요 경과>

○ 〈DMB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 의결(2003.2.24)
○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자 의견청취(2004.9.16)
- KBS, MBC, SBS, EBS, iTV, CBS, YTN, 디지털스카이넷, 넷앤티비, 한국DMB, 유큐브미디어, KDMB
○ 방송법 시행령 공포 시행(2004.9.17)
○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자 의견청취(2004.9.22)
- 삼성전자, LG전자, 퍼스널텔레콤, 현대오토넷, SKT, KT, KTF, LGT, 한국전파기지국
○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자 의견청취(2004.11.9)
- KBS, MBC, SBS, EBS, CBS, YTN, 디지털스카이넷, 넷앤티비, 한국DMB, 유큐브미디어, KDMB
○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공청회(2004.11.12)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기본방안에 관한 건' 전체회의 의결(2004.11.22)
○ 지상파DMB 채널구성 기본방향 관련 사업자 의견청취(2004.11.26)
- KBS, MBC, SBS, EBS, iTV, CBS, YTN, 디지털스카이넷, 넷앤티비, 한국DMB, 유큐브미디어, KDMB
○ '지상파DMB 채널구성 기본방향에 관한 건' 전체회의 의결(2004.11.26)
○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2004.12.10)
○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2004.12.23)
○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종합정책방안 전체회의 의결(2004.12.27)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신청 공고(2005.1.13)
○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신청요령 설명회(2005.1.13)
○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신청서류 접수마감(2005.2.14)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운영(2005.3.22~3.27, 6일간)

다. 향후과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항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지상파DMB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지상파DMB 사업자간의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설비구축, 공동마케팅을 통한 단말기 추진전략, 공동콘텐츠 확보, 음영지역 해소, 수신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소나 기술개발 등을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둘째, 지상파DMB의 경우,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재전송 편성과 함께 '이동휴대방송'이라는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포맷 개발 및 이에 따른 제작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수도권 지상파DMB와 함께 지역 지상파DMB 도입정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지역에서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공익성 확보방안, 채널운영 계획, 기술개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사후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방송사업자, 단말기 및 송수신 기술개발 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지상파DMB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상파DMB는 시·청취자에게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이동 및 개인형 매체 특성을 이용한 보편적·공익적 지상파방송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며, 방송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방송위원회는 지상파DMB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DMB 사업자간의 공동협의체 구성 유도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4절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정책

1 사업개요

방송·통신 융합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국내외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서로 다른 망을 통해 제공되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의 문제와 동일한 망과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의 문제가 전면전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케이블TV(SO)와 IPTV(통신사업자), DMB(방송망)와 WiBro·HSDPA(통신망), 유무선 기반의 TPS(Triple Play Service)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다양한 방송·통신 복합서비스 행태와 새롭게 출현하거나 진화하는 방송·통신 복합서비스사업자들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곤란하다.

특히, 방송과 통신 산업간 또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지만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접근 가능성과 소비지출 부담 등 국민들의 공공복리 측면에서 실질적 개선 효과는 오히려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개방과 경쟁 환경 하에서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 또는 진흥하는데 있어서도 현행 사업자 분류 규정과 규제체계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에서 이미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종래의 수직적 분리 하에서의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방송·통신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제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매체간 공정경쟁 보장 차원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2 추진실적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2006년 1월 연속 토론회(1.12, 26)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원회는 이 토론회에서 방송·통신 융합의 개념과 산업정책적 함의에 대해 설명하고,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의 기본방향으로 네트워크/기술 중립 기반 및 멀티미디어서비스 활성화,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 완화, 경쟁규제 등 사후규제 보강,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토대로 하여 방송통신감독기구를 일원화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장 획정 및 전국단위 시장 규제 방향, 플랫폼 부분의 겸영규제 등 사전규제 방향, 콘텐츠 부문의 과도한 여론지배력 규제 방향, 기타 경쟁규제 및 사후규제 보완 방향 등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IPTV의 동영상 서비스 기술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시청자 참여를 통한 수용형태 등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2006년에 IPTV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위원회의 IPTV 시범사업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BcN 시범사업과

는 차별화된 것으로 정통부가 차세대 광대역 통합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기술적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위원회는 유료방송의 한 종류로서 IPTV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3 향후과제

IPTV, WiBro, HSDPA 등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의 규범영역에 대하여 관계기관간·업계간의 논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제 마련이 지연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행 방송법상의 사업행태 및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에는 방송법에 적극 수용하는 한편, 기존 규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적 시장개방 이슈에서의 국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현재 WTO, 칠레·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에서 방송서비스와는 달리 기간통신역무를 제외한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양허한 상태이므로, 신규 서비스를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거나, 방송도 통신도 아닌 제3의 역무로 분류할 경우에 통상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신망 기반 방송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공백 또는 규제중복의 문제와 동일 서비스 또는 동일 시장에 대하여 다른 규범을 적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규제 형평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방송통신구조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구조개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절차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 분야의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서비스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절

디지털방송 정책

1 디지털방송 전환 종합계획

가. 사업개요 및 경과

방송위원회는 우리나라 디지털방송의 종합계획을 모색하고 그 틀 안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3기의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방송에 관한 종합계획, DMB 도입방안 등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제2기 방송위원회가 들어선 2003년, 지상파TV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구체적인 지상파 디지털전환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을 기울여 결국 2004년 7월 지상파TV 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지상파TV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등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방안의 마련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2004년 9월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 2005년 3월까지 6개월여에 걸쳐 관련 정책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급속한 매체환경의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지상파TV 디지털방송, 이동휴대수신방송, 지상파DMB 등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의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대 국민 서비스와 국가 차원의 산

업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케이블방송 및 뉴미디어 방송서비스에 대한 제반 정책의 추진을 통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제1기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주요 업무>

▸2000년도 제1기 추진위원회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2001년도 제2기 추진위원회 : 케이블·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방송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
▸2002년도 제3기 추진위원회 : DMB·데이터방송 및 DMC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 마련

나. 추진실적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뉴미디어 서비스 도입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등 종합적인 디지털방송 관련 제반 정책방안을 중점 논의키 위해 방송위원회 및 관련 부처, 방송사, 학계, 시민단체, 가전업계, 연구단체 등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4년 9월 15일~2005년 3월 28일까지 운영되었다.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3개의 소위원회(이동휴대수신방송소위원회, 디지털방송활성화소위원회, 디지털케이블방송활성화 및 뉴미디어방송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전체회의 5회, 소위원회별 회의 47회, 워크숍 2회를 개최하였다.

□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뉴미디어 서비스 도입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계획)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추진내용은 '뉴미디어 서비스 도입 및 매체별 디지털방송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디지털 지

상파방송의 HDTV 방송시간 확대, 디지털 케이블방송의 HD방송 로드맵, HD 활성화 지원방안, DTV 난시청 해소방안, IPTV 도입 및 DVB-H 프로젝트 추진방안,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을 검토하여 2005년 초 방송위원회에 관련 정책방안을 건의하였으며, 방송위원회는 뉴미디어 서비스 도입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지상파 디지털방송 본방송 개시 이후 연차적으로 HD방송시간을 꾸준히 늘려왔다. 서울 및 수도권 지상파방송의 경우 주당 최소 HD방송시간은 2005년 상반기(봄 개편시)에는 20시간, 하반기(가을 개편시)에는 25시간으로 결정하였으며, 2006년도 이후 연도별 HD 최소 방송시간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HD 최소 방송시간 로드맵>

(※단위: 주당 HD방송시간/비율)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봄개편시	가을개편시					
비율	20시간	25시간	25.0%	35.0%	50.0%	70.0%	100%

※ 2006년도 이후, 시간단위에서 비율단위로 변경
※ 2006년도에 연도별 HD 최소 방송시간 로드맵 재검토
※ EBS는 해당사항 없음

실질적으로 생생한 HDTV방송의 현장감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편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2006년도 이후에는 주시청시간대(19시~23시) HD프로그램 및 드라마, 스포츠 프로그램의 HD 방송시간에 대해서는 HD방송 인정시간에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키로 하였으며, 보다 완전한 HD방송 구현을 위하여 오디오품질을 향상(5.1ch)시키도록 권고하였다.

지역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 및 대부분이 수도권 HD방송을 수중계한다는 현실을 감안, 연차적인 세부 시간기

준을 정하지 않고 2010년말까지 전면 HD방송을 실시토록 하였다.

단, EBS의 경우에는 2005년도 하반기에 주당 10시간 이상 HD방송을 하도록 하되, 2006년도 이후에는 EBS의 자체 계획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키로 하였다.

케이블방송의 경우, 지상파 디지털 전환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05년도 SD급 디지털케이블방송 개시, 2006년도 HD서비스 도입 권고, 2010년도 아날로그 종료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단, HDTV 서비스 도입은 콘텐츠 및 PP의 제작환경, HD STB, 케이블카드 등 기술개발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6년도에 세부 로드맵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각 방송사별 HD 방송시간, 디지털전환 인프라 구축, 활성화 지원정책 등 디지털전환 추진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디지털전환추진점검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키로 하였다. 이는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와는 달리 기존 정책방향에 따라 각 사업 주체들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분석, 추진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논의체로서 보다 실질적인 활동이 주 목적이다.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가 주요 사안이므로 기존 TVR의 디지털 전환 및 DTVR 신설,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는 DOCR(Digital On Channel Repeater)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케이블TV 전송망에서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재전송채널 확보를 위한 대역증폭기 교체 및 HD방송 품질 확보를 위한 채널Converter(채널변환장치)의 기술개발을 독려키로 하였다.

또한,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의 진입이 어려운 산간벽지, 도서지역의 경우 난시청 가구에 위성수신설비 지원, 가전업체의 디지털TV수상기 판매시 매체별 수신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수신 성능이 향상된 5세대 DTV칩 수신기의 상용화를 독려하기로 하였으며, 방

송위원회는 시청자의 실질적인 DTV 시청행태를 조사하여 DTV 전환종료 이후까지의 장기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기존 DTV 활성화 지원방안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및 방송발전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을 통해 디지털방송 제작비, 디지털전환 융자, D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HD방송 활성화와 DTV 보급 확대를 위하여 방송위원회,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정책기관, 방송사 및 가전업계 등으로 구성된 'HD방송 활성화 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기존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DMB와 차별화되는 디지털 라디오방송의 개념 정의와 아날로그 라디오방송 종료시기, 라디오방송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결정하였으며, 디지털 라디오방송의 권역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과의 관계설정 등을 고려, 관련 법 개정 등을 포함한 별도의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기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전국확대 방안, 데이터방송 활성화 방안 등을 결정하였으며, 뉴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IPTV의 도입 방안, DVB-H 프로젝트 추진 방안, 이동휴대수신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이동멀티캐스팅 개념, 법적 성격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해 결정하였다.

특히, IPTV 등 신규 방송매체 도입시에는 국민(시청자)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서비스 모델,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시청자 반응, 도입의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가 포함된 실험방송을 실시토록 하였다.

다. 향후과제

급속한 디지털 전환 및 뉴 미디어 방송의 출현에 따라 시의성 있는 정

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2006년에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제5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나, 특히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의 종료 일정 등 디지털 전환완료 정책, 디지털TV수상기 보급률 증대 방안, 소외계층 보호방안, 케이블 및 위성방송(SkyLife)에서의 고선명(HD)방송 활성화 방안 등에 역점을 두어 궁극적으로 시청자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나아가 「제5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하여 방송위원회의 정책방향을 결정한 후 '(가칭)디지털전환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상파TV 디지털방송 정책

가. 사업개요

위원회는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2000. 12. 26)'에 따른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상파TV의 디지털방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나. 추진실적

1) 경과사항

위원회는 2000년 12월 26일 제1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 종합계획에 따라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방송방식과 관련하여 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의 방송방식의 변경과 디지털방송 전환일정의 조정 등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어, 위원회는 2001년 11월 광역시 소재 지상파TV 방송사의 디지털방

송 허가신청 기한을 2001년 11월 30일에서 2002년 6월 30일로 조정한 데 이어, 2003년 11월에는 시·군 지역 소재 지상파TV방송사의 디지털 방송 허가신청 기한을 2003년 11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조정하였다. 2004년 7월에는 광역시 소재 방송사의 지상파 디지털TV 본방송의 개시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8월 10일로 조정하는 한편, 시·군 지역 소재 디지털TV방송국에 대한 허가신청 기한을 2003년 11월 30일에서 2004년 8월 31일로 조정하였다.

또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방송방식과 관련하여 2003년 11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17명의 조사단을 구성, 미국·영국 등 8개 국가, 18개 기관을 방문하여 ATSC방식의 고정수신 성능, DVB-T방식의 HD 이동수신 가능성, 이동수신 관련 현황, HD방송서비스 제공현황 및 전망, 단일 주파수망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04년 4월에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합동으로 스위스, 독일, 핀란드 등 3개 국가 11개 기관을 방문, 국내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디지털TV 이동·휴대수신과 관련하여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 Hand-held)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1년 4월, MBC는 전송방송 비교 현장실험 제안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위원회는 MBC가 주관하는 디지털 지상파TV 전송방식 비교테스트에 따른 예상 예산(13억5,150만원)의 50%를 지원하였다.

2004년 1월에는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정연주 KBS 사장,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상파DTV 전송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DTV필트테스트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4인 대표위원회 회의 8회, 8인 실무위원회 회의 23회를 개최하여, 마침내 2004년 7월 8일 국내 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에 합의하였다.

2) 지상파TV 디지털방송 허가추천

위원회는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2000.12.26)'에 따라 ▲서울 소재 방송사 ▲광역시 소재 방송사 ▲도청소재지 소재 방송사 ▲시·군 지역 소재 방송사별로 지상파TV 디지털방송을 허가추천하였다.

<권역별 디지털방송 허가추천 현황>

구 분	허가 추천일	방송국	중계소	합계	비 고
서울 소재 방송사	2001년 5월 18일	5개	8개	13개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에 의거, 서울 소재 방송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방송을 개시해야 함에 따라 허가 추천함.
광역시 소재 방송사	2002년 6월 17일	20개	10개	30개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및 전환일정 조정에 따라, 광역시소재 방송사는 2004년 8월 10일까지 디지털방송을 개시해야 함에 따라 허가 추천함. * 허가신청기한 조정 : 2001.11.30⇨ 2002.6.30 * 방송개시시한 조정 : 2003.12.31⇨ 2004.8.10
도청소재지 소재 방송사	2002년 11월 11일	19개	14개	33개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에 의거, 도청소재지 소재 방송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방송을 개시해야 함에 따라 허가 추천함.
	2003년 4월 28일	3개	2개	5개	전라남도 도청소재지가 2004년 12월 목포와 인접한 무안으로 이전이

					예정됨에 따라 목포지역 방송사에 대해 허가 추천함.
시·군 지역 소재 방송사	2004년 8월 10일	7개	22개	29개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에 의거, 기타 시·군 지역 소재 방송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방송을 개시해야 함에 따라 허가 추천함. *허가신청기한 조정:2003.11.30 → 2004.8.31
	2004년 8월 31일	3개	16개	19개	시·군 지역 소재 방송사중 디지털 방송을 추가로 허가추천 신청한 방송사와 2004년 8월 10일 허가추천을 보류한 방송사에 대해 허가 추천함.
	2004년 12월 14일	6개	30개	36개	2004년 8월 31일 허가추천을 거부한 KBS의 6개 방송국 30개 중계소에 대해 KBS가 재신청함에 따라 허가 추천함.
기 타	2005년 8월 11일	-	3개	-	부산방송이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DTV 중계소를 허가 추천함.
합 계		63개	105개	168개	

한편, 방송위원회는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지상파TV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2005년 10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디지털방송전환추진점검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디지털방송전환추진점검단은 6회의 회의와 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범 국가 행사 개최 ▲디지털TV 수상기 보급확대 방안 ▲지상파DTV 홍보방안 ▲지상파 HD프로그램 편성확대 방안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방안 ▲지상파DTV의 케이블을 통한 재송신 방안 ▲지

상파 데이터방송 서비스 확대방안 ▲지상파DTV 멀티캐스팅 서비스 도입방안 등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 향후과제

위원회는 앞으로 디지털방송전환추진점검단에서 제안한 디지털방송 활성화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3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결정

가. 사업개요

1997년 정부는 이미 지상파 디지털TV의 전송방식을 미국방식인 ATSC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각계의 문제 제기로 야기된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정부, 방송계, 산업계의 입장 차이에 의한 갈등은 전송방식 비교시험 결과에 대해 상호 비교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아 비교시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등 방식 논란은 국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행정 총괄기구로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전송방식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04년 7월 디지털TV 전송방식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나. 추진실적

2003년,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고 방식기술상의 비교우위 검토, 방송방식 논란 해소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우선을 사유로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일정에 대한

재검토를 방송위원회에 요청하였고, KBS는 DTV비교시험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하는 등 악화된 상황이 전개되었다.

2003년 10월 4일,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은 회동을 갖고 전송방식 논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MBC 비교시험 결과검증과 해외실태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KBS가 제안한 비교시험은 추후 검토키로 하였다 [KBS는 DTV 비교시험추진위원회를 운영(2003년말~2004년초)하였으나, 2004년 1월 30일 4개 기관장(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KBS, 전국언론노동조합)이 DTV필드테스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해체]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전송방식과 관련하여 해외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2003년 11월 22일~12월 16일 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2인의 공동단장을 포함한 17인의 조사단이 미국, 영국 등 8개국 18개 기관을 방문하여 ATSC방식의 고정수신 성능, DVB-T방식의 HD 이동수신 가능성, HD방송서비스 제공현황 및 전망, 단일 주파수망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04년 1월 5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DTV 전송방식관련 정책협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송방식은 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이고 디지털전환 일정은 방송위원회가 주관 기관임을 재확인, 각각의 주관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KBS의 DTV 비교시험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기술중립적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방송위원회는 KBS 주관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2004년 1월 19일 방송위원회는 광역시 소재 지상파TV 디지털방송 개시시한을 조정하되, KBS 비교시험 결과 등에 대한 종합결론이 나온 후

일정을 다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정연주 KBS 사장,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상파DTV 전송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DTV필드테스트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2004. 1. 30~7. 8)키로 합의하였으며,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KBS,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기관 총 8인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총 2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DTV 필드테스트를 위한 실무작업,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 4인 공동대표단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해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4년 7월 8일, 4인 공동대표위원회는 DTV 전송방식과 관련하여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 즉, 디지털TV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DTV 4인 공동대표위원회(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정연주 KBS 사장,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는 4년 동안 지속되어온 디지털 전송방식 표준 논란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4인 대표위원회는 방송방식이 변경될 경우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방송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고정수신 부분에서는 현행 미국방식(ATSC)을 유지하되, 이동수신 부분에서는 유럽방식에 기반을 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도입키로 하였다.

다. 평 가

전송방식 합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전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제6절

케이블 공공시범서비스 정책

1 사업개요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혁신·지방분권·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통신사업자만이 아니라 방송사업자도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한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매체 간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추진실적

2005년에 시작한 디지털케이블 시범사업은 2개 SO 및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서비스 콘텐츠 개발, 기존 서비스 연동형 프로그램 개발, SO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시스템(서버) 구축 등에 17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경과>

○ 2005. 1. 22.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계획 보고
- 시범사업 추진 방안 : 2개 SO(지역) 선정
- 주요 지원내용 및 규모 : 시범지역 시스템 구축 등에 1,782백만 원 지원

○ 2005. 2. 1.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자 선정방안'의결
- 심사방법 : 공모 후 시범사업계획서(RFP)에 의한 비교·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위 내부 2인, 외부전문가 3인

- 주요 심사기준(심사항목 및 배점)

○ 2005. 2. 1~2. 18. 신청 공고 및 접수
- 수도권 1개, 기타 지역 2개 등 3개 SO 신청 접수

○ 2005. 2. 21~2. 22.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2005. 2. 25 . 시범사업자 선정(제13차 상임위원회)
- 씨제이케이블넷양천방송(수도권),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기타 지역)

○ 2005. 3~10. 실무협의회 운영

○ 2005. 3~10. 공공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등 기술개발 및 콘텐츠 구성

○ 2005. 11~12. 공공서비스 시연 및 송출
- 씨제이케이블넷양천방송(11. 3),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12. 14)

○ 2005. 11~12.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등 평가연구

3 향후과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매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케이블TV의 공공 서비스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6년도에도 2개 SO 및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부스 개소 및 국내외 행사시 동 서비스에 대한 적극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의 장점을 활용한 양방향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SO사업자들에게 디지털케이블TV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케이블TV의 조기 도입 및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수익성이 크지 않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지역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혜택 부여 및 지역매체로서 SO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제7절

방송편성 정책

1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고시

가. 사업개요

1) 의무편성비율 제도의 도입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로 시작한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2000년 제정·시행된 새 방송법에서는 다매체·다채널이라는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세분화·구체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주요 근간으로 하여,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등에 대하여 의무편성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04년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하여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한 의무편성비율은 방송정책의 목표, 방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법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주요 제도

(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1999년 대통령 자문 '방송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역민방의 광역화·전국화가 이루어졌고, 제주방송과 강원민방이 새로이 설립됨에 따라 전국은 9개의 지역민방(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전주, 청주, 제주, 강원) 체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지역민방인 SBS 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을 지양하고, 지역매체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국내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외국 영상물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아울러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에 대하여도 연간 전체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상 국내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의무편성비율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의무편성비율 제도의 중요한 근간으로, 독립제작사를 육성하여 전체적인 국내 방송영상 관련 제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시각이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청자 복지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 제도이다.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함께, 방송사의 자회사를 통한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서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두고 있으며,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한해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별도로 두고 있다.

나. 추진실적

1) 방송법시행령 개정

(가) 의무편성비율 준수 기준 개선

기존의 의무편성비율 제도의 준수 기준은 '매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규제적 측면에서는 특정한 달에 특정한 프로그램의 비율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인 편성이 되도록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분화되어 있는 각종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정규편성의 범위에서 수용이 어려운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경우, 매월 단위의 편성비율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방송편성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욱 신장하기 위해 2004년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월' 단위로 되어있던 의무편성비율 준수 기준을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폭 '매분기' 단위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방송사업자는 매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탄력적인 편성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편성의 자율성이 신장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매분기 규제로 바뀐 항목들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외국 1개 국가 제작 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 편성비율 등이다.

(나) 매체별 특성에 따른 의무편성비율 고시범위 명확화

케이블TV, 위성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가 속속 등장함으로써 우리 방송환경은 본격적인 다매체 • 다채널 환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각

종 의무편성비율 제도가 이들 신규매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이 2004년 이루어졌다. 이로써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기타 방송사업자로 대별되어 있던 기준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세분하여 편성비율의 범위를 방송법시행령에 정하고 있다.

<방송법시행령 개정 사항>

	기 존		개 선	
편성비율 준수 기준	사업자		채널별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편성	▪ 교양 30% 이상 ▪ 오락 50% 이하	매월	▪ 오락 50% 이하	매분기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 지상파방송 : 80% 이상 ▪ 지상파방송 외 : 50% 이상	매월	▪ 지상파방송·지상파 PP : 60~80% ▪ SO·위성 : 40~70% ▪ PP : 20~50%	매분기
국내제작 영화 편성	▪ 지상파방송 : 20~40% ▪ 지상파방송 외 : 30~50%	연간	▪ 20~40%	연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 지상파방송 : 30~50% ▪ 지상파방송 외 : 40~60%	연간	▪ 30~50%	연간
국내제작 대중음악 편성	▪ 지상파방송 : 50~70% ▪ 지상파방송 외 : 50~80%	연간	▪ 50~80%	연간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		▪ 지상파방송 : 1.5% 이내 ※ KBS, MBC, SBS는 1% 이상	연간
1개 국가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	▪ 60% 이내	매월	▪ 60% 이내	매분기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 40% 이내	매월	▪ 40% 이내	매분기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 1% 이내	매주	▪ 40% 이내	매월

2)「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 고시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방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 개정 고시는 새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출범 이후 5번째 고시로,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지역민방의 경우 지역성 구현을 위해 자체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2003년 고시 대비 1차 민방은 1%, 2차 민방은 2%, 3차 민방은 3%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지역성의 구현에 있어서는 지역민방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되, 각 지역민방간의 현실적인 프로그램 제작·수급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또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경우 준수단위가 기존 사업자에서 채널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2개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BS에 대해 1TV와 2TV를 분리하여 고시하였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은 매체간 차별화와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여건, 채널 특성을 감안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지상파방송 외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편성비율을 일부 하향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PP의 경우 전체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을 10% 하향 조정하였고,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의 경우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방송사업자에 한해 각각 5% 하향 조정하여 고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4년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방송사업에 진입하게 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지상파DMB)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DMB PV)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고시하여 2006. 4. 1자로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편성비율 개정고시 대비표>

구 분		대 상	2003년도 고시내역	2005년도 고시내역	변경내용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		1차 지역민방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70%이내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69%**이내	1% 하향조정
		2차 지역민방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73%이내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71%**이내	2% 하향조정
		3차 지역민방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이내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77%**이내	3% 하향조정
국내제작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	지상파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80%이상 ※ EBS는 70% 이상	**매분기** 전체방송시간의 80%이상 ※ EBS는 70% 이상	
		지상파외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50%이상	**매분기** 전체방송시간의 50%이상 ※ PP의 경우 **40% 이상**	PP 10% 하향조정
	국내제작 영화	지상파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25%이상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25%이상	
		지상파 외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30%이상 단, 종교 전문채널은 4%이상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25%이상** 단, 종교 전문채널은 4% 이상	5% 하향조정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지상파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5% 이상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45% 이상	
		지상파 외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0%이상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35% 이상**	5% 하향조정
		교육 채널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8%이상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8%이상	
		종교 채널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이상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4%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EBS	없음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0.3% 이상**	신설
	국내제작 대중음악	지상파	연간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60%이상	연간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60%이상	현행유지
		지상파외			

구 분		대 상	2003년도 고시내역	2005년도 고시내역	변경내용
1개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매월 분야별 전체 방송시간의 60%이내	**매분기** 분야별 전체 방송시간의 60%이내	
외주제작편성비율	전체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無	KBS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30% 이상	**KBS-1TV 매분기** 전체방송시간의 24% 이상, **KBS-2TV** 40% 이상(평균 32% 이상)	채널별 분리고시
			EBS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20% 이상	EBS : **매분기** 전체방송시간의 20% 이상	
		특수관계자 외주제작有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35% 이상	**매분기** 전체방송시간의 35% 이상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4% 이상	**매분기** 전체방송시간의 4% 이상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21%이내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21%이내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KBS, MBC, SBS	매월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이상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매주 전체방송시간의 0.2% 이상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0.2% 이상 ※ 지상파텔레비전 외는 0.1% 이상	

다. 향후과제

지금까지의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방송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로 인해 방송관련 산업에는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시청자 입장에서의 편성규제의 효과는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청자의 관점에서 의무편성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이행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의무편성비율 준수는 잘 이행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단순히 이행하는 차원의 비율 준수가 아닌 방송을 통해 시청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편성정책이 요구된다.

2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점검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월간, 분기, 연간 단위로 방송사업자의 법정 의무편성비율 준수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행정처분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의무편성비율 준수 점검은 방송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월간 방송실시결과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삼되 편성내역에 대한 실제조사를 병행하였다. 해당 조사로 관련법령 위반방송사업자 적발 시, 매체특성의 차이와, 위반 사유, 개선 여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나. 추진실적

방송사업자의 법정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점검은 2000년 5월 편성비율 첫 고시 이후인 '2000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1기 방송위원회는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주된 사업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위반 방송사업자 처분보다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법정 의무편성비율 제도의 취지와 실현 방안을 알리고, 관련 규제 세부기준을 정립하여 담은 『방송 편성실무책임자 편성관련 교육 편람』을 발간하는 등의 작업에 역점을 두었다.

2기 방송위원회에서는 해당 제도의 취지 실현을 위해 관련 법령을 누적적으로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도에 전체시간대 외주제작 및 특수관계자 외주제작물 편성비율을 위반한 지역 MBC 5개사에 과태료 3천만원, 1개 국가 제작물(영화/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위반한 SBS와 10개 지역민방에 과태료 4천 7백 5십만원을 부과했으며,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위반 외에 국내제작물 편성비율도 위반한 경인방송에는 과태료 5백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관련 법령 위반은 다소 감소하여 경인방송이 1개 국가 제작물(영화/애니메이션) 편성비율과 국내제작물(영화/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1천 5백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그쳤다. 다만, 케이블 방송의 경우, 2003년에는 관련 법령 최초 위반인 점과, 지상파와 다르게 열악한 경영여건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 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행하였으나, 2004년도에도 동 건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들이 발생하여, 해당 8개 PP에 4천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였다.

2005부터 2006년 초반까지는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뤄졌는데, 1개 국가 영화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누적적으로 위반한 슈퍼액션 등 11개 PP사에 1억 1천만원,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을 4회 연속 위반한 온스타일에 과태료 5천 5백만원, 2004년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위반한 MCN 등 8개 PP에 과태료 4천만원 등으로 총 2억 6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특히 PP의 법정 의무편성비율 관련 위반 행위가 지속적일 뿐 아니라, 위반방송사업자가 특정 MPP에 집중되자(의무편성비율 위반건으로 전체 PP에 부과된 과태료의 90%가 온미디어 계열 PP에 부과됨) 위원회는 해당 MPP 대표자의 방송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관련 법령 준수를

직접 촉구하기도 하였다.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현행 법령 준수 감독과 함께 2003년 방송사 편성책임자 회의, 2005년 지역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DMB 방송사 편성담당자 회의 등을 개최하여 법정 의무편성비율 관련 제도 개선 전반의 과정에 현업 방송인들의 의견을 담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방송 현업인들의 관련 법령 준수 의식이 고취됐을 뿐 아니라, 관련 제도가 방송현실과 조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위반 방송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2003년

매체	사업자(채널)	조사단위	위반부문	처분내용	의결일
지상파(T)	MBC(강릉)	1월-6월	외주제작물(특수관계자)	과태료500만원	2003.11.25
지상파(T)	MBC(광주)	1월-6월	외주제작물(특수관계자)	과태료500만원	2003.11.25
지상파(T)	MBC(전주)	1월-6월	외주제작물(특수관계자)	과태료500만원	2003.11.25
지상파(T)	MBC(제주)	1월-6월	외주제작물(특수관계자)	과태료500만원	2003.11.25
지상파(T)	MBC(제주)	1월-6월	외주제작물(전체)	과태료500만원	2003.11.25
지상파(T)	MBC(춘천)	1월-6월	외주제작물(특수관계자)	과태료500만원	2003.11.25
지상파(T)	SBS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500만원	2003.11.25
지상파(T)	경인방송	1월-6월	국내제작물	과태료500만원	2003.11.25
지상파(T)	경인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경인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강원민방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광주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광주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대구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대구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대전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대전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부산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부산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울산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울산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전주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제주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청주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250만원	2003.11.25
지상파(T)	청주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250만원	2003.11.25

▶ 2004년

매체	사업자(채널)	조사단위	위반부문	처분내용	의결일
지상파(T)	경인방송	1월-12월	국내제작물(애니)	과태료 1000만원	2004.3.30
지상파(T)	경인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250만원	2004.11.8
지상파(T)	경인방송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250만원	2004.11.8
PP	투니버스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500만원	2004.11.8
PP	캐치온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4.11.8
PP	OCN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4.11.8
PP	슈퍼액션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4.11.8
PP	시네포에버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4.11.8
PP	DCN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4.11.8
PP	MGM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4.11.8
PP	미드나잇	1월-6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4.11.8
PP	애니원TV	1월-12월	국내제작물(애니)	과태료500만원	2004. 5.3
PP	어린이TV	1월-12월	국내제작물(애니)	과태료500만원	2004. 5.3
PP	투니버스	1월-12월	국내제작물(애니)	과태료750만원	2004. 5.3
PP	캐치온+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4. 5.3
PP	MCN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4. 5.3
PP	WCN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4. 5.3
PP	동아TV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4. 5.3
PP	캐치온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4. 5.3
PP	OCN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4. 5.3
PP	수퍼액션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4. 5.3
PP	BCN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4. 5.3

▶ 2005년

매체	사업자(채널)	조사단위	위반부문	처분내용	의결일
PP	온스타일	7월-12월	국내제작물	과태료1000만원	2005. 5. 4
PP	수퍼액션	7월-12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5. 5. 4
PP	애니원TV	7월-12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500만원	2005. 5. 4
PP	투니버스	7월-12월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500만원	2005. 5. 4
PP	MGM	7월-12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5. 5. 4
PP	캐치온플러스	7월-12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5. 5. 4
PP	OCN	7월-12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5. 5. 4
PP	온스타일	7월-12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5. 5. 4
PP	캐치온	7월-12월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5. 5. 4
PP	어린이TV	1월-12월	국내제작물(애니)	과태료 500만원	2005. 6. 21
PP	애니원TV	1월-12월	국내제작물(애니)	과태료 500만원	2005. 6. 21
PP	동아TV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 500만원	2005. 6. 21
PP	MCN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 500만원	2005. 6. 21
PP	BCN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 500만원	2005. 6. 21
PP	MGM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 500만원	2005. 6. 21
PP	수퍼액션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 500만원	2005. 6. 21
PP	캐치온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 500만원	2005. 6. 21
PP	캐치온플러스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 500만원	2005. 6. 21
PP	투니버스	1월-12월	국내제작물(애니)	과태료 500만원	2005. 6. 21
PP	KCN무협채널	1월-12월	국내제작물(영화)	과태료 500만원	2005. 6. 21
PP	온스타일	1/4분기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5. 8. 23.
PP	캐치온	1/4분기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5. 8. 23.
PP	캐치온플러스	1/4분기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5. 8. 23.
PP	OCN	1/4분기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5. 8. 23.
PP	수퍼액션	1/4분기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5. 8. 23.
PP	투니버스	1/4분기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750만원	2005. 8. 23.
PP	온스타일	1/4분기	국내제작물	과태료1500만원	2005. 8. 23.
PP	수퍼액션	2/4분기	주된방송분야	과태료600만원	2005. 11. 16.
PP	온스타일	2/4분기	국내제작물	과태료1500만원	2005. 11. 16.
PP	수퍼액션	2/4분기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5. 11. 16.
PP	온스타일	2/4분기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5. 11. 16
PP	OCN	2/4분기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5. 11. 16
PP	투니버스	2/4분기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500만원	2005. 11. 16
PP	어린이TV	2/4분기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500만원	2005. 11. 16

▶ 2006년

매체	사업자(채널)	조사단위	위반부문	처분내용	의결일
PP	온스타일	3/4분기	국내제작물	과태료1500만원	2006. 1. 4.
PP	온스타일	3/4분기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6. 1. 4
PP	OCN	3/4분기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6. 1. 4
PP	수퍼액션	3/4분기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750만원	2006. 1. 4
PP	동아TV	3/4분기	1개국가 제작물(영화)	과태료500만원	2006. 1. 4
PP	투니버스	3/4분기	1개국가 제작물(애니)	과태료500만원	2006. 1. 4

다. 향후과제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감독 업무의 경우, 2기 방송위원회 기간 동안 과태료 양정기준을 정립하여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개선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일부 케이블 방송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감수하고도 시청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특정 국가에서 제작된 수입 오락물을 집중적으로 편중 편성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법정 의무편성비율 준수의 근거로 방송사업자가 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월간 방송실시결과보고서'의 경우, 보관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송사업자가 직접 온라인 상태로 자료를 입력, 전송하면서 자사 및 타사의 편성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산화작업을 통하여 현업 종사자가 투여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통계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방송광고 편성기준 제시

가. 사업개요

방송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매체별 방송광고의 시간·횟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2기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광고 운용·편성관련 기준의 변화를 꾀하게 된다. 먼저 2004년 초에 방송법에 DMB와 데이터방송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 매체의 활성화와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매체에 비해 완화된 방송광고의 유형별 운용·편성 기준(2004. 9. 17)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그 동안 방송법에 근거 없이 편성되어 오던 시보광고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시보광고를 광고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2005. 5. 18)됨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개정(2006. 3. 10)을 통해 각 매체별 시보광고에 대한 편성기준을 제시하고, 기타 광고유형의 편성횟수 등을 조정하여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였다.

나. 추진실적

1) DMB 등 신매체 도입에 따른 광고편성기준 제시

2004년 초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매체인 DMB와 진정한 양방향 서비스의 시초를 알리는 데이터방송의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정책당국인 방송위원회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신규 매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작업 중의 하나가 신규 매체의 방송광고 운용·편성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방송위원회는 신

규매체의 특성과 서비스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는 한편,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라는 규제의 본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우선, 지상파DMB와 위성DMB간 매체의 기본성격이 다른 만큼, 광고 규제에 있어서도 차별적 규제 틀을 적용하였다. 즉, 지상파DMB는 각 광고 유형별로 시간·횟수·방법을 규정하되 중간광고를 금지하였고, 위성DMB는 중간광고를 포함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의 광고를 허용하는 부분적 총량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동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짧은 프로그램의 편성이 용이하도록 토막광고의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고 자막광고의 횟수도 6회에서 10회로 확대하였다.

<지상파·위성DMB 방송광고 운용·편성기준(2004. 9. 17개정)>

구분(매체)	프로그램 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신설)	시간당 총허용량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TV)	〃	금지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등 예외)	매시간 4회이내 매회(80)·4건이내 (3분)	매시간 10회이내 매회 10초이내 화면의 1/3 (1분 40초)	매시간 1회이내 매회 10초이내 (10초)	10분 40초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라디오)	〃	〃	매시간 4회이내 매회80초·4건이내 (5분 20초)	-	매시간 2회이내 매회 10초이내 (20초)	11분 20초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	45~60분 : 1회 60~90분 : 2회 90~120분 : 3회 120분이상 : 4회 매회 3건·1분이내	매시간 4회이내 매회 100초·5건 (3분 20초)	매시간 10회이내 매회 10초이내 화면의 1/3 (1분 40초)	-	시간당 평균 10분이내, 시간당 최대 12분 이내 (광고총량제한)

2) 시보광고 명문화를 위한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개정

시보광고는 현재시간 고지시 방송되는 광고를 말하며, 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광고의 종류가 아니므로 편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되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시보광고'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요구됐었다.

그 결과로 2005년 4월, 시보광고를 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고, 2005년 5월 18일 공포·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의 편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① 방송법시행령 제59조의 기본 틀 유지 ②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에 대한 고려 ③ 방송광고시장에서 각 매체간 조화 및 균형발전 도모 등을 주요 목표로 하여 방송법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각 방송매체 및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후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2006년 3월 10일 최종 공포되었다.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화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시보광고관련 방송광고 내용·편성규제 변화>

다. 향후과제

지상파DMB와 데이터방송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방송광고 편성기준을 마련하고 방송법령 개정을 통해 시보광고의 법적 논란을 해결하는 등 당면과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기 위원회부터 논의되었던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가상광고, 미디어렙 등 방송광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들이 여전히 사업자간의 이견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광고는 방송매체의 재정적 기반으로서 방송정책과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군다나 방송·통신 융합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신규 매체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존매체와 신규매체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방송광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송광고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4 프로그램 편성분석

가. 사업개요

방송 프로그램 편성분석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이 방송법 제69조에 규정된 편성의 공익성, 다양성 및 균형성을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분석결과를 해당방송사에 통보하여 향후 정기개편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기개편 분석과는 별도로 특정 주제에 대해 기획분석 업무를 수

행하여 위원회의 방송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추진실적

정기개편 분석은 지상파방송사의 봄·가을 정기개편 이후 주간 정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보도/교양/오락 분야별 편성의 균형성, 16개 장르별 편성의 다양성, 어린이프로그램 편성현황, 장애인 시·청취지원 프로그램 편성현황, HD프로그램 편성현황 등의 항목을 점검한다.

2001년 이후 방송3사의 봄·가을 정기개편 편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방송사별 편성현황 및 특성, 개선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각 방송사에 통보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편시에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편성분석 결과 주시청시간대 및 주말주시청시간대의 오락 분야 편중 및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등의 장르 편중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 및 장애인 시·청취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편성량뿐 아니라 편성시간대 및 장르의 다양성 등 구체적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편성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지상파3사 아테네올림픽 편성현황」은 올림픽중계물 편성이 인기종목에 편향되고 중복편성이 심하여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권 또는 볼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상파 방송3사는 스포츠 중계 관련 공동중계권을 획득했음에도 경쟁에 의한 개별취재 및 개별중계 방침을 고수하여 채널간 중복편성에 의한 전파낭비 및 개별 취재진 파견 등 중복지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지상파 3사가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 방송사간 중계 분배방식의 합의를 통해 이러한 중복편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해당 지상파방송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2005년에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편성현황」은 방송법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범위 준수 여부 및 지역밀착성 실현 현황, 프로그램 순환편성, 수급유형별 프로그램 편성, 지역채널 운용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SO의 '시청자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상당히 낮아 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본방비율은 평균 9.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실한 제작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유형 중 지역생활정보 관련 프로그램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하반기에 실시한 「지상파TV 3사 연장방송 프로그램 편성현황」은 지상파방송 3사의 연장방송 TV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연장방송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고정편성 프로그램이 연장방송 프로그램의 50%가 넘는 등 연장방송 프로그램의 고정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장방송 중 재방송 프로그램 비율이 전체의 1/4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연장방송 프로그램 중 스포츠 중계가 가장 많이 편성되어 오락분야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방송사는 연장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이 광고수입 확대나 시청률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장 방송시간이 보도·교양·오락의 분야별 편성의 균형성과 프로그램 장르별 다양성이 확보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편성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 향후과제

향후에도 방송사의 편성내용이 방송법 제69조의 편성의 공익성, 다양성 및 균형성의 실현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각 방송사에 통보하여 편성의 공익성, 다양성 및 균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과 특정 주제에 대한 편성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방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확대

가. 사업개요

그 동안 지상파텔레비전의 방송시간은 ▲TV시청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 우려 ▲전력사정을 고려한 에너지 절약 차원 ▲케이블방송·위성방송 등의 신규 매체에 대한 배려 등으로 제한을 받아 왔으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방송행태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는 이러한 명분과 논리가 일부는 해소되었고 일부는 퇴색되었다고 판단,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방송시간을 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등 유료매체가 종일방송을 하고 있는 반면,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상파텔레비전방송만 유일하게 방송시간을 제한받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상파방송에 대해 방송시간을 제한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위원회는 합리성을 상실한 규제를 풀어 시청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낮방송 운용허용시간을 확대키로 하였다.

위원회는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시간을 전면 자율화할 경우 타 매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자율화 방안을 결정하였으며, 제1단계로 우선 낮방송(12:00-16:00)을 확대키로 하고, 제2단계의 심야시간대(01:00-06:00)의 확대운용 허용 문제는 낮방송 확대운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낮 방송시간을 확대하면서 지상파방송의 공익성·공

공성 강화를 통한 공적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강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제한, 편성정책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나. 추진실적

위원회는 지상파 낮 방송시간 확대를 위해 방송운용시간 관련 전문가 토론회(2002. 4. 3),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에 관한 공청회(2003. 1. 28, 2005. 10. 24)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2005년 11월 9일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운용허용시간 확대계획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운용허용시간 확대계획(제45차 방송위원회 정기회의 의결, 2005. 11. 9)에 따라 변경허가 추천하였으며, 2005년 12월 1일부터 평일 낮 방송시간(12:00～16:00)을 확대, 실시하였다.

다. 향후과제

지상파TV의 낮방송을 확대하면서 실시한 권고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낮 방송시간 확대운용에 따른 효과·영향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분석·검토를 통하여 차후 심야시간대(01:00～06:00) 확대운용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8절

지역방송 광역화 정책

□ 경남지역 민영방송의 광역화

1 사업개요

경남지역 민영방송 광역화 추진은, 민방 개국 이래 지속되어 온 서부 경남지역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방송환경 하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방송 경쟁력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1994년부터 시작한 지역 민방의 허가 정책을 완료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민방의 혜택을 실현함은 물론 '지역방송 광역화'를 정책적 차원에서 확정해 추진한 것에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2 추진실적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는 1·2차 민방 개국 이래 해당지역 방송사, 지역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2002년 10월 '경남민방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해 지자체 및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 민방 설립 건의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2002년 12월 23일, 제1기 방송위원회가 '지역방송 광역화 정책'과 '지역민방 전국화 정책'의 조화를 정책방안으로 확정, 부산과 울산방

송의 M&A를 유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양 사의 상호합병이 결렬됨에 따라 제2기 방송위원회는 주요 경과 및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방송 광역화 정책의 유효성, 지역민방의 제 문제 및 합리적 발전방안, 광역화 실행방안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2003년 10월 21일, 경남지역의 민방 소외 문제는 '지역방송 광역화 정책'에 의거해 경남도권으로의 방송권역 광역화를 통하여 해소하기로 정책방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1차적으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의 자율적 상호합병 논의를 약 1년 6개월간 진행시켰다. 그러나 양 사의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율적 상호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남 지역민의 민방 시청권 조기 확보의 중요성과 양 방송사가 희망하는 방안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2005년 4월 12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기존 사업자 중 경남지역 민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 경남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 지역방송 활성화 등 방송 정책목표의 실현이 가능한 1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광역화를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광역화 추진방안' 의결 이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 지역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심사기준 및 배점·평가지침 등을 마련하여 5월 17일, '광역화 대상 사업자 허가추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5월 19일, 허가추천 신청공고를 관보 및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허가추천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6월 14일, 허가추천 신청접수 결과, (주)부산방송과 울산방송(주) 2개 법인이 허가추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신청서류 접수 이후 허가추천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법인에 대한 방송법 등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시청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

행하였다.

허가추천 심사위원은 별도의 인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선정하였는데,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23개 기관·단체(지역 포함)로부터 추천받은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방송위원 1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하였고, 허가추천심사위원회는 7월 6일~10일까지 5일간 심사평가를 실시하였다.

동 기간동안 심사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세부 평가지침 등을 확정하고, 신청법인이 제출한 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유기적 연관성, 이행의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다출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방안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평가를 진행하여, 2005년 7월 11일, 경남지역 민방광역화 대상 사업자로 부산방송(주)을 선정하였고, 광역방송 세부 실행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계획서 및 의견청취 시 약속한 사항의 충실한 이행, 광역화에 따른 방송사업 수익의 사회 환원, 기존 방송국과의 혼신 해소책임 등의 허가추천 조건을 부과하여 8월 11일, 최종 허가추천하였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상호 합병 논의를 추진해 온 바 있는 경쟁 사업자 중에서 정책목표와 취지에 맞는 최적의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방안과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기존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이나 경남지역 민방의 특수성과 방송의 공익성을 감안해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에 준하는 심사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하였고, 광역화와 관련된 방송사업 운영 영역에 대한 실적 평가와 함께 광역화 이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중

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경남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및 지역 통합 유도를 위한 지역민의 다원적 참여보장 방안,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의 개발·제작 및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확대를 위한 지역성 구현 방안과 경쟁력 제고 방안, 지역방송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방안, 방송권역 단일화 실현 추진 방안 등을 선정방안으로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은 허가추천 신청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광역화의 혜택이 궁극적으로 경남 지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선정방안 및 심사기준 마련은 물론 허가추천 신청공고,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

3 향후과제

경남지역 민방광역화 대상 사업자 허가추천은 경남지역 시청자의 방송주권 실현 및 자립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방송의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하나의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광역화된 민영방송사는, 기존 방송권역을 기반으로 하여 경남지역의 명실상부한 언론매체로서 지역적, 문화적,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지역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며 동시에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부산방송에 대하여 광역화 추진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계획 및 허가추천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향후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엄격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9절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

1 사업개요

소출력 FM 방송은, 미국에서는 10~100w 정도의 출력으로 대략 반경 3.2~5.6km지역에 서비스가 가능한 라디오 방송을 말하고, 일본에서는 10~20w 출력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라디오 방송을 말한다. 주요국들은 출력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90년대부터 도입하여 지역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방송국들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영일지라도 영리보다는 철저히 지역사회를 위한 방송내용을 편성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그 콘텐츠는 점차 지역적 내용보다는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으며,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복지의 불균형을 일컫는 디지털 양극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지역 라디오 방송들도 중앙방송과 네트워크 성격이 강하며 비교적 넓은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방송권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밀착적인 내용의 정보나 뉴스 서비스, 지역민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 활동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지역 공동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소출력 라디오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매체로서 시청자들의 요구도 증대되었다.

방송위원회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도입 유용성을 검토하였고, 시범사업 결과의 평가를 반영하여 활성화시에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방송법, 전파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추진경위

○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채택('98. 6)
- 관광·산업단지의 안내방송 및 지역특성이 강한 지역의 소출력 지역FM라디오방송 신설 확대(국정과제 code 80-3-4)

○ 방송개혁위원회('98. 12. 4～'99. 3. 3), 다양한 방송 채널의 부재를 개선하기 위한 소출력 라디오방송 설립방안 제시

○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 정책방안 의결 : 2004. 9. 14

○ 시범사업자 지상파방송국 허가추천(8개 사업자) : 2004. 12. 10

○ 지상파방송국 허가 : 2005. 7. 28

2 추진실적

국내의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도입은 먼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방송관련 기관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1년 11월에는 전파법 시행령에 '소출력 방송국' 관련 조항이 도입되었다. 방송위원회는 2003년 방송법 개정안에 '미니FM'과 '공동체 라디오방송'을 구분해 '소출력 지상파 라디오방송'을 도입했지만 개정안이 부분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신설되지 못했다. 이후 2004년 6월 방송위원회는 소출력 라디오의 도입을 재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소출력 라디오방송 활성화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2004년 7월에 전문가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기능과 정착 가능성 검토

및 본격 도입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시범사업에 있어서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개념은 FM 주파수 88~108㎒ 대역에서 작은 출력(1와트)을 사용하여 반경 5㎞ 내외의 소지역에서 4~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산도 기존 방송국보다 훨씬 적게 소요되는데, 송출·제작 장비 구축비용은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10평 기준, 건물확보, 사무공간 구축 등의 비용제외)될 것으로 보며, 운영비용은 월 약 2,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의 목적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유용성 검토와 더불어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송법, 전파법 개정)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주요 정책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소출력 라디오방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지역의 대학,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등을 운영주체로 우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시범사업 신청은 법인에 국한하였으며 지역 공동체의 컨소시엄 형태를 권장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참여 비율은 50% 이내로 한정하며, 방송사업자 상호 겸영 및 개인 신청은 불허하였다.

운영재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라디오방송의 광고시장이 열악함을 감안하여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방송광고는 불허하되 전체 수입의 50% 미만의 고지협찬에 의한 수입과 재정보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들의 기부금과 후원 등은 허용하기로 하였다.

방송편성에 있어서는 지역밀착형 방송 취지에 부응하여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을 주당 최소 200분 이상 실시하

도록 하였으며, 뉴스보도는 인력운영의 한계로 취재보도는 제한하나 정보 프로그램 형태는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송편성내용과 프로그램 제작 기획안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도록 하고, 상시방송의 경우 매월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위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방송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따라 이를 자체 심의토록 하며, 시범사업의 공적책임 의무 강화를 위해 동일 사유로 법적 제재를 3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시범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였다.

방송권역과 관련해서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매체 특성을 살려 반경 5㎞ 이내의 방송권역을 설정하며, 기존 라디오방송과 달리 방송을 실시하는 대상과 방송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인구밀도 및 전파의 혼잡도 등을 감안하여 최소의 적정 방송권역을 허용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자로 하여금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 및 관련 자료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방송위원회의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2004년 9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소출력 라디오 시범방송' 공모를 통해 시범방송 운영주체를 모집하였으며 총 17개 사업자가 신청하였다. 시범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비영리 법인 등록 등을 조건으로 ① 사업의 적절성, ② 사업목표 달성능력, ③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④ 지역 관련단체 참여의 적절성을 선정기준으로 삼고 시범사업자를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업의 적절성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채널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현실성 측면을 평가하였다. 사업목표 달성능력 부분은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원조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평가하였고, 방송의 공적책

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는 시청자 보호 계획, 방송발전 기여 계획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련단체 참여의 적절성은 지역 주민의 방송 참여 계획, 지역 관련단체의 참여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각 세부항목 당 배점은 10점으로 서류심사와 필요 시 사업자 면담 및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평가하였다.

심사절차에 따라 2004년 11월 16일 8개 시범사업자가 선정되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관악공동체라디오방송 : (사)하늘사랑복지회, 마포공동체라디오방송:마포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FM분당방송 :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금강FM방송 : 인산학원(공주영상정보대학), 영주FM방송 : 현암학원(동양대학교), 성서공동체라디오방송: (사)영상교육 '눈', (사)광주무등FM : 광주북구청, 나주방송 : (사)한국농업경영인나주시연합회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자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관악공동체방송은 상업지구와 거주지역이 결합된 지역이며, 마포공동체라디오방송은 상대적으로 상업지구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고, FM분당방송은 위성도시 지역이다. 성서공동체라디오방송과 광주시민방송은 지방의 대도시로 비교적 큰 규모의 경제규모와 인구분포가 높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주방송, 금강FM방송, 영주FM방송은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 특성을 지닌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운영주체 면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금강FM방송과 영주FM방송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며, 관악공동체라디오방송, 나주방송, 성서공동체라디오방송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마포공동체라디오방송은 시민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시민방송은 지방정부와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FM분당방송은 순수하게 민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이 운영주체 면에서 보이는 다양한 차이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여러 가지 운영주체 모델을 시행하고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진 직후인 11월 19일에 선정된 시범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사업자의 방송시설 구축에 대한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허가추천 및 기금지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방송시설구축 지원에 이어 2005년 6월에는 소출력 라디오방송 제작지원으로 매월 600만원씩 8개 사업자에게 균등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5년 7월~9월 사이에 8개 시범사업자의 지상파 방송국 허가(분당:7월 28일, 대구(성서):8월 2일, 영주:8월 2일, 공주:8월 8일, 광주(북구):8월 23일, 나주:8월 23일, 관악:9월 23일, 마포:9월 23일)가 잇따라 이루어졌다.

<소출력 라디오방송국 현황>

구분	주파수	허가 일자	개국일	비고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FM분당)	90.7㎒	2005. 7. 28	2005. 9. 2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FM)	100.7㎒	2005. 9. 23	2005. 9.26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FM)	100.3㎒	2005. 9. 23	2005. 10. 8	
(사)금강에프엠방송 (금강FM방송국)	104.9㎒	2005. 8. 8	2005. 9. 29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FM)	89.1㎒	2005. 8. 2	2005. 8. 22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FM방송)	89.1㎒	2005. 8. 2	2005. 9. 9	
(사)광주시민방송 (광주시민방송)	88.9㎒	2005. 8.23	2005. 12. 1	
(사)나주방송 (나주방송)	96.1㎒	2005. 8. 23	2005. 9. 23	

□ 시범사업자 지원현황

방송위원회는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장비 지원,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교육 지원을 실행하였다. 시범사업자에 대한 방송장비구축 기금지원은 시범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장비 구입목록을 검토하여 방송장비구축 총액의 50% 수준에서 송출 및 제작 장비를 위한 기금지원이 이루어졌다. 시설총액이 낮은 사업자(예: 관악FM, 광주시민방송)의 경우에는 총액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금액 하한선으로 6,250만원을 지급하였다. 시설총액 비율과 최저지원금액의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시설총액의 40∼50%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단, (사)관악공동체라디오는 시설총액이 타 사업자들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지원비율이 69.9%를 차지했다. 전체 방송장비구축 비용에 대한 방송위원회 기금지원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FM분당)로, 시설총액에 대한 비율은 39.9%였으나 지원기금은 1억1,500만원이었다. 사업자별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사)나주방송으로 약 1억1,884만원이 지원되었다.

방송위원회는 2004년의 방송장비 구축 기금지원에 이어, 2005년에는 프로그램제작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2005년 8월부터 본방송을 개시한 사업자별로 프로그램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였는데, 방송발전기금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제작 지원은 시범사업자가 제출한 제작지원 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2005년도 제작지원 예산 3억 6,000만원을 책정한 후 방송국 당 월 600만원(1일×4시간×5만원×30일)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선정된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출력 라디오방송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2004년 12월 22∼23일에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내용은 크게 방송기술, 편성, 제작 및 운영부분으로 구성되

었다.

먼저 방송기술 부분은 2004년 12월 22일에 실시되었는데, 라디오방송 제작과 관련된 기술교육으로 마이크로폰(microphone), 믹싱 콘솔(mixing console), 레코더(recorder), 시그널 프로세서(signal processor)에 관한 사용법 및 주의사항, 프로그램 제작의 일반원칙과 제작순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편성, 제작 및 운영 부분에 관한 교육은 2004년 12월 23일에 실시되었으며, 방송편성, 편성의 실제, 제작의 실제, 운영의 실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방송편성에서는 편성의 단계, 편성시 고려사항, 편성의 형태, 편성비율에 관한 내용을, 편성의 실제에서는 편성방향, 편성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에 관하여 교육하였다. 제작의 실제에서는 프로그램의 종류, 제작, 제작시 참고사항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실제에서는 운영, SB운영, 기타 참고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이 진행되었다.

3 향후과제

소출력 시범사업 평가결과, 이 매체가 공익성과 지역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적은 경비로 방송국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평가결과를 종합해볼 때, 제도정비를 거쳐 본격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과제로 남는다. 하지만 재원 문제는 지역의 형편에 따라 운영규모나 제작시간을 조정한다면 큰 무리 없이 지역 밀착형 매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매체를 제도화할 때 방송구역과 관련된 출력의 문

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w 방송으로는 지역공동체 매체에 필요한 권역 확보가 불투명하며 그나마 협찬 고지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더구나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들리지 않는 방송을 후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정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 이처럼 출력 증강이 전제된다면 소출력 라디오를 본격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도를 정비하여 준비된 지역부터 소출력 라디오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소출력이 지역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적정 품질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는 소출력이 운영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모델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제10절 재난방송 관리체계 구축

1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을 통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송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사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재난방송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추진실적

가.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안겨다 주었다. 정부의 안이한 재난대처를 비롯해 효과적인 재난방송의 미비도 재난피해를 더욱 키운 원인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자연재난 중 매년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재난방송 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기로 결정하고 「재난방송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여름철 풍수해를 중심으로」 사업을 2004년 3월~7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름철 풍수해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 재난방송 실시방안, 재난방송 관리체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외국의 사례를 통한 현 재난방송 문제점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는 단계별 재난방송 요청

절차와 실시방안을 규정한 「재난방송 종합매뉴얼」을 수립·공포(2004. 6. 30)하고, 각 방송사업자들에게 시행을 권고하였다.

재난방송 종합매뉴얼은 방송법 제75조에 규정되어있는 위원회의 재난방송 요청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절차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재난상황 발생시 이 매뉴얼에 근거하여 재난유형별·단계별로 해당 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하고, 위원회 내에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방송 종합매뉴얼의 시행으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재난방송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한편,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 지진해일과 2005년 3월 후쿠오카 지진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 지진재난 발생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는 지진과 지진해일(쯔나미)에 대비한 재난방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연구는 2005년 4월~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단계별 재난방송 실시기준, 재난발생시 긴급 아나운서 멘트 등 위원회는 물론 방송사업자들의 손쉬운 활용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연구팀은 2005년 6월 방재선진국인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현지의 방재체계와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우리 실정과 연계하여 한국적인 재난방송 체계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은 보고서(재난방송 체계 구축방안 연구-지진 및 지진해일을 중심으로)로 발간되었으며 연구내용은 재난관련 기관과 방송사업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한 재난방송 종합매뉴얼로 제시할 계획이다.

나. 재난관련 법령 정비

위원회는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종합

편성·보도전문편성사업자에서 전 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2005년 4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5월 18일에 공포하였다. 또한 개정 방송법에서는 위원회가 재난방송을 요청하였음에도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는 재난방송 종합매뉴얼을 개정(2005. 7. 11)하여 새롭게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방송법시행령(2006. 3. 10 공포)과 시행규칙(2006. 3. 13 공포)을 개정하여 재난방송 요청방법과 요청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다. 재난관련 기관 간 재난방송 업무협력체제 구축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해 위원회는 재난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원이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방재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대형 재난발생시 사무처 직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에 파견하여 정부 재난관리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였다.

2005년 6월 14일, 재난방송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소방방재청·기상청 간의 상호협력 증진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방송위원회·소방방재청·기상청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정책협의회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경감을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2005년 11월 8일에 1차 정책협의회를 기상청에서, 2006년 3월 27일에 2차 정책협의회를 방송위원회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국지 재난 방지를 위한 방재시스템과 재난방송 역량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회 지역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상청(대) 및 지역방송사가 참여하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였다(2005. 10). 지역재난방송협의회는 지역별 자율재난방송 시스템의 구축과 지역별 재난방송 공동제작 등을 추진하여 지역 자체의 재난방송 역량 강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향후과제

재난방송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팩스를 이용한 재난방송 요청방식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소방방재청·기상청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위원회(서울 및 지역사무소), 방송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방송 요청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2006년 상반기 구축 예정).

지금까지의 재난방송은 재난 발발시의 신속한 보도와 피해상황 집계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예방을 통한 재난방지라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들의 재난대처요령 안내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총사업비 3억원)하여 재난 대응력 제고와 방송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재난방송 콘텐츠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2006년도에는 재난방송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재난방송 실적의 정량적·정성적 분석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각 매체별·사업자별 재난방송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방송평가 및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심사 시 재난방송 실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11절

평가 및 발전방향

1 평 가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은 국가적으로는 방송통신의 융합미디어 기술을 선도하고, 수용자에게는 이동형 서비스의 다양한 매체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동 및 개인형 매체 특성을 이용한 보편적·공익적 지상파방송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며, 방송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 디지털TV전송방식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의한 방식결정은 무엇보다도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전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경남지역 민영방송 광역화는 민방 개국 이래 지속되어 온 서부 경남지역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방송 경쟁력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1994년부터 시작한 지역 민방의 허가 정책을 완료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민방의 혜택을 실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재난방송 요청절차와 실시방안을 규정한 「재난방송 종합매뉴얼」의 수립·공포(2004. 6. 30)와 각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시행권고로 여름철 풍수해 등의 재난에 대한 재난방송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그 동안 ▲TV시청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 우려 ▲전력사정을 고려한

에너지 절약 차원 ▲케이블방송·위성방송 등의 신규 매체에 대한 배려 등으로 제한을 받아 온 지상파텔레비전의 방송시간을,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한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1단계로 낮방송시간을 우선 확대(2005. 12. 1)하고, 1단계 실시결과를 평가, 분석한 다음 심야시간대 방송시간을 자율화하기로 하였다. 방송시간을 확대한 결정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지상파DMB와 데이터방송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방송광고 편성기준을 마련하고 방송법령 개정을 통해 시보광고의 법적 논란을 해결하는 등 당면과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와 정책 분야의 정보 교환과 방송산업 발전에 관한 양자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방송 주관청과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동 사업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까지 싱가포르, 베트남, 브라질, 뉴질랜드, 인도, 독일의 방송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해외 유수 견본시 및 방송기기전 참가, 그리고 TV Korea Showcase 개최 등의 주요 성과로는, ① '한류'의 탈아시아화, ②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촉진, ③ 디지털 융합기술과 U-Korea와 관련한 한국의 방송기술 홍보, ④ 국내 DMB 기술의 해외진출 모색, ⑤ 방송관련 글로벌 네트워킹의 강화, ⑥ 국제적 방송교류 협력 강화, ⑦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 효과 등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발전방향

중장기 방송발전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 정책의 구체화 작업과, 향후 변화하는 방송환경

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방송통신 구조개편의 추이를 반영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틀을 재설정하고, 관련 산업 및 국민의 복리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 및 뉴 미디어 방송의 출현에 따라 시의성 있는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의 종료 일정 등 디지털 전환완료 정책, 디지털TV수상기 보급률 증대 방안, 소외계층 보호방안, 케이블 및 위성방송(SkyLife)에서의 고선명(HD)방송 활성화 방안 등에 역점을 두어 궁극적으로 시청자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나아가 「제5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하여 방송위원회의 정책방향을 결정한 후 '(가칭)디지털전환 특별법'의 제정 추진을 검토하여야 한다.

디지털방송의 핵심 서비스인 데이터방송의 성공적 정착 유도를 위하여, 쟁점사안 및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통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데이터방송 실시를 위한 조기 디지털전환 지연 및 고기능 셋톱박스의 보급지연, 플랫폼 사업자와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각종 표준화 문제, 개인정보 보호 및 과금체계 문제, 보조적 데이터방송에서 T-Commerce의 프로그램 상업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조속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디지털방송전환추진점검단에서 제안한 디지털방송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성공적으로 방송시장에서 조기 정착되고, 수용자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 활용성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방송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왔다. 앞으로는 시청자의 관점에서 의무편성

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단순히 이행하는 차원의 비율 준수가 아닌 방송을 통해 시청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편성정책이 요구된다.

뉴미디어의 지속적인 출현에 따른 방송콘텐츠 수요 범위의 확대는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성장을 견제·경쟁할 수 있는 대체 사업자의 출현과, 방송사업자 간 프로그램 제작, 유통에 있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외주제작 제도의 활성화 및 관련 환경 개선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중심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제도와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있어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통해 시청자의 복지 증대와 방송제작 주체의 제작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정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KBS-2TV 재송신과 관련한 이해충돌의 경우와 같이, 향후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발생 예상되는 복잡다기한 매체 간 이해관계의 조정과 공정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조정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상파TV의 낮방송을 확대하면서 실시한 권고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낮 방송시간 확대운용에 따른 효과·영향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분석·검토를 통하여 차후 심야시간대(01:00-06:00) 확대운용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방송의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서울 및 지역사무소)는 소방방재청·기상청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방송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사업자들의 재난대처요령 안내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들의 재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난방송 실적의 정량적·정성적 분석의 틀을 마련하여 향후 각 매체별·사업자별 재난방송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방송평가 및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심사 시

재난방송 실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기 위원회부터 논의되었던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가상광고, 미디어렙 등 방송광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들이 여전히 사업자간의 이견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매체와 신규매체가 상호 공생 가능하고 향후 방송광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송광고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해외 방송당국과의 양해각서의 체결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 당사국 사업자간 협력모델의 개발과 인력교육, 연구개발 사업의 공동추진 등 협력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방송의 해외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유수 견본시 및 방송기기전 참가, 그리고 TV Korea Showcase 개최 지원을 통하여 국내 콘텐츠 및 방송관련 뉴미디어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 산업의 해외진출은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당해 규제를 관장하는 기관 간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해당국 방송 규제기구와의 정책협의와 연계하여 이와 같은 행사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법제 정비

제1절 방송법령 정비 / 120
제2절 제 규칙의 제·개정 / 128

제1절

방송법령 정비

1 사업개요

제2기 방송위원회 임기 중 방송법은 총 10회, 방송법시행령은 총 7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중 뉴스진흥에관한법률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법령이 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차례의 주요 내용 변동이 있었다.

2 추진실적

제2기 방송위원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행되었던 2003. 5. 10 방송법은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업무처리에 있어 국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임위원 1인 증원과 동시에 상임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2004. 3. 22 방송법은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인한 신규 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규제시스템과 방송발전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방송 개념과는 다른 신 개념의 방송서비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방송서비스로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등이 겸영제한 또는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방송위원회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정비하였다.

2005. 5. 18 방송법은 재해 및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송을 통해 남북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간 방송교류·협력증진 업무를 담당할 기구로서 방송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및 시보광고로 정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던 지역사업권료를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로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틀을 만들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방송법시행령도 3차례의 큰 변동이 있었으며, 방송법 개정에 따른 체계를 맞추기 위한 내용이 주 개정사항이었다. 2003. 5. 29 방송법시행령은 상임위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 증원을 명기하였으며, 2004. 9. 17 방송법시행령은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관련 사항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다. 2006. 3. 10 방송법시행령은 시보광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고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방송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06. 4월 현재 임시국회에서 음란·패륜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처분의 법적근거 마련 등 방송심의제도 개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어린이대상 방송프로에 대한 방송광고시간 자막 표기 의무화 등 시급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제2기 방송위원회「방송법」개정 연혁>

개정일	개정사유	주요내용
2003. 5. 10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외에 3인의 상임위원을 둠 • 상임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 포함
2004. 3. 22	방송·통신 융합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방송서비스로 테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도입 근거 등 마련	• 방송을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분류 •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디어방송 정의 신설 • 대기업의 SO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규정 폐지, SO 및 PP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제한 완화(33% → 49%) • 방송사업자 등이 겸영제한 또는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 근거 신설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 사업자의 방송법상의 소유지분 위반시 외국 방송의 출자 또는 출연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지분의 소유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방송위원회는 당해 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심의·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 받지 아니한 방송광고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함

개정일	개정사유	주요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신규 편성
2005. 5. 18	체계적인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며 남·북간 방송교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방송광고제도를 정비하며 종전의 지역사업권료를 방송발전기금 제도로 일원화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지역사업권료를 폐지하고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로 일원화 •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 • 방송광고의 종류로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및 시보광고를 규정 • 재난 방송요구대상자로 모든 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제2기 방송위원회「방송법시행령」개정 연혁>

개정일	개정사유	주요내용
2003. 5. 29	방송법 개정(2003. 5. 29)으로 방송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 증원	방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증원을 4인에서 5인으로 1인(차관급) 증원
2004. 9. 17	방송법 개정(2004. 3. 22)으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데이터방송의 도입근거가 신설되고 지상반송사업자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겸영이 제한됨에 따라, 그 상호겸영의 제한 범위를 정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등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원용하던 것을 개정하여 방송법의 겸영제한 등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규정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권역별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수가 10 미만일 경우 1개를 초과하여 이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이동 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위성방송 사업자 상호간의 겸영의 범위설정 •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를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라디오방송광고 및 동영상과 음성이 포함된 데이터방송광고로 정하되 그 중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을 제외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기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채널수의 한계 등을 정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중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비율을 전체 채널수의 100분의 10에서 매

개정일	개정사유	주요내용
		체별 채널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 •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전체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을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신규 편성하도록 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국내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를 부여 •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을 방송매체와 방송채널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토막광고 및 자막광고의 규제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며, 데이터방송의 방송광고 운용기준을 마련
2006. 3. 10	방송법 개정(2005. 5. 18)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보광고의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송사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현행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자 중 본인의 사용인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또는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가 아닌 자로서 본인의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자는 앞으로 특수관계자에서 제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고, 납부기한내에 방송위원

개정일	개정사유	주요내용
		회가 정한 수납기관에 방송발전기금 납부 • 시보광고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 방송 • 공익성이 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에 제작주체의 제한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 또는 용역을 제조·판매하는 공익법인도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협찬고지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6. 6월 예정) 주요 골자

2006년 4월 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방송심의 제도의 개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 자막표기 의무화, 공동체 라디오방송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등이다.

동 법률안의 개정이 확정되면, 제3기 방송위원회부터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체 라디오방송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허가대상 및 허가절차, 소유제한, 편성비율 규정 등을 신설
-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등록 절차만으로 방송사업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무분별한 보도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보도에 관한 정의규정 및 이에 관한 제한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의 예외조항 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식 소유 및 겸영 등을 제한
-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
- 음란·패륜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송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의 조절절차·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 해외 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
-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진흥·시청자복지 등을 위한 투·융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방송사업자는 광고와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제2절

제 규칙의 제·개정

제2기 방송위원회 임기동안 새로운 융합 서비스 및 신규서비스 도입 등의 방송환경 변화에 맞추어 방송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도 2차례의 내용변동이 있었다.

2004. 9. 18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은 방송법 개정으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데이터방송이 도입됨에 따라 위임된 관련 사항 등을 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2006. 3. 13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은 방송법상 재난방송 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조정하였다.

기타 제 규칙은 2003. 6. 17 '방송위원회회의공개등에관한규칙'을 시작으로 2006. 3. 13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의 개정까지 총 36회의 걸친 제·개정 작업이 있었다. 기존 규정 개정과 더불어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개관됨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규정'이 제정되었고, 방송위원회에 남북교류추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남북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구성운영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방송위원회 '물품관리규정'이 새로 추가되었다.

<제2기 방송위원회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개정 연혁>

개정일	개정사유	주요내용
2004. 9. 18	방송법 개정(2004. 3. 22)에 따라 이동멀티미디어 및 데이터방송의 도입근거가 마련됨으로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동일한 방송내용을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V), 방송시간 및 방송프로그램 선택 시청형 방송채널사용사업(VOD) 등에 대한 자본금 요건 적용 기준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종합편성 및 전문편성) 산정 기준이 되는 방송내용물의 구체적 산정기준 •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과 테이터방송채널을 구분하여 방송운용 채널 수 계산 방법 정비 • 재해예방기관의 장이 운용하는 자동작동시스템에 의하여 경보방송이 자동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확대(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단체로 과학기술 관련 단체 추가하고, 위원 추천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연간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한정
2006. 3. 13	방송법 개정(2005. 5. 18)으로 재난 방송 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확대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정비하고 문구를 조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방송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방송위원회가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사업자 확대(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방송사업자)

<제2기 방송위원회 제규칙 제·개정 연혁>

규칙명칭	규칙번호	제·개정	위원회 의결일	시행일
방송위원회회의공개등에 관한 규칙	55	개정	2003. 6. 17	2003. 6. 18
방송위원회사무처직제규정	56	개정	2003. 7. 15	2003. 7. 15
방송위원회사무처인사규정	57	개정	2003. 7. 15	2003. 7. 15
방송위원회사무처보수규정	58	개정	2003. 7. 15	2003. 7. 15
방송위원회사무처여비규정	59	개정	2003. 7. 15	2003. 7. 25
방송위원회사무처사무관리규정	60	개정	2003. 7. 15	2003. 7. 25
방송위원회사무처보수규정	61	개정	2003. 12. 9	2003. 12. 9
방송위원회기본규칙	62	개정	2004. 1. 6	2004. 1. 6
방송위원회보수규정	63	개정	2004. 2. 17	2004. 2. 17
방송위원회사무처직제규정	64	개정	2004. 7. 6	2004. 7. 19
방송위원회사무처사무관리규정	65	개정	2004. 7. 13	2004. 7. 13
방송위원회사무처여비규정	66	개정	2004. 7. 20	2004. 7. 20
방송위원회사무처인사규정	67	개정	2004. 7. 20	2004. 7. 20
방송위원회사무처보수규정	68	개정	2004. 7. 26	2004. 7. 26
방송위원회사무처촉탁직규정	69	개정	2004. 7. 26	2004. 7. 26
방송위원회기본규칙	70	개정	2004. 8. 10	2004. 8. 16
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규칙	71	개정	2004. 8. 10	2004. 8. 16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72	개정	2004. 9. 14	2004. 9. 18
시청자불만처리등에관한규칙	73	개정	2004. 10. 19	2004. 10. 25
방송심의에관한규정	74	개정	2004. 10. 25	2004. 11. 1
방송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	75	개정	2004. 12. 14	2005. 1. 1
방송위원회사무처여비규정	76	개정	2005. 2. 22	2005. 2. 22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규정	77	제정	2005. 5. 11	2005. 5. 20
방송위원회사무처직제규정	78	개정	2005. 6. 28	2005. 7. 11
방송위원회사무처취업규정	79	개정	2005. 6. 28	2005. 7. 11
방송위원회사무처촉탁직규정	80	개정	2005. 6. 28	2005. 7. 11
방송위원회사무처보수규정	81	개정	2005. 6. 28	2005. 6. 29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구성운영규칙	82	제정	2005. 7. 22	2005. 8. 1
방송위원회 물품관리규정	83	제정	2005. 9. 21	2005. 9. 27
방송평가에관한규칙	84	개정	2005. 9. 21	2005. 9. 27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85	개정	2005. 12. 27	2006. 1. 1.
협찬고지에관한규칙	86	개정	2005. 12. 27	2006. 1.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87	개정	2006. 1. 17	2006. 1. 17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88	개정	2006. 1. 13	2006. 2. 1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89	개정	2006. 3. 7	2006. 3. 13

제 5 장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추천, 승인, 등록 및 행정제재

제1절 허가추천 및 승인 / 132
제2절 재허가 추천 및 재승인 / 147
제3절 등 록 / 157
제4절 행정제재 / 160
제5절 평가 및 발전방향 / 168

제1절 허가추천 및 승인

1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가. 사업개요

경인방송에 대한 재허가 추천 거부처분으로 텔레비전 방송이 중단된 경인지역에 대한 신규 민영방송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다.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경인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 지역방송 활성화 등 방송정책 목표의 실현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구조를 기반으로 한 방송으로서 공익성 실현이 가능한 지역 민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되, 외주제작물 편성확대 등을 통하여 경영 안정성 도모 및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2005년 11월 말 신청접수를 받아 2006년 1월 허가추천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심사평가 결과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 이상을 얻은 사업자가 없어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6년 2월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을 재추진키로 하고, 2006년 3월 말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평가를 진행하여 2006년 4월 28일 가칭 (주)경인티브이를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방송권역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원으로 하여 과거 경인방송의 권역에서 경기북부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목표>

○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와 방송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 복지 실현 및 권익신장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성·공공성·공적책임 제고
○ 지역의 다양한 정보문화 생산과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방송 역할 제고
○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확대 등을 통해 지역 민영방송사로서의 경영 안정성 도모 및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함.

나. 추진실적

1) 1차 사업자 선정 추진경과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개최(2005.5.9)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 연구」 전문가 연구용역 발주(2005.6.2~20)
○ 이해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접수(2005.6.10~23)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수립 관련 방송위원 1차 워크숍 개최(2005.7.11)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수립 관련 방송위원 2차 워크숍 개최(2005.7.22)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2005.8.8)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기본정책방안 수립·공표(2005.9.7)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및 허가추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개최(2005.9.23)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5.10.14)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확정(2005.10.18) 및 공표(2005.10.19)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신청 공고(2005.10.24)
○ 세부심사기준 및 허가추천 신청요령 사업자설명회(2005.10.25)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신청 접수 마감(2005.11.24)
○ 신청서류 보완 통보(2005.12.9)
○ 관계기관 의견조회(2005.12.13~2006.1.3)
○ 시청자의견 청취(2005.12.21~2006.1.3)
- 관보 및 일간지(경인일보, 경기일보),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 신청법인 구성주주의 방송사업자 주식보유 등 현황조사(2005.12.28~2006.1.3)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 관련 세부심사평가지침(안)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건 의결(2006.1.4)
○ 허가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평가(2006.1.17~2006.1.22)

2) 심사기준

경인지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정책목표 및 세부 선정방안에 충실하고 이의 실현이 가능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에 참고가 되는 관련 사업의 과거실적은 평가에 반영하고, 심사평가 결과 최고점을 얻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하나, 신청사업자 중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1,000점 만점 중 650점)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별도의 정책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심사기준의 공정성, 객관성, 변별성을 확보하고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절차를 사전에 공개하였다. 세부 심사기준 중 주요사항은 신청법인 및 주요 주주의 사업목적, 사업운영 투명성, 재원구조 및 재원 형성과정의 적합성, 법령 준수정도 등 방송사업 참여 적합성 및 건전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경인지역에 허가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가 지역 민영방송사라는 점과 지상파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주요주주(지분율 5%이상)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 방송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및 경영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나, 경영목적 및 사업 환경에 따라 적정 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및 다양한 지역자본 참여를 통한 지역방송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여 최저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프로그램 제작·수급 및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평가하고 기타 재정능력 및 경영계획 평가를 통해 방송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에 반영키로 하였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고시비율 상한선(40%)을 감안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역 민영방송사업자로서의 경영안정성 및 방송산업 발전기여 정도를 판단하여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3) 1차 심사결과

2005년 11월 24일 총 5개 신청법인이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신청을 하였으며, 방송분야와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2006년 1월 17일~22일까지 6일간 5개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 이행의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유기적 연관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다주주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심사는 시청자 의견 수렴 시 요약 사업계획을 방송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등 시청자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직전까지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게시판,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였다. 2주간의 시청자의견 청취기간 중 총 1,061건의 시청자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모든 시청자의견을 가감 없이 심사위원회에 제시하고, 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청취한 시청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심사, 평가하였다.

그러나, 심사평가 결과 신청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실현가능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신청사업자 모두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1,000점 만점 중 650점)이상을 얻은 사업자가 없어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및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신청 공고」 내용과 같이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차 심사위원회 명단>

분야	심사위원	소속 및 직책	추천단체
심사위원장	양 휘 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방송위원장 지명
법률분야	박 형 상	박형상법률사무소 변호사	인선소위
	최 진 수	유비즈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공법학회
경영·회계 분야	박 내 회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경영학회
	이 상 수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회계학회
	전 현 수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인선소위
	박 태 수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인선소위
방송분야	윤 석 년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한국지역언론학회
	윤 석 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김 미 경	청운대 방송영상산업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전 범 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선소위
기술분야	김 수 량	공주영상정보대학장	방송기술인연합회
	김 덕 규	경북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인선소위
	서 종 수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한국방송공학회
시민단체	김 재 옥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사)소비자시민모임
	박 영 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인선소위

<1차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법인명	대표자	최다주주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굿티브이(가칭)	이 정 식	㈜태경산업, ㈜기전산업, 황금에스티㈜	640.65
(가칭)㈜케이아이비에스	김 종 오	영안모자㈜	580.09
㈜나라방송(가칭)	최 동 호	한국단자공업㈜	634.39
(가칭)㈜경인열린방송	백 낙 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640.05
㈜티브이케이(가칭)	이 흥 주	㈜휴맥스	610.22

4) 2차 심사결과

방송위원회는 1차 심사에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관계로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하면서 2006. 2. 14.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 재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으나, 1차 심사 시 사업자 선정에 탈락된 사업자가 2차 심사에 그대로 응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기 방송위원 임기 중에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2월 중으로 사업신청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최소한의 심사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의결을 보류하고 2006. 2. 21.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06. 2. 21.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재추진 방안을 검토하면서 1년 이상 정파가 지속되어 온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회복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인지역에 견실하고 건전한 신규사업자를 허가추천하기로 한 정책방안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임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1차 심사와 동일한 정책목표, 사업자선정방식, 심사기준 및 배점을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업자 선정 재추진경과>

-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재추진 기본계획 결정(2006.2.21)
-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신청 공고(2006.2.24)
- ○ 세부심사기준 및 허가추천 신청요령 사업자설명회(2006.2.28)
-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신청 접수 마감(2006.3.27)
- ○ 관계기관 의견 조회(2006. 3. 30)
- ○ 시청자의견 청취(2006. 4. 3~2006. 4. 14)
-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 관련 세부심사평가지침(안)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건 의결(2006. 4. 18)
- ○ 현장실사(2006. 4. 20)
- ○ 허가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평가(2006. 4. 23~2006. 4. 27)

2006. 3. 27.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허가추천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가칭(주)경인열린방송 및 가칭(주)경인티브이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사업자선정을 위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 시청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06. 4. 23.~2006. 4. 27.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각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다.

<2차 심사위원회 명단>

분 야	심사위원	소속 및 직책	추천단체
심사위원장	성 유 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방송위원장 지명
법률분야 (2인)	유 시 창	유시창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김 기 중	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	인선소위원회
경영·회계 분야 (4인)	강 길 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	인선소위원회
	이 주 성	충주대 경영학부 교수	대한회계학회
	이 윤 희	충정회계법인 회계사	인선소위원회
	진 동 필	우림회계법인 회계사	인선소위원회
방송분야 (4인)	허 경 호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신 태 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국언론정보학회
	김 동 규	동명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주 정 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선소위원회
기술분야 (3인)	안 동 수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방송기술인연합회
	조 현 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상 운	연세대 연구교수	방송기술인연합회
시민단체 (2인)	도 영 숙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박 정 의	인천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천연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699.27점을 얻은 가칭 (주)경인티브이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2차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법 인 명	대표자	최 다 주 주	심사위원회 심사평가점수
(가칭) (주)경인티브이	신현덕	영안모자(주)	699.27
(가칭) (주)경인열린방송	백낙천	(주)대양금속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655.63

다. 향후과제

이번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 선정은 장기간 정파가 지속되어 온 경인지역에 민영 텔레비전 방송사업이 재개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원회는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가칭 (주)경인티브이에 대해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성 이해각서를 제출토록 하고, 신청법인이 사업계획서와 의견청취를 통해 약속한 고용계획과 편성의 독립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도 제출받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경인지역 민영방송의 조기개국을 열망하는 지역시청자의 복지실현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송사가 개국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역 지상파방송사로서 공적책임을 제고하는 사업계획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가. 사업개요

2002년 말, 기술기준이 유럽의 Eureka-147로 확정되고, 제3기 디지털 방송추진위원회에서 DAB를 'DMB'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서비스의 개념, 사업자 구도, 무료 서비스 성격, 추진일정 등을 규정하여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04년 3월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방송법에 도입되고, 그 해 9월 방송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구체화됨으로써 법적인 도입 기반이 마련되었다.

곧 이어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의 합의를 통해 지상파 DMB 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하기로 결정, 준비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04년 11월 22일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 기본방안'을 마련, 공표하여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였다.

나. 추진실적

신규 방송사업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 의견청취,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 사업자 의견청취 : 총 4회(2004. 9/16, 22, 11/9, 26)
- 사업자 선정방안 전문가토론회 : 2004.12.10
- 사업자 선정방안 전문가 검토 : 2004.12.14~16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 관한 공청회 : 총 2회(2004.11.12, 12.23)

아울러 위원회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기술적 특성 및 국내

방송 산업에의 영향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확정하였다.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기본방안 의결·공표 (2004.11.22)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채널구성 기본방향 의결·공표 (2004.11.26)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종합정책방안 의결·공표 (2004.12.27)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고시(2005.1.4)

종합정책방안 및 세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방송, 회계, 경영, 법률,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 신청 공고(2005.1.13)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신청 접수(2005.2.14)
- 지상파TV사업자군 : 4개 법인(KBS, MBC, SBS, EBS)
- 비지상파TV사업군 : 6개 법인(YTN DMB, 한국DMB, 케이엠엠비, 유큐브미디어, DMB코리아, 국민디엠비플러스)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대상자심사, 선정
-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운영(2005.3.22~3.27)
- 허가추천 대상자 선정(2005.3.28)
  - 지상파TV사업자군(3개사) : KBS, MBC, SBS
  - 비지상파TV사업자군(3개사) : YTN DMB, 한국DMB, KMMB(현 U1 Media)

본 방송은 KBS, MBC, SBS는 2005년 12월 1일에, 한국DMB, U1 Media는 2006년 3월 1일에 실시하였다.

다. 향후과제

지상파DMB는 시·청취자에게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이동 및 개인형 매체 특성을 이용한 보편적·공익적 지상파방송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며, 방송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지상파DMB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상파DMB 사업자간의 공동협의체 구성 유도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가. 사업개요

위성DMB는 방송·통신 융합의 결실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이동형 방송매체로서, ITU에 의하여 방송위성용으로 확보된 2,605~2,655㎒ 대역을 SKT와 KT에서 확보함으로써 도입 시도가 가시화되었다.

나. 추진실적

본 사업은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준비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허가추천 신청접수 결과 티유미디어㈜가 단독으로 신청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티유미디어㈜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본방송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 주요 경과사항

- 사업자 선정방안 전문가토론회 : 총 3회(2003.11.27, 2004.1.15, 7.15)
- 사업자선정 정책방안에 관한 공청회 : 2004.6.30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총 3회(2004.5/14,18.,9/21)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방안 의결·공표(2004.10.8)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 신청 공고(2004.10.11)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 신청접수(2004.11.10)
  (티유미디어주식회사 단독 신청)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대상자 심사, 선정

다. 향후과제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도입으로 국가적으로는 방송통신의 융합미디어 기술을 선도하고, 수용자에게는 이동형 서비스의 다양한 미디어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내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된 바, 이제부터는 세계적으로 새롭게 시작된 이러한 뉴 미디어가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되고, 수용자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 활용성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추천

가. 사업개요

방송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2002년 7월 27일 관보를 통하여 “중계유선 사업구역 분할에 따른 형식상 신규신청 및 허가실효된 사업자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 등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 허가추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방송사업자명	허가추천 사유
위도유선방송사	전남 부안군 위도면을 방송구역으로, 난시청해소 역할 및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역무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03년 허가추천
자은암태유선방송사	전남 신안군 자은면, 암태면을 방송구역으로, 난시청해소 역할 및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역무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04년 허가추천
구천동유선방송사	전북 무주군 선천면을 방송구역으로, 난시청해소 역할 및 산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역무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04년 허가추천

다. 향후과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의 전환 및 케이블방송시장의 통합이라는 위원회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신규허가와 관련한 기존의 정책방침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허가실효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법 미숙으로 인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가. 사업개요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여기서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함은 유·무형의 다품종 복합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방송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 사업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결과, 기존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자가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엄정한 승인 심사절차를 거쳐 이중 10개사를 선정하였다.

위 사업심사에 있어서의 주요 고려사항은 시청자·소비자의 피해방지 및 권익보호를 통한 방송의 공익성 실현과 신규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방송산업의 활성화 등이었다.

나. 추진실적

데이터방송 정책방안을 의결하고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아 승인사업자를 선정하기까지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 2004.11.22. 데이터방송 정책방안 의결(제53차 방송위원회)
- ○ 2004.12. 6.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데이터방송사업 승인 기본계획 의결(제56차 방송위원회)
- ○ 2004.12.10. 신청접수 공고
- ○ 2004.12.16. 사업자 설명회
- ○ 2005.1.25~27.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접수(13개)
- ○ 2005.3.15~19. 심사위원회 운영
- ○ 2005.3.22.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10개)
- ○ 2005.4.19. 승인장 교부(승인유효기간 : 2008.4.18)
- ○ 2005.6.22. 동 사업 심사백서 발간

다. 향후과제

디지털방송 핵심 서비스로 데이터방송의 성공적이고 건전한 정착을 유도하고 쟁점사안 및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통한

데이터방송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데이터방송 실시를 위한 조기 디지털전환 지연 및 고기능 셋톱박스의 보급지연, 플랫폼 사업자와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각종 표준화 문제, 개인정보 보호 및 과금체계 문제, 보조적 데이터방송에서 T-Commerce의 프로그램 상업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2절

재허가 추천 및 재승인

1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가. 사업개요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추천은 방송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질적 심사로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의 건전성 제고', '품격 있는 방송 지향'을 잣대로 평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1) 2003년도 재허가 추천

2003년도 재허가 추천 대상 사업자는 총 10개 사업자로 연주소 8개, 표준FM 2개, 중계소 8개를 포함한 18개 방송국이었다.

2003년도 재허가 추천 기본계획은 8월 19일 전체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되었고, 9월25일~26일의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10월 7일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추천을 의결하였다. 심사결과는 연주소의 경우 모두 기준점수(65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추천(극동목포 • 포항FM방송국, 교통전주FM방송국)하였고, DTV 방송국은 적합 판정으로 재허가 추천(KBS1, KBS2, 한국문화, SBS, 한국교육 DTV 방송국), 중계소는 사무처

검토 후 재허가 추천(표준FM 2개, 중계소 8개)하였다.

2) 2004년도 재허가 추천

2004년도 재허가 추천 대상 사업자는 총 42개 사업자로 506개 방송국(연주소 269개, 중계소 237개)이었다. 재허가 추천 기본계획은 5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8～10월간 총 14일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5회의 재허가 추천을 의결하였다.(아래 표 참조)

<재허가 추천 심사결과>

일 자	내 용
2004.10.26.	○ 위원회, 재허가 추천 의결 - KBS 등 34개 사업자 474개 방송국
2004.11.15.	○ 위원회, MBC 재허가 추천 의결
2004.12. 6.	○ 위원회, SBS 조건부과 재허가 추천 의결
2004.12.10.	○ 위원회, 강원민방 조건부과 재허가 추천 의결
2004.12.21.	○ 위원회, 경인방송 재허가 추천 거부 의결

대부분의 방송사업자(34개 사업자 474방송국)는 10월 26일 제48차 방송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허가 추천을 받았으나,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향후 적자 예산편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제출 및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주)대전문화방송, (주)춘천문화방송은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주)제주문화방송,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은 사업계획의 철저한 이행 및 방송법 준수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재허가추천서를 교부하였다. 아울러 허가 당시 출연하기로 한 방송발전기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업자((주)울산방송, (주)전주방송, (주)경기방송, (주)청주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 납부계획 확인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주)전주방송은 최다주주 보유 우선주(초과 소유분)의 처분, (주)청주방송은 FM방송의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편성 확대계획과 경영효율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주)SBS의 경우, 재허가 추천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된 방송사업자의 방송수익의 사회 환원과 관련하여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을 부관사항으로 명기하여 명확하게 하기로 하고, 세전이익 15% 출연과 관련한 법적 측면에 대한 검토 결과, 허가 당시 사회 환원 약속은 그 효력이 다소 약한 암묵적 부관으로 판단하여, 과거 미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11월 15일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SBS가 약속한 300억원 납부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허가 추천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 허가추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② 1990년 허가당시 약속한 사회환원 출연액 중 미출연금은 금번 재허가시 제시한 납부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
③ 1990년 허가당시 (주)태영이 약속한 출연액 중 미출연금을 이행할 것.
④ 지역성 구현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할 것.
⑤ 위 ①, ②, ③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

또한, 대표이사(회장·사장·부사장) 간의 권한 및 책임명시 규정 마련, 경영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주)강원민방에 대해서는 최초 허가당시 사업계획의 불이행, 前회장의 차명주식보유 등 법위반 사항 발생에 대해 “위원회에 각서로 확약한 시정계획과 주요사업 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1월 제출할 것, 2005년부터 매년 전년도 당기 순이익의 10%를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사회 환원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재허가 추천하기로 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05조

에 의거, 고발조치하였다.

(주)경인방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무구조 악화와 증자계획의 이행 저조, 허가 당시 제시한 방송발전기금 출연 실적 및 방송발전 지원 계획 이행실적의 저조로 2차례의 의견청취와 1차례의 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12월 21일 재허가 추천 거부를 의결하였다. 재허가 추천 거부 사유로는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및 방송수익 사회 환원 불이행, 협찬 및 간접광고규정에 대한 반복적 위반이었다.

2004년 재허가 추천 당시 전 방송사업자에 공통적으로 방송국 운영성과에 따른 방송사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고, 과다한 협찬운영의 지양, 협찬고지관련 법규의 준수, 방송사의 시청자민원 처리절차 및 제도의 개선, 방송사의 수익사업 운용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에 유의할 것,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년층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편성 확대 등의 다섯 가지 사항이 권고되었으며, 지역MBC에는 조직 및 인력의 보다 합리적인 운용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광역화 추진 및 자체편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전 민영방송사업자에게는 경영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사업자별로는 한국방송공사에 국회 및 감사원 시정요구사항(이익잉여금의 국고배당 근거마련을 위한 정관개정,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의 조속한 이행, 조직 및 인력의 보다 합리적인 운용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역국 광역화 추진 및 지역국 자체편성의 확대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하였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서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이익잉여금의 국고배당 근거마련을 위한 정관개정, 퇴직금누진제·가산제 폐지 등)의 조속한 이행을 권고하였다.

3) 2005년도 재허가 추천

2005년도 재허가추천 대상사업자는 총 13개 사업자로 연주소 10개, 중계소 12개를 포함한 22개 방송국이었다.

추진 경과로는 5월 30일 재허가 추천 기본계획을 의결하여, 11월 14일~16일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11월 23일 2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추천을 의결하였다.

이중 이행각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주)대전방송이며, 각 이행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자명	재허가추천서 교부 전 이행사항
(주)강원민방	○ 2004년 재허가 추천 시 위원회에 각서로 확약한 시정계획 대비 이행실적과 미이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
(주)제주방송	○ 방송법 위반 해소계획 등 법 준수 관련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를 제출할 것
(주)대전방송	○ 방송법 위반 해소계획 등 법 준수 관련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를 제출할 것

(주)경인방송(FM방송국)의 경우, 재허가추천서 교부 전 방송법 제8조 제2항 관련 위반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의 제출, 구체적 방안 및 시행시기를 포함한 iFM 재무구조 개선계획 및 이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 제출, TV사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방송국 명칭 변경과 같은 이행사항을 이행 후, 다음과 같이 조건부 재허가 추천하였다.

사업자명	재허가 추천 조건
(주)경인방송	○ 재허가 추천 심사과정에서 제시한 iFM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결산 후 1월 이내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 향후과제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과 관련된 향후 과제로는, 2004년 경인방송TV의 경우에서 노정된 바와 같이 재허가 추천 거부 시 그에 따른 후속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바, 재허가 추천 거부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시의 방송사업자 지위 및 절차 관련 규정의 보완과, 현행 허가 유효기간(3년)의 연장 및 단기 유효기간 설정 도입, 재허가 추천 심사기준의 개선, 그리고 아울러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제도의 개선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가. 사업개요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방송법 제17조제1항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추천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추진실적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최초 재허가 추천 업무를 효율적·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17조에 명시된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배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용하였다.

구체적인 심사는 외부 전문가 6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총 9인)에서 이루어졌으며(2004. 8. 3∼8. 5), 심사위원회 운영기간 중 재허가 심사대상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대표자와 최대주주인 KT의 비전경영실장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방송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방송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특정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항목 없이 총 693.64점을 획득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재허가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언론에 공표하였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익적 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보장 등과 관련하여 행정권고하고, 이에 대한 재허가 추천 부관사항을 부과하였으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행정권고에 대해서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등의 공적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향후과제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계획, 방송운영 계획, 기술개발 계획, 방송발전 기여계획 등 재허가 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및 별도 제출한 공적의무 이행계획서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출된 이행각서상의 내용에 대한 준수 여부 및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차후의 재허가 추천 심사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가. 사업개요

방송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업무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지난 3년간 정상적인 방송사업 운영을 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장을 교부받은 (주)하나방송 등 3개사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였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최초의 사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공동 당사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엄정한 방송행정의 집행을 통하여 방송사업의 공정경쟁 풍토 조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 2003년 8월 허가만료 22개 사업자
- 재허가 추천 : 한국케이블티브이경동방송 등 17개사
- 조건부 재허가 추천 : 아름방송네트워크 등 5개사

○ 2003년 12월 허가만료 15개 사업자
- 재허가 추천 : 드림씨티은평방송 등 8개사
- 조건부 재허가 추천 : 한국케이블티브이금정방송 등 7개사

○ 2004년 12월 허가만료 32개사
- 재허가 추천 : 디비에스대경방송 등 9개사
- 조건부 재허가 추천 : 북부산방송 등 23개사

○ 2006년 2월 허가만료 8개사
- 조건부 재허가 추천 : 영서방송 등 6개사
- 재허가 추천 거부 : 우리넷 및 하나방송

○ 2006년 4월 허가만료 41개사
- 조건부 재허가 추천 : 강서방송 등 40개사
- 재허가 추천 거부 : 한국케이블티브이충남연합방송

다. 향후과제

현행 방송법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거부와 관련하여 시청자 보호방안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재허가 추천 거부시 방송시청을 할 수 없는 시청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아울러 재허가 추천조건 및 개선계획의 검증방법에 대한 개선과,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확인, 관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가. 사업개요

방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월 27일 및 동년 6월 3일 각각 사업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과, 2006년 3월 12일로 사업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 매일경제TV, GS홈쇼핑, CJ홈쇼핑에 대하여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전반적 운영실적 및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수행에 대하여 검증·평가하고, 향후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보도 및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나. 추진실적

2004년과 2005년에 각각의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추진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2003. 10. 28.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 심의·의결
2003. 11. 28.	홈쇼핑PP 재승인신청서 접수
2004. 2. 3~3. 5.	홈쇼핑PP 재승인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2004. 4. 21~ 4. 23.	홈쇼핑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2004. 5. 11.	홈쇼핑PP 재승인 심사결과 의결 및 발표
2004. 5. 21.	홈쇼핑PP 조건부 재승인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조건' 의결
2005. 8. 23.	'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 제34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의결
2005. 9. 12.	보도·홈쇼핑PP 재승인신청서 접수
2005. 9. 13~ 9.27.	보도·홈쇼핑PP 재승인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관보, 홈페이지, 해당 채널 고지)
2005. 11. 22~ 11. 24.	보도·홈쇼핑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2005. 12. 6.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제49차 방송위원회 의결

다. 향후과제

그 동안의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개별 사업자의 사업승인 유효기간 조정을 통한 승인만료일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재승인 심사의 효율성과 심사기준 적용의 형평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등 록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가. 사업개요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 채널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2003년 5월 10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총 122개 사업자가 270개 채널을 신규로 등록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신규등록현황(2003. 5. 10~2006. 3. 15)>

TV		Radio		Data		총계	
법인수	채널수	법인수	채널수	법인수	채널수	법인수	채널수
83	98	17	121	27	51	122	270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현황(2006. 3. 15 기준)>

구분	1차 ('95)	2차 (2000)	신규 홈쇼핑 (2001)	소계	3차 등록 (2001.3 ~)			소계	총계
					TV	Data	Radio		
사업자수	26	11	3	38 (중복 제외)	130	38	20	181 (중복 제외)	202 (중복제외)
채널수	28	12	3	43	167	65	211	443	486 (텔레비전 : 212)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절차는 신청내용의 법령위배 여부,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실무검토와 심사 후 방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제를 통하여 방송콘텐츠 공급원의 다양화를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 증진, 그리고 DMB 등 신규매체 도입과 유료방송의 디지털화 등 신규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 향후과제

등록제 도입으로 PP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져 사업자수가 급증한 반면, 시장기능에 따른 퇴출이 원활하지 못해 PP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시장진입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이른바 '퇴출 시스템'을 강화하고, PP시장의 균형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1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그 구체적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 등록한 경우, ② 제8조의 규정(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③ 제13조의 결격사유(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4조의 규정(외국자본 출자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⑤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미개시한 경우, ⑥ 방송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나. 추진실적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방송을 미개시한 3개 사업자((주)굿모닝아시아의 굿모닝아시아TV, (주)디에스엔의 수능TV, (주)스타박스의 박스TV)에 대하여 2003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를 통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수행 의무 및 준법의식의 촉구와 아울러 실질적인 방송행정 관리대상 사업자를 정리할 수 있었다.

다. 향후과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제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진입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아울러, 법령위반 사업자 및 휴면 사업자 등의 퇴출 등을 포함한 등록 취소요건의 강화 등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행정제재

1 지상파방송사업자 행정제재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5조(변경허가등) 등에 의거, 동 사항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 시 해당 사업자 및 주주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8조 및 제14조의 경우, 정기적으로는 매년 3월말 지상파방송사로부터 제출되는 재산상황 자료를 토대로, 4월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되는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자료, 각종 기업 공시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한 1인 소유지분 제한, 대기업 소유 제한, 외국자본 출자·출연 제한 등의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연중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방송법 제8조과 관련해서는 '1인 소유지분 제한 위반' 및 '대기업 소유제한 위반'에 대해 법 위반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각각 한 바 있고, 제14조 '외국자본 출자 제한'에 대해서는 단일 건에 대해 2003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5차례의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단,

2003년 3월 22일 소유제한 및 외국자본 출자·출연 위반의 경우 방송사업자 및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주주에게도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방송법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

방송법 제15조와 관련해서는 변경허가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였다.

행정처분 대상	위반 사유	행정처분	처분 근거조항	처분 일자	비 고
㈜대구문화방송	외국자본출자 위반	시정명령 (6개월)	방송법 제14조제6항	2003. 8. 19	
쌍용양회공업㈜	외국자본출자 위반	시정명령 (6개월)	방송법 제14조제6항	2004. 6. 15 2005. 2. 1 2005. 9. 8 2006. 4. 4	대구문화방송㈜ 주주
㈜금강고려화학	대기업소유 제한위반	시정명령 (6개월)	방송법 제8조제12항	2004. 8. 3	㈜울산방송 최다주주
동양제철화학㈜	1인소유지분 제한위반	시정명령 (6개월)	방송법 제8조제12항	2005. 4 12	경인방송㈜ 주주
㈜제주방송	변경허가절차위반	과징금 3,000만원	방송법 제8조제12항	2006. 4 18	

다. 향후과제

초기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법 등 제반 법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보다는 위반 행위의 발생사유 및 위반 정도, 의도성 등을 참작하여 조치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관련 내용의 숙지 및 법 준수 계도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더욱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주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등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소유제한 위반의 경우 위반사실을 파악하고 발생 즉시 관련 조

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수 있도록 주주변경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위성방송사업자 행정제재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78조제1항에 의거 위성방송사업자가 KBS-2TV를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KBS-2TV를 재송신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대하여, 방송법 제78조제4항 위반으로 총 23회에 걸쳐 4억4,50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다.

나. 추진실적

2002년 전국대상으로 전파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의 등장으로 수도권 지상파방송이 전국 송신됨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사업자간의 이해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2년 4월 방송법 개정으로 위성방송사업자가 동시 재송신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은 KBS-1TV와 EBS이며 KBS-2TV 등을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면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KBS-2TV 재송신은 방송법 제78조제4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다.

위원회는 3차의 시정명령과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일정 기간(1月 등)을 기준으로 총23회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04년 9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KBS-2TV 재송신 승인의결과 함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업무일시정지 처분을 조치하면서 종료되었다.

다. 향후과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KBS-2TV 재송신과 관련한 이해충돌의 경우와 같이, 향후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발생 예상되는 복잡다기한 매체간 이해관계의 조정과 공정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조정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제재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징금 처분의 경우는,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최다 출자자의 변경허가 추천절차를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과태료 처분의 경우는 방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위반, 방송법 제78조제5항에 의한 승인받지 않은 외국방송의 재송신, 방송법 제77조제1항에 의한 이용약관 변경신고 절차의 위반 등이다.

나. 추진실적

과태료 처분은, 변경신고 위반 사업자(방송법제15조제2항) 및 미승인 외국방송재송신(방송법 제78조제5항), 이용약관 변경신고 절차를 위반(방송법제77조1항)한 사업자에게 해당되며, 2004년도 250만원(1건), 2005년 3억6천만원(9건)이었다.

과징금 처분은, 변경허가추천 위반(방송법제15조제1항) 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2004년 1억7천5백만원(3건), 2005년 5천만원(2건). 2006년 5천만원(3건)이었으며, 2005년도에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 처분 1건(2천5백만원)이 있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현황>

▶ 2004년도

사업자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우리넷	허가받지 않은 주전송장치 운용	시정명령
㈜큐릭스광진성동방송	변경허가절차 위반	과징금 5,000만원
㈜큐릭스종로중구방송	변경허가절차 위반	과징금 5,000만원
㈜한국케이블TV남부산방송	변경허가절차 위반	과징금 5,000만원
㈜한강케이블티비	변경허가절차 위반	과징금 2,500만원
㈜한빛아이앤비	대표이사 변경신고 누락	과태료 250만원
㈜한빛아이앤비	대표이사 변경신고 누락	과태료 250만원
㈜우리방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널 사용	시정명령

▶ 2005년도

사업자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서서울케이블티브이	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50만원
남부미디넷㈜	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50만원
우리방송	이용약관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500만원
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방송	이용약관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500만원
씨제이케이블넷	미승인 외국방송 재송신	과태료 750만원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허위자료 제출	과태료 700만원
큐릭스도봉강북방송	변경허가철차 위반	과징금 5,000만원
울산중앙케이블방송	변경허가절차 위반	과징금 2,500만원

▶ 2006년도(1/4분기)

사업자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우리방송	변경허가철차 위반	과징금 5,000만원

다. 향후과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통한 엄격한 사업자 관리감독과 함께, 동일한 법 위반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 프로그램의 마련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4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행정제재

가. 사업개요

방송법을 위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중계유선방송사의 경우, 관련 규정 미숙지에 기인하기 보다는 가입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PP송출이나 수익증대를 위한 광고송출 등의 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의 경우에는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변경허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채널송출 내용의 변경이 있음에도 약관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연도별 행정제재 조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연 도	처분 사항	대 상
2003	과징금 처분	계양유선방송사 등 5건
	과태료 처분	중앙방송TV 등 56건
2004	과태료 처분	개금유선방송사 등 72건
2005	과징금 처분	인천중구중계유선방송사
	과태료 처분	문산유선방송사 등 41건

다. 향후과제

상습 위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적 관찰 시스템의 마련 등 불법사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속적 행정지도와 법 내용의 숙지를 통한 사전예방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행정제재

가. 사업개요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통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방송법 제15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절차를 위반한 1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5,5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방송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절차를 위반한 1개 사업자에 대하여 총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결격사유 해당 대표자의 변경을 불이행한 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행정제재 조치를 통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준법의식을 촉구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행정제재 현황>

구분	대상사업자	금액(만원)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 (총 5,550만원)	(주)지비에스 방송	250	변경신고 위반 (방송법 제15조제3항 관련)
	(주)열린방송	250	
	씨네이십일(주)	250	
	(주)몽토이엔티	250	
	(재)국제방송교류재단	250	
	(주)무예TV	250	
	(주)열린방송	500	
	(주)아시안무비	500	
	(주)육아티브이	500	
	(주)아하방송	500	
	팝티브이(주)	500	
	(주)애완방송	500	
	(주)실미디어	250	
	부동산티브이(주)	750	
과징금 처분 (총 6,500만원)	(주)대양위성방송	2,500	결격사유 해당 대표자 변경 미이행 (방송법 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주)한우리시네마	2,500	결격사유 해당 대표자 변경 미이행 (방송법 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주)유로티브이	1,500	변경등록 위반 (방송법 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다. 향후과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방송법 제반 규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자의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5절 평가 및 발전방향

1 평 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과정은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 지역방송 활성화 등의 방송 정책목표 실현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구조를 기반으로 한 방송으로서 공익성 실현이 가능한 지역 민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업무와 관련, 지난 3년간 정상적인 방송사업 운영을 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장을 교부받은 3개 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조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최초의 사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공동 당사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발전방향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과 관련된 향후 과제로는, 2004년 경인방송TV의 경우에서 노정된 바와 같이, 재허가 추천 거부 시 그에 따른 후속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바, 재허가 추천 거부에 따른 유효기간 만

료시의 방송사업자 지위 및 절차 관련 규정의 보완과, 현행 허가 유효기간(3년)의 연장 및 단기 유효기간 설정 도입, 재허가 추천 심사기준의 개선, 그리고 아울러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제도의 개선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재난방송 실적의 정량적·정성적 분석의 틀을 마련하여 향후 각 매체별·사업자별 재난방송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방송평가 및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심사 시 재난방송 실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방송법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거부와 관련하여 시청자 보호방안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재허가 추천 거부 시 방송시청을 할 수 없는 시청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통한 엄격한 사업자 관리감독과 함께, 동일한 법 위반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 프로그램의 마련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상습 위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적 관찰 시스템의 마련 등 불법사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속적 행정지도와 법 내용의 숙지를 통한 사전예방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개별 사업자의 사업승인 유효기간 조정을 통한 승인만료일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재승인 심사의 효율성과 심사기준 적용의 형평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제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진입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아울러, 법령 위반 사업자 및 휴면 사업자 등의 퇴출 등을 포함한 등록 취소요건의 강화 등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부산방송에 대하여 광역화 추진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그리고 사업계획 및 허가추천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향후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엄격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 6 장
방송사 경영진 선임

가. 한국방송공사 / 175
나. 방송문화진흥회 / 176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 177

1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46조 • 제50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 제13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 전원(11인)을 대통령에게 추천(이사회는 이사장을 호선하고, 감사의 임명을 위원회에 제청)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 감사 및 비상임이사(9인)와 (주)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9인) 및 감사를 임명하는 직무를 갖고 있다.

2 추진실적

'소관, 유관 • 산하단체 인사의 추천 • 임명'과 관련 방송위원회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공모제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공개추천 모집과 방송위원 4인과 외부인사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고석만(前 KTV대표)씨를 선임하는 등 절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한편, 2003년 8월 21일 공포 및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이사가 증원(5인 → 9인)됨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추가 공모절차를 거쳐 4인을 추가 선임하였고, 2005년 2월 17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고석만 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였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2인의 후보를 방송위원회에 추천하였고 2005년 3월 15일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인의 후보 중 권영만 후보를 임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사 선임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첫째, 공개 • 투명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들을 공모하였으며 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 등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후보 81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56명,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후보 23명 등 많은 훌륭한 인사들이 추천되었다. 둘째, 가능한 한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인선을 함으로써 해당 이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구현되도록 배려하였다. 인선과정에서 고려된 분야는 방송계, 학계, 시민·시청자단체, 법조계, 노동 부문, 지역 부문, 문화·예술 부문 등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참여시키되 이사진 구성을 보다 젊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인선 결과로 인해 종전보다 여성비율이 높아졌는데 한국방송공사(KBS)이사진의 경우 종전 1명에서 3명으로 비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는 이사회 정원이 9명인 점을 감안해 종래와 같이 2명을 인선하였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을 반영한 결과, 연령도 보다 젊어졌는데 한국방송공사(KBS)이사진의 경우 평균연령(임명일자기준)이 종전 64.4세에서 57.4세로,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62.3세에서 58.4세로 젊어졌다. 또 한국방송공사(KBS)의 경우 2명의 40대 인사가 포함되었고, 방송문화진흥회에는 1명의 40대가 포함되었다.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분야별 분류를 통해 그 동안 소외되어왔던 지역부문과 노동계를 포함하였으며, 시청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시청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그 결과 시민·시청자단체에서 추천된 인사가 한국방송공사(KBS)이사진의 경우 3명,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2명이 인선된 바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사진의 경우에도 시민·시청자단체에서 추천된 인사가 포함되기도 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법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를 추천·임명하는데 있

어 공개·투명성의 원칙 하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실시하여, 방송계 안팎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다만,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된 사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사임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공모제를 통해 임명함으로써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공모제란 새로운 인사선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향후의 인사선임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행을 만들었다.

가. 한국방송공사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현직	임기
이사장 (비상임)	이 종 수	남	1940. 2. 4	前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	'03.6.23～ '06. 6. 22
이 사 (비상임)	전 응 덕	남	1932. 6. 20	前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	〃
〃	김 우 철	남	1938. 5. 31	삼성언론재단 연구위원	〃
〃	이 영 덕	남	1945. 5. 16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	〃
〃	이 형 모	남	1946. 7. 11	단국대 방송영상정보학과 초빙교수	〃
〃	윤 수 경	여	1946. 7.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
〃	박 범 신	남	1946. 8. 24	소설가	〃
〃	이 영 자	여	1949. 9. 26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
〃	김 인 규	남	1950. 2. 5	고려대 석좌교수	〃
〃	김 상 희	여	1954. 5. 18	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	박 원 순	남	1956. 3. 26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03. 6. 23~ '05. 3. 7
	백 승 헌	남	1963. 12. 14	변호사	'05. 3. 8～ '06. 6. 22
감 사	강 동 순	남	1945. 10. 7	前 KBS 심의위원	'03. 7. 23～ '06. 7. 22
※ 사 장	정 연 주	남	1946. 11. 22	前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03. 7. 1～ '06. 6. 30

나. 방송문화진흥회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현직	임기
이사장 (상임)	이 상 희	남	1929. 4. 29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03. 6. 23～ '06. 6. 22
이 사 (비상임)	임 국 희	여	1938. 1. 17	방송인	〃
〃	최 창 섭	남	1942. 3. 13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	김 정 명	남	1943. 7. 15	前 울산 MBC 사장	〃
〃	민 창 환	남	1947. 8. 22	前 MBC 전무이사	〃
〃	이 옥 경	여	1948. 11. 24	시사여성주간지 '미즈엔' 대표	〃
〃	이 수 호	남	1949. 4. 16	민주노총 위원장	〃
〃	이 범 수	남	1950. 9. 9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	김 형 태	남	1956. 12. 4	변호사	〃
감 사	박 우 정	남	1943. 3. 10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	'03. 6. 23～ '06. 6. 22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현직	임기
이사장 (비상임)	김 세 원	여	1945. 7. 1	방송인	'03. 9. 9~ '06. 7.22
이 사 (비상임)	윤 충 모	남	1943. 2. 9	서울산업대 강사	'03. 7.23~ '06. 7. 22
〃	손 인 식	남	1945. 9. 2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	임 상 택	남	1951. 4. 8	민언련 부이사장	〃
〃	조 종 흡	남	1953. 1. 18	동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 교수	〃
〃	안 정 임	여	1960. 5. 25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
〃	김 선 우	남	1941. 9. 9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상임이사	'03. 9. 9~ '06. 7. 22
〃	정 국 록	남	1947. 10. 1	前 진주MBC 대표이사	〃
〃	신 태 섭	남	1957. 10. 24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감 사	나 형 수	남	1939. 10. 26	前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03. 7.23~ '06. 7. 22

사 장	고 석 만	남	1948. 12. 9	前 KTV 대표	'03. 7.23~ '05. 3. 15
※ 사 장	권 영 만	남	1959. 12. 27	前 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	'05. 3.16~ '06. 7. 22

3 향후과제

제2기 방송위원회는 모든 인사선임에 있어 공개·투명성의 대원칙에 따른 공모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인사선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각 이사회의 인선에 있어서, 제한된 정원에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 있는 인사가 반영될 수 있는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 7 장

방송의 고품질화 및 공익성 제고

제1절 평가를 통한 고품질화 / 180
제2절 심의를 통한 고품격화 / 189
제3절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립 / 227
제4절 방송언어의 순화 /233
제5절 우수프로그램 지원 / 237
제6절 평가 및 발전방향 / 242

제1절 평가를 통한 고품질화

1 방송사업자 평가

가. 사업개요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제1항에 근거하여,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방송평가의 결과는 동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재승인시 심사자료에 반영된다. 또한 방송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법 제31조제2항에서는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2000년 9월 1일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로 제1기 방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06년 3월 현재 9명의 제6기 방송평가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방송평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내용영역)과 공익성과 다양성의 확보(편성영역),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운영영역)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평가영역)에 의거, 내용영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편성영역에서는 대상별 편성비율의 균형성 등에 대해 평가하며, 운영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운영일반 및 경영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2003년도에 실시된 2002년도 방송평가는 7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부문 2개 및 홈쇼핑부문 2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실시된 2003년도 방송평가부터는 평가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42개 지상파방송사업자(TV 64개, 라디오 150개 채널)와 11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개 위성방송사업자, 그리고 7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다. 향후과제

최근 방송시장은 지상파 및 위성 DMB, 데이터방송, 소출력 라디오방송 등의 신규 방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등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매체별로 차별화된 내용·편성·운영 영역별 평가척도를 마련하고, 신규 방송서비스에 대한 방송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방송평가가 품격 높은 방송을 위한 지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제6기 방송평가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척도 세부기준 제정 소위원회>와 <방송사업자 운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평가 각 영역(내용·편성·운영)의 평가척도 세부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향후 방송환경 및 매체특성의 변화에 발맞추어 방송평가제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방송평가제 개선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31조에 의한 방송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8월 13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위원회 규칙 34호), 2002년 10월(위원회 규칙 48호) 개정하였다. 그러나 평가 항목 및 척도의 객관성, 평가 자료의 신뢰도, 타당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5년 12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재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위원회 규칙 84호)은 수용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였으며,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재허가시 방송평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나. 추진실적

방송위원회는 2004년 10월부터 5개월간 평가규칙개정소위원회를 운영하여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와 방송사업자실무협의회, 그리고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 규칙에 의한 평가항목 및 척도는 2007년에 실시하는 2006년 방송평가부터 적용되며, 2006년에 실시하는 2005년 방송평가는 종전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위원회 규칙 제48호)에 의한 평가항목 및 척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사업자 운영평가단'이 방송사의 운영평가를 하도록 해 방송평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둘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0점 처리하도록 해 방송평가의 신뢰도를 높였다. 셋째, 매년 방송평가결과에 대한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방송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고, 방송정책 수립시 합리적인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개정 규칙에 의한 매체별 평가항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직접 평가(프로그램 질 평가)를 도입하였고, 변별력이 없는 평가항목을 대폭 삭제하여 현행 총 14개 편성 평가항목을 총 7개 편성 평가항목으로 간소화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시·청취 지원 프로그램 편성, 지역방송사 자체제작비율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편성의 다양성, 공익성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영의 적정성', '자회사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용 여부' 등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했다.

둘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는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용 여부' 등 정성적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해 방송사업자간 공정거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셋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평가항목을 신설하였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용 여부' 등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였으며, '상품선정 기준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정거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다. 향후과제

현재까지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를 각각 시행한 바 있으며,

방송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토대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2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송평가를 위해서는 방송평가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련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세부기준 등에 재반영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신규매체인 위성·지상파 DMB가 평가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매체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마련을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재개정 작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방송산업의 확장에 따라 향후로도 평가대상 방송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신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신규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 규칙 개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수용자참여 방송평가시스템(KI)의 도입 및 운용

가. 사업개요

방송평가제는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가를 확인하는 성과측면의 규제 행위다. 방송평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방송 수용자들이 체감하는 방송의 품질 제고에 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수용자가 참여하는 KI 수용자평가지수를 개발하여 조사결과를 방송평가제의 점수로 반영하는 '수용자 참여 방송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KI 수용자평가지수』[1]는 '프로그램 평가지수', '방송도달력 지수', '방송사 이미지 지수' 등 3가지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프로그램 평가지수'(program quality & satisfaction index)는 수용자가 개별 프로그램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보여

1) KI는 KBC Index의 줄임말로 방송위원회에서 개발한 수용자평가지수를 일컫는 영문 약칭임.

주는 지수다. 프로그램 평가지수의 조사결과는 방송평가제의 점수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방송사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방송도달력 지수'(impact index)는 방송사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장르 또는 전체 채널을 통해서 수용자에게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방송도달력은 방송시간과 시청률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기본적으로 방송사별로 개별 프로그램과 장르의 다양한 도달력(영향력)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프로그램 평가지수와 연계하여 질이 높으면서도 영향력이 높은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송사 이미지 지수'(station image index)는 수용자가 개별 방송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이미지와 사회문화적 공헌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방송사 이미지 평가를 통해 방송사는 그동안 자신들이 수행해온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점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수의 결과는 '프로그램 평가 지수'와 '방송사 이미지 지수'의 경우 시청자 설문조사를 통해, '방송 도달력 지수'의 경우 시청률 자료 분석을 통해 산출된다.

<수용자평가지수 구성>

나. 추진실적

방송위원회는 2003년에 『방송평가제 실효성 향상방안 연구』와 『KI 방

향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실시해 방송평가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 연구를 토대로 2004년에 방송평가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방송평가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KI 도입기반 구축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의 공정한 선정과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KI 도입기반 구축연구』의 목적은, ① 기존 방송평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② 수용자 직접평가 등 질적 평가방식을 도입해 기존의 양적 평가방식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③ 궁극적으로 시청자 주권의 확립과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송평가 항목 및 척도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아울러 수용자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개념의 수용자 참여 방송평가 시스템인 KI(KBC Index)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수용자 참여 방송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 개발된 수용자 평가지수를 실제 조사에 적용하기에 앞서 지수의 검증, 세부 실시방안의 마련, 그리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수용자평가지수 도입방안 연구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004년 하반기에 운영된 연구위원회는 모두 6차례의 연구회의를 개최하고 4건의 검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기서 마련된 수용자평가지수 도입방안은 2005년 4월부터 시작된 KI 수용자 평가조사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2005년 12월 9일에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용자평가조사의 결과는 2006년도 방송평가부터 내용 영역의 점수로 반영되게 되었다.

<수용자평가지수 도입 경과사항>

연 도	경과 사항	추진 내역
2003년	방송평가제 개선방향 검토	▸ 기본정책 방향 검토 • 방송평가제 실효성 향상방안연구 • KI 방향성에 관한 기초연구
2004년 상반기	KI 도입기반 구축연구	▸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연구 • 방송평가제 개선연구 • 수용자평가지수 개발연구
2004년 하반기	수용자평가지수 도입방안 연구	▸ 수용자평가지수 도입방안 연구 위원회 • 수용자평가지수 검증조사 실시 • 조사실시 세부방안 마련
2005년 4월	KI 수용자평가조사 시작	▸ 인터넷 서베이 방법 채택 • 온라인 전일조사 시스템 구축
2005년 12월	개정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	▸ 내용영역 평가항목으로 '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 도입 • 2006년 조사결과부터 방송평가제 반영

다. 향후과제

향후 수용자평가조사 관련 업무의 과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사 업무의 고도화에 있다. 즉, 이미 구축 완료된 '수용자참여 방송평가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키는데 업무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점 과제의 추진이 요구된다.

첫째, 현재 조사에 적용되고 있는 KI 수용자평가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며, 지수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둘째, 조사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용자평가조사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조사결과가 제작현장에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사결과를 즉각적으로 열람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조사기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고 전통적인 조사방법에 대한 재검토와 신기술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 여건을 고려해, 현행 조사방법(인터넷 조사)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선진 외국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해 KI 수용자평가조사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심의를 통한 고품격화

1 방송프로그램 심의

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1)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4조 및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 구성된다.

현행 심의위원회는 보도교양, 연예오락, 상품판매방송 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심의위원은 방송계, 언론계, 학계, 청소년계, 시민단체 등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전문인사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의위원은 외부 각계 추천의뢰 및 공모를 통해 추천된 심의위원 후보자를 심사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주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의해 소집되는 임시회의(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심의위원장이 소집)로 나뉘어져 있다. 심의위원은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결정·결정취소의 건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이에 따른 조치의 건의, 방송법 제32조에 의한 방송심의 및 이에 따른 조치의 건의, 심의에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안 제안, 그리고 기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의 처리 등을 그 직무로 한다.

<심의위원회별 직무>

심의위원회	담당 직무
보도교양심의위원회	방송내용중 보도·교양 부문을 위주로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연예오락심의위원회	방송내용중 연예·오락 부문을 위주로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2) 추진실적

현행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은 2004년 8월 16일 개정된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한 것이다. 기존의 심의위원회는 보도교양 제1,2심의위원회, 연예오락 제1,2심의위원회,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각 분과별 5인 이상 7인 이하의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되었다.

방송위원회는 2004년 8월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개정을 통해 5개 분과를 보도교양, 연예오락, 상품판매방송 3개 분과로 통합하였으며 각 심의위원회별 심의위원 수를 확대하였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시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던 방식을 외부 추천의뢰, 공모 등의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여성 심의위원 수를 안배하였으며 심의위원의 경험과 학식, 전문성 등을 고려하되, 다양한 세대의 문화적 수용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별 분포 또한 적정을 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한 방식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04년 8월 위촉된 심의위원회로부터 2005년 8월 새로 구성된 위원회로 이어지고 있다.

2005년 8월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응모를 배제하고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통한 응모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심의위원회 9인씩 총 27명의 심의위원이 위촉되었다(위촉기간 : 2005.8.16～2006.8.15).

3) 향후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심의위원회 위촉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는 2004년 규칙개정으로 도입된 외부 추천의뢰, 공모제를 통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방송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분야의 인사를 추천받는데 있어 추천 기관(단체)과 추천 분야와의 연계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향후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추천 기관(단체)과 추천 분야와의 연계성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계획에 있다.

나. 심의원 운용

1) 사업개요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심층적 기획심의, 매체별·채널별 차별화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일반심의원,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편성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심의원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2) 추진실적

매체 영향력 및 채널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전량심의, 주요 프로그램 심의, 기획심의 등으로 심의를 차별화하고, 신규 방송서비스의 도입 등 방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의원 운용을 다원화하였으며, 심의시스템 운용의 수시점검 및 심의원 재교육 등을 통해 심의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아울러 심의원의 전문화를 통해 심의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내용·편성 분석 등 심층적 기획심의를 확대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06년 현재 총 348명의 심의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1차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심의원은 328명,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편성 분석업무를 보조하는 전문심의원은 20명이다. 일반심의원 중 지상파 방송 심의에 71명, 케이블 및 위성방송 심의에 124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6개 지역사무소에서 지역방송 심의를 위해 총 133명의 일반심의원을 운용하고 있다.

일반심의원의 주요 업무는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후 1주일 단위로 심의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사무처는 이를 토대로 중점 심의사항 및 기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 안건을 작성하게 된다.

전문심의원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의 내용 및 편성 분석, 방송평가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방송언어 조사분석,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예비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향후과제

매체 영향력 및 채널 중요도를 고려한 심의의 차별화, 심층 기획심의의 확대, 심의원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심의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송사업자의 자율심의 내실화 적극 유도, 그리고 향후 방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심의원 운용 방법의 개선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 방송사 자체심의의 내실화

1) 사업개요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에 의거,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자체심의와 관련된 법정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2) 추진실적

- 지상파 TV 연예오락 프로그램 자체심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 (KBS, MBC, SBS 각 1개 프로그램) : 2003년 8월
- 홈쇼핑방송사 자체심의 강화 조건부 재승인 (현대, 우리, 농수산) : 2005년 5월
- 자체심의기구 및 운영실적 현황 분석(KBS등 12개사) : 2005년 3월
- 자체심의기구 및 운영실적 현황 분석결과 통보 (KBS등 12개사) : 2005년 4월
- 자체심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KBS)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005년

7월

- 자체심의 내실화 추진계획 자료제출 요구 (KBS, MBC, SBS) : 2005년 9월
- 자체심의 실적 자료 정기적 접수 검토
  - 매월 : 지상파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분기별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향후과제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가 보다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대본이나 큐시트에 의한 자체심의 보다는 제작 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심의 확대로 방향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송사고에 대비하여 자체 점검시스템을 강화하고 생방송 지연 송출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는 프로그램의 제작·방송에 있어서 필수적인 최종 검증 단계라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품판매방송(TV홈쇼핑 채널)의 경우 대부분 생방송인 관계로 상품기획 준비 단계에서의 자체심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전 검증단계에서 제품의 효능과 특징에 대한 파악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과장 표현을 여과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TV홈쇼핑채널 방송에서의 자체심의는 더더욱 중요성을 갖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심의·제작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심의현안 등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위성·지상파 DMB 및 소출력FM 방송사의 자체심의 시스템도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방송프로그램 내용분석

1) 사업개요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문제 사안이나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된 방송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 방송프로그램 내용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방송내용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심의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추진실적

(가) 지상파방송 부문

• TV토론프로그램 내용분석(2003년 10월)

- 생방송 TV토론프로그램의 주제 선정과 패널 구성, 방청객 및 시청자의 프로그램 참여 정도 등에 중점을 두어 토론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 TV 3사 일요일 오전 대담프로그램 분석(2003년 10월)

- 대담프로그램 진행 방식의 차이점과 출연자 구성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교·분석

• TV시사고발프로그램의 현황과 내용분석(2003년 10월)

- 시사고발프로그램 내용과 관련,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명예훼손,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아이템의 연성화 경향, 선정적 자료화면 노출 등의 문제점을 분석

• 매체 비평프로그램 분석(2003년 10월)

- MBC 「미디어 비평」과 KBS 「미디어 포커스」를 중심으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주제 및 소재 등 비평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분석

• 지상파 방송3사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현황 조사·분석(2003년 10월)

- 지상파 3사의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현황, 각 코너의 내용 등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내용을 분석

• 떼거리 출연진이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분석 (2003년 10월)

- 지상파 3사 주말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의 떼거리 진행과 특정 연예인의 중복 출연이 프로그램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 시사프로그램 내용분석(2003년 12월)

- 「한국사회를 말한다」 및 「인물현대사」 (KBS) 등의 특집 시사프로그램의 주제별 내용을 분석

• 연예정보 프로그램 내용분석(2005년 4월)

- TV 3사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

• 외주제작 드라마의 간접광고(PPL) 분석(2005년 10월)

- 외주제작 드라마를 중심으로 드라마에서 나타나고 있는 간접광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현실의 변화에 부응한 간접광고 규제 방향 설정에 활용

• 지상파TV 등급제 실시 내용분석(2005년 12월)

- 지상파TV에서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에 의한 등급 분류 및 등급표시 준수 여부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등급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지상파TV 평일 심야 토크쇼 프로그램 내용분석(2006년 3월)

- 지상파TV 3사의 평일 심야 토크쇼 프로그램의 연예인 중심의 출연

과 신변잡기식 대화 내용, 과도한 자막과 반말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모색

(나) 케이블·위성방송 부문

• 케이블TV·위성방송, 불법방송광고물 조사
- 심의·의결을 받지 않거나 심의·의결과 다른 내용의 방송광고물을 조사, 2004년 9월 이후 분기별 또는 수시로 실시
• 케이블TV·위성방송, ARS 조사
- 케이블TV·위성방송의 어린이·청소년대상 프로그램에서 유료정보서비스인 ARS가 남발됨에 따라 그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심의대책을 마련
• 등록PP의 보도현황 및 형태조사
- 등록PP에서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 현황 및 형태 등을 조사하여 향후 방송법 개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케이블TV·위성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관련 현황조사
-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기준 준수 여부 조사
• 케이블TV·위성방송, 간접광고 유형 및 내용분석
- 간접광고 허용 등을 주장하는 대외적인 분위기에 따라 기존 케이블TV·위성방송의 간접광고 유형 등을 분석
• 만화영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관한 조사
- 어린이대상 만화채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정서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화영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조사·분석
• 개별 PP의 편성 및 내용분석
- 등록된 PP중 30여개 이상의 SO로 송출되는 PP를 선정하여, 각 PP

의 채널 편성 및 내용분석 등을 통해 심의 기본자료로 활용

• 공익성 채널 내용분석

- 2005년 7월 처음으로 공익성 채널을 지정함에 따라 지정된 공익성 채널이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추가 또는 재 지정시의 기초자료 또는 관련 고시의 개정에 활용

• 상품판매방송, 건강기능식품 방송내용 분석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현을 집중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 상품판매방송, 보험상품 방송내용 분석

- 상품판매방송의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과 보험료 및 지급예외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

• 상품판매방송, 화장품 방송내용 분석

- 기초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의 표현을 집중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

• 프로레슬링 • 이종격투기 프로그램 폭력성 조사

- 스포츠 관련 채널에서 프로레슬링 • 이종격투기 편성현황을 조사, 지나치게 폭력적인 경기의 편성자제를 유도

• 리얼리티 프로그램 조사

- 외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급속도로 늘면서 이에 대한 편성현황을 조사,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편성자제를 유도

• 유료채널(영화) 선정성 조사

- 유료채널에서 송출되는 영화의 선정성 현황조사를 통해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

3) 향후과제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주제별 내용분석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 개선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내용분석 결과는 방송위원회의 심의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방송환경에서 중점 기획심의 등을 통한 사후 심의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더불어 방송 프로그램 내용분석을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 방송관계자와의 협의체제 구축

1)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사 심의책임자 및 실무자와의 정례 회의를 통하여 심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방송심의관련 주요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체 심의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 심의관계자와의 업무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 특히 위성 및 지상파 DMB, 소출력 라디오 등 신규매체가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신규 매체의 방송내용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심의관련 긴급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프로그램 제작·편성 관계자와도 유기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2) 추진실적

• 2003년(지상파방송)

- 지상파TV 방송 3사 심의책임자 회의(11. 14)

- 강원 영동지역 심의책임자 회의(11. 19)
- 지상파TV 방송 3사 드라마 제작책임자 회의(11. 21)
- 강원 영서지역 심의책임자 회의(11. 26)
- 지상파방송(중앙 3사 제외) 심의책임자 회의(12. 12)

• 2003년(케이블 • 위성방송)

- 케이블 • 위성방송 영화전문채널 편성 • 심의책임자 회의(3. 6)
- 증권방송 편성채널 실무책임자 회의(3. 20)
- 영화채널 편성 • 제작책임자 회의(12. 17)
- 수도권 지역 SO 편성 • 제작책임자 회의(12. 18)

• 2004년(지상파방송)

- 지상파TV 방송 3사 심의책임자 회의(2. 27)
- 지상파TV 방송 3사 심의책임자 회의(11. 16)
- 지상파방송(중앙3사 제외) 심의책임자 회의(11. 30)

• 2004년(케이블 • 위성방송)

- 보도교양 부문 PP편성 • 심의책임자 회의(11. 26)
- 음악채널 편성 • 심의책임자 회의(1. 15)
- 홈쇼핑 편성 • 심의책임자 회의(2. 12, 6. 18)
- SO 편성 • 제작책임자 회의(3. 25)
- 위성방송 실무자 회의(11. 10)
- 홈쇼핑 자체심의책임자 회의(7. 9, 9. 10, 11. 3)

• 2005년(지상파방송)

- 지상파TV 방송 4사 심의책임자 회의(5. 18)
- 수도권 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5. 25)
- 방송의 품격 제고를 위한 시청자단체 간담회(8. 31)

- 지상파TV 방송 4사 심의·제작 최고책임자 회의(9. 14)
- 방송의 품격 제고를 위한 종합토론회(10. 28)
- 지상파TV 방송 4사 심의책임자 및 실무자 회의(12. 19)
- 수도권 지역 지상파라디오 방송사 심의책임자 및 실무자 회의(12. 21)

• 2005년(케이블·위성방송)

- 주요 MSO·MPP 심의책임자 회의(9. 28)
- 수도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심의책임자 회의(12. 2)
- 보도교양 PP 심의책임자 회의(12. 7)
- 연예오락 PP 심의책임자 회의(11. 4, 12. 15)
- 데이터방송 심의책임자 회의(11. 18)
- 위성방송 심의책임자 회의(11. 30, 12. 21)
- TV홈쇼핑 5개사 심의책임자 회의(4. 15, 5. 11, 5. 13, 10. 19, 12. 9)

• 2006년(지상파방송)

- 지상파방송 4사 심의·제작책임자 회의(2. 21)
- 지상파라디오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2. 22)
- 지상파DMB 및 수도권 지역 소출력FM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2. 24)

3) 향후과제

방송사업자 전반에서 나타나는 심의규정 위반사항의 경우, 개별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후심의 제재조치만으로는 그 시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심의책임자 회의 등을 개최하여, 심의규정 위반사례 등 주요 문제점과 위원회의 심의방침 등을 전달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문제 내용을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알몸노출 등과 같은 위반사항은 방송사 심의부서의 자체심의로는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문제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긴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심의·제작관계자 연석회의를 확대, 개최할 필요가 있다.

바. 심의관련 제 규정의 개정

1) 사업개요

2000년 3월 방송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제정, 운영되어 온 심의관련 규정은 방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각계의 개정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2) 추진실적

(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개정

방송위원회는 2004년 10월 25일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골자는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의 강화, 간접광고와 관련한 규정의 명확화·구체화, 제재조치에서의 '주의'와 '경고' 조치의 삭제,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의 신설 등이다.

(나)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

광고관련 다른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광고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며, 운영과정에서 불명확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으로 지적받아온 사항을 전면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표현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2005년 12월 30일 개정,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동규정의 개정으로 피임기구 및 약품, 직업소개업 등의 방송광고가 전면 허용되고,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도 새롭게 허용되었으며, 그동안 금지되었던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방송

광고와 관련한 표현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됨으로써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

지역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사업자의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200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향후과제

심의관련 규정은 방송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특히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적극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사. 방송프로그램 심의제재 현황

1) 사업개요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방송된 후에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보도교양심의위원회와 연예오락심의위원회,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내용에 대한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추진실적

(가) 지상파 방송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총 심의제재건수는 324건이다. 이 중 보도교양 부문이 165건, 연예오락 부문이 159건이고, 제재 종류별로 살펴보면 '법정제재' 4건, '경고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책임자)에 대한 경고' 33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책임자)에 대한 경고' 1건, '경고' 130건, '주의' 156건이었다.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총 심의제재건수는 101건이다. 이 중 보도교양 부문이 42건, 연예오락 부문이 59건이었다. 제재 종류별로 살펴보면 '법정제재' 7건, '(일반)권고' 24건,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에 대한 경고' 7건, '경고' 29건, '주의' 34건이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총 심의제재 건수는 54건이다. 이 중 보도교양 부문이 31건, 연예오락 부문이 23건이었다. 제재 종류별로 살펴보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 4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1건,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 1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2건, '권고' 46건이었다.

2005년도의 월 평균 제재건수는 4.5건(연간 총 54건)으로, 2004년의 8.4건(연간 총 101건), 2003년의 27건(연간 총 324건)과 비교해볼 때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법정 제재 건수는 2003년 4건, 2004년 7건, 2005년 8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에는 법정 제재조치 중 가장 강력한 제재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제재를 병과한 제재조치도 2건이나 발생하였다.

제재 건수의 감소는 2004년 6월 이후부터 심의규정 개정 논의과정에

서 '주의', '경고' 조치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이 제기되어 '주의', '경고' 조치가 심의규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재 건수의 감소는 방송내용에 대한 타율적 규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방송사에 의한 자율규제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법정 제재건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심의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체간 시청률 경쟁의 심화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 보도교양심의위원회

(단위 : 건)

제재종류 / 연도	주의	경고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일반)권고	법정제재	합계
2003년	79	71	15	-	-	165
2004년	16	14	2	8	2	42
2005년	-	-	-	29	2	31
합계	95	85	17	37	4	238

<표 2> 연예오락심의위원회

(단위 : 건)

제재종류 / 연도	주의	경고	관계자 경고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일반) 권고	법정제재	합계
2003년	77	59	1	18	-	4	159
2004년	18	15	-	5	16	5	59
2005년	-	-	-	-	17	6	23
합계	95	74	1	23	33	15	241

(나) 케이블·위성방송

케이블·위성방송의 총 제재 건수는 2003년 891건, 2004년 648건, 2005년 189건이다. 부문별로는 지난 3년간 보도교양 부문이 504건, 연예오락 부문이 573건이고, 상품판매 부문이 646건이다. 제재 사유별로 살펴보면 성표현 353건, 진실성(객관성) 220건, 간접광고 422건이 케이블·위성방송의 주요 심의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지난 3년간 심의제재 건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의부서의 지속적인 노력 또한 그 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영화의 선정성, 불법광고와 같이 케이블TV·위성방송에 만연했던 시청자 불만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였다.

이런 결실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주제별 기획심의 체계의 정립이다. 일상심의와 함께 주제별 기획심의과제를 선정해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엄중한 심의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실시한 기획심의는 케이블·위성방송의 주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소하고, 심의제재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일정 부문 해소하였다. 또한 방송심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 개정 등도 문제점 개선에 효과적이었다. 방송심의 관련 시정명령제 도입으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 방송심의관련 시정명령은 방송법 제100조에 의거한 최초 제재조치 이후 1년 이내에 동일 심의규정을 3회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하는 것으로, 동 제도 도입 후 실제 처분대상 사업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심야시간대 무분별한 성인영화 편성이 줄어든 것도 바로 이 시정명령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심의미필 또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방송광고물(이하 '불법 방송광고')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도 효과적이었다. 불법 방송광고를 집중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를 없애고, 방송광고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적극적인 관련 법규

개정 및 신설 등이 방송심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좋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표 3> 보도교양심의위원회

(단위:건)

제재종류 / 연도	주의	경고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일반)권고	법정제재	합계
2003년	78	110	33		4	225
2004년	31	76	10	62	29	208
2005년				40	31	71
합계	109	186	43	102	64	504

<표 4> 연예오락심의위원회

(단위:건)

제재종류 / 연도	주의	경고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일반)권고	법정제재	합계
2003년	14	123	27		131	295
2004년	1	27	22		149	199
2005년				23	32	55
합계	15	150	49	23	312	549

<표 5>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

(단위:건)

제재종류 / 연도	주의	경고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일반)권고	법정제재	합계
2003년	44		80		143	267
2004년	31	29	17	51	84	212
2005년				58	5	63
합계	75	29	97	109	232	542

2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가. 사업개요

프로그램 등급제는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해로운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를 미리 학부모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시청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1년 2월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되었고 2002년 한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기호를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등급제 적용을 받는 장르는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4개이다. 등급제는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방송사업자 추가 선택 가능)로 나뉘어 등급을 분류하며, 화면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로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 화면의 4분의 1 크기 이상으로 5초 이상 자막고지하고 등급기호를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 이상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등급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실효성 점검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 등급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청자단체, 방송사업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006년 상반기 중 프로그램 등급제의 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 개정(예정)

- 각계 의견수렴 : 2006. 2~3
- 규정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06. 4~5
- 입안예고 및 공청회 개최 : 2006. 6~7
- 내부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2006. 8
- 등급제 규칙 공포 및 시행 : 2006. 9

다. 향후과제

프로그램등급제는 한정된 등급제 적용과 고지방법 등에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연령으로만 등급을 고지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에 등급제 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등급제는 학부모의 시청지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등급제에 대한 인식이 등급제 정착의 필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시청자들이 등급제의 내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등급제 홍보와 등급제 교육을 강화하여 등급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들에게 등급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적합한 방송등급이 부여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등급제를 활용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방송광고 심의

가. 방송광고 심의제도 및 개선방향

1)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제2항, 제10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2000년 8월 1일부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하여 왔다.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는 그 동안 광고계로부터 위헌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2005년 9월 27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방송위원회 소관 추진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방송광고 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당초 세부과제의 내용은 '사전심의 대상 광고범위 축소'였으나 방송위원회는 차제에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과 방송광고심의제도개선위원회(가칭)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 추진실적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용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수탁받아 2000년 8월부터 동 업무를 시작하였고, 매주 접수된 방송용 광고물에 대하여 산하 소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그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방송용광고물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의 경우 매년 평균 약 6만여건의 광고물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케이블·위성은 연평균 1만여건 내외로 처리되었다.

3) 향후과제

방송용광고물이 시청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기업의 마케팅을 위한 '상업적 메시지'인 점을 감안할 때, 방송용 광고물의 사전심의는 방송광고의 사회적 영향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광고 사전 심의에서 나타난 제재 사유의 대부분은 광고내용과 관련한 입증자료의 제출 및 소비자 오인표현의 수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방송용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방송광고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방송용 광고물 심의에 대하여 '사전심의'라는 관념에 대한 이견이 있는 바,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본연의 심의 취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방송광고 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 방송광고 법정 시간, 횟수, 방법 준수

1) 사업개요

방송사업자가 편성하는 방송광고는 크게 상업광고와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채널별로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업광고는 편성 시간대와 양, 방법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제한을 받는다.

방송위원회는 이렇듯 방송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상업광고 편성시간 및 횟수,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2004년도부터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검 작업은 방송사업자가 제출하는 광고운행표를 기

초 자료로 하되 방송내용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하는 실제조사를 병행하여 이뤄졌다.

해당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방송사업자가 적발되었을 때는, 매체 특성의 차이와 위반사유, 개선 여부 등을 감안하되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광고시간, 횟수, 방법 위반행위는 시청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규정 적용에 있어 급변하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립되거나 개선할 점이 발견될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위반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한 후 단계적인 개선을 지시하여 관련 법령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2) 추진실적

그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현행 법령상의 광고 시간과 횟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위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청자에 대한 현재시간 고지 서비스로 제공되던 '시보서비스'가 본격적인 '시보광고'로 변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2004년 3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시보광고 편성현황 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시보광고가 전 방송사업자에 보편적인 광고의 한 유형으로 이미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구 방송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법령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시보광고를 방송법상 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을 통해 舊법령상의 광고 총량은 유지하되, 시보광고가 가능한 시간 및 횟수를 규정하게 되었다.

동 기간에 시보광고 조사와 함께 지상파 라디오방송의 중간광고 편성 현황에 대한 점검이 시작되었다. 방송법령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광고를 방송프로그램 시작 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본 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 타이틀 고지 전까지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과 달리 진행자의 오프닝멘트, 클로징멘트로 시작 및 종료 타이틀 고지를 대신하는 라디오방송의 경우, 오프닝멘트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 프로그램 전광고를 편성하거나, 프로그램 후 광고 편성 후 클로징멘트시 다시 본 프로그램을 하는 사례 등이 중간광고로 간주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05년 12월에는 중간광고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립하여 공포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인 개선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 4월 중에는 지상파 라디오방송의 중간광고 편성현황 본조사가 시행되어 위반사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방침이다.

비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2004년 1차, 2차 및 2005년 3차 등 총 3회에 걸친 방송광고시간 준수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2004년 1차 조사결과 6개 SO, 7개 PP에 2차 조사에서는 1개 SO, 9개 PP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05년에는 1개 SO, 5개 PP에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다.

3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면서 위반사업자의 수와 위반의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송광고시간 실태조사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법정 방송광고시간 준수율을 높이고 방송광고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광고시간 위반 방송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의결년도 기준)

▶ 2004년

매체	사업자(채널)	조사일	처분내용	의결일
SO	한국케이블TV수원	1. 27.	과태료250만원	2004.4.19
SO	큐릭스	1. 27	과태료250만원	2004.4.19
SO	한강케이블TV	1. 27	과태료250만원	2004.4.19
SO	서초케이블TV	1. 27	과태료250만원	2004.4.19
SO	한국케이블TV북부	1. 27	과태료250만원	2004.4.19
SO	노원케이블종합	1. 27	과태료500만원	2004.4.19
PP	SBS드라마+	1. 28	과태료250만원	2004.4.19
PP	홈CGV	1. 28	과태료250만원	2004.4.19
PP	월드이벤트TV	1. 28	과태료250만원	2004.4.19
PP	한국부동산TV	1. 28	과태료250만원	2004.4.19
PP	코미디TV	1. 28	과태료250만원	2004.4.19
PP	불교TV	1. 28	과태료250만원	2004.4.19
PP	MBC드라마넷	1. 28	과태료500만원	2004.4.13

▶ 2005년

매체	사업자(채널)	조사일	처분내용	의결일
PP	OCN	12. 4,18	과태료 2000만원	2005.3.15
PP	SBS드라마+	12.16,18	과태료 1500만원	2005.3.15
PP	수퍼액션	12. 18	과태료 750만원	2005.3.15
PP	JEI재능방송	12. 18	과태료500만원	2005.3.15
PP	바둑TV	12. 18	과태료500만원	2005.3.15
PP	투니버스	12. 18	과태료500만원	2005.3.15
PP	KBS스카이드라마	12. 18	과태료500만원	2005.3.15
PP	불교TV	12. 18	과태료 625만원	2005.3.15
PP	코미디TV	12. 18	과태료 625만원	2005.3.15

▶ 2006년

매체	사업자(채널)	조사일	처분내용	의결일
PP	수퍼액션	2005.11.8.	과태료 1,500만원	2006.1.17.
PP	MBC드라마넷	2005.11.8.	과태료 1,000만원	2006.1.17.
PP	SBS드라마플러스	2005.11.8.	과태료 2,000만원	2006.1.17.
PP	OCN	2005.11.8.	과태료 750만원	2006.1.17.
PP	Q채널	2005.11.8.	과태료 500만원	2006.1.17.
PP	KCN무협채널	수시조사	과태료 500만원	2006.2.21.
PP	DTN드라마	수시조사	과태료 750만원	2006.2.21.
so	CJ북인천방송	2005.11.8.	과태료 500만원	2006.1.17.

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현황

1)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방송법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 수행해 왔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00년 8월 동 업무를 시작한 이후 매주 접수된 방송광고에 대하여 산하 소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그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2) 추진실적

방송광고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의 경우 매년 평균 약 6만여건의 광고를 심의·의결하였으며, 케이블·위성은 연평균 1만여건 내외로 처리되었다.

업종별로는 식·음료, 서비스, 기업PR·행사, 건설·건재, 금융업 순으로 신청건수가 많았으며, 방송불가 또는 조건부방송가로 의결된 광고 심의제재 사유는 입증에 따른 관련 자료 미제출 및 심의절차 미숙으로

인한 신청서 재작성, 소비자 오인표현 및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방송용 광고의 주요 품목별 심의신청·의결현황>

구 분	품 목	방송가	조건부방송가	방송불가	계
2003	식품·음료	5,193	4,434	31	9,658
	서비스	5,275	3,386	-	8,661
	건설·건재	3,036	2,583	-	5,619
	기업PR·행사	3,729	1,839	-	5,568
	정보통신	2,528	1,919	4	4,451
2004	식품·음료	5,774	4,076	9	9,859
	서비스	5,138	2,883	2	8,023
	기업PR·행사	4,263	2,038	-	6,301
	건설·건재	2,954	3,176	-	6,130
	전기·전자	2,776	2,299	-	5,075
2005	식품·음료	6,767	3,218	-	9,985
	서비스	5,735	2,330	-	8,065
	건설·건재	3,362	3,561	-	6,923
	기업PR·행사	4,465	1,921	-	6,386
	전기·전자	3,598	2,127	-	5,725
2006 상반기	식품·음료	1,571	743	-	2,314
	건설·건재	1,050	1,067	-	2,117
	서비스	1,462	459	6	1,927
	기업PR·행사	1,120	348	-	1,468
	금융·보험·증권	1,073	391	-	1,464

<지상파방송용 광고의 조건부방송가 주요 의결 사유>

구 분	주요 의결사유	건 수	비 율
2003	관련자료 제출(자료확인)	15,133	28.6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6,573	12.4
	소비자 오인 표현 사용	5,822	11.0
	구체적 정보 미표시	3,405	6.4
	사실과 다른 표현 사용	1,914	3.6
2004	관련자료 제출(자료확인)	14,407	26.1
	기타(신청서 재작성 등)	13,359	24.2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8,383	15.2
	소비자 오인 표현 사용	7,068	12.8
	상품관련 구체적 정보 미표시	4,447	8.0
2005	관련자료 제출(자료확인)	11,272	27.1
	기타(신청서 재작성 등)	10,319	24.8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8,096	19.5
	소비자 오인 표현 사용	3,451	8.3
	구체적 정보 미표시	2,859	6.9
2006 상반기	관련자료 제출(자료확인)	2,497	27.5
	기타(신청서 재작성 등)	2,066	22.8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1,857	20.5
	소비자 오인 표현 사용	847	9.3
	구체적 정보 미표시	843	9.2

2003년부터 2006년 1/4분기까지의 연도별/월별 지상파 및 위성·케이블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건수는 다음과 같다.

<지상파방송(TV, R) 광고심의 통계>

▶ 2003년

구분		방송가	방송가(조건부)	방송불가	계
1월	TV	1,412	1,189	6	2,607
	RADIO	551	414	2	967
	계	1,963	1,603	8	3,574
2월	TV	2,112	1,810	3	3,925
	RADIO	696	525	-	1,221
	계	2,808	2,335	3	5,146
3월	TV	2,164	1,910	-	4,074
	RADIO	744	490	-	1,234
	계	2,908	2,400	-	5,308
4월	TV	2,490	1,702	9	4,201
	RADIO	923	481	-	1,404
	계	3,413	2,183	9	5,605
5월	TV	1,900	1,450	1	3,351
	RADIO	764	456	-	1,220
	계	2,664	1,906	1	4,571
6월	TV	1,754	1,292	-	3,046
	RADIO	630	422	1	1,053
	계	2,384	1,714	1	4,099
7월	TV	1,553	1,115	-	2,668
	RADIO	706	408	-	1,114
	계	2,259	1,523	-	3,782
8월	TV	2,164	1,568	3	3,735
	RADIO	699	369	1	1,069
	계	2,863	1,937	4	4,804
9월	TV	2,048	1,514	-	3,562
	RADIO	768	499	-	1,267
	계	2,816	2,013	-	4,829

10월	TV	2,186	1,781	-	3,967
	RADIO	700	723	-	1,423
	계	2,886	2,504	-	5,390
11월	TV	2,063	1,458	4	3,525
	RADIO	598	498	2	1,098
	계	2,661	1,956	6	4,623
12월	TV	2,025	1,668	9	3,702
	RADIO	686	432	-	1,118
	계	2,711	2,100	9	4,820
계	TV	23,871	18,457	35	42,363
	RADIO	8,465	5,717	6	14,188
	계	32,336	24,174	41	56,551

▶ 2004년

구분		방송가	방송가(조건부)	방송불가	계
1월	TV	1,828	1,723	-	3,551
	RADIO	506	470	-	976
	계	2,334	2,193	-	4,527
2월	TV	2,050	1,944	-	3,994
	RADIO	713	588	2	1,303
	계	2,763	2,532	2	5,297
3월	TV	2,501	2,248	-	4,749
	RADIO	739	524	-	1,263
	계	3,240	2,772	-	6,012
4월	TV	2,721	1,844	4	4,569
	RADIO	785	482	-	1,267
	계	3,506	2,326	4	5,836
5월	TV	1,882	1,455	5	3,342
	RADIO	603	352	-	955
	계	2,485	1,807	5	4,297

6월	TV	2,163	1,591	-	3,754
	RADIO	659	465	-	1,124
	계	2,822	2,056	-	4,878
7월	TV	1,964	1,385	-	3,349
	RADIO	571	395	-	966
	계	2,535	1,780	-	4,315
8월	TV	2,340	1,733	3	4,076
	RADIO	717	425	2	1,144
	계	3,057	2,158	5	5,220
9월	TV	2,179	1,629	-	3,808
	RADIO	581	419	-	1,000
	계	2,760	2,048	-	4,808
10월	TV	2,341	1,750	-	4,091
	RADIO	640	537	-	1,177
	계	2,981	2,287	-	5,268
11월	TV	1,946	1,861	-	3,807
	RADIO	623	402	-	1,025
	계	2,569	2,263	-	4,832
12월	TV	1,688	1,351	-	3,039
	RADIO	504	332	-	836
	계	2,192	1,683	-	3,875
계	TV	25,603	20,514	12	46,129
	RADIO	7,641	5,391	4	13,036
	계	33,244	25,905	16	59,165

▶ 2005년

구분		방송가	방송가(조건부)	방송불가	계
1월	TV	1,918	1,253	0	3,171
	RADIO	605	356	0	961
	계	2,523	1,609	0	4,132

2월	TV	1,837	1,404	0	3,241
	RADIO	566	301	0	867
	계	2,403	1,705	0	4,108
3월	TV	2,894	1,997	0	4,891
	RADIO	842	425	0	1,267
	계	3,736	2,422	0	6,158
4월	TV	2,785	2,112	0	4,897
	RADIO	829	386	0	1,215
	계	3,614	2,498	0	6,112
5월	TV	2,489	1,797	0	4,286
	RADIO	632	380	0	1,012
	계	3,121	2,177	0	5,298
6월	TV	2,366	1,335	20	3,721
	RADIO	572	314	0	886
	계	2,938	1,649	20	4,607
7월	TV	1,960	1,653	2	3,615
	RADIO	547	288	0	835
	계	2,507	1,941	2	4,450
8월	TV	2,474	1,678	0	4,152
	RADIO	577	342	0	919
	계	3,051	2,020	0	5,071
9월	TV	2,799	1,959	2	4,760
	RADIO	679	306	0	985
	계	3,478	2,265	2	5,745
10월	TV	2,536	1,736	0	4,272
	RADIO	628	372	0	1,000
	계	3,164	2,108	0	5,272
11월	TV	2,780	2,012	0	4,792
	RADIO	826	392	0	1,218
	계	3,606	2,404	0	6,010
12월	TV	2,661	1,458	0	4,119
	RADIO	722	309	0	1,031
	계	3,383	1,767	0	5,150

계	TV	29,499	20,394	24	49,917
	RADIO	8,025	4,171	0	12,196
	계	37,524	24,565	24	62,113

▶ 2006년 1/4분기

구분		방송가	방송가(조건부)	방송불가	계
1월	TV	2,384	1,377	0	3,761
	RADIO	480	260	6	746
	계	2,864	1,637	6	4,507
2월	TV	2,656	1,640	0	4,296
	RADIO	707	377	0	1,084
	계	3,363	2,017	0	5,380
3월	TV	3,742	2,262	1	6,005
	RADIO	716	431	1	1,148
	계	4,458	2,693	2	7,153
계	TV	8,782	5,279	1	14,062
	RADIO	1,903	1,068	7	2,978
	계	10,685	6,347	8	17,040

▶ 2003년 케이블TV·위성 광고심의 통계

월 별	심의건수		심의결과(초심, 수정심)			계
	초심	수정심	방송가	조건부 방송가	방송불가	
1월	531 (전4,위43)	1,263	1,383 (전2,위31)	411 (전2,위12)	-	1,794 (전4,위43)
2월	456 (전4,위34)	1,538	1,635 (전2,위14)	356 (전2,위20)	3	1,994 (전4,위34)
3월	499 (전6,위52)	2,122	2,245 (전3,위29)	372 (전3,위23)	4	2,621 (전6,위52)
4월	634 (전5,위57)	1,805	1,933 (전3,위31)	505 (전2,위26)	1	2,439 (전5위57)
5월	408 (전5,위24)	1,355	1,454 (전2,위20)	307 (전3,위4)	2	1,763 (전5,위24)
6월	482 (전4,위57)	1,778	1,516 (위34)	740 (전4,위23)	4	2,260 (전4,위57)
7월	583 (전6,위49)	1,773	1,887 (전4,위34)	466 (전2,위15)	3	2,356 (전6,위49)
8월	420 (전8,위31)	1,197	1,275 (전4,위17)	341 (전4,위14)	1	1,617 (전8,위31)
9월	391 (전5,위40)	828	934 (전2,위25)	285 (전3,위15)	-	1,219 (전5,위40)
10월	798 (전10,위58)	1,789	1,993 (전6,위43)	594 (전4,위15)	-	2,587 (전10,위58)
11월	562 (전7,위38)	1,177	1,364 (위29)	373 (전7,위9)	2	1,739 (전7,위38)
12월	594 (전1,위48)	1,163	1,312 (전1,위27)	445 (위21)	-	1,757 (전1,위48)
합계	6,358 (전65,위531)	17,788	18,931 (전29,위334)	5,195 (전36,위197)	20	24,146 (전65,위531)

▶ 2004년

월 별	심의건수		심의결과			계
	초 심	수정심	방송가	조건부 방송가	방송불가	
1월	421 (전4,위38)	1,737	1,861 (전4,위29)	296 (위9)	1	2,158 (전4,위38)
2월	559 (전17,위49)	1,365	1,536 (전10,위29)	387 (전7,위20)	1	1,924 (전17,위49)
3월	725 (전8,위56)	1,970	2,164 (전1,위35)	531 (전7,위21)	-	2,695 (전8,위56)
4월	590 (전10,위38)	1,743	1,930 (전1,위29)	403 (전9,위9)	-	2,333 (전10,위38)
5월	555 (전19,위34)	1,486	1,640 (전5,위22)	401 (전14,위12)	-	2,041 (전19,위34)
6월	650 (전5,위48)	2,235	2,431 (전2,위34)	453 (전3,위14)	1	2,885 (전5,위48)
7월	504 (전9,위62)	1,938	2,119 (전3,위39)	321 (전6,위23)	2	2,442 (전9,위62)
8월	455 (전10,위22)	1,547	1,678 (전3,위11)	324 (전7,위11)	-	2,002 (전10,위22)
9월	590 (전11,위40)	1,978	2,178 (전1,위31)	389 (전10,위9)	1	2,568 (전11,위40)
10월	594 (전6,위29)	2,272	2,465 (전2,위29)	401 (전4,위0)	-	2,866 (전6,위29)
11월	607 (위29)	1,888	2,072 (위16)	423 (위13)	-	2,495 (위29)
12월	698 (위62)	3,126	3,354 (위42)	465 (위20)	5	3,824 (위62)
계	6,948 (전99,위507)	23,285	25,428 (전32,위346)	4,794 (전67,위161)	11	30,233 (전99,위507)

▶ 2005년

월 별	심의건수		심의결과			계
	초 심	수정심	방송가	조건부 방송가	방송불가	
1월	511 (위37)	2,315	2,493 (위33)	333 (위4)	-	2,826 (위37)
2월	474 (위28)	2,306	2,483 (위18)	297 (위10)	-	2,780 (위28)
3월	639 (위52)	3,112	3,362 (위34)	389 (위18)	-	3,751 (위52)
4월	608 (위31)	3,082	3,268 (위16)	421 (위15)	1	3,690 (위31)
5월	554 (위14)	2,467	2,686 (위2)	335 (위12)	-	3,021 (위14)
6월	818 (위35)	3,828	4,151 (위11)	493 (위24)	2	4,646 (위35)
7월	605 (위31)	2,755	2,985 (위5)	374 (위26)	1	3,360 (위31)
8월	599 (위21)	2,394	2,613 (위9)	377 (위12)	3	2,993 (위21)
9월	516 (위18)	2,795 (위1)	2,996 (위6)	315 (위13)	-	3,311 (위19)
10월	549 (위17)	2,265	2,461 (위3)	350 (위14)	3	2,814 (위17)
11월	725 (위3)	2,852	3,104	472 (위3)	1	3,577 (위3)
12월	564 (위10)	1,983	2,200 (위3)	347 (위7)	-	2,547 (위10)
계	7,162 (위297)	32,154 (위1)	34,802 (위140)	4,503 (위158)	11	39,316 (위298)

▶ 2006년도 1/4분기

월 별	심의건수		심의결과			계
	초 심	수정심	방송가	조건부 방송가	방송불가	
1월	424	1,862	2,006	279	1	2,286
2월	394	1,812	1,930	276	-	2,206
3월	683	3,490	3,705	468	-	4,173
계	1,501	7,164	7,641	1,023	1	8,665

3) 향후과제

방송용 광고물이 시청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기업의 마케팅을 위한 '상업적 메시지'인 점을 감안할 때, 방송용 광고물의 사전심의는 방송광고의 사회적 영향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광고 사전 심의에서 나타난 제재 사유의 대부분은 광고내용과 관련한 입증자료의 제출 및 소비자 오인표현의 수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방송용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방송광고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방송용 광고물 심의에 대하여 '사전심의'라는 관념에 대한 이견이 있는 바,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본연의 심의 취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제3절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립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가. 사업개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의거,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5항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규정된 시정요구사항의 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그리고 기타 선거방송과 관련한 사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나. 추진실적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총 9인, 위촉기간

: 2003. 12. 15～2004. 5.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총 9인, 위촉기간 : 2006. 1. 31～2006. 6. 30)를 구성·운영하였다.

다. 향후과제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구성 및 운영, 직무범위, 법적 권한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분	성명	현직	추천기관
위원장	임상원(林尙源)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金榮豪)	미디어포럼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언론인단체 (한국기자협회)
위원	오건환(吳健煥)	한국방송협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방송사 (한국방송협회)
〃	노향기(魯香基)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새천년민주당
〃	목철수(睦哲秀)	신구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	김동흔(金東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시민단체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	김영석(金永錫)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학계 (한국언론학회)
〃	김창룡(金昌龍)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열린우리당
〃	이원재(李源載)	변호사(법무법인 내일종합)	대한변호사협회

※위촉기간 : 2003. 12. 15.～2004. 5.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기관
위원장	김경근(金景根)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권영(李權寧)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방송학계 (한국방송학회)
위원	마권수(馬權秀)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방송사 (한국방송협회)
〃	고승우(高昇羽)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언론인단체 (한국기자협회)
〃	박인주(朴仁周)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	시민단체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	김형태(金亨泰)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공동의장 겸 사무총장, 前 KBS 시청자센터 주간	한나라당
〃	하창우(河昌佑)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한상연(韓相璉)	경희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열린 우리당
〃	김영철(金永哲)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 1국장	방송사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위촉기간 : 2006. 1. 31.~2006. 6. 30.

2 선거방송 심의기준 정비

가. 사업개요

2004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방송계에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중 선거방송제작 활성화를 저해하는 일부 규정의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실적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을 개정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에 대한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특집기획프로그램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다. 향후과제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방송계의 개정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한 당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함에 따라 방송계의 재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3 심의의결 현황

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한 건수는 총 36건이었다.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 부문이 30건, 종합유선방송 부문이 6건이었으며, 지상파방송 부문 중 텔레비전이 21건, 라디오가 9건이었으며, 종합유선방송 부문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2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종류별로는 '법정제재'가 3건이었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가 1건, '경고' 17건, '주의' 15건이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단위 : 건수)

매체 / 제재종류	지상파방송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PP)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SO)	총계
	텔레비전	라디오			
법정제재	2	-	1	-	3
경고 및 관계자 경고	1	-	-	-	1
경고	9	4	-	4	17
주의	9	5	1	-	15
소계	21	9	2	4	36
총계	30		6		

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한 건수는 2006년 4월 20일 현재 총 34건이었다.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 부문이 22건, 종합유선방송 부문이 12건이었으며, 지상파방송 부문 중 텔레비전이 8건, 라디오가 14건이었으며, 종합유선방송 부문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12건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종류별로는 '권고 및 관계자 권고'가 1건이었고, '권고'가 33건이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단위 : 건수)

매체 / 제재종류	지상파방송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PP)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SO)	총계
	텔레비전	라디오			
권고 및 관계자 권고	-	1	-	-	1
권고	8	13	-	12	33
소계	8	14	-	12	34
총계	22		12		

제4절

방송언어의 순화

1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하고 국어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언어의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고, 방송언어 오용실태 점검을 통한 방송언어 순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학계, 언어문화계, 언론학계, 방송계 등 총 9인의 방송언어 전문인사로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구성·운용하고 있으며, 2000년 8월 구성된 1기 위원회로부터 2005년 10월 구성된 6기 위원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추진실적

- 지상파 방송3사 코미디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현황조사(2003. 5. 5~18)
- 대중가요 가사의 언어사용 현황조사(2003. 6. 9~15)
- 뉴스 프로그램 언어사용의 문제점 조사(2003. 7. 15)
- TV프로그램의 외국어 및 조어제목 사용 현황조사(2003. 9. 22~28)
- 지상파 방송3사 오락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간의 호칭사용 현황조사(2003. 9. 22~28)
- 지상파 방송3사 주말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사용 현황조사(2003. 11. 8~9)
- 지상파 방송3사 FM 라디오 진행자와 출연자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 청소년대상 심야 음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2004. 1. 30～31)
- 토론 프로그램의 외국어와 약어사용 실태조사(2004. 2. 1～29)
- 지상파 방송3사 어린이대상 만화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실태조사(2004. 5. 10～16)
- 정보 프로그램(날씨, 교통정보 등)의 언어사용 실태조사(2004. 5. 31～6. 6)
- 지상파 방송3사 일일 시트콤의 언어사용 현황조사(2004. 6. 28～7. 4)
- 지상파 방송3사 코미디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현황조사(2004. 7. 19～25)
- 지상파 방송3사 토크쇼 진행자의 높임법 사용 현황조사(2004. 10. 11～17)
- 지상파 방송3사 주말 오락프로그램의 자막사용 현황조사(2004. 11. 27～28)
- 지상파 방송3사 오락 프로그램 고정 진행자의 언어사용 현황조사(2005. 1. 3～9)
- 케이블TV 연예정보 프로그램 진행자의 언어사용 현황조사(2005. 1. 31～2. 6)
- 케이블TV 게임 중계방송 진행자의 언어사용 현황조사(2005. 2. 28～3. 6)
-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현황조사
  - 지상파 방송의 야구중계를 중심으로(2005. 4. 2～10)
-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현황조사
  - 케이블TV의 야구중계를 중심으로(2005. 5. 4, 18)
- 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의 언어사용 현황조사(2005. 6. 2, 4)
- 지상파 방송3사 코미디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현황조사(2005. 6. 27～7. 3)
- 지상파 방송4사의 TV프로그램의 외국어제목 사용 현황조사

(2005. 9. 26~10. 2)

- 지상파 방송3사 TV 주말 오락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출연자의 언어 사용 현황조사(2005. 11. 26~27)
- 지상파 방송3사 TV 주말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사용 현황조사(2006. 2. 4~5)

3 향후과제

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방송언어 기준이 방송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방송언어가 순화되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 출연자와 제작자 등 모든 방송인들이 방송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인식 제고 유도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 국어 관련 기관, 시청자가 협력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직	분야
위원장	이주행 (李周行)	남	1944.10.24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학계
위원	손석기 (孫錫琪)	남	1952. 4.18	SBS 아나운서팀 부국장	방송계 (SBS 추천)
〃	박창원 (朴昌遠)	남	1954.11.19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학계
〃	지영서 (池令瑞)	여	1956. 4. 9	KBS한국어팀 팀장	방송계 (KBS 추천)
〃	서정신 (徐廷信)	여	1956. 9. 3	한국영상문화학회 이사 (언어철학박사)	언어문화계
〃	김 백 (金 伯)	남	1956.10.26	YTN 보도국 해설위원	방송계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추천)
〃	구현정 (具顯禎)	여	1958. 5. 6	상명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국어학계
〃	김영찬 (金永燦)	남	1959.11.17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언론학계
〃	강영은 (姜鈴恩)	여	1963.10.22	MBC 아나운서국 우리말 담당 팀장	방송계 (MBC 추천)

※위촉기간 : 2005. 10. 25.~2006. 10. 24.

제5절

우수프로그램 지원

1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현업 제작진의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전 매체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정서함양에 기여한 우수 작품을 매월 3편씩 선정, 시상하고 있다.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은 매월 5일까지 심사 작품의 추천을 받아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회의' 예·본심을 통해 방송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시상하고 있다.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위원회'는 총 8인으로 구성·운영되며 연 12회 개최를 통해 연간 약 36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알권리 충족', '시청자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기여',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 등 제 선정 기준과 전체구성의 체계성, 완성도, 공적 기여도, 독자성, 제작충실도, 영상표현 등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2기 방송위원회 출범 이후인 2003년 5월부터 2005년 12월

까지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총 96편을 선정하였다. 2003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 15편,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5편, 뉴미디어 4편 등 총 24편을 선정하였다. 2004년의 경우에는 총 36편의 작품을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이 전체 36편 중 25편을 차지했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이 6편, 뉴미디어 방송프로그램이 5편을 차지했다. 2005년에는 36편이 선정되었는데, 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이 21편,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이 8편, 뉴미디어 방송프로그램이 7편 선정됐다.

다. 향후과제

1991년 10월부터 시작되어 국내 방송 프로그램 시상제도 중 월별 시상제도로 가장 오래된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은 지난 15년 역사의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은 방송프로그램의 대표적 시상제도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방송위원회는 제작자의 우수 프로그램 제작 의욕 고취로 방송프로그램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을 독려함으로써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방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우수 프로그램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방송위원회 大賞' 시상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영상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방송위원회 대상(大賞)'제도를 실시하였다. '방송위원회 대상'은 1년간 국내에서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방송위원회가

우수한 작품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03년 '방송위원회 대상'은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부문'은 1년간의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 중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현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부문'은 건전한 어린이·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방송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올해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상'을 선정·시상하였다.
-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부문'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증대시키고 시청자의 방송 제작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상'을 선정·시상하였다.
- '특별상 부문'은 방송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시상함으로써 노고를 기리고, 지속적인 방송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 '프로그램 기획부문'은 우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독립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 제작기획서를 응모받아 선정된 작품에 대해 시상하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후 2005년 '방송위원회 대상'은 '프로그램 기획부문'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독립됨에 따라 '우수프로그램 부문'(대상 1편, 최우수상 4편, 우수상 4편),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부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부문', ' 특별상 부문' 등 총 4개 부문의 순수 시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나. 추진실적

2003년 방송위원회 대상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부문'에는 중앙방송의 '민족 과학 대발견-과학의 나라, 오천년의 비밀'(대상, 시상금 1,000만원), EBS-TV의 '아기성장 보고서'(최우수상, 시상금 500만원), MBC-TV의 'MBC 창사특집 자연다큐멘터리-야생의 초원 세렝게티', SBS-TV의 '창사특집 3부작 미래의 TV 세상을 바꾼다'(우수상, 시상금 300만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방송제작 현장에서 점차 시청률 경쟁에 말려 소홀해지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주방송의 '클릭 하이틴 세상'(시상금 500만원)을 선정·시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장차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선 제작진을 격려하였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부문'은 시청자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동행'(제작 김이찬, KBS열린채널 방영)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특별상 부문 수상자로는 방송 기술인으로 30여년간 종사하며 국내 방송 기술 발전과 방송 공학의 체계화에 기여한 송재극 한국방송공학회 부회장이 수상하였다.

한편, '프로그램 기획부문'에는 총 43편에 대해 15억원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방송위원회 대상 '우수 프로그램 부문'에는 KBS-1TV의 'KBS 스페셜 도자기'(대상, 시상금 1,000만원), 마산MBC-TV의 '토지 완간 10주년 특별대담-작가 박경리', SBS-TV의 'SBS 2004신년대기획-환경의 역습', PSB부산방송-FM의 '아름다운 동행', 중앙방송 Q채널의 '이것이 미래교육이다'(최우수상, 시상금 각 500만원), SBS-TV의 '창사 특집 드

라마 홍소장의 가을', MBC-TV의 'MBC특별기획 다큐멘터리-독일로 간 광부·간호사들', KBS-1AM의 'KBS무대 옛 사랑의 그림자', 충청방송의 '대전이 변화한다-It's Daejeon'(우수상, 시상금 각 400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부문' 수상작으로는 KBS대구방송총국(TV)의 '새로 쓰는 장난감 이야기'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부문' 수상작으로는 환경운동연합의 '평화의 상징, 멸종위기 저어새', 특별상 부문은 KBS한국어팀이 각각 수상하였다(시상금 각 500만원).

다. 향후과제

방송위원회 대상은 한 해 동안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 가장 우수한 방송프로그램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프로그램 기획안을 공모하여 우수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영상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5년부터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방송위원회 대상은 순수 시상 행사로서 우수 프로그램 부문(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부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부문 및 특별상 부문의 수상을 통해 국내 방송제작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대의 방송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초석 위에서 방송위원회는 제작자의 우수 프로그램 제작의욕 고취와 방송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향후로 더욱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제6절

평가 및 발전방향

1 평 가

위원회는 방송 사업자의 내용, 편성, 운용에 대한 평가와 방송 프로그램 내용 심의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법령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는 위원회의 법정 직무 이외에도, 방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기울인 것이다. 지상파방송과 관련하여 12개, 비지상파방송과 관련하여 14개의 방송 프로그램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방송이 시청자로부터 요구받는 가치와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 수용자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방송평가제에 반영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한편 매달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매년 '방송위원회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방송의 품격 향상에 기여한 제작실무자를 격려하고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널리 알리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문화, 역사, 미래 등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조망한 프로그램, 시청률 경쟁에 의해 소외되었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 높은 프로그램, 시청자의 프로그램 제작 역량의 발전을 보여주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등을 발굴한 성과가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내용 심의규제 건수를

2003년 총1215건에서, 2004년에는 749건, 2005년에는 243건으로 비약적으로 감소시켰다. 심의규제의 목표를 '빈번한 규제', 즉 '양적 규제' 보다는 중요 규제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심의, 집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6월 심의규정 정비 작업을 통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일반 '권고'를 실시하고, 동일한 사유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9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등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각종 심의규정의 정비는 규제의 체계는 정비하되, 효율은 강화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과를 나타냈다. 지역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사업자의 제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협찬고지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의 소득은 35회에 걸쳐 이뤄진 방송사업자 심의책임자회의, 시청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방송 현업인들과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타율적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방송사 자체적인 심의역량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사의 자체심의 기구 및 운영실적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공개하고 방송사에 자체심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출받았으며, 자체심의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렇듯 지난 3년동안 위원회가 방송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추진한 업무는 평가 및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방송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환경을 자율적으로 정화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발전방향

최근 방송시장은 지상파 및 위성 DMB, 데이터방송, 소출력 라디오방송 등의 신규 방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매체별로 차별화된 내용·편성·운영 영역별 평가척도를 마련하고, 신규 방송서비스에 대한 방송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방송평가가 품격 높은 방송을 위한 지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송평가를 위해서는 방송평가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련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세부기준 등에 재반영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신규매체인 위성·지상파 DMB가 평가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매체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마련을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재개정 작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방송산업의 확장에 따라 향후로도 평가대상 방송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신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신규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 규칙 개정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수용자평가조사 관련 업무의 과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사업무의 고도화에 있다. 즉, 이미 구축 완료된 '수용자 참여 방송평가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키는데 업무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점 과제의 추진이 요구된다.

첫째, 현재 조사에 적용되고 있는 KI 수용자평가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며, 지수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둘째, 조사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용자평가조사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조사결과가 제작현장에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사결과를 즉각적

으로 열람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조사기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고 전통적인 조사방법에 대한 재검토와 신기술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조사방법(인터넷 조사)의 보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심의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는 2004년 규칙개정으로 도입된 외부 추천의뢰, 공모제를 통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위성·지상파DMB 및 소출력FM 방송사의 자체심의 시스템의 조기 정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주제별 내용분석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또한 방송 프로그램 내용분석 결과는 방송위원회의 심의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방송사업자 전반에서 나타나는 심의규정 위반사항의 경우, 개별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후심의 제재조치만으로는 그 시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심의책임자회의 등을 개최하여, 심의규정 위반사례 등 주요 문제점과 위원회의 심의방침 등을 전달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문제 내용을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알몸노출 등과 같은 위반사항은 방송사 심의부서의 자체심의로는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문제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심

의 • 제작관계자 연석회의를 확대, 개최할 필요가 있다.

심의관련 규정은 방송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특히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적극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등급제는 학부모의 시청지도를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등급제에 대한 인식이 등급제 정착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시청자들이 등급제의 내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등급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방송사업자들에게 등급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적합한 방송등급이 부여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등급제를 활용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신규 미디어의 출현으로 변화의 국면에 직면한 방송이 우리 사회의 문화지표로서의 위상에 바람직한 품격있는 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 8 장

시청자 주권 및 방송접근권 제고

제1절 시청자불만의 처리 / 248
제2절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254
제3절 평가 및 발전방향 / 263

제1절 시청자불만의 처리

1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운용

방송매체의 증가와 기술의 발전으로 시청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접하고 있으며, 쌍방향 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시청자들의 적극성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방송 콘텐츠의 내용과 시청자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청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법 제35조는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정 위원회로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활발한 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방송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방송 등 언론계, 학계, 시청자단체,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며, 접수된 시청자불만을 해결하고 나아가 불만유발 요소를 제거하여 시청자에게 유익한 방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왔다.

위원회는 2004년 10월 '시청자불만처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시청자불만처리의 대상과 처리절차, 사무처의 역할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불만처리의 신청 대상은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시청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64조에 의한 수신료 및 유료방송의 요금 등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방송

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며, 이 사항 중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자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규칙 개정 이후 보다 신속한 시청자불만처리를 위해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26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5,089건의 불만과 한국여성민우회의 방송법 개정 입법 청원 등을 처리하였으며, 2004년에는 33회의 회의를 통해 5,692건의 시청자불만과 (사)언론인권센터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청원과 방송사업자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개선 청원 등을 심의, 처리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48회 회의를 개최하여 6,088건의 불만을 처리하였으며, 시청자불만처리위원 워크숍을 열어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시청자불만처리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시청자불만처리 현황

시청자불만은 인터넷의 보급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02년에 비약적으로 증가한 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도에는 5,089건의 불만을 접수·처리하였으며, 2004년도에 5,692건, 그리고 2005년에는 6,088건의 시청자불만을 처리하였다.

시청자불만 접수현황을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매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케이블과 위성 등 유료방송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시청자불만 증가 추세가 뚜렷하였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자불만의 비중은 2003년 57% (2,911건)에서 2004년 36%(2,046건)로 줄었으며, 2005년 33%(2,049건)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002건과 1,119건으로 20%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 2,084건이 접수되어 34%로 급증함으로써 지상파방송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위성방송 또한 2003년 280건, 2004년 422건으로 전체 시청자불만의 6~7%였으나, 2005년에는 862건이 접수되어 14%를 차지, 전년대비 2배로 늘어났다. 이는 유료방송 가입가구 점유율(80%) 유지 및 확대, 케이블방송의 요금 인상 및 패키지 채널 구성 변경과 위성방송의 위약금 분쟁 등으로 인한 것이며, 아울러 위원회의 인지도 제고 및 방송사와 가입자간 계약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 조정을 기대하는 시청자들이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위원회에 시청자불만을 접수한 사례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만 내용별로는 2003년과 2004년에는 방송프로그램 관련 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에는 요금, A/S, 상품 패키지의 채널 편성 변경 등 유료방송 관련 사항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위원회의 정책관련 건의사항 및 제도운영 관련사항, 방송편성 관련 사항, 수신료 및 난시청 문제 등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시청자불만의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지난 3년간 방송법 위반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5건, 시정명령 15건, 행정지도 14건, 그리고 203건의 심의제재조치가 있었다. 사업자의 직접적인 처리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자 등 유관기관에 이첩 처리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답변 처리하고, 심의제재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시청자불만을 참고하여 업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방송사 업무참고 통보 또는 유의통보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3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활성화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 등 공공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옴부즈맨 제도가 방송에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지상파방송 3사가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의 불만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방송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로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방송법 제89조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총 6개사이며(KBS, MBC, SBS, YTN, MBN, 경기FM), 지역민방은 SBS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MBC 지역 계열사는 MBC 본사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3사는 주당 60분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YTN과 MBN은 30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본방송 1회와 재방송 1회로 법정 의무편성시간인 주당 60분을 편성하고 있다. 한편, 경기FM은 지역라디오방송사업자임을 감안하여 2005년 8월말부터 정규편성을 실시하였으며, 1년간은 주당 30분을 편성하도록 유예하고 있다.

MBC와 SBS는 외주제작사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그 외 4사는 자체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작방식과 상관없이 방송내용과 구성 형식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편성시간 또한 지상파방송 3사는 토요일 오전 11시와 12시대에 편성하고 있으며, YTN은 일요일 새벽에 본방송을 한 후 일요일 저녁에 재방송을 하고, MBN은 토요일 오후에 본방송

을 하고 일요일 새벽에 재방송을 하는 등 시청률 사각지대에 배치해놓고 있어 시청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에 미흡하다. 자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코너가 과다한 것과 지적된 문제점의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은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나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 검토가 필요하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현황>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방송일시	비고
한국방송(KBS1)	TV비평 시청자데스크	매주 토 11:00~12:00	
문화방송(MBC)	TV 속의 TV	매주 토 12:10~13:10	
SBS	열린 TV 시청자세상	매주 토 12:10~13:10	지역민방 동일
와이티엔(YTN)	시청자의 눈	매주 일 04:25~04:55(본방) 매주 일 21:25~21:55(재방)	
매일경제TV(MBN)	열린 TV 열린 세상	매주 토 15:30~16:00(본방) 매주 일 05:50~06:20(재방)	
경기방송(경기FM)	옴부즈맨 라디오, 지금은 청취자시대	매주 일 18:00~18:30	

4 정보공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도 국가기관으로서 이 법

에 따라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시민 참여의식과 주권의식 강화로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알권리를 충족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03년 12건, 2004년 7건, 2005년 10건으로, 타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접수건수와 비교할 때 많지 않은 편이다. 주요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방송사업자 선정 또는 인허가 내용, 방송사업자와 제3자간 소송 관련 내용 등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항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위원회는 2004년 11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1/2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위원 자격 요건, 위원장 선정방식을 명문화하였다. 이 규정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부분 외에도, 정보공개 시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사무처 관련 부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한 내용 등 정보공개심의에 필요한 절차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 심의업무를 보다 체계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초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정보공개심의회를 2005년 2월 구성하여 정보공개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위원회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신청은 시청자의 권리의식 강화, 위원회의 각종 행정 처리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원회가 정보공개업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행정절차와 심의의 객관성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향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비공개결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제2절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1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가. 사업개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액세스권(Access Right)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존 언론중재나 피해구제가 소극적 의미의 액세스권 보장이라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적극적 의미의 액세스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은 시청자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제도이다.

방송법에서는 국가 기간방송인 KBS를 의무편성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월 100분 이상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 KBS는 주간 25분의 '열린채널'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채널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산MBC를 비롯한 일부 지역 지상파텔레비전방송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은 KBS 열린채널의 '제작지원금'과 기타 '방송채택료' 지원이 있다.

2003년부터 3년간 총 1,125편, 16억 5,070만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방송채택료 지원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한 2005년도에는 급격히 활성화되어 당초 배정된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실적>

구분		편수(편)	지원금(백만원)
2003	KBS	43	331
	SO	43	13
	계	86	344
2004	KBS	51	385
	SO	214	64
	계	265	449
2005	KBS	50	369.7
	지상파	167	122.5
	SO	557	365.5
	계	774	857.7
계		1,125	1,650.7

다. 향후과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제도이고,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게 보다 다양한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기제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나 인프라 구축에 보다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으로는 방

송사업자를 허가할 때 '시청자 권익보장'의 일환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방송평가를 통해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2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

가. 사업개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시청자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목적으로 시청자단체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다. 초기에는 신청 단체의 지원사업내용을 심사하여 지원하였던데 비해 최근에는 지원분야와 사업유형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이 단순히 시청자 단체의 역할 증대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분야는 미디어교육사업, 방송모니터링사업, 시청자캠페인사업, 기획사업, 중장기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의 소규모 사업인 토론회, 세미나 등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총 164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미디어교육사업이 66개, 방송모니터링사업이 27개, 시청자캠페인사업이 12개, 기획사업이 23개, 수시지원으로 34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개 사업을 중장기사업으로 지원하였다.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실적>

구분	계	미디어교육	방송모니터링	시청자캠페인	기획사업	중장기사업	수시지원
2003	47	24	12	4	7	-	-
2004	55	19	7	4	9	-	16
2005	62	23	8	4	7	2	18
계	164	66	27	12	23	2	34

다. 향후과제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특정분야·단체에 편중되는 점, 단체별 사업의 전문화·특성화가 미흡한 점, 그리고 지원사업의 연속성·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분야와 사업유형을 사전에 설정하여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성과를 향상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등 시청자단체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개선시킬 필요가 있고, 사업추진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체의 사업추진 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청자단체와의 끊임없는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지원

가. 사업개요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기회를 넓혀 사회적·문화적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사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외계층과 비소외계층간 정보접근의 격차를 해소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넓

히고자 수신기 보급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시각·청각·난청노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보급과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EBS교육방송의 수능방송을 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교육 및 세미나 등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2003년부터 방송수신기는 3년간 총 2만 7,393대를 보급하였다. 자막방송수신기 7,500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852대,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15,041대를 보급하였다. 방송수신기는 관련 장애인협회를 중심으로 보급하였다. 자막방송수신기는 한국농아인협회, 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그리고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는 대한사회복지개발원과 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 각각 보급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물보급은 자막방송물 112편, 화면해설방송물 377편 등 총 489편을 보급하였고, 장애인단체 활동은 14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방송수신기 보급실적>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비 고
자막방송수신기	2,500대	3,000대	2,000대	7,500대	(사)한국농아인협회
화면해설방송수신기	1,000대	1,800대	2,052대	4,852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난청노인용수신기	5,000대	4,000대	6,041대	15,041대	대한사회복지개발원, 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계	8,500대	8,800대	10,093대	27,393대	

<방송물 보급 및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실적>

구 분		2003년 실적	2004년 실적	2005년 실적	계
방송물 보급	자막방송	-	52편	60편	112편
	화면해설방송	26편	246편	105편	377편
	소 계	26편	298편	165편	489편
단체 활동 지원		4개 사업	5개 사업	5개 사업	14개 사업

다. 향후과제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은 전체 수요자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보급사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 실행목표를 분명히 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Road-Map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oad-Map을 통해 디지털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근본적으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방송접근권을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운용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Access Right) 확보, 미디어교육 및 프로그램 제작 기반시설 제공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같은 기능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송제작 지원도 하게 된다. 또한,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서울이 아닌 지역의 거점도시에 건립함으로써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나. 추진실적

현재, 부산에 건립이 완공(2005. 11)되어 운영 중이며, 광주에는 2006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센터는 2004년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 건축 및 장비구축 등을 마무리하여 2005년 11월 25일에 개관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광주센터는 2005년 말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6년에 건축 및 장비구축 등을 마무리하여 2006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센터 및 광주센터 개요>

구분	부 지	건 물	주요시설
부산	대지 2,155㎡ (651.9평)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021.5㎡ (1,519평)	지하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1층 : 뉴미디어체험관, 자료실 등 2층 : 공개홀, 교육실 등 3층 : 편집실, 녹음실, 센터사무실 등 4층 : 소형스튜디오, 부조실, 회의실 등 5층(옥탑층) : 공조실 등
광주	대지 3,850.50㎡ (1,164.77평)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75.3㎡ (1,837.77평)	지하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1층 : 뉴미디어체험관, 자료실 등 2층 : 공개홀, 교육실, 소형스튜디오 등 3층 : 센터사무실, 녹음실, 부조실 등 4층 : 운영위원실, 회의실, 강의실 등

다. 향후과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그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센터 이용자 시장조사 및 이용자의 사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 지역미디어영상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운영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 및 시설이 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중추(HUB) 역할을 하고, 소규모 지역미디어영상센터는 지역밀착성 및 이용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경망(Nerve) 역할을 하는 역할분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시청자평가원 활동 지원

가. 사업개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에서 선임된 시청자평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는 시청자평가프로그램(Ombudsman Program)에 출연하여 시청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시청자평가원 선임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시청자평가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월정액으로 활동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2003년부터 KBS, MBC, SBS, YTN, MBN, KFM, 춘천MBC 등 7개사에 월정액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 6,700만원, 2004년 8,300만원, 2005년 6,800만원 등 3년간 총 2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다.

다. 향후과제

시청자평가원 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시청자평가원 운영이 단순히 법적 의무사항의 준수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시청자평가원 운영에 대해 시청자평가원 활동가, 방송사업자, 시청자 등 내외부의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청자평가원 활동과 운영실적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3절

평가 및 발전방향

1 평 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한 이후 시청자불만 건수는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불만내용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회의를 월 2회에서 주 1회 개최로 정례화 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신속한 불만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옴부즈맨 프로그램, 즉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은 도입 초기보다는 많이 안정화되어 있으나, 편성시간대가 시청률 사각지대에 배치되고 자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코너 운용, 지적된 문제점의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이 부족한 점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청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는 위원회의 각종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체계적인 행정절차와 심의의 객관성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 시청자단체활동 지원,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지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평가원 활동 지원 등 지원사업은 그 외형적 지원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사업내용이 내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 발전방향

시청자를 위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청자, 시청자단체, 소외계층 활동가, 시청자평가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소통(Communication)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고,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시청자불만의 감소 및 불만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적 법규 준수 및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고양, 그리고 시청자불만의 사업자 자체 처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계도하여야 할 것이다.

제 9 장

방송발전기금 운용 및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제1절 기금관리 기본계획 / 266
제2절 방송발전기금 운용현황 및 평가 / 272
제3절 방송영상산업 육성 / 276
제4절 방송 전문인력 연수 / 300
제5절 평가 및 발전방향 / 305

제1절

기금관리 기본계획

1 기금운용의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가. 사업개요

중장기 방송발전기금 운용정책의 수립 목적은 중장기 기금 운용목표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기금배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즉, 디지털 방송환경과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여 방송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 방송발전기금의 운용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중장기 기금 운용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야별 기금 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 중장기 기금운용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방송분야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능동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보편화, 방송·통신·정보 간 융합의 현실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의 필요성 대두는 물론, 방송 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진흥방안을 마련,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뉴 미디어 도입의 확대 등 다매체·다채널로 특징되는 방송 분야의 추세를 감안, 새로운 시장 및 방송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보유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환경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다원화된 재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즉, 디지털 방송환경에 적합한 기반구축 지원과 관련분야 진흥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DMB 등 신규 방송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청자의 방송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향후 디지털 방송·통신 융합으로 방송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디지털화로 인한 시청자의 양극화(Digital Divide)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방송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적절한 방송발전기금 재원배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다매체·다채널로 방송의 산업화가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시장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실적

중장기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05년 3월 수립한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 재원배분전략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05. 8~11월)한 바 있으며, '06년 2월에는 '07년부터 '10년까지의 국가 재정운용계획안(중기사업계획)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다.

한편, 재정당국과 중기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기금정책의 운용방향과 함께, 부문별·사업별 재원배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설정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06년 종합적인 중장기 기금재원 배분 정책방안을 수립, 제시할 예정이다.

다. 향후과제

방송발전기금의 중장기 재원배분과 관련한 효율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방송위원회는 중장기 기금배분 계획의 실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징수율 정비 등 방

송발전기금(부담금) 체계 정비가 포함될 예정으로, 기금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방안

가. 사업개요

방송법 제37조에 따라 조성된 방송발전기금은 매년 1,100억원 가량이 45개 내외의 기관·단체에 지원되었다.

이러한 기금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단체별 기금집행 실적이 당초 사업목적 및 기금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회계검사」와 지원사업 수행결과 평가 및 차기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송발전기금사업 평가」 제도를 마련하였다.

나. 추진실적

기금사업 수행 기관·단체 회계검사는 기존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 지원금 회계처리 및 지출 증빙자료의 적정성, 기금사업 수행에 따른 잡수익 처리의 적정성, 유형 고정자산 구매 및 대여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 해당 기금사업에 대한 내·외부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2005년도에는 지원 규모별 회계검사 주기를 설정하였고, 2003년도 18개, 2004년도 14개, 2005년도 13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총 114건의 조치사항이 있었다.

<지원규모별 회계검사 주기>

지원규모	회계검사 주기
30억 이상	매년
10억 이상 30억 미만	격년
10억 미만	3년

<회계검사 결과 조치내역>

(단위 : 건)

	개선 권고	주의	경고	시정 요구	경고 및 시정	징계 요청	경고 및 징계 요청	반환	반환 및 경고	합계
'03년	4	15	11	3	-	-	1	-	3	37
'04년	4	14	-	3	-	-	-	-	-	21
'05년	14	10	10	7	1	2	1	11	-	56
합계	22	39	21	13	1	2	2	11	3	114

아울러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방송발전기금 운용정책 및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이러한 자체평가 외에도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다.

기금 지원사업의 평가 분야는 공익방송 지원, 방송진흥, 콘텐츠 진흥, 기관단체 운영지원, 시청자 지원, 방송산업 진흥 융자,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며, 사업계획과 사업집행, 성과관리와 같은 사업수행 단계별로 개별적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사업수행 단계별 평가지표>

단계	주요 평가항목
사업계획	▪ 사업 추진근거 및 기금지원 필요성 등 사업목적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차별성 및 사업 추진방식의 효율성 ▪ 성과관리 체계의 구체성
사업집행	▪ 사업수행자의 사업집행 관리 적정성 ▪ 예산절감 또는 사업집행의 효율성
성과관리	▪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달성 정도 ▪ 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정도

또한 2006년도 상반기에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개별사업 목적과 연계된 명확한 성과 목표 및 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며, 기금지원사업 자율평가와 성과관리 체계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성과관리자문단'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다. 향후과제

방송발전기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향후 회계검사 및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차기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환류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 환류시스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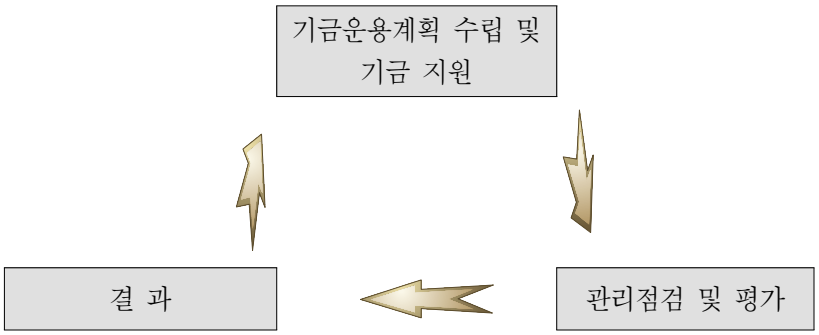

더불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금사업 수행 기관(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연간 지원대상 기관(단체)의 50% 이상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방송발전기금 회계처리 기준 및 기금사업 수행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양형제」 마련 등과 같은 검사 시스템의 체계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향후 기금사업 회계검사와 방송발전기금 운용평가 등을 통해 기금지원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방송발전기금 운용현황 및 평가

1 사업개요

방송발전기금은 2000년 1월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공익자금에서 전환되었으며, 일부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정부가 제한된 사업기회를 분배함으로써 편중·발생한 이윤의 사회적 환원 통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동 기금은 지상파 이외의 신규 매체(SO, 홈쇼핑 및 위성방송 등) 출현에 따른 방송 서비스의 확대와, 이와 병행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역할 이행 수단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다.

방송발전기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의거, 기획예산처 협의·조정, 국회 심의·의결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05년말 현재 공익방송 지원 등 방송 수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2 추진실적

방송발전기금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00년부터 '05년말 현재까지 총 9,30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시청자 복지향상 등 방송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총 조성	총 지출	순 조성
9,301억원	6,180억원	3,121억원

* 순 조성 규모 : 금융자산 1,897억원, 공자기금예탁 400억원, 출자금 100억원 미수금(지상파방송사업자 부담 기금)·융자금, 금융자산 평가금액 ('05년 말 기준 62억원) 등 기타 724억원

<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지출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조성(A)	1,708	1,611	1,465	1,459	1,441	1,617	9,301
지출(B)	982	852	886	890	1,129	1,441	6,180
순 조성(A-B)	726	759	579	569	312	176	3,121

한편,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 및 홈쇼핑)의 방송광고매출액 등에 따른 기금(부담금)과 및 방송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방송사업자별 기금조성 기여현황('05년말 기준)>

(단위 : 억원, %)

총 조성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 부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홈쇼핑 사업자 부담	방송사업자 출연금	기타[주1]
9,301	6,710 (72.2)[주3]	366[주2] (3.9)	281 (3.0)	783 (8.4)	1,161 (12.5)

주1」 공익자금 기금 전환규모(439억원),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
주2」 지역사업권료는 '03년부터 부과
주3」 ( )는 총 조성규모 대비 조성율

그 동안 기금은 EBS, 아리랑TV 등 공익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운용되었으나, 2기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진흥' 분야와 '시청자 지원'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 대비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 : %)

년도	공익방송 지원	방송진흥주1」	콘텐츠진흥주2」	기관단체 운영지원	시청자지원
'04년	44.8	20.2	16.1	11.1	7.7
'05년	37.6	23.7	18.3	9.2	11.2
'06년	36.7	27.0	12.2	8.8	15.4

주1」 방송인프라구축(디지털전환융자포함), 방송기술개발, 방송교류 지원, 조사연구 및 연수교육 지원 등

주2」 프로그램제작비 융자 포함

방송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첫째, 2000년 이전 규제 위주의 방송정책 기본방향을 「기금」이라는 자율적이고 탄력적 재원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 진흥이 필요한 정책의 한 영역으로 전환시켰다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공익성 등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재정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방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즉, 일부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정부가 제한된 사업기회를 분배함으로써 편중·발생하게 된 이윤의 사회적 환원 통로 역할을 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셋째,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통해 방송의 질 향상 및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참고로 '00년부터 '06년까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제작비 지원액>

(단위 : 억원) (총사업비대비 비중)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계획
185	248	248	283	333	463	586
25.3%	41.9%	37.2%	28.9%	35.2%	33.5%	35.3%

넷째, '남북방송교류' 및 '해외한국어방송' 등에 지원함으로써 방송을 매개로 한 민족 동질성 확보의 계기를 조성하였다.

(단위 :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남북방송교류	7.5	12.7	25.0	13.2	35
해외한국어방송지원	-	-	1.0	13.1	16.0

3 향후과제

방송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디지털 방송환경의 선진화와 방송·통신 융합 등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환경변화를 맞아 분야별·사업별 중장기 추진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기금운용 전략 및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이 결국 기금사업 추진의 효율성·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절 방송영상산업 육성

1 외주제작 기본정책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의 외주제작 기본정책은 크게 방송법령을 통한 제도적 지원정책과 방송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지원정책으로서의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방송콘텐츠의 제작원 육성 및 제작물 공급 확대를 통해 지상파방송 중심 방송콘텐츠 제작,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뉴미디어에 안정적인 방송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15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의 꾸준한 증가와 독립제작사의 수적 증대, 우수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한류(韓流)'를 타고 해외에 수출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한편, 외주제작 환경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의 프로그램 공급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저작권의 귀속, 제작비의 부족, 외주프로그램의 자의적 해석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제도를 보완하는 동시에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1) 「외주개선협의회」 구성·운영

기존의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한 「외주정책 개선방안 연구」(2003.12)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독립제작사·학계·유관부처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 「외주개선협의회」를 운영하여, 외주제작 인정기준, 적정 의무편성비율, 제작비 산정방식 개선, 저작권관련 사항, 표준계약서 도입, 실사문제 등 주요 쟁점별로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2004.2~5).

「외주개선협의회」는 이해 당사자와 정책당국이 참여한 최초의 외주제작 관련 회의체인 동시에, 이를 통해 '제작비 현실화', '2차 저작물 등의 작성권 공동소유' 등 방송사와 제작사간 합의사항을 도출해냄으로써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의 출발이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도입

「외주개선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일회성에 머물지 않게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유도하는 것이 외주제작 정책당국으로서의 방송위원회의 역할일 것이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외주개선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 및 외주제작 정책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2004.8.10)하여 본격적인 제도개선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1·2단계 과제로 구성된 세부추진계획 중 1단계(단기)과제는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도입(2004.12)이었다. 방송위원회는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작권법을 기본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 양도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사전에 전작'된 프로그램의 경우 원

칙적으로 독립제작사에 저작권이 귀속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외주개선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공동활용', '단가지침 개발', '제작비의 기본베이스 마련' 등을 포함하였으며, 향후 정례적인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이행정도 파악을 위해 방송법(제98조제1항)에 근거한 자료제출 사항을 포함하였다.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구성
□ 제1장, 제2장 :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도입의 목적, 적용 범위
□ 제3장 : 계약에 관한 일반 권고사항
□ 제4장 : 저작권의 귀속 • 양도에 관한 권고사항
▸ 저작권의 귀속, 권리의 양도 • 이용허락, 공동 활용
□ 제5장 : 제작비 산정 • 지급사항
▸ 제작비 산정, 제작비 지급, 선급금 지급, 재방료 지급
□ 제6장 : 제작과정 관련 사항
▸ 제작분담, 협찬고지 등, 기획안의 도용/정보의 공개 등, 제작장비 및 시설의 이용, 제작의 중지/계약의 해지, 프로그램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의 수정/정산, 납기 • 납품/검수, 기타, 자료제출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 및 유통관련 정책 당국의 강제권 발휘 전 '권고'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환경개선을 추진했다는데 도입의 의의를 둘 수 있으나, 그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 제27조(위원회의 직무)7호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제72조(외주제작프로그램의 편성) 등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부추진계획 중 2단계(중기)과제는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2005.12)'과 '외주제작 인정기준 도입' 등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3)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방송콘텐츠 제작원 및 제작물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산업적 지원정책은 정책 당국인 방송위원회, 유관부처인 문화관광부 등이 상시 연두 과제로 지정할 만큼 국내 방송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양 정책 당국의 외주제작 기본정책의 방향은 '외주제작 활성화'라는 기조에 있어서는 공통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해 있었던 '경제정책조정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 「방송·광고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안건 상정(2005.12.23)을 계기로 방송위원회는 외주제작 정책을 포함한 방송·광고 분야의 정책 및 규제 주무기관으로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 향후과제

뉴미디어의 지속적인 출현에 따른 방송콘텐츠 수요 범위의 확대는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성장을 견제·경쟁할 수 있는 대체 사업자의 출현과 방송사업자간 또는 방송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프로그램 제작, 유통에 있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외주제작 제도의 활성화 및 관련 환경 개선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중심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앞으로도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제도와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있어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을 통해 시청자의 복지 증대와 방송제작 주체의 제작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정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방송영상산업 발전 지원

가. 사업개요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은 방송법 제38조제3호에 근거하여 시청자에게 유익하고 공익적인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매체·다채널 방송환경에서 다양한 공익적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뉴미디어·디지털환경에 적합한 공익적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를 통해 신규 서비스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은 공급자 중심인 방송환경에서 수요자(시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복잡다기한 사업체계를 단순화·표준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작지원금 집행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방송위원회가 사업수행 주체로서 방송사업자 및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통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지상파방송 송출용,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송출용(직접사용채널, 지역채널 부문 포함), DMB 송출용, 독립제작사용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방송위원회의 기본 책무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제고 및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소외계층을 조명하고 지역성을 구현한 프로그램 등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은 '03년에 9억원(30편), '04년에 41억원(90편), '05년에 77억원(125편)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06년에는 4개 부

문에 9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실적 및 '06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 2003년~2005년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	'03년	'04년	'05년
실적	900	4,133	7,725
편수	30	90	125

▶ 2006년도 지원계획

구분	예산	지원내용
지상파방송용콘텐츠 제작지원	24.5억	지상파(텔레비전·라디오) 방송용으로 제작하는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
케이블·위성방송용 콘텐츠제작지원	40억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의 채널을 통해 방송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및 방송사업자의 자체채널(지역채널)을 통해 방송할 콘텐츠 제작비 지원
DMB방송용콘텐츠 제작지원	15억	지상파DMB 및 위성DMB 채널을 통해 방송할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독립제작사콘텐츠 제작지원	15억	독립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2) 세부 지원내용

(1) 2003년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30편)

▶ 지상파방송 부문(10편)

(단위 : 천원)

순번	방송사업자	프로그램명	지원금액
1	포항문화방송	포항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남산' 4부작	40,000
2	KBS	월드뮤직의 寶庫, 북유럽을 가다	15,000
3	부산문화방송	金官伽倻의 秘密	35,000
4	대구평화방송	특집방송 - 골목은 살아있다	4,000
5	대전문화방송	온 천	20,000
6	문화방송	HDTV 자연다큐멘터리 - '玆山魚譜'의 고향, 牛耳島	35,000
7	제주방송	2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 제주 특산식물 96	25,000
8	SBS	환경의 역습	30,000
9	KBS	KBS 네트워크 공동기획 - 전래동요를 찾아서	25,000
10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 세계화 시대의 우리말글	30,000
	계		259,000

▶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10편)

순번	방송사업자	프로그램명	지원금액
1	KBS KOREA	클래식 오디세이 특집 - 무한한 상상, 애니클래식 2003	50,000
2	CBS-TV	이주노동자, 노예인가, 친구인가?	40,000
3	중앙방송 (주)히스토리 채널	민족과학의 재발견 - 우리 과학 이야기	50,000
4	(주)아름방송네트워크	2부작 숯내(탄천)는 살아있다	30,000
5	(재)시민방송RTV	숲과 사람, 그 공존의 실험	30,000
6	(주)미디어렉스	주5일 근무제 특별기획 3부작 - 잘 놀아야 잘산다	30,000
7	(주)한국케이블 TV제주방송	레저스포츠의 천국 제주	30,000

8	(주) 메디비즈커뮤니티	산삼의 비밀	20,000
9	(주)육아TV	모유의 신비	30,000
10	(주)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통일의 꿈 연어	21,000
	계		331,000

▶ 독립제작사 부문(7편)

순번	독립제작사	프로그램명	지원금액
1	푸른별 영상	건강한 야생(Wild Health)	40,000
2	(주)지오채널	특집 다큐멘터리 4부작 - 고추루트를 찾아서	40,000
3	한국방송제작단	북극	40,000
4	(주)디지플러스	장돌뱅이의 민족혼	35,000
5	미디어소도	외손이 마을 양동(良洞)	35,000
6	(주)프로덕션 해오름	21세기 新 유목민시대	30,000
7	비전5	세계해양학자들이 몰려오다 - 크림스 프로젝트, 동해	30,000
	계		250,000

▶ 좋은 어린이 • 청소년프로그램(3편)

순번	방송사업자/독립제작사	프로그램명	지원금액
1	KBS	Hi Mom, Hi Baby - 소리로 쓴 태아 육아보고서	16,000
2	청주문화방송	청주MBC 특별기획 - 시우의 조리사 꿈은 이루어진다	22,000
3	채널세븐	인터넷 중독 비상! 우리의 청소년을 지켜라!	22,000
	계		60,000

(2) 2004년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39편)

(단위 : 천원)

부문	방송사업자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금액
지상파 중앙 (4편)	한국교육방송공사	TV와 인간	50,000
	기독교방송	원자력, 지속 가능한 대안인가?	20,000
	한국방송	삼색연작다큐 - 사랑(3부작)	40,000
	SBS	특집다큐멘터리 - 로봇의 시대	40,000
지상파 지역 (5편)	여수문화방송	여수MBC 창사 34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 항해와 표류의 역사	35,000
	강릉문화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 우주나무와 하늘새 '솟대'	30,000
	마산문화방송	마산MBC 특별기획 3부작 - 대장경	30,000
	울산문화방송	귀신고래(Korean grey whale)	30,000
	목포문화방송	목포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 "섬" 3부작	30,000
SO/위성 (4편)	한국케이블 TV영동방송	바다만이 살 길이다 - 인공어초, 그후 30년	25,000
	한국케이블 TV서남방송	민족극	20,000
	KCTV제주방송	해양다큐멘터리 - 생명의 새로운 터전, 바다목장(2부작)	35,000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한국의 종가(宗家)	20,000
PP (6편)	와이티엔미디어	다큐멘터리 3부작-나무이야기	100,000
	매일경제TV	농촌 신성장 동력을 찾다 3부작	30,000
	YTN	21세기 '신약', 150살에 도전한다	40,000
	국제방송교류재단	다큐멘터리 2부작 - 한국 불교미술의 꽃, 탱화	40,000
	CBS-TV	21세기 가족 리모델링 - 세상의 모든 가족을 위하여	40,000
	중앙방송 Q채널	과학 新프로젝트 4부작 - 21세기 미래경쟁력, 과학교육	50,000

독립 제작사 (12편)	젠터닷컴	삶으로서의 죽음(3부작)	30,000
	비전 5	생물의 건축학 - 인간의 둥지	50,000
	봄 프로덕션	다큐멘터리 2부작 - 천년의 기다림, 침향(沈香)	30,000
	다큐서울	KBS특별기획 "동아시아 격동 20세기" 前史 2부작	40,000
	서울인디즈	첨단과학, 한국인이 간다	30,000
	한국방송제작단	세계로 가는 고추장	30,000
	아이피에스비	티베트의 아이들(영혼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곳)	30,000
	인디유니온	아이야 놀자! 내일이 열린다	30,000
	프로덕션해오름	한국 미술 오천년사	100,000
	한솔미디어	한민족의 기원, 유전자로 찾는다	30,000
	낙미디어	마지막 샹그릴라, 중국 애뢰산	30,000
	디지털캐스트	존경받는 부자의 조건	30,000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4편)	청주문화방송	대전·청주·충주MBC 3사 공동 특집 - 학교 숲에 미래가 있다	20,000
	한국교육방송공사	특집 2부작 - 삶과 꿈의 소리, 자장가	20,000
	KBS KOREA	애니멘터리 한국설화 2004년 여름방학 특집 - 여신들의 섬, 제주도	30,000
	JEI스스로방송	샤론의 장미이야기(The Story of Rose of Sharon)	30,000
소외계층 프로그램 (4편)	한국씨네텔	3부작 다큐멘터리 - 더불어 사는 희망 프로젝트!! 2004 자활보고서	40,000
	서울인디즈	세계 난민의 날 특집 - 한국 속의 난민	10,000
	한국방송제작단	아름다운 선물	30,000
	마이어스미디어	15萬의 또 다른 한국인, 입양아!	20,000
지원금 총계(39편) : 1,365,000,000원			

(3) 2004년 PP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51편)

(단위 : 원)

순번	법인	채널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금액
1	㈜대원디지털방송	AniOne TV	꿈을 만드는 사람들	100,000,000
2	㈜온뮤직네크워크	MTV	MTV APT(Asia Promotion Tour)	70,000,000
3	㈜기독교위성방송	C3TV	자살(自殺)신드롬! 이유 있는 반란!	20,000,000
4	케이디씨미디어㈜	게임티브이 (GameTV)	그린 게임 Zone	60,000,000
5	㈜리빙티브이	리빙TV	해양 희망 보고서 '태그방류'	87,442,710
6	㈜리빙티브이	리빙TV	한국의 맛 전통의 멋	48,631,810
7	㈜주은테크	WAVE TV	아름다운 산하 'HD 코리아'	40,000,000
8	㈜한국낚시채널	에프티브이 (FTV)	인류와 낚시	56,000,000
9	㈜아카넷티비	스카이웨더	데이터방송을 통한 재난재해 방송	50,708,330
10	㈜디지털스카이넷	Digital Radio KISS	세계로 보내는 아름다운 國樂으로의 초대장	30,000,000
11	㈜디지털스카이넷	Digital Radio KISS	한국적인 재즈, 세계적인 재즈를 꿈꾸자	30,000,000
12	㈜메디코프	MEDI TV	21세기 아시아의 공포 '우울증'	60,000,000
13	㈜메디코프	MEDI TV	혈액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100,000,000
14	한국디지털오디오 방송㈜	Satio	뮤직+ 라이프	56,027,270
15	㈜와이티엔	YTN	동북아 3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	36,000,000
16	㈜남양바둑방송	바둑ch	세계를 제패한 한국바둑, 선구자 조남철	80,000,000
17	㈜투데이티비	CTV (China TV)	박재희의 TV명심보감	70,000,000
18	㈜퀴니	Qwiny	체험게임쇼 - 도전, 역사특공대!	39,960,000
19	㈜매일경제티브이	MBN CNBC	한민족 또 하나의 힘, 한상(韓商)을 찾아서	70,000,000
20	㈜남양교양정보티비	휴먼TV	My Success, My way	48,000,000

21	㈜동아티브이	동아TV	한국 화장의 변천사	30,000,000
22	㈜투원미디어	Sky바둑	이 시대, 왜 바둑인가	58,310,000
23	㈜건강위성방송	의료건강노인장애인 HEALTH SKY TV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효과 - 나노가 백혈병을 정복한다	29,672,530
24	㈜방송과사람	CRTV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리포트	64,500,000
25	㈜한국경제티브이	한국경제TV	접근금지구역 '외국계 펀드'	59,127,030
26	씨제이미디어㈜	푸드채널 (FoodChannel)	한국음식문화원류 - 시리즈 1	100,000,000
27	씨제이미디어㈜	푸드채널 (FoodChannel)	세계최고의 레스토랑	49,031,950
28	㈜엠비씨게임	MBC게임 (MBCgame)	디지털 신기루, 게임강국 코리아	81,000,000
29	㈜재능교육	JEI재능방송 (JEITV)	Sing Along English 호키&포키	12,000,000
30	㈜재능교육	JEI재능방송 (JEITV)	Fun Fun Game English	29,937,000
31	중앙방송㈜	History Channel	한민족 북방사 재조명 리포트	57,573,110
32	중앙방송㈜	Q채널	아시아 자연1의학의 신비	72,182,190
33	㈜시네마티브이	cinema TV	한국영화! 이제는 세계다	97,724,200
34	㈜씨넥서스	ABO	무술과 타부 Action of Asia!	35,000,000
35	㈜씨넥서스	DCN	'욘사마'코드를 통해 본 한일 문화 비교	70,000,000
36	㈜온미디어	투니버스	생생 투니 파티	35,000,000
37	㈜대교네트워크	어린이TV	클로네 집	80,000,000
38	시네온티브이㈜	CINEON	굿바이 마이 브라더	79,922,500
39	㈜이채널	e채널	디지털 미디어를 말한다	79,888,130
40	㈜레저방송	여행레저TV	문명의 교차로를 가다	83,849,480
41	(재)기독교방송	CBS TV	영원한 한국인, 언더우드	30,000,000
42	㈜미디어랩	Me.TV	음악에세이 내 마음의 선율	30,000,000
43	현인위성방송㈜	한방건강TV	아시아에 심는 한의학의 혼	23,661,610

44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SUPER ACTION	한국액션을 말한다	50,000,000
45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Catch On	한국영화 르네상스의 비밀	32,000,000
46	씨제이미디어㈜	HomeCGV	나눔의 영화관	20,000,000
47	㈜와이티엔미디어	무비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아시아	59,553,310
48	(주)ABS농어민방송	ABS농어민방송	외국 우수농산물 성공사례	50,000,000
49	(재)평화방송	평화방송TV	천주교, 세상을 바꾸다	48,504,330
50	(주)센추리티비	CTN	자연과 인간을 사랑했던 화가 밀레	33,752,150
51	(주)센추리티비	CTN	CTN다큐스페셜-세계문학기행 헤르만헤세편	33,902,150
			지원금 총계(51편) : 2,768,861,790원	

(4) 2005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내역(125편)

▶ 우수(일반)프로그램 부문(10편)

(단위 : 원)

순번	구분	법인명	신청프로그램명	지원금액
1	독립제작사	㈜프로덕션해오름	샤머니즘世界紀行 - 자연과 인간	150,000,000
2	지상파	광주문화방송㈜	광복6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2부작 - 뿡 100년사	28,200,000
3	독립제작사	다큐서울	명성황후 시해사건, 110년 만의 사죄	85,125,302
4	독립제작사	㈜에이스비젼	3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 세계로 가는 동양의학	107,460,000
5	지상파	전주문화방송㈜	사라진 우리 악기를 찾아서	90,000,000
6	지상파	㈜청주방송	특집다큐멘터리 - 상생의 대타협, 그 이후… 원흥이 두꺼비의 선택	33,304,797
7	독립제작사	㈜낙미디어	마지막 불의 전설	63,567,928

8	독립 제작사	(주)굿미디어	다큐멘터리 2부작 - 혀의 축제 몸의 축복	74,787,960
9	독립 제작사	㈜비전마스타	HD 과학 다큐멘터리 - 기술 한국의 희망, 빛을 선점하라	33,228,600
10	독립 제작사	㈜애니21	농촌이야기	92,040,000
계				757,714,587

▶ 우수(어린이 • 청소년)프로그램 부문(5편)

순번	구분	법인명	신청프로그램명	지원금액
1	독립 제작사	미디어소도	에듀테인먼트 애니다큐멘터리 - 태권아 마루치 아르치	101,400,000
2	지상파	한국방송 공사	애니판소리 한국설화 12마당	84,022,166
3	지상파	㈜대구방송	멘토 - 희망을 찾는다	48,241,688
4	독립 제작사	(주)캐릭터 플랜	신구미호	127,594,639
5	독립 제작사	(주)노리 하우스	똑똑 노리하우스	47,736,000
계				408,994,493

▶ 우수(소외)프로그램 부문(8편)

순번	구분	법인명	신청프로그램명	지원금액
1	지상파	부산방송㈜	광복60주년 특별기획 - 잊혀진 姓, Kings	24,321,400
2	독립 제작사	모루	빈곤 퇴치를 향한 도전, 마이크로 크레디트	106,770,000
3	지상파	대전문화방송㈜	우리에겐 희망이 사치일까요? - 도시의 가난한 어린이들	14,362,590
4	독립 제작사	투데이프로덕션닷컴㈜	일본군 '위안부' 세계가 껴안다 - 그 1년간의 노력	43,137,000
5	독립 제작사	㈜한국씨네텔	특집다큐 2부작 - 1%의 희망, '기부'	87,327,532

6	지상파	(재)불교방송	개국 15주년 특별기획 - 장애여성의 성, 문을 열자!	13,896,000
7	지상파	(재)기독교방송	그들만의 아리랑	10,724,398
8	독립 제작사	(주)미디어파크	장애, 나에겐 선물입니다	50,400,000
계				350,938,920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콘텐츠부문(37편)

순번	채널명	법인명	신청프로그램명	지원금액
1	MBC드라마넷	㈜엠비씨드라마넷	열번째 비가 내리는 날	150,000,000
2	투니버스	㈜온미디어	부비의 헬로우 아시아	149,890,000
3	메디TV	㈜메디코프	신의 처방, 웃음	72,395,681
4	푸드채널	씨제이미디어㈜	동아시아 음식문화교류사	99,840,000
5	YTN	㈜와이티엔	민물고기 최후의 낙원, DMZ	120,000,000
6	어린이TV	㈜대교네트워크	유아 數 놀이 프로그램 꼬꼬댁 엄마가 알을 낳았어요	83,834,950
7	동아TV	㈜동아티브이	특별기획- 한국 패션 변천사	85,900,000
8	게임숲	㈜보라존	한국 전통 민속 게임	80,488,652
9	e-channel	㈜이채널	즐거운 중독, 디지털	104,685,000
10	에프티브이 (FTV)	㈜한국낚시채널	섬이 좋은 사람들	47,740,000
11	불교TV	불교텔레비전㈜	해동대사 정중무상(무상선사)의 다선일미와 그 발자취	37,159,500
12	cinema TV	㈜시네마티브이	레디, 액션! 우리는 영화의 미래다	29,426,000
13	평화방송TV (케이블TV) SKY-평화 (위성방송)	(재)평화방송	믿음의 노래…세계를 하나로	95,343,182
14	History Chnnel	중앙방송㈜	생활문화 오천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100,553,600
15	한방건강TV	㈜현인위성방송	녹색의 자원, 약초를 확보하라	49,427,700

16	MBN-CNBC	㈜매일경제TV	초일류 제품 한국이 간다	71,680,000
17	리빙TV	㈜리빙티브이	눈부신 산하 한국의 사계를 찾아서	30,772,728
18	여행레저TV	㈜레저방송	또 하나의 거대한 대륙 인도를 가다	58,628,500
19	애니원	㈜대원 디지털방송	고추 먹고 맴맴	94,535,000
20	씨앤고티비	㈜씨앤고티비	아시아 역사 도시 탐방	102,508,000
21	한국레저낚시방송 (FS-TV)	㈜한국레저낚시 방송	낚시, 이제는 물사랑부터	58,940,000
22	게임티브이 (GameTV)	케이디씨미디어 ㈜	겜짱! IQ짱!	73,290,000
23	스카이바둑	㈜투원미디어	또 하나의 글로벌브랜드, KoreaBaduk	58,104,644
24	cineon	시네온티브이㈜	아름다운 만남 - 1부(가슴아픈 이별)	103,670,000
25	GTV	㈜지텔레비젼	균형과 질서의 미학 - 전통 매듭	20,322,350
26	한국경제TV	㈜한국경제티브이	프로그램 연동형 증권 데이터 방송	50,400,000
27	CRTV	㈜ 방송과사람	국토개발 현장	81,771,000
28	CTS기독교TV	㈜기독교텔레비전	인재가 희망이다	40,258,400
29	HEALTH SKY TV	㈜건강위성방송	사이버 시대 의료 혁명 - 원격 진료 시스템	28,210,000
30	CBS TV	(재)기독교방송	바이블 루트	92,807,400
31	Digital Radio KISS	㈜디지털스카이넷	한국의 재즈를 만든 사람들	35,806,364
32	WAVE TV	㈜주은테크	자연, 그리고 한국인	45,815,000
33	브레인TV	㈜햇터방송	장기	67,725,000
34	ABO	㈜ 씨넥서스	아름다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	100,128,000
35	이데일리이 토마토TV	㈜이토마토	벤처 어게인	67,785,000

36	육아방송	㈜유로티브이	21세기 新영재 프로젝트, 다중지능 교육!	101,833,275
37	생활경제TV	㈜생활경제TV	희망 프로젝트-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77,915,000
계				2,769,589,926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부문(29편)

순번	법인명	신청프로그램명	지원금액
1	㈜씨제이케이블넷 양천방송	재난재해방지특집10부작 -TV 119	119,680,000
2	㈜한국케이블TV 서남방송	섬으로 유배된 사람들	17,507,459
3	㈜금호 케이블티브이방송	섬유쿼터, 위기는 곧 기회다	34,981,643
4	㈜수성 케이블방송	아름다운 도시, 솔라시티 대구	29,412,125
5	㈜서서울 케이블티브이	서울의 마을 굿	14,175,000
6	㈜강남 케이블티비	생태보고서 - 도심하천, 자연으로 돌아가다	15,540,000
7	금호 케이블티브이방송	출력 1와트의 힘	26,934,738
8	㈜한국케이블TV 제주방송	KCTV특별기획 제주 역사문화탐험-新탐라순력도	54,386,979
9	㈜디비에스 대경방송	동부민요를 찾아서	51,525,000
10	한국케이블티브이 구로방송㈜	취업 발전소! 내일(My job)을 향해!	43,622,120
11	영남방송㈜	안동 車戰! 그날의 함성	11,053,494
12	㈜부산케이블TV 방송	도심하천 '온천천', 365일간의 기록	16,800,000
13	㈜강서방송	다시 보는 의성 허준	14,280,000
14	㈜한국케이블TV 광주중앙방송	축제도 관광 자원이다	30,648,027
15	㈜한국케이블티브 이용산방송	르포, 희망을 찾는 사람들	9,317,000

16	㈜디비에스 대경방송	비산 날뫼복춤	24,850,000
17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읍성사람들	11,805,878
18	씨제이케이블넷중부산방송㈜	한·일 지역경제의 원류 -미래의 조선통신사	9,961,970
19	남부미디넷㈜	도시민의 삶, SUBWAY	11,969,594
20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	KCTV스페셜 -잿빛도시가 숨을 쉰다	27,740,132
21	㈜한국케이블TV 영동방송	좀상날 억지다리 뺏기놀이	13,104,000
22	㈜한국케이블TV 제주방송	창사1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청정바다의 지표, 연산호	51,408,000
23	㈜중앙케이블TV방송 [㈜범진케이블 네트워크]	사랑의 집고치기	7,328,850
24	㈜강남케이블티비	주부토크 - 맛있는 점심, 즐거운 이야기	15,400,000
25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	충남방송 여름특집 다큐멘터리-신비의 섬 안면도를 가다	16,563,180
26	㈜중앙케이블TV방송 [㈜범진케이블 네트워크]	장묘문화 이대로 좋은가	13,945,699
27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내포 그 아름다운 역사! -1부 내포는 살아있다 편	101,556,000
28	㈜한씨엔	Made in 대덕밸리	67,670,000
29	㈜경북 케이블티브이방송	천대받은 문화유산	28,435,610
계			891,602,498

▶ DMB 부문(8편)

순번	구분	법인명	신청프로그램명	지원금액
1	위성DMB	㈜티유미디어	무빙카툰 스페셜	80,000,000
2	지상파DMB	㈜한국DMB	숟가락 퀴즈	96,600,000
3	지상파DMB	㈜문화방송	그 남자 그 여자	83,200,000
4	지상파DMB	㈜와이티엔 디엠비	손 안의 점심메뉴	77,950,000
5	지상파DMB	한국방송공사	DMB드라마 “주머니 속 이야기”	99,600,000
6	지상파DMB	㈜와이티엔 디엠비	생생 뉴스잉글리시	81,250,000
7	지상파DMB	한국방송공사	라이브 뮤직홀릭	98,400,000
8	위성DMB	㈜티유미디어	DMB 다큐 ‘아버지로의 여행’	95,520,000
계				712,520,000

▶ 데이터 부문(9편)

순번	구분	채널명	법인명	신청프로그램명	지원금액
1	지상파	KBS제2DTV 방송국	한국방송공사	역사스페셜 연동형 데이터 방송	70,670,296
2	PP	OZIC	㈜씨제이 미디어	디지털E-Book서비스	80,577,000
3	PP	키드아이 TV	㈜에어코드	kidi TV	40,258,827
4	PP	1.오늘의 운세 2.트랜드TV	㈜알티캐스트	TV 오디오북	29,250,000
5	PP	지역채널	㈜브로드밴드 솔루션즈	부천 사랑 (지역정보서비스)	45,000,000
6	PP	씨네21	㈜씨네21	Art 씨네21	82,196,933
7	PP	씨네온	㈜시네온 티브이	영화보며 공부하기	86,850,000
8	PP	챔프	㈜챔프비전	한국 전래동화 연동형 게임 (보조적데이터방송)	89,557,853

9	PP	메세지온TV	㈜인포뱅크	메시지온TV	79,323,578
계					603,684,487

▶ HD 부문(19편)

순번	구분	채널명	법인명	신청프로그램명	지원금액
1	지상파	MBC	㈜문화방송	HD 뮤직다큐멘터리 -하루	21,053,794
2	PP	중화TV	㈜인터내셔널미디어지니어스	<중화TV 특선다큐> 거상의 비밀제1부. 분투 - 힘을 다해 상인이 되라!	70,850,000
3	지상파	KBS전주	KBS전주 방송총국	장수벨트, 그 신비를 벗다	38,400,000
4	PP	SkyHD	㈜한국HD방송	재미있는 클래식 이야기	86,493,719
5	독립		㈜온다컴	농촌과 도시의 행복한 공존 - 러시아 '다차'를 가다	74,370,000
6	독립		㈜오뎃사	조선의 뿌리 깊은 나무, 성균관	74,004,640
7	PP	한방건강TV	㈜한방건강TV	1㎛의 진실 - 미생물이 자원이다	70,710,000
8	PP	MBC게임	㈜엠비씨게임	<특별기획> 게임, 광장에 서다	67,891,801
9	독립		노바미디어	21세기, 장미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67,668,800
10	독립		㈜리얼리티비젼	다큐로망 '노르망디의 코리안 -2부작'	63,773,561
11	지상파	포항MBC	㈜포항문화방송	포항MBC 창사특집 HD다큐 '동학' 2부작	47,173,033
12	PP	여행레저TV	㈜레저방송	티무르 왕조의 살아있는 숨결	58,008,000
13	PP	MeTV	㈜미디어랩	한국의 숨겨진 미를 찾아서	41,748,000
14	독립		㈜미라클픽쳐스	비오톱(BIOTOPE), 단절된 지역생태계의 징검다리	46,370,000
15	PP	WAVE TV	㈜주은테크	<아름다운 우리어촌 10선>	72,600,000

16	독립		톱프로덕션	新농가월령가, 누에	72,000,000
17	독립		폴리지 미디어	Creative를 넘어 '전략'으로 - 컨텐츠 산업혁명 보고서	83,000,000
18	독립		㈜인디컴 시네마	종전 60주년 특집다큐 <Born in 1945>(1945년생)	100,000,000
19	독립		프로덕션 레이	한국의소리, 세계의 소리 판소리(영혼의 울림)	73,480,000
계					1,229,595,348

다. 향후과제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은 시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 하에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였고, 지원사업 체계를 단순화·표준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는 2008년까지 시청자에게 공익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공익적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을 수행하고, 그 이후 동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자율적으로 공익적이고 공급분야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3 방송영상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가. 프로그램제작비 융자

1) 사업개요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사업은 방송법 제38조 제12호에 근거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독립제작사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 및 방송영상 산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5년 5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사업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자체제작 프로그램, 보도·교양, 오락·연예, 드라마 등의 분야에 제작비를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한 3년간 연 3.5%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2) 추진실적

2005년 사업을 시작하여 (주)중앙방송 등 6개 사업자, 17개 프로그램에 28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3) 향후과제

방송콘텐츠의 국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악한 제작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된 동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융자금리 인하 및 사업자의 담보문제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양한 지원방식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

1) 사업개요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사업은 방송법 제38조제12호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투자재원이 부족한 방송사업자에게 기금융자 지원을 통해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유도, 방송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업목표 하에 2003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사업은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송출·중계·제작·편집시설 등

방송시설의 디지털화 분야에 융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2003, 2004년도에 4.3% 고정금리를, 2005년부터 전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고시금리에서 0.5%P를 차감한 금리(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2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융자기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2) 추진실적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사업은 2003년도에 CJ미디어(주) 외 8개 사업자에 160억원, 2004년도에 (주)북부산방송 외 8개 사업자에 86억원, 2005년도에 (주)청주방송 외 8개 사업자에 120억원을 지원하였다.

3) 향후과제

디지털방송 전환 사업은 향후 국내 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융자혜택 확대, 지속적 금리인하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개발하여 동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 대학 방송실습기자재 지원

1) 사업개요

대학 방송실습기자재 지원사업은 경쟁력 있는 방송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수준 높은 방송제작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방송실습 교육장비 및 시설 마련을 지원하고, 방송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의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05년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습교육 특성화 대학의 선별 지원 방식과 성과관리 강화를 원칙으로 사업의 시행 체계를 개선하였다.

방송 관련학과 중 방송인력 교육 특성화 대학교를 선정하여, 매칭비율

에 따른 대학 측의 사업비 출연을 조건으로 방송 관련학과의 방송실습 커리큘럼 및 향후 실습교육 계획, 기자재 확보계획에 대한 분석 후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으로 대학방송실습기자재 지원을 통한 방송 관련학과의 교육 내실화 및 방송 예비인력 양성을 통한 국내방송 인프라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 추진실적

대학 방송실습기자재 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 대학교를 선정, 9개 대학교에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위 : 천원)

권역	대학명	지원규모	매칭금액	총사업비
서울	성균관대학교	55,000	55,000	110,000
경기·인천	경원대학교	55,000	61,000	116,000
강원	상지대학교	55,000	100,000	155,000
	삼척대학교	55,000	65,000	120,000
충청	충남대학교	55,000	55,000	110,000
호남·제주	동신대학교	30,000	36,900	66,900
	전남대학교	55,000	60,000	115,000
경상	영산대학교	55,000	55,000	110,000
	대구가톨릭대학교	55,000	111,611	166,611

3) 향후과제

동 사업이 경쟁력 있는 방송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마련 및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대학 대상의 방송실습 기반 및 방송 예비인력 양성 과정을 마련하는 등 방송실습 교육체계 정립 및 산학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 방송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4절

방송 전문인력 연수

1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디지털방송 등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방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송관련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업방송인 및 방송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통하여 인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특히 그 동안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방송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방송전문인력 연수 예산 현황>

사업명	예 산	비 고
전문인력 연수교육 지원	8억8,350만원	100% 공모방식으로 선정
전문인력 연수교육지원 관련사업	*1,650만원	*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경비 등 경상비
총 계	9억원	세부 편성안은 다음페이지

동 사업 역시 조사연구사업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단체지원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공모제가 2006년에 최초 도입된 사업으로, 기존 수혜단체 외에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지원유형>

※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

지원유형		예산책정비율(%)	비고
정기지원	정규 학위과정	15~20%	
	장기 교육 과정 (6~12개월)	20~30%	
	단기 교육 과정 (6개월 미만)	30~40%	
	*지정 시범사업 방송프로그램 후반작업 뉴질랜드 해외연수교육	10% 이내	* 지정시범사업은 정기지원 예산 8억원의 10%이내
**추가 지원	단기 교육 과정	8,350만원	** 정기지원 잔여예산은 추가지원시 합산편성
합 계		9억원	운영경비 1,650만원

<지원분야>

지원분야	세부 사업부문 (예시)	지원분야	세부 사업부문 (예시)
1. 방송제작	가. 취재기자, 카메라기자, PD, 아나운서, MC, 카메라맨 나. 방송작가, 편성담당자 ※현업재교육에 중점	4. 방송광고	가. 방송광고제작 실무 나. 방송광고 마케팅 다. 방송광고 시장분석 전문가 교육과정
2. 방송기술	가. 음향, 조명, 녹음·녹화 (제작·편집기술) 나. 편성·송출기술 다. 디지털기술, 뉴미디어 신기술	5. 방송 문화·예술	가. 방송연기자, 성우 등 나. 방송음악, 무대미술·장치, 안무, 그래픽디자인, 특수효과 등 종사자 다. 스턴트맨, 소품, 분장 등
3. 방송경영 (관리행정)	가. 방송사 고위간부 재교육 나. 방송사 마케팅·행정 담당 임직원 다. 공정거래, 유통, 저작권	6. 방송·저널리즘	가. 방송인 재교육 나. 예비(퇴직) 방송인 교육 다. 지역방송인 재교육
지정시범사업	방송프로그램 후반작업 뉴질랜드 해외연수	10% 이내	
합 계	정기 8억원, 추가 8,50만원, 정기지원 잔여예산은 추가지원시 합산편성		

사업심사 및 선정은 평가항목 계량화와 전년도 사업수행 평가결과를 당해 연도 사업평가시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적용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실시하였으며, 방송위원회 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회계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 총 5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연수교육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연수교육사업 심사위원회
위원구성	○ 5인 - 내부 2 : 연구센터장 1(위원장), 연구위원 1 - 외부 3 : 회계사 1, 미디어 분야 교수 1, 방송현장 전문가 1
위촉기간	○ 1년간 (연임가능)
운 영	○ 정기·추가지원 전체회의 각 4~5회 / 년
직 무	○ 전문인력 연수교육 지원 사업계획서 심의 ○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액 위원회에 건의 ○ 사업 중간·결과평가 등
추천의뢰단체	○ 방송관련 각 학회 및 회계 관련 단체

<연수교육사업 심사평가항목>

평가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가중치
교육내용 평가	교육계획의 적절성	• 교육주제가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 교육계획의 전문성이 있는가 • 교육계획이 어느정도 충실한가	30%
	교육대상의 적합성	• 교육대상자가 교육계획과 목표에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 교육대상자의 직무분야가 교육계획에 적합한가	20%
	교육결과의 공적기여도	• 교육결과가 현장에서 어느정도 활용가능한가	10%
교육기관 평가	교육사업 수행 능력	• 교육기관의 지원/관리시스템이 적합한가	10%
	교육비·교육기간의 적정성	• 교육대상 인원은 적정한가 • 교육목표 대비 교육기간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 교육목표 대비 교육비용은 적절하게 책정되었는가	30%
계			100%

2 추진실적

2006년 4월 현재 17개 단체, 26개 사업에 총 5억5,4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수교육사업 선정대상 및 지원액>

■ 17개 단체, 26개 사업, 554,400천원

접수번호	구분	신청자	사업명	지원액(천원)
27-08	단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회	특수촬영 제작전문과정	12,000
73-01	정규	대구경북언론학회	정규 학위과정	3,800
27-09	단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회	현업인대상 사이버교육	38,300
60-01	단기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소출력공동체 라디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7,800
20-01	정규	한국방송작가협회	정규 학위과정	22,800
27-01	단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회	Avid MCA Effects 1~4	5,000
42-07	단기	한국방송제작기술협회	HD제작방송미술재교육	3,900
43-01	단기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스테디캠 촬영교육	29,700
61-02	단기	한국언론재단	전문인력 연수교육(전문연수)	63,000
61-01	단기	한국언론재단	전문인력 연수교육(기본연수)	14,800
27-03	단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회	HDTV 다큐멘터리 촬영과정	6,800
37-02	단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문화학교 단기과정	14,800
42-02	단기	한국방송제작기술협회	HD제작 무대조명 재교육	3,900
46-01	정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 방송인력 육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57,600

27-06	단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회	현업인대상 IPTV정책과정	2,100
74-02	단기	한국성우협회	언어담당자 연수	15,300
76-01	정규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 석박사 학위지원	24,000
51-01	단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제작 실무종사자 광고심의 연수교육	20,300
30-01	단기	여의도클럽	방송지도자연수	17,200
27-04	단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회	현업인대상 HDTV방송제작 기술과정	4,300
19-01	장기	한국PP협회	방송경영 및 마케팅 전문인력연수교육	50,400
69-02	장기	영상창조연구회	방송 고위경영자 IT교육사업	25,200
37-01	단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문화학교 일반과정 및 저작권문화학교 연수워크숍	22,500
74-01	단기	한국성우협회	우리말 바르게 하기 교육	23,400
52-01	단기	한국데이터방송협회	데이터방송 신규인력 양성	31,900
66-01	단기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사이버방송광고 아카데미운영	33,600

3 향후과제

교육사업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모제를 통한 참여 폭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규모를 늘리고, 교육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방송종사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신규 참여자의 교육의욕을 고취시키는 등의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평가 및 발전방향

1 평 가

방송발전기금은 '04년부터 규제 위주의 방송정책 기본방향을 「기금」이라는 자율적이고 탄력적 재원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 진흥이 필요한 정책의 한 영역으로 전환시켰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통한 방송의 질 향상 및 다양성 확보 등 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킨 것은 동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방송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첫째, 2000년 이전 규제 위주의 방송정책 기본방향을 「기금」이라는 자율적이고 탄력적 재원을 활용하여 적극적 진흥이 필요한 정책의 한 영역으로 전환시켰다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공익성 등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재정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방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즉, 일부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정부가 제한된 사업기회를 분배함으로써 편중·발생하게 된 이윤의 사회적 환원 통로 역할을 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셋째,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통해 방송의 질 향상 및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넷째, '남북방송교류' 및 '해외한국어방송' 등에 지원함으로써 방송을 매개로 한 민족 동질성 확보의 계기를 조성하였다.

2 발전방향

방송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환경변화를 맞아 분야별·사업별 중장기 추진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기금운용 전략 및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이 결국 기금사업 추진의 효율성·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마련 중인 중장기 재원배분 정책방안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화로 인한 시청자의 양극화(Digital Divide)를 최소화하는 등 시청자의 방송주권 구현을 위한 적극적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기금운용 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간점검 결과가 사업계획 수립에 피드백(feed-back) 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된다면 디지털, 방송통신융합 등으로 대별되는 방송환경 변화의 시기에 방송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소기의 성과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금사업 수행 기관(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연간 지원대상 기관(단체)의 50% 이상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방송발전기금 회계처리 기준 및 기금사업 수행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양형제」 마련 등과 같은 검사 시스템의 체계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향후 기금사업 회계검사와 방송발전기금 운용평가 등을 통해 기금지원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금운용 및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10장
방송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제1절 방송에 관한 연구·조사 / 308
제2절 방송정책자료 발간 / 332
제3절 평가 및 발전방향 / 341

제1절

방송에 관한 연구·조사

1 조사연구 사업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실현과 방송산업 활성화, 시청자복지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연구 및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의 기관·단체 중심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이 사업별 공모방식을 도입했다.

나. 추진실적

조사연구사업은 '조사연구사업'과 '조사연구관련사업'으로 대별된다. '조사연구사업'은 위원회 연구센터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이며, 외부 단체 등에 보조하는 '05년 저술발간 및 세미나 지원사업 등은 조사연구관련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그 동안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의 조사연구·조사연구관련사업의 예산과 업무를 연구센터(기금사업비)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가능하게 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체계를 정비하는 등 조사연구사업의 발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방송정책·산업·광고, 방송기술, 콘텐츠, 수용자, 지역방송, 유통 및 노동시장, 통계기반 등 7대 부문별로 조사연구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 개별단체 지원은 ▲지정과제 부문, ▲자유과제 부문으로 나뉘며, 정기지원 시 위원회는 16개 지정과제에 대해 RFP를 제시하여 공개경쟁에 따른 역량 있는 연구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지정과제 현황>

연번	과 제 명	연번	과 제 명
1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9	SO 방송, 인터넷 번들링 상품 적정수신료 연구
2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연구	10	지상파DTV 수신환경 조사
3	재난방송 평가기준 마련 연구	11	방송시장 경쟁상태 보고서
4	신규이동휴대방송과 DMB 관계설정 연구	12	국내제작 프로그램 기준연구
5	디지털라디오방송의 효율적 송출망 구축방안 연구	13	독립제작사 육성방안 연구 :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개념 및 권리분할 모델
6	라디오(중단파)방송의 특성화 방안 연구	14	기금사업 수행단체 회계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7	방송프로그램 수집·보관·유통 전문기관 설립방안 연구	15	방송 공익성과 지역성 구현을 위한 기금징수제도 연구
8	SO 직접사용채널 운영 관련 연구	16	2005년도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총 16과제		

2006년 4월 현재 사업규모는 총 43억2,500만원으로, 이 중 '조사연구 연구개발비'에 총 27억원(방송위원회 자체수행 사업 12억원, 외부 개별지원 사업 15억원)과 '조사연구관련사업'에 총 16억2,500만원(방송위원회 자체수행 관련 사업 5억7,400만원, 외부 개별지원 관련사업 9억2,145

만원, 외부 개별지원 관련사업 운영비 1억2,955만원)이다.

조사연구사업의 심사평가는 '정책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과제) 선정을 위한 심사를, '정책과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를 하도록 이원화하였다.

조사연구관련사업의 심사평가는 저술발간 및 세미나 각 부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평가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조사연구사업 정책과제심의위원회/정책과제평가위원회 구성>

	정책과제심의위원회	정책과제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7인 - 내부 3 : 상임위원 1(위원장), 연구센터장 1, 연구위원 1 - 외부 4 : 회계사 1, 각분야별(정책/산업/기술) 1	○ 30인 내외 - 3개 분과 : 정책·산업·기술 - 각 분과별 평가위원 10인 내외 구성 - 위원회 자체사업 중 간접수행(외부용역) 및 지정과제의 경우 위원회 사무처 당해과제 담당부서장이 당연직 위원
위촉 기간	○ 1년간	○ 1년간(단,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
운영	○ 전체회의 3~5회/년 ○ 추가지원·수시지원시 개최	○ 전체회의 2~3회/년 ○ 정책과제심의위원회에서 추천·구성
직무	○ 연구과제 사업계획서 심의 ○ 최종 지원대상·지원액 위원회에 건의 ○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평가위원회 결과보고 사항 접수·심의 등	○ 중간평가 ○ 사업수행 결과평가 ○ 정책과제심의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

기타	○ 정기지원 결과 잔액발생시 추가지원 실시 ○ 추가지원 사업심의 담당 ※ 위원회 자체사업 중 간접수행(외부용역) 및 외부개별지원 지정과제에 대한 추가지원시 심의 담당	○ 추가지원 사업평가 담당 ※ 위원회 자체사업 중 간접수행(외부용역) 및 외부개별지원 지정과제에 대한 추가지원시 평가 담당
추천의뢰단체 및 피추천인 자격	○ 방송관련 각 학회 ○ 다음 기준에 따라 추천 ① 관련 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② 해당과제 지원자(응모자) 배제 ③ 조사연구과제 평가관련 유경험자 ④ 연구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재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	○ 다음 기준에 따라 정책과제심의위원회에서 추천 ① 관련 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② 해당과제 지원자(응모자) 배제 ③ 조사연구과제 평가관련 유경험자 ④ 연구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재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

<조사연구관련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조사연구관련사업 심사위원회
위원구성	○ 5인 - 내부 2 : 연구센터장 1(위원장), 연구위원 1 - 외부 3 : 회계사 1, 미디어 관련 교수 1, 저술발간 현업전문가 1
위촉기간	○ 1년간 (연임가능)
운 영	○ 정기·추가지원 전체회의 각 4~5회 / 년
직 무	○ 저술·발간, 세미나·토론회 등 지원 사업계획서 심사 ○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액 위원회에 건의 ○ 사업 중간·결과평가 등
추천의뢰단체	○ 방송관련 각 학회

<조사연구 심사·평가항목>

평가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가중치(지정)	가중치(자유)
연구과제의 독창성	연구주제 독창성	•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새로운 지식이나 이해를 창출하는가	5%	10%
	연구방법 독창성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도구)을 시도하는가 • 새로운 분석기법을 활용하는가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연구내용 적절성	• 연구내용이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 기존 연구성과를 계승, 심화시키는 것인가	15%	15%
	연구방법 타당성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연구수행 능력	연구실적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20%	20%
	연구능력	•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참여 연구진의 역할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 기관/단체의 연구지원 및 관리 시스템이 적절한가*		
연구비·연구기간의 적정성	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목표 대비 연구비 규모가 적정한가 • 연구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10%	10%
	연구기간의 적정성	• 연구목표 대비 연구기간이 적정한가		
정책업무와의 연계성	정책 실효성	• 관련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 관련 정책의 방향(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30%	20%

	현장 활용도	•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어느정도 활용 가능한가		
연구의 공적기여도	사회적 파급효과	• 후속 연구 파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관련된 사회적 담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15%	15%
	공공복리 증진효과	• 시청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가 •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가		
연구의 시의성	현실 이슈 반영	• 연구주제가 현실적 이슈를 어느정도 반영하는가	5%	10%
	사회적 공감대	• 연구주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어느정도 반영하는가		
계			100%	100%

<저술발간사업 심사·평가항목>

평가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배점
사업 공통 평가	사업목적의 적합성	• 사업목적(필요성)이 명확한가 •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이 적은가	10
	사업의 공적 기여도	• 사업의 결과가 관련 후속 사업을 파생시킬 수 있는가 •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10
	추진계획의 적절성과 구체성	• 사업목표 대비 사업기간이 적절한가 • 추진 계획대비 예상되는 결과물이 구체적인가	10
	사업수행능력	• 사업 수행기관의 지원/관리시스템이 적합한가	10
	예산편성의 적정성	• 연구목표 대비 소요예산이 적정한가 • 예산편성의 산출내역이 적정한가	10
	소계(점수×가중치 40%)		50
세미나·토론회 사업능력 평가	주제의 창의성	• 지금까지 취급하지 않았던 주제인가 • 새로운 논의를 창출하는가	10
	주제의 시의성	• 주제가 현실 이슈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 • 사업의 주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	10

세미나·토론회 사업능력 평가	수행주체의 전문성 및 관련실적	• 기존의 세미나·토론회 사업실적이 풍부한가 • 기존의 실적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했는가 • 사업의 결과가 관련 학문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10
	정책적, 학문적 활용도 및 현장 활용도	• 사업의 결과가 정책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가 • 사업의 결과가 현장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가 • 사업의 결과가 관련 학문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10
	소계(점수×가중치 60%)		40
매칭펀드 조성규모 평가	• 20%(위원회) : 80%(자체)이상 : 6점, • 30%(위원회) : 70%(자체)이상 : 5점 • 40%(위원회) : 60%(자체)이상 : 4점, • 50%(위원회) : 50%(자체)이상 : 3점		

<세미나·토론회사업 심사·평가항목>

평가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배점
사업 공통 평가	사업목적의 적합성	• 사업목적(필요성)이 명확한가 •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이 적은가	10
	사업의 공적 기여도	• 사업의 결과가 관련 후속 사업을 파생시킬 수 있는가 •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10
	추진계획의 적절성과 구체성	• 사업목표 대비 사업기간이 적절한가 • 추진 계획대비 예상되는 결과물이 구체적인가	10
	사업수행능력	• 사업 수행기관의 지원/관리시스템이 적합한가	10
	예산편성의 적정성	• 연구목표 대비 소요예산이 적정한가 • 예산편성의 산출내역이 적정한가	10
	소계(점수×가중치 40%)		50
저술사업 능력평가	저술내용의 창의성	• 지금까지 저술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새로운 지식이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가	10

저술사업 능력평가	저술주체의 전문성	• 기존의 저술실적이 풍부한가 • 기존의 저술실적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했는가	10
	정책적, 학문적 활용도 및 현장 활용도	• 사업의 결과가 정책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가 • 사업의 결과가 현장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가 • 사업의 결과가 관련 학문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10
	출판계획의 적정성	• 출판계획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가	10
	소계(점수×가중치 60%)		40
매칭펀드 조성규모 평가	• 20%(위원회) : 80%(자체)이상 : 6점, • 30%(위원회) : 70%(자체)이상 : 5점 • 40%(위원회) : 60%(자체)이상 : 4점, • 50%(위원회) : 50%(자체)이상 : 3점		

2006년 4월 현재 지원실적은 '조사연구 사업' 분야에 개인 7, 17개 단체, 46개 과제에 총 11억2,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조사연구관련 사업' 분야에서는 '저술발간' 부문에 20개 단체의 27개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세미나' 부문에 17개 단체의 19개 사업에 1억970만원을 지원하였다.

다. 향후과제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있어서의 공모제의 취지는, 경쟁 방식을 도입하여 신규 단체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능력 있고 의욕 있는 신규사업(자)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2006년에 처음 실시한 정기지원의 결과는 당초 공모제 도입 취지에 부합되고 수혜단체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모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모제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여 연구결과물의 질 제고는 물론, 업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R&D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개발과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방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센터가 방송위원회의 씽크 탱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비전과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연구사업 선정대상 및 지원액>

■ 개인 7, 단체 17, 과제 46, 11억1,418만원

기 관 명	과 제 명	지원액 (천원)
정석우	(지정)기금사업 수행단체 회계검사 제도개선 방안 연구	17,920
한국언론정보학회	(지정) 지역미디어센터와 퍼블릭액세스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36,400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지정) 지상파DTV수신환경실태조사	67,42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지정)SO방송, 인터넷 번들링 상품 적정수신료 연구	18,450
한국방송학회	(지정)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연구	46,90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지정)라디오(중단파)방송의 특성화방안 연구	8,950
한국방송학회	(지정) 독립제작사 육성방안 연구 :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개념 및 권리분할모델	23,740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지정)SO직접사용채널운영연구	16,440
권상희	(지정)방송시장경쟁상태보고서	30,800

한국언론정보학회	(자유) 지상파 DMB, IP-TV 도입에 따른 기존 미디어 및 모바일 미디어 소비와의 대체성연구	38,840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자유)방송콘텐츠 은닉정보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개선방안 연구	18,400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자유)방송통신융합시대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방안 연구	36,00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유)한류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한 방송연예매니지먼트산업의 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12,290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자유)여성미디어워치모델의 실천방안연구	24,470
한국헌법학회	(자유)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한 헌법개정에 있어 헌법상 방송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	32,000
김은미	(자유)어린이 청소년의 매체정책 수립을 위한 수용실태 조사	36,000
한국언론재단	(자유)디지털 방송정책의 통신 패러다임과 문화패러다임의 균형화 방안	21,650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자유)방송정책 현안을 둘러싼 국회 내 논의의 특성에 관한 연구	21,600
정용준	(자유)방송의 지역성 개념 제도화와 지역성 지수개발	13,650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유)방송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 조사연구	40,00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유)방송프로그램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견본시 활용방안 연구	12,65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유)미디어 교차소유와 겸영에 따른 방송산업 구조변화의 해외주요국 사례연구	13,270
(사)한국뉴미디어 방송협회	(자유) 방송산업 재정분석 및 요금정책	29,350
(사)한국뉴미디어 방송협회	(자유) 디지털시대, 방송의 공익성 정립방안	25,690
한국방송학회	(자유) T-Commerce의 방송산업 파급효과와 정책방안 연구	34,220

한국언론재단	(자유)방송법에 규정된 프로그램장르 분류기준의 재개념화와 세분화를 통한 방송정책 공익성 강화방안 연구	19,710
방정배	(자유)HDTV 콘텐츠 육성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19,130
성동규	(자유)신규디지털미디어의 도입에 따른 방송산업 경영전략 조사연구	30,42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자유)SO지역채널의 프로그램포맷 연구	14,000
조삼섭	(자유)방송토론프로그램의 공공성 확보와 공론장 기능 활성화방안	27,720
한국방송학회	(자유)말레이시아 지역의 한류현상실태 조사연구	26,950
(사)한국홍보학회	(자유)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 및 효율적 정책수행을 위한 홍보방안	16,880
한국언론재단	(자유)언론수용자의식조사	26,090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자유)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 내용분석과 시청자들의 평가간 비교연구	22,400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자유)외국인 자본투자 및 콘텐츠가 방송산업과 수용자에 미친 영향 조사분석	29,36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유)디지털방송 콘텐츠 보호를 위한 복제방지 기술연구	10,710
(사)한국지역산업진흥학회	(자유)지역방송 광고의 실증적 가치분석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30,380
전국언론노동조합	(자유)황우석 방송보도 관련 게이트키핑 연구	26,600
(사)한국PP협회	(자유)콘텐츠 경쟁력 향상방안-PP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6,92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유)중국의 디지털 뉴미디어산업 시장연구 - 모바일, IPTV를 중심으로-	11,21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유)포스트 한류를 대비한 국내 TV애니메이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방안연구	9,52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유)동아시아 주요국의 드라마산업 비교연구	14,480
전국언론노동조합(지역방송협의회)	(자유)방송통신융합시대 지역방송의 정체성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14,000

(사)한국뉴미디어 방송협회	(자유) 방송콘텐츠의 OSMU 실태분석을 통한 경쟁력 향상방안	27,52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유)융합시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개혁을 위한 심층연구	7,360
(사)한국광고홍보학회	(자유) CATV 홈쇼핑 평판지수화에 관한 연구	25,720
29개 대상	지정/자유 총 46개 과제	1,114,180

<조사연구관련사업 선정대상 및 지원액>

【저술발간】

■ 20개 단체, 27개 사업, 7억5,000만원

기관명	사업유형	사업명	신청금액	지원액 (천원)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	동향지	동향과분석	70,210,000	56,500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전문지	계간 저작권	41,160,000	33,000
(사)한국광고 단체연합회	총람	아시아광고산업총람	60,000,000	33,200
(사)한국광고 홍보학회	단행본	방송광고와 광고비평	15,000,000	12,000
(사)한국광고 단체연합회	전문지	광고계동향및 분석	91,600,000	50,700
한국방송카메라 기자협회	단행본	TV보도영상론	47,460,000	38,000
(사)미디어미래 연구소	동향지	Digital Media Trend	30,114,000	24,400
한국언론재단	총람	신문방송연감	53,362,000	15,300
한국디지털케이블 연구원	단행본	전문편성PP 제작유통실태평가	57,580,000	46,100
(사)한국방송학회	단행본	디지털매니아와 포비아	15,000,000	12,000

(사)한국광고업협회	총람	Advertising Yearbook 2006	36,000,000	28,800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전문지	방송문예	123,732,000	28,000
(사)열린미디어연구소	전문지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40,000,000	78,800
한국언론재단	전문지	미디어월드와이드	55,926,000	14,000
(사)한국PP협회	동향지	콘텐츠개발	46,188,000	32,700
한국기자협회	전문지	저널리즘	13,517,000	9,500
한국언론재단	전문지	신문방과 방송	206,528,000	51,500
(사)한국영상제작학회	전문지	전문지발간	15,120,000	10,700
한국방송카메라맨연합회	동향지	VIEW	20,000,000	14,30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전문지	프로그램텍스트	40,400,000	28,300
(사)한국광고사진가협회	총람	디지털광고사진연감	27,400,000	19,200
문화사회연구소	단행본	방송의 문화다양성	13,717,000	10,500
(사)한국광고학회	단행본	광고와 사회	15,000,000	9,800
(사)한국광고단체연합회	총람	광고인명록	11,100,000	5,400
(사)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총람	2006 TV-CF연감	49,600,000	34,800
(사)한국광고업협회	총람	한국광고작품연감 2006	60,000,000	42,000
(사)한국방송학회	단행본	디지털 미디어와 광고	15,000,000	10,500
20개 단체		27개 사업		750,000

【세미나·토론회】

■ 17개 단체, 19개 사업, 109,700천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월	지원액(천원)
광고학회	방송광고의 사회적 기능	4	4,800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방송탐사저널리즘 원칙과 현실	3	8,000
광고홍보학회	춘계학술세미나	4	5,600
방송학회	말레이지역 한류현상 실태	7	12,000
방송공학회	디지털 방송기술 워크숍	5	7,200
방송기자클럽	정통부장관 초청 세미나	5	3,500
방송기자클럽	신임 방송위원장 초청 세미나	7	4,800
방송제작기술협회	HD방송 제작환경 개선	5	1,900
방송프로듀서연합회	동아시아 방송PD 포럼	10	10,000
언론인협회	위성-지상파DMB 상생방안	3	4,200
기자협회	방송기자 세미나	6	4,200
기자협회	아시아 기자 포럼	11	10,400
방송작가협회	한일 드라마 장단점 비교	5	10,500
방송연기자협회	정기세미나	6	4,200
케이블기술인연합회	케이블TV 방통융합기술세미나	4	4,000
영상창조연구회	좋은프로그램 대상작품 평가	5	4,200
방송기술인연합회	디지털 지상파방송 전문가 토론	3	3,100
영상제작학회	방송영상 제작기술 세미나	4	3,000
PP협회	콘텐츠 품질향상 방안 세미나	6	4,100

2 방송정책연구

가. 사업개요

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실현과 방송산업의 활성화, 시청자 복지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방송관련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기본방향과 토대를 제공하고,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방송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송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를 수행,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2004년 7월 신설된 연구센터에서 방송, 법제, 방송기술, 통신, 경제, 통계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활발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정책연구는 방송위원회의 정책수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연구자간의 연구방향 조정 및 의견조율을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수립을 위하여 시의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센터의 연구위원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거나, 관련 분야의 연구업적과 전문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제고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표 1> 정책연구 목록(2003년)

번호	제 목	소주제	연구자
1	2003년 TV시청행태 연구	TV시청행태 연구	이은미(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 전문위원)

<표 2> 정책연구 목록(2004년)

번호	제 목	소주제	연구자
1	2004년 TV시청행태 연구	TV시청행태 연구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2	해외방송 발전전략 연구	제1장 개 요 제2장 한국의 해외방송 제3장 외국의 해외방송 제4장 해외방송의 발전 전략 제5장 요약 및 제언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3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공익과 경쟁 :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공익과 경쟁의 개념의 변천 Ⅲ. 영국 Ⅳ. 프랑스 Ⅴ. 결론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신동희(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정보통신대학 조교수)

<표 3> 정책연구 목록(2005년)

번호	제 목	소주제	연구자
1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지역방송 위상재정립 연구	제1장 방송환경 변화와 지역방송 제2장 지역방송의 기회와 위협 제3장 각 국의 지역방송 제4장 방·통 융합 환경에서 지역방송의 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윤석년(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관규(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성민(브루넬 대학 박사과정), 박진우(파리 5대학 박사과정)
2	어린이 매체중독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어린이 매체중독에 관한 문헌 연구 제3장 조사방법 제4장 연구결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나은영(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송종현(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3	2005년 TV시청행태 연구	TV시청행태 연구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정용찬(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4	'한류'지속을 위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연구	'한류'지속을 위한 방송산업 경쟁력 비교 분석 및 제고방안	이종원(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한류 방송'의 지속적 교류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 동아시아 문화교류 관점에서	원용진(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5	방송통계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Ⅰ. 연구 개요 Ⅱ. 방송통계의 개념 정의와 범위 Ⅲ. 방송통계 현황과 문제점 진단 Ⅳ. 미국과 캐나다의 방송통계 Ⅴ. 영국의 방송통계 현황 Ⅵ. 프랑스의 방송통계 현황 Ⅶ. 일본의 방송통계 현황 Ⅷ. 방송통계관리시스템 발전 방안 Ⅸ. 중장기 추진 전략 Ⅹ. 결 론	정용찬(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강현철(호서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조교수), 오세성(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소 연구위원), 허지수(미국 미네소타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김설아(프랑스 파리 2대학 미디어·정보·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 안임준(영국 러프버러대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박사과정), 정수영(일본 상지대학 신문학과 박사과정)
6	이동수신방송 시장과 이용행태 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이동수신방송 개관 제3장 이동수신방송 이용행태 분석 제4장 이동수신방송 시장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박흥식, 이종원, 송종현, 전한얼, 정용찬(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7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수요 분석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디지털전환의 파급효과 제3장 지상파 디지털 방송 추진현황 제4장 외국의 디지털 전환 사례 제5장 디지털TV 수요 조사 제6장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의 지연요인과 대책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김광호(서울산업대학교 매체공학과 교수), 구문모(한라대학교 미디어홍보학부 교수), 이재호(동아방송대학 방송보도과 교수), 정재하(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8	방송허가·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 연구	강종근(미국 Illinois 주립대학 교수)
		영국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연구	김대호(인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일본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연구	김영덕(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독일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연구	김형성(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지성우(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프랑스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연구	하윤금(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한국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연구	김창규(한국문화재관리학교 교수)
9	방송·통신 융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미국의 방송통신융합 법제도 연구	윤석민(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김규찬(서울대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실 연구원)
		프랑스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홍석경(프랑스 보르도3대학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연구	한영학(일본 北海學園대학교 법학부 교수)
		독일의 방송통신 융합법제도 연구	권영호(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지성우(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영국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장일(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유의선(이화여자대학교 언론영상홍보학부 교수)
10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류체계 정비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송종현(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제2장 미국의 방송통신 서비스분류 체계	신동희(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조교수)
		제3장 영국의 방송통신 서비스분류 체계	송민정(한국통신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제4장 프랑스의 방송통신 서비스분류체계	박성호(호남대 커뮤니케이션학부부교수)
		제5장 독일의 방송통신 서비스분류 체계	김진웅(선문대 언론광고학부 조교수)
		제6장 일본의 방송통신 서비스분류 체계	이연(선문대 언론광고학부 부교수)
		제7장 한국의 방송통신 서비스분류 체계	김도연(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교수)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송종현(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다. 향후과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미래예측적인 방송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전문 인력의 확충과 연구센터 조직의

보강을 통한 연구역량의 강화와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정책연구 보고서와 외부 지원 조사연구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내 유일의 방송분야의 전문 정보센터로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방송산업실태조사

가. 사업개요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발간사업의 목적은 국내 방송산업의 주요 분야별 통계현황을 파악·분석하여 이를 정책수립과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방송산업과 관련한 통계를 생성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방송산업에 대한 기초 및 누적 통계를 작성하여 통계자료를 체계화하고, 누적자료에 기초해 중장기 방송산업의 발전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신규매체 도입에 따라 방송산업 분류 및 기본통계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작업을 선행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변화된 방송매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수행 방법으로는 과거의 설문지 조사방식에 따른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조사 작업의 과학화를 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위원회 홈페이지에 '방송산업 실태조사' 창(window)을 마련해 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과거 용역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센터가 직접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통계 작성의 엄밀성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였고, 통계청 및 통계작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사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명실 공히 국내 방송관련 주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

다. 2006년 4월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

나. 추진실적

▶ 2003년

- 조사담당 : 방송위원회
- 수행기관 :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조사방식 : 전수조사 및 조사표에 의한 설문조사
- 조사대상 및 조사업체 수

사 업 구 분	조사대상 사업자수	조사된 업체수	
지상파방송사업자	42 개사	42 개사	(100.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49 채널) 123 개사	(125채널)101 개사	(82.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19 개사	118 개사	(100.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408 개사	341 개사	(83.6%)
음악유선방송사업자	78 개사	8 개사	(10.3%)
프로그램 제작사	92 개사	28 개사	(30.4%)
전광판방송사업자	53개사	23 개사	(43.4%)
위성방송사업자	1 개사	1 개사	(100.0%)
기타 방송관련사업자	(지주회사)2 개사	2 개사	(100.0%)
합 계	918 개사	664 개사	(72.3%)

- 조사기준일 및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02. 12. 31(일부항목 2003. 6월 기준)
  - 조사 대상기간 : 2002. 1. 1～12. 31(1년간)
  - 조사 실시기간 : 2003. 6. 16～7. 13(28일간)
- 조사항목(주요 내용)
  - 사업일반현황(TV 보급대수, 종사자, 부가가치 등 사회통계 항목)
  - 방송사업 현황(매출액 및 비용 세부내역, 사업결합, 시설현황 등)
  - 방송운영 현황(방송시간 및 편성비율 등)

•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현황(제작비, 외주, 수출입 등)
• 방송서비스 현황(가입자 수, 가격, 채널구성 등)
• 세계 디지털방송 현황

▶ 2004년

- 조사담당 :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 조사방식 : 전수조사 및 웹(web) 설문을 통한 인터넷 조사
- 조사대상 및 조사업체 수

사 업 구 분	조사대상 사업자수	조사된 업체수	
지상파방송사업자	43 개사	43 개사	(100.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42 채널) 159 개사	(331채널)151 개사	(95.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19 개사	119 개사	(100.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254 개사	209 개사	(82.3%)
음악유선방송사업자	72 개사	10 개사	(13.9%)
전광판방송사업자	42 개사	25 개사	(59.5%)
위성방송사업자	1 개사	1 개사	(100.0%)
기타 방송관련사업자	(지주회사)2 개사	2 개사	(100.0%)
합 계	737 개사	556 개사	(75.4%)

- 조사기준일 및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03. 12. 31(일부항목 2004. 6월 기준)
  • 조사 대상기간 : 2003. 1. 1～12. 31(1년간)
  • 조사 실시기간 : 2004. 7. 22～8. 7(15일간)
- 조사항목(주요 내용)
  • 사업일반현황(TV 보급대수, 종사자, 부가가치 등 사회통계 항목)
  • 방송사업 현황(매출액 및 비용 세부내역, 사업결합, 시설현황 등)
  • 방송운영 현황(방송시간 및 편성비율 등)
  •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현황(제작비, 외주, 수출입 등)
  • 방송서비스 현황(가입자 수, 가격, 채널구성 등)

▶ 2005년

- 조사담당 :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 조사방식 : 전수조사 및 웹(web) 설문을 통한 인터넷 조사
- 조사대상 및 조사업체 수

사 업 구 분	대상 사업자수	조사 사업자수	
지상파방송사업자	43 개사	43 개사	(100.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42 채널) 144 개사	(331채널)139 개사	(96.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19 개사	119 개사	(100.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198 개사	146 개사	(73.7%)
음악유선방송사업자	63 개사	14 개사	(22.2%)
전광판방송사업자	45 개사	30 개사	(66.7%)
일반위성방송사업자	1 개사	1 개사	(100.0%)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1 개사	1 개사	(100.0%)
합 계	614 개사	493 개사	(80.3%)

- 조사기준일 및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04. 12. 31(일부항목 2005. 6월 기준)
  - 조사 대상기간 : 2004. 1. 1～12. 31(1년간)
  - 조사 실시기간 : 2005. 6. 7～7. 15(38일간)
- 조사항목(주요 내용)
  - 사업일반현황(TV 보급대수, 종사자, 부가가치 등 사회통계 항목)
  - 방송사업 현황(매출액 및 비용 세부내역, 사업결합, 시설현황 등)
  - 방송운영 현황(방송시간 및 편성비율 등)
  -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현황(제작비, 외주, 수출입 등)
  - 방송서비스 현황(가입자 수, 가격, 채널구성 등)

다. 향후과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방송형 서비스인 IPTV, WiBro, HSDPA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방송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의 산업적 중요성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신규 매체 도입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은 방송정책 수립과 일반 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제2절 방송정책자료 발간

1 「방송연구」 발간

가. 사업개요

「방송연구」는 방송학자 및 방송전문가,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수록하여 방송문화 발전과 미래지향적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방송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년에 2회(여름·겨울) 발간하고 있다. 「방송연구」는 지난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정식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으며, 2006년 현재 창간 24주년을 맞아 방송학계에서 방송관련 논문들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나. 추진실적

<표 1> 방송연구 목록

2003년 여름호	기획논문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방송저널리즘의 미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저널리즘의 변화 : 뉴스룸 조직과 기자 기능의 융합을 중심으로	황용석(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뉴스가치에 관한 소론	심재철(고려대학교 언론학과 교수)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방송저널리즘 윤리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보도의 선정성• 폭력성과 디지털 영상조작을 중심으로	유홍식(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재난보도 방향	김성재(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논문	미국의 매체규제 완화 논쟁	김승수(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웹조사의 모집단대표성 확보를 위한 성향가중(Propensity Weighting)모형의 적합성 검증	김원용(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홍철(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정보미디어•서비스의 여가적 수용에 대한 문화적 근접성 연구	양은경(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 콘텐츠의 수익 창출 구조에 대한 연구 : 드라마 <올인>을 중심으로	이문행(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 승인 정책의 시장 효과에 대한 연구	이상식(계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시청자 프로그램 품질 평가가 채널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 경쟁적 방송환경에서 공영방송 편성전략을 위한 이론적 모형 검증	이준웅(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은미(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심미선(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프로그램의 전환가속화 방식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 종합구성물에 대한 실험처치 사례를 중심으로	주영호(SBS 편성본부 연구위원)

2003년 겨울호	기획논문	방송매체의 관계 정립 및 발전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산파적 역할 : 지상파방송 뉴미디어 참여	박창희(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관계정립방안	이병섭(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케이블TV 규모의 경제	조은기(성공회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SO와 PP간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	이상기(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논문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KBS, MBC, SBS, EBS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내용분석	나미수(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송종길(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시(時) / 공간(空間)' 및 '공(公)/사(私)'개념의 변화	윤태진(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 이창현(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호규(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소출력 FM 도입을 위한 일본 사례 연구	이만제(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 한·미간의 판례 고찰을 중심으로	이재진(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텔레비전 시청 조절능력 척도 개발과 타당성 검증	허경호(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2004년 여름호	기획논문	방송·통신 융합의 방향과 정책과제	
		방송·통신 융합의 사회적 맥락	윤석민(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송종현(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강사)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방석호(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통합규제기구의 위상과 역할	김창규(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 산업의 변화	전범수(한국방송통신대 방송정보학과)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해외사례 비교분석	이상우(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책임연구원)
		방송·통신 융합과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	이수영(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연구논문	케이블TV 가입자의 만족도 결정 요인 연구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위원) 박창희(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본원칙과 불공정거래행위 분석	정인숙(청운대학교 방송영상산업학과 교수)
		자기성찰적 텔레비전의 문화 정치적 가능성	전규찬(한국예술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박근서(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주5일 근무제 실시가 TV시청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용준(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미디어효과 지각과 광고규제 및 보도강화에 대한 태도	한미정(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김종은(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석사과정)

2004년 겨울호	기획논문	방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텔레비전과 문화다양성, 질 평가의 연관성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현행 방송평가제 개선연구	강남준(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수용자 참여 방송평가 시스템의 개발	배현석(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호준(방송위원회 평가분석부 선임조사관) 조성호(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허경호(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주창윤(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연구논문	외주 시장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따른 비공식적 신뢰 구조 개입에 대한 연구	권장원(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전임강사)
		텔레비전 서사연구의 메타분석	김훈순(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디지털TV 채택요인에 관한 연구	주정민(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위원회의 주의·경고 및 권고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오준근(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상파 위성동시재송신 정책의 논쟁과정과 그 평가	윤상길(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사) 홍종윤(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사)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의 한국시장 유통 전략에 대한 연구	이문행(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은경(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본 텔레비전과 인터넷 이용의 상호관계성 탐구	황용석(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2005년 여름호	기획논문	신규방송서비스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DMB 도입과 정책적 쟁점	도준호(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융합화 현상의 이론적 고찰 및 WiBro, W-CDMA, DMB 시장	장범진(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데이터방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시훈(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소출력 FM방송의 도입 현황 및 정책방향	박천일(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IP-TV 도입의 영향 요인과 정책 쟁점	김도연(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연구논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연구 : 시청자의 장르별 사회적·개인적 중요도 측정	권상희(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PP의 전략 집단별 성과의 분석	권호영(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지상파 3사의 미디어 신뢰도와 TV뉴스 이용에 관한 연구 : 대학생들의 선호집단별 미디어 신뢰도 평가를 중심으로	성동규(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상호(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경쟁적 방송환경에서 민영방송의 프로그램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유홍식(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황성연(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강사) 주영호(SBS 기획본부 정책팀 연구위원) 박종민(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TV 장르 트렌드 국제 비교 연구 : 90년대 이후 한국·미국의 지상파 TV의 인기 장르 비교를 중심으로	이종수(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디지털 미디어 액세스 : 개념의 확대와 범위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정애리(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박사후과정)
		TV뉴스의 영상구성에 대한 패러다임 연구 : TV카메라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최민재(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2005년 겨울호	기획논문	방송광고 정책, 과제와 대안	
		방송광고시장 규제원칙에 관한 소고 : 최근의 방송광고 제도 개선 논의를 중심으로	조은기(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광고 정책, 과제와 대안 : 미디어렙 도입의 현실적 수순	김민기(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방송광고 정책, 과제와 대안 : PPL을 중심으로	문철수(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가상광고의 도입에 따른 공론화와 쟁점에 대한 논의	이경렬(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부 부교수)
		디지털 쌍방향 데이터 방송환경에서의 방송광고 정책 및 과제	김봉현(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연구논문	디지털케이블방송의 잠재적 수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 :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의사를 중심으로	최용준(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 임성원(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평가 : 지역성 지수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강명현(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독립SO와 MSO의 시장행위 및 성과 분석	전혜선(방송위원회 평가분석부 선임조사관)
		텔레비전 방송시간 자율화와 24시간 사회 등장의 문화적 의미	임종수(EBS 정책기획실 전문위원)
		자아 정체성과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행위 :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한 상징적 상호작용의 경험적 측정	박석철(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매체 자율등급심의 모델의 유형화 : 방송, 영화, 비디오, 게임을 중심으로	조연하(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사학부 강사) 배진아(공주대학교 영상광정보공학부 교수)
		채널내/채널간 전 회차 드라마 시청률의 상호영향력 분석 : SUR 모형을 중심으로	이종성(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박노성(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소 연구위원) 오세성(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소 연구위원)

다. 향후과제

방송의 정책수립 및 행정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에서 학술지를 발간하여 방송관련 학문 발전을 진작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방송연구」가 지속적으로 방송정책 자료의 근간을 제공하고 권위 있는 학술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기획 주제의 선정과 엄격한 논문심사를 통하여 학술적, 효용적 가치가 높은 연구 결과들로 방송 현장과 학계를 연결함으로써, 방송관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방송계와 방송학계의 동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방송조사자료」 발간

가. 사업개요

국가의 방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다른 국가의 방송현안과 방송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기초적인 직무이면서도 무척 중요하다. 위원회는 방송정책 및 행정의 주무기관으로서 다른 국가의 방송법제, 방송행정, 규제정책, 방송산업분석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방송조사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방송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방송에 관심이 있는 학자, 관련기관 종사자, 일반 시청자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방송조사자료」는 방송위원회 직무와의 연관성, 방송정책에의 활용도,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성 등을 감안하여 연 평균 3회 정도를 번역, 발간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간된 주요 내용은 방송산업, 방

송정책, 주요국가의 방송법 등으로 발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간번호	제 목	번역자
2003-1	케이블 산업의 수평집중 : 실험적 분석	강명현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2003-2	다매체시대 방송산업의 성장전략 : 디지털화의 영향	정순일 전 주일공사
2003-3	영국커뮤니케이션법(상)	송준영 기독교 인터넷 방송 마케팅 팀장
2004-1	영국커뮤니케이션법(하)	송준영 기독교 인터넷 방송 마케팅 팀장
2004-2	영국의 디지털 전환정책	송종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2005-1	BBC 왕실 칙허장에 대한 검토	김승수 전북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2005-2	방송행정의 법구조와 과제	최형식 전 경인방송 보도국 기자
2005-3	미국 1394년 통신법	성선제 영산대학교 법학부 교수

다. 향후과제

「방송조사자료」의 번역·발간은 방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방송 관련 학계, 단체,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간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방송법제 및 산업 동향에 대한 번역이 주로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국가의 자료를 발굴하여 번역·발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제도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규제 문제, 방송의 산업화에 대한 경제성의 문제 등으로 다각화하여 정책지원 자료로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제3절

평가 및 발전방향

1 평 가

위원회는 방송 관련 장·단기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학제간 연구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처하는 유연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위원회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왔다. 방송관련 연구조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방송의 질적 향상과 수용자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문과 정책자료 발간을 통하여 국내외 방송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방송산업 전반의 기초 통계자료의 조사와 수집을 통해 신뢰성 있는 방송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2004년 7월 신설된 연구센터에서는 방송, 법제, 경제, 기술, 통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 14권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방송정책수립의 토대를 제공하고, 방송·통신 구조개편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보고서를 통하여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처한 방송위원회 정책수립의 기초를 다졌다. 또한 종전에는 각종 단체나 연구기관에 흩어져 있어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었던 연구조사 사업을 연구센터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조사 사업의 효율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게 되었다. 2006년부터 외부단체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사업에 공모제를 도입하여 개인 7인 및 17개 단체에 조사연구 사업 총 46과제를 선정·지원하였고, 저술발간은 20개 단체에 27개 사

업, 세미나·토론회는 17개 단체, 19개 사업을 선정·지원하여 방송관련 연구·조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방송관련 기본통계구축 사업으로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국내 방송산업을 총 망라하고, 주요 분야별 기초통계를 체계화하여 국내 방송산업의 동향과 발전 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름과 겨울, 연 2회 간행되고 있는 「방송연구」는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다져오면서 금년에 창간 24주년을 맞이하고 방송정책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권당 12편 내외의 방송관련 학술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연 3회 발간되는 「방송조사자료」는 국내외 방송동향과 추세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송관련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를 제공하고 있다.

2 발전방향

위원회 연구조사 사업은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효율적 연구체계 확립을 통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대비한 방송위원회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예상되는 방송구조 개편에 대응한 미래예측적인 연구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센터의 효율적 조직보강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성과기반의 운영을 통해 연구수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학·연 공동연구와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능력과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위원회 연구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정책연구 보고서와 외부 지원 조사연구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내

유일의 방송분야 전문 정보센터로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방송 산업과 방송 수용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축적하여 신뢰성 있는 방송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중심 센터를 구축하고 방송현안에 대한 각종 간행물과 이슈 자료집을 통해 국내외 방송 동향 및 추세 변화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방송관련 지식 정보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11장

남북 방송 및 대외협력·교류

제1절 남북 방송교류 / 346
제2절 대외협력·교류 / 355
제3절 평가 및 발전방향 / 377

제1절 남북 방송교류

1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 지원

가. 사업개요

방송은 그 파급효과와 영향력으로 인해 남북의 문화와 의식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이다. 따라서 50여 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이질화된 상대방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가는데 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 방송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 시대를 견인해 나가기 위한 방송교류·협력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초기에는 단순히 북측의 협조를 받아 북측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북측 방송영상물을 구매하여 편성하는 데 불과하였으나, 남북 방송교류가 본격화되면서 남북 공동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한반도 전역에 방송하는 등 제작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KBS가 북측 조선중앙TV를 통해 외주 형식으로 제작된 드라마를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남북 방송교류의 영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위원회는 그 동안 우리 방송사들이 효율적으로 방송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01년 6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또한 방송교류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측 방송행정·규제기구와의 직접 교류를 통해 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1년 12월 북측 조선중앙방송위

원회에 남북 방송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2002년 8월 협의 창구를 개설하였다. 남북의 방송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와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방송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2002. 8. 26)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남북 방송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에서는 민족화해와 협력시대를 맞아 방송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면서 남북 방송교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방송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방송법 개정(2005. 4)을 통해 남북 방송교류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27조12호(방송위원회 직무)와 제35조2제1항(남북간 방송교류협력)에 근거하여 남북 방송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38조제11호(기금의 용도)에 따라 남북 방송교류 협력 및 남북 공동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1) 남북방송인 토론회

남북 방송교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방송인 사이의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는 남북방송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방송인 토론회에서는 남북 방송인이 만나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공동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차 방송인 토론회는 2003년 10월 15일~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 남측은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

을 대표로 하여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위성방송, 학계, 관계 부처 등 130여명의 방송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북측은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약 100여명의 방송인들이 참여하였다. 1차 방송인 토론회에서는 방송제작, 방송언어, 방송기술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분야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방송체제와 방송이념 등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분야에서의 남북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차 방송인 토론회는 2005년 9월 3일~6일의 3박 4일 일정으로 금강산(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남측은 성유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방송계·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 7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북측은 양시운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약 40여명의 방송관계자가 참여하였다. 2차 방송인토론회에서는 방송제작과 방송기술 분과 2개 분야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남북 방송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남북 방송영상물 소개모임

위원회는 방송이 상대 방송영상물을 편성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방송영상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남북 방송영상물 소개모임(방송영상물 견본시)을 개최하였다. 남북 방송영상물 소개모임에서는 상호 방송영상물의 교차구매가 이루어졌으며, 남북의 방송사가 상대 방송영상물을 편성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북측 관계자는 2003년 구입한 남측 방송영상물 중 8편을 23회에 걸쳐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하였다고 밝혔다.

1차 남북 방송영상물 소개모임은 2003년 10월 17일~19일까지 2박 3

일 일정으로 1차 방송인토론회와 함께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 방송영상물 견본시를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시내 한복판에 부스가 설치되었다. 이 행사에서 남측은 249편, 북측은 101편의 방송영상물을 모든 장르에서 출품하였으며, 남측은 66편, 북측은 14편의 상대 방송영상물을 각각 구입하였다. 또한 특별관을 마련하여 장르별로 남북의 대표적인 방송영상물 4편을 각각 선정하여 양측의 방송관계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시사회를 갖고 양측의 방송제작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2차 남북 방송영상물 소개모임은 2005년 10월 31일~11월 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금강산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남측은 표철수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대표로 하여 40여명의 방송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북측은 김상순 교육문화TV편집국장을 대표로 하여 방송관계자 20여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남측은 모든 장르에서 118편의 방송영상물을 출품하였고 북측은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총123편을 출품하였으며, 남측은 114편, 북측은 22편의 상대 방송영상물을 각각 구입하였다. 2차 행사는 1차 행사에 비해 방송영상물 가격이 더욱 낮아졌으며 2배가량 매매가 늘어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진전된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방송설비 지원

우리 방송사들이 북측 지역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원활한 제작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공동 이용을 위한 방송설비를 북측에 지원해왔다. 방송기술 분야는 비정치적 분야로서 방송교류 전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방송교류 협력은 기술수준이 비슷할 때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북측의 방송기술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03년 디지털 방송편집·송출 장비를 지원하였다. 디지털 방송편집·송출 장비는 북측 조선중앙TV에 처음 도입되는 장비로, 우리 방송기술인들이 약 한 달여간 북측에 상주하며 방송장비를 설치해주고 관련 기술을 이전해 주었다. 또한 2005년에는 디지털 방송중계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해당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KBS 소속 방송기술인들이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방문하여 기술이전을 해주었다.

두 차례의 방송설비 지원을 통해 우리 방송사가 북측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고품질의 방송장비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방송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어,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주요 국제경기의 위성중계 지원

북측이 주요 국제경기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방송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특히 남측 선수들의 경기를 편성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남북의 선수들이 함께 참가한 주요 국제경기를 위성중계 지원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경기를 8월 15일~31일까지 타이콤 위성을 통해 전송하였다. 주 전송내용은 북측이 취재한 화면과 우리 방송사들이 제작한 경기, 그리고 국제 신호이며, 북측은 자국 선수와 남측 선수들의 경기를 비롯하여 주요 경기를 녹화 중계하였다. 특히 북측 방송인이 남측을 방문해 자체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KBS, MBC 등 방송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북측 방송인의 취재를 협조해 주었다.

2004년도에는 아테네올림픽 경기를 8월13일~9월1일까지 타이콤 위성을 통해 전송하였다. 주 전송 내용은 아테네에서 국내로 전송된

KBS-1TV 라인의 경기내용을 재전송하였으며, 북측에서 요청한 경기는 방송 3사 및 스카이라이프의 협조를 받아 추가로 전송하였다. 북측은 우리 측이 전송해준 경기 중 자국 선수들의 경기와 남측 선수들의 주요 경기, 그리고 외국의 진기한 경기 등을 선별하여 방송하였다.

2005년도에는 남측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전 경기를 7월 31일~8월 7일까지 아시아샛2 위성을 통해 전송해 주었다. 북측은 자국 선수들의 경기와 남한과 북한 선수들의 경기를 방송하였다.

5) 남북 제작협력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위원회는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위성방송, 독립제작사 등 다원화된 방송 주체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방송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남북 제작협력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실적은 2005년 KBS스카이에서 제작한 세계여자권투선수권 대회 경기 1편이었다. 제작비 지원제도가 2004년부터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지원사례가 1건에 불과한 것은, 2004년 중반 이후 남북 관계가 갑자기 경색됨에 따라 남북 방송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본 제도를 실시한 이후 우리 방송사들이 남북 방송교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 방송사들이 안정적으로 북측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 향후과제

제2기 방송위원회에서는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의 직교류와 지원사업을 통해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방송교류가 국제관계, 정치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리 방송사들이 방송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8월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남북방송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남북 방송교류를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남북방송인 토론회와 남북 방송영상물 소개모임, 방송기술 교류 등 방송교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례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남북 방송교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방송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모든 방송사들이 방송교류 사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남북 제작협력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북측과의 방송자료집 교환, 북측 방송영상물 아카이브 설치,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제작 단지를 설립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용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2제2항과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제22조에 의하여 남북의 방송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현행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업무연관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비정기적 회의로 사안발생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장에 의해 소집된다.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남북 방송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자문받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추진실적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남북 방송교류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2001년 6월 방송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해왔으며, 방송사간 방송교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의 창구를 개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북측과의 방송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였다.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중요성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난 2005년 4월 개정된 방송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지금은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방송법 제35의2제3항에 의해 마련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2005. 7. 29, 방송위원회규칙 제82호)에 따라

2005년 9월에 구성, 운영되고 있다.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남북교류가 범정부적 협조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는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방송위원회, 정부(통일부, 기획예산처),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방송계(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전문가, 통일문제 관련 단체 등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06년 8월까지(1년)이다.

또한 정책 자문을 위해 3개 분야, 즉 제도·교류협력·방송기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 향후과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남북 방송교류에 관한 정책 전반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남북 방송교류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남북 방송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방송교류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사업에 치중하여 활동해 왔으나,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방송교류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2절

대외협력·교류

1 WTO DDA협상

가. 사업개요

2001년 출범된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한 분야로서 2002년 2월 시작된 WTO 서비스협상은 12개 분야의 155개 업종에 대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에 대한 규제조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DDA 협상은 활발한 협상을 전개하다가 DDA협상의 중간 점검회의 성격을 가지는 제5차 WTO 각료회의가 농업에 대한 국가간 이견 등으로 결렬됨에 따라 소강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4년 8월 1일 July Package로 불리는 DDA협상의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문이 채택되고 제6차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모멘텀이 회복되면서 활발한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방송은 시청각 서비스의 한 분야로서 라디오·텔레비전 서비스, 라디오·텔레비전 전송서비스로 분류되며, 관련 서비스로는 영상·비디오제작·배급서비스 등이 있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방송은 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의 특성상 자국내 1차 시장의 기반을 잃게 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방송영상물이 가지는 문화적·산업적 특성 때문에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방송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쿼터제, 소유규제, 세제혜택 및 직접 지원금 등 보조금 제도와 지원기구 설립 등의 정책을 수립, 운용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17개 부·처(청, 위원회)로 구성된 정부 서비스협상대책체계에 참여하여 방송서비스와 관련한 입장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다자 차원의 협상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방송에 대한 국내 규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동남아, 중국 등 관심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방송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협상 목표로 하고 있다.

WTO 서비스 협상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방송시장 개방을 요청한 바, 해당 국가와의 양허협상을 통하여 우리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방송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국에 대하여는 방송쿼터, 케이블방송의 외국인 투자제한 금지 철폐 등 방송시장 일부의 개방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양허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1) 한·싱가포르 FTA

동아시아의 무역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와의 FTA(2005.8.4 서명)는 양국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며,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싱가포르 FTA는 상품분야 관세철폐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경제협력 등 다양한 무역·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양국은 경제발전과 사회문화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무역 및 투자의 진흥, 방송, 환경,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방송 분야의 경우, 양국간 협력을 권장하고 상세내용은 부속서에 규정

하였다. 부속서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방송 등 방송정책 관련 의견교환, 싱가포르 내에서의 우리나라 텔레비전 채널 재송신 등에 대한 협력 등이다.

또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와 관련,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시장접근과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양국간 투자를 저해하는 이행의무 부과금지, 고위경영자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방송분야에 있어 양국은 방송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래조치까지 유보하였다.

2) 한·EFTA FTA

2005. 12. 15 서명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랜드·리히텐슈타인)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선진 경제권이자 유럽의 전형적인 강소국으로 구성된 국가군이다.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EFTA는 FTA를 통하여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내 무역의 비중은 낮고 산업간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이므로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교역자유화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EFTA FTA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개방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현재 WTO DDA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면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의 완충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 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양측은 GATS를 기본으로 하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한 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은 GATS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서비스시장의 개방 분야를 규정하는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의 작성과 관련, 방송서비스의 경우 양측은 정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양허하지 않았지만,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대한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및 추가적 약속은 부속서 XI에 규정하였다.

특히, 양측은 방송 프로그램의 공동제작과 관련, 일방 당사국의 최저 자본기여비율이 20%이상인 공동제작물에 대하여 유통상에 있어서의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관계자의 출입국과 방송장비의 반출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방송 쿼터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진입이 자유로운 국가의 콘텐츠로 인정하기로 하여 우리나라 방송의 유럽 진출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의 경우 국가별 콘텐츠 규제가 아닌 EU Directive에 의한 유럽산 콘텐츠 쿼터 규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FTA국가와의 공동 제작물은 우리나라와 해당 EFTA회원국뿐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유통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제작은 시장의 확대, 문화 다양성의 고양, 선진 제작기술의 습득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중요한 시청각서비스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R협상시 시청각서비스 공동제작에 관한 최혜국 대우 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제작물에 특혜를 주는 공동제작협정의 체결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S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최혜국 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FTA를 통해 한·EFTA FTA에서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물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한 절차규정은 2007년 개최 예정인 제1차 한·EFTA FTA 위원회 회의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3) 한·ASEAN FTA

2005. 12. 13 한국과 ASEAN간 FTA 기본협정이 체결되어 한국과 ASEAN 10개국간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ASEAN FTA 기본협정은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협정을 포괄하

는 모조약이며, 19개 분야의 다양한 협력을 규정하는 경제협력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투자협상은 2006년 2월에 개시되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방송 분야의 경제협력은 방송산업통계, 정책·규제에 관한 정보교환, 신규방송서비스의 공동 개발, 방송인력의 교육·훈련과 케이블·위성을 통한 방송채널 재송신을 포함하고 있어, 추후 세부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동남아 지역의 한류를 우리 관련 산업의 이익으로 연계하고 ASEAN 시장의 우회 진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향후과제

신규 방송 서비스 도입과 새로운 규제모델 개발 등을 감안할 때, 무역협상과의 관계에서 방송에 관한 국내 규제정책의 자율성과 탄력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우리나라의 입장이 관철되어 종료된 칠레, 싱가포르, EFTA와의 FTA협상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WTO DDA서비스협상, 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협상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2 외국 방송당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규제와 정책 분야의 정보 교환과 방송산업 발전에 관한 양자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방송 주관청과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동 사업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까지 싱가포르, 베트남, 브라질, 뉴질랜드, 인도, 독일의 방송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나. 추진실적

1) 싱가포르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2005. 1. 19, 싱가포르를 방문, DMB시연회를 갖고 싱가포르미디어개발청(MDA, Media Development Authority) 탄친남(Tan Chin Nam) 위원장과 방송 분야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동 양해각서 체결은 한·싱가포르 FTA 협력부속서중 방송에 관한 규정의 이행이다. 주요 내용은 방송 규제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TV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산업계간 협력 장려, 방송 인력의 교육 훈련, 첨단 방송서비스 공동 개발, 방송관련 국제행사를 통한 상대국 방송 콘텐츠의 마케팅 협력과 상대국 방송의 재송신 장려 등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활발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MIPTV-Milia(2005. 4월, 깐느) 한국의 날 행사, Broadcast Asia(2005. 6월, 싱가포르), 서울국제방송컨퍼런스(2005. 11월, 서울) 등 양국이 주관한 국제행사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위성·케이블을 통한 상대국 채널의 재송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2) 브라질

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과 아마랄(Amaral) 브라질 방송통신위원회(ANATEL) 위원장은 2005. 7. 28 브라질리아에서 양국간 방송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동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하여 한·브라질 양국은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공통 관심사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 등에 있어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방송규제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협의, 양국간 방송기술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정기적 협의, 방송 주파수 및 케이블TV, MMDS 등 유료방송 분야에 관한 정보 교환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 및 방송관련 행사 참가 상호 지원 등이다.

동 협력약정 체결로 한·브라질 양국간 방송 교류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그 동안 방송콘텐츠 교류가 거의 없었던 남미 거점국가인 브라질에 우리 방송서비스와 콘텐츠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베트남

노성대 방송위원장과 또 귀저완 베트남 문화공보부 차관은 2005. 9. 8, 서울에서 한·베트남 방송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방송정책과 규제에 관한 정보와 의견 교환, 상호 이해와 친선관계의 증진을 위한 양국의 역사, 언어, 민족,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교환 및 방송 장려, 방송 경험 교환 및 방송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목적의 교환 촉진, 디지털 미디어, 첨단 방송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등 민간부문 협력 장려와 방송관련 행사 상호 참석 협조 등이다.

동 협력약정 체결은 방송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공동주관한 '베트남 문화주간' 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방적인 문화유입보다는 쌍방향 교류를 통한 자국의 방송 산업 발전을 희망하는 베트남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써 우리나라 방송의 베트남 진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4) 뉴질랜드

노성대 방송위원장과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2005. 11. 18, 부산 APEC 정상회의시 '한·뉴질랜드 시청각산업 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시청각산업 전반의 공동프로젝트 개발, 시청각물의 후반작업을 포함한 시청각 산업 관련 분야에서의 정보교환, 기술이전, 교육훈련 촉진과 시청각물의 공동제작을 위한 민간투자 장려 등이다.

동 협력약정 체결로 양국간 방송·영화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특히 방송의 경우, 우리나라 제작·편성 분야의 경쟁력과 경험, 뉴질랜드 천혜의 자연환경과 컴퓨터 그래픽 등 후반제작 분야의 장점이 결합되어 양국의 방송 산업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5) 인 도

노성대 방송위원장과 인도 통신규제위원회 Pradip Baijal 위원장은 2006. 2. 9, 인도 델리에서 '한·인도 방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방송 규제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협의, 양국간 뉴미디어 분야에서의 협력 장려, 케이블TV, 위성TV 등 유료방송 분야에 관한 정보교환,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 및 방송관련 행사 참가 상호 지원 등이다.

방송위원회는 동 방송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즈음하여, 인도에서 개최된 방송기기전인 <BES Expo>에 참가하여 인도내 주요 정책입안자들에게 직접 국내 DMB 서비스의 시연을 통한 동 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향후 인도의 이동방송 기술표준 고려시 DMB 채택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는 이동방송기술 채택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술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인도 최대의 통신그룹인 TATA는 국내 DMB에 큰 관심을 갖고 시험방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규제위원회와의 동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6) 독 일

노성대 방송위원장과 독일 주미디어청 연합의 토마스 랑아인리히 부의장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미디어청장)은 2006. 3. 14, 방송위원회에서 '한·독일 방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독 방송협력 양해각서 체결의 주요 내용은 방송정책과 규제에 관한 정보교환은 물론, 이동방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양국 유관산업간 협력 활성화를 비롯하여 디지털 미디어 교류와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내용의 양국간 방송협력 체제의 구축 등이다.

방송담당 정책 당국간의 방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급변하는 방송 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하여 한·독 방송 주무당국간 긴밀한 정책협의와 정보교환 등 상호 교류협력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독일 내에서의 본격적인 DMB 시험방송과 본방송 개시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 향후과제

해외 방송 주무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재 구축을 위하여 양해각서의 체결과 같은 제도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방송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시대 하에서 국가간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 세계의 주요 방송통신 규제정책 기관과의 양해각서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양해각서의 체결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 사업자간 협력모델 개발과 인력교육, 연구개발 사업의 공동추진 등 협력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방송의 해외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국내 프로그램 및 DMB 해외진출 지원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2005년부터 국내 선진 방송기술과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국내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TV Korea Showcase를 개최하여 국내 방송프로그램 소개를 통한 해당국과의 상호교류 확대와 국내 방송 산업의 수출증대를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DMB의 우수성을 외국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의 DMB 진출 기회를 모색하였다.

나. 추진실적

2005년 1월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제1차 동남아 방송교류협력단> 파견을 통하여, 국내 DMB 서비스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첫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특히 동 행사에서는 지상파DMB 및 위성DMB를 동시에 시연하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방송정책 당국자 및 방송 및 통신사 주요 관계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싱가포르 멀티미디어규제위원회(MDA : Media Development Authority)는 매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방송기기박람회인 'Broadcast Asia'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지 지상파방송인 미디어콥(MediaCorp)의 주파수 링크를 통한 DMB서비스 시연을 요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싱가포르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Broadcast Asia' 행사에서 DMB 전시관을 운영하고,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DMB서비스의 특징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채널의 재송신 등 한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행사를 통하여 체결한 한·싱가포르 방송협력 양해각서에 상대국 방송채널의 재송신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와 MDA 차원의 협조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하여 국내 주요 방송채널의 싱가포르 재송신이 확대될 경우, 지금까지 드라마에만 치중된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진출이 다큐멘터리 등의 기타 교양 분야로 까지 다양화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2005년 5월에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지에서 개최한 <제1회 TV Korea Showcase>에서는 미디어 컨퍼런스, 국내 콘텐츠 시연회, 비즈니스 상담회, 문화 홍보행사로 한류스타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동 쇼케이스 개최 이후 기존 한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년도 연간 수출실적 대비 174%가 증가한 103만불, 태국에서는 204% 증가한 130만불의 판매수출 상담실적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국내 프로그램이 한 번도 방영된 적이 없었던 한류의 불모지였던 인도에서는 동 행사 개최 이후 KBS의 「해신」이 인도 유일의 지상파 방송이자 국영방송인 Doordarshan TV에 판매되어 방영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7월에는 브라질과 멕시코에 <중남미 방송교류협력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DMB와 데이터방송, HDTV에 관한 발제와 시연을 통하여 국내 방송기술의 중남미 진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이 행사에는 브라질 및 멕시코 양국 주요 방송사의 기술담당 책임자 등이 참석하여 국내 뉴미디어 방송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브라질 및 멕시코에서 개최한 정책협의회 및 미디어 포럼을 통해 양국 방송프로그램의 상호교환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동 행사의 개최 성과로는 멕시코의 경우, Canal 22에서 「야생의 초원 세링게티」(MBC)와 「생명의 기적」(SBS)을, ONCE TV에서 「사랑」(KBS)

을 방영키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해외방송 채널인 아리랑TV가 브라질 NEO TV와 채널 재송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멕시코의 TV Cablemas, Telesistemas등과 채널 재송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는 브라질 케이블방송협회(ABTA)와 양국간 케이블방송 분야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06년 2월, <제2회 TV Korea Showcase>개최 및 <Broadcasting Engineering Society (BES) Expo>참가를 통하여, 인도 통신규제위원회 및 정보통신부, 주요 방송사 및 통신사의 임원진들이 참가한 가운데 DMB와 IPTV의 시연을 통하여 국내 뉴 미디어 방송 기술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인도의 유력 통신 및 방송사업자인 TATA Teleservice와 Reliance Entertainment는 국내 DMB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조만간 채택될 인도의 이동방송 기술표준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5년 5월에 개최된 제1회 TV Korea showcase에 이어 뭄바이에서 두번째로 개최된 TV Korea showcase에서는 200여명에 이르는 인도 방송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행사에 참가한 인도 방송사업자들은 국내 프로그램 중 특히 어린이용 교육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대체의학과 자연 다큐멘터리 등 문화 간극이 비교적 좁은 국내 프로그램 장르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국내 방송 프로그램보다는 자체제작을 위한 포맷 수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추진사업 내용>

시 기	사업명 (행사명)	국가명	세부 추진내용
2005년 1월	동남아 방송교류협력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 DMB 시연 : 위성·지상파 DMB 서비스 시연 • DMB 발제 : DMB 소개 프리젠테이션
5월	TV Korea Showcase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 컨퍼런스 개최, 컨텐츠 시연회, 비즈니스 상담회, 홍보문화행사(한류스타 팬사인회)
6월	Broadcast Asia 2005	싱가포르	• DMB KOREA 전용 전시관 설치 및 홍보 -전시관내 지상파 및 위성DMB 송수신 장비 설치 -싱가포르 현지 지상파방송 채널을 실시간으로 중계 시연 • 한국 DMB 추진현황 관련 컨퍼런스 발표
7월	중남미 방송교류협력단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로) 멕시코(멕시코시티)	• DMB 시연 : 위성·지상파 DMB 서비스 시연 • DMB 발제 : DMB 소개 프리젠테이션 • 국내 컨텐츠 소개 스크리닝 및 판매 상담회
9월	IBC 2005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네델란드 암스텔담	• DMB KOREA 전용 전시관 설치 및 홍보 -전시관내 지상파 및 위성DMB 송수신 장비 설치
12월	EABEX 2005 (East Asia Business Exhibition)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DMB KOREA 전용 전시관 설치 및 홍보 -전시관내 지상파 및 위성DMB 송수신 장비 설치 -현장에서 카메라 촬영을 이용한 라이브 DMB 방송 시연
2006년 2월	TV Showcase 개최	인도 (뭄바이)	• DMB 시연 : 위성·지상파 DMB 서비스 시연 • DMB 발제 : DMB 소개 프리젠테이션 • 국내 컨텐츠 소개 스크리닝 및 판매 상담회

	BES Expo (Broadcasting Engineering Society)	인도(델리)	• DMB KOREA 전용 전시관 설치 및 홍보 -전시관내 지상파 및 위성DMB 송수신 장비 설치 -프랑스 현지 지상파방송 채널을 실시간으로 중계 시연 -현장에서 카메라 촬영으로 라이브 DMB 방송 시연 • 한국 DMB 소개 컨퍼런스 발표

다. 향후과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유수 견본시 및 방송기기전 참가, 그리고 TV Korea Showcase 개최 지원을 통하여 국내 콘텐츠 및 방송관련 뉴미디어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방송 산업의 해외진출은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당해 규제를 관장하는 기관 간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해당국 방송 규제기구와의 정책협의와 연계하여 이와 같은 행사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국제방송컨퍼런스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2005년 11월 16일~18일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기존의 BCWW(Broadcast Worldwide) 국제영상견본시와 연계한 국제방송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총 5개 트랙 22개 세션이 진행되었고, 전 세계에서 85명의 연사들이 참가하여 미래 방송환경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나. 추진실적

1) 방송전문 국내 최대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방송컨퍼런스로서 '컨버전스', '뉴미디어', '콘텐츠', '소비자' 등의 다양한 주제로 3일 동안 총 5개 트랙, 22개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18개국 85명(해외 80% 이상)의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하였으며, 총 1,354명이 참관하였다.

2) 수준 높은 방송·통신 융합 전문 컨퍼런스 개최

올 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BCWW 행사는 금년부터 방송위원회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여 컨퍼런스 부문을 대폭 확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래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컨퍼런스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향후 BCWW가 아시아 시장을 대표하는 국제 견본시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컨퍼런스 세션 이외에도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한 국내외 방송종사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국제간 네트워킹을 위한 만찬을 개최하였으며, 미국 FCC, 말레이시아 MCMC, 헝가리 ORTT, 이집트 ERTU 등과는 별도의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국간 정보교류 및 방송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 MCMC와는 양국간 방송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 분	11. 16(수)	11. 17(목)		11. 18(금)	
트랙명	Convergence	Business Affairs	Global Update	Consumer Trends	*Promax & BDA
10:00 - 11:00	Keynote 1 방송통신융합정책(FCC, Ofcom, MDA, 방송위)	Keynote 3 이재웅 :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Farrell Meisel : Alhurra 방송설립 책임자		융합시대의 광고 시장 전망	멋진 홍보물 제작 기술
11:20 - 12:30	IPTV 전망 및 향후 전략	미디어 투자, 합병, 인수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전략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광고 현재와 미래	성공적인 홍보물 최근 경향 : 북미
14:00 - 15:10	모바일TV의 미래	융합시대의 기존사업자(지상파)들의 생존전략	아시아 시장 진입 전략	뉴미디어시장 진입전략	성공적인 홍보물 최근 경향 : 아시아
15:30 - 16:40	한국 DMB 현황과 전망	TV Format Trends	아시아 콘텐츠 세계 진출을 위한 협력 전략	Screening	채널 정체성을 위한 디자인 기획 과정
17:00 - 18:00	Keynote 2 Casey Harwood (터너유럽부회장)	TV Format Screening	국제 다큐 공동제작 포럼		글로벌 브랜드의 현지화 전략

다. 향후과제

'국제방송컨퍼런스'가 방송관련 최신 정보의 교류와 관련 논의의 장으로서,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미래 방송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아시아의 대표적 방송관련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5 MIPTV/Milia2005 '한국의 날' 개최

가. 사업개요

방송위원회는 프랑스 칸느에서 4. 11~15 기간 동안 100여개국 3,600여 관련 방송사 및 관련기업 대표들을 포함한 약 1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IPTV/Milia2005 행사의 주빈국으로서 '한국의 날(Korea Day)'을 비롯한 일련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MIPTV/Milia 2005 '한국의 날' 공식행사>

행사명	일 시	내 용
한국 전시관 오프닝 행사	4. 11 10:00-11:30	한국 참관자 전원 참석
현지 기자회견 개최	4. 11 17:30-18:30	내외신 기자 30여명 참석 '한국의 날' 행사 집중 설명
한류 컨퍼런스 "What makes Korean Drama so Hot?"	4. 12 10:00-11:30	국내 발제자 : KBS, MBC, 에잇트픽스(독립제작사) 국외 발제자 : NHK(일본), ImaginAsianTV(미국)
Digital Korea 컨퍼런스	4. 12 11:45-13:00	발제: KT, SK텔레콤, SBS, ETRI
부스 오프닝 행사	4. 12 11:00-11:30	프랑스 문화부장관, 리드미뎀(주최측), 칸느시장, 방송위원장, 주불한국대사 등 참석
VIP 한국 DMB 전시관 방문	4. 11 ~ 4. 13	프랑스 문화부장관, 유엔 사무차장, 리드미뎀 사장, BBC 월드와이드 사장, 각국 규제기관장(프랑스 CSA·ART, 독, 헝, 싱) 및 위원
DMB 컨퍼런스	4. 14 14:30-15:15	발제 및 시연 : KBS, ETRI, TU미디어
규제기관간 정책협의회	4. 12 16:00-16:30	싱가포르 부스 방문 한-싱 규제기관장 환담
	4. 12 17:00-18:00	한-독 규제기관간 정책협의
	4. 13 11:00-12:00	한-불 규제기관간 정책협의

	4. 13 12:30-14:20	규제기관장 오찬(형, 싱, 독)
한국의 날 VIP 만찬	4. 12 17:30-22:30	국내외 VIP 220여명 참석
주 프랑스 대사 만찬	4. 11 19:30-22:00	위원회, 방송사업자, 관계 기관 대표
한국 DMB 전시관 운영	4. 11 ~ 4. 15	장소 : 리베라 시뷰
문화공연	4. 11 ~ 4. 13	한국전통문화연구원(만찬/야외공연)

나. 주요성과

1) '한류'의 탈아시아화

아시아권에 국한된 '한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내 발제자들이 '한류'의 개념과 현상,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 등을 집중 소개하고, 외국의 발제자들은 각각 한국 드라마가 일본 사회에 미친 파급효과와 한국 드라마의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모든 참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 콘텐츠 수출 촉진

'한국의 날' 행사를 통해 '한류'에 대한 소개와 한국 콘텐츠에 대한 홍보 강화로 지상파방송사 및 독립제작사 등 한국 콘텐츠 판매 부스에는 국내 드라마 및 다큐멘터리에 대한 유럽 바이어들의 문의가 이어졌으며, 이번 행사를 통한 국내 프로그램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194%가 증가한 816만 달러로 집계되는 등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였다.

3) 디지털 융합과 U-Korea

'디지털코리아' 세션에서는 'The Ultimate Convergence Country'라는 주제 하에 브로드밴드, 모바일기술, 디지털방송을 비롯한 방송 통신 융

합기술을 포함한 한국의 선진방송 및 통신기술을 소개하고, ‘e-Korea’에서 ‘u-Korea’로 거듭 나고 있는 디지털 한국을 홍보함으로써 뉴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세계 각국의 250여명의 참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첨단기술 분야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기술을 널리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4) 국내 DMB 기술의 해외진출 모색

‘DMB’ 세션에서 국제 표준화가 한창 추진되고 있는 지상파DMB와 2006년 4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위성DMB 서비스의 소개를 통하여 ‘이동방송(Mobile Broadcasting)’이라는 세계적 트랜드를 선도하는 미래 선진 방송으로서의 DMB방송을 집중 조명하였다.

‘DMB’ Showcase 및 전시관에서 TV카메라가 관객석 및 회의진행 현장을 라이브로 직접 촬영, 현장에 비치된 DMB 단말기를 통하여 참석자가 이를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등, DMB가 국제 디지털방송 기술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DMB 시연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다양한 해외 VIP들의 전시관 참관을 적극 유도하여 큰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DMB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도모하였다.

특히 타에네르트(헤센주 미디어청장 겸 독일연방 미디어규제기관장) 위원장과의 한·독 방송위원회 정책협의에서는 독일 지역에서의 DMB 실험방송과 ’06년 독일 월드컵시 DMB를 통한 실시간 이동방송 실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5)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한국의 날’ VIP 만찬에서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의 주요 아시아 국가와 독일, 프랑스, 헝가리,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의 귀빈을 초청하여 한국의 방송 산업과 콘텐츠를 홍보하는 내용의 영

상물을 소개하고 전통문화 공연으로 한국을 알리는 등 규제기관 및 방송사업자간의 네트워킹 강화의 장을 제공하였다.

6) 국제적 방송교류 협력 강화

프랑스 방송위원회(CSA) 및 통신위원회 위원, 헝가리 방송위원회(ORTT) 위원장, 독일 주미디어청(DLM) 위원장, 싱가포르 미디어발전위원회(MDA) 위원장 등 각국 규제기관 대표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각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방송교류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하는 등, 정책협의 측면에서의 성과 또한 컸다.

특히,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와는 정기적인 정책교류협의회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양해각서의 체결을 추진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교류협력의 성과가 있었다.

7) 한국문화 홍보

한국의 날 만찬을 포함, 행사장 앞 광장에서의 수차례 한국 전통문화 공연을 펼쳐, <Le Figaro> 등 현지의 언론들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이를 1면에 보도하는 등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한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다. 향후과제

MIPTV/Milia2005를 통하여 '한국의 날' 및 '한류', '디지털코리아', 'DMB' 등의 한국방송 관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의 주요 방송관계자들을 초청한 한국의 날 만찬, DMB 시연부스 운영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방송의 위상을 드높였다. 따라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 최대 견본시인 MIPTV/Milia에서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콘텐츠와 세계 최고 수준의 진일보한 방송관련 뉴 미디어 기

술을 전시하고 홍보함으로써, 방송 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와 국제 경쟁력 증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방송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6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가. 사업개요

세계화의 진전으로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 및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송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이 방송위원회로 일원화(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2004. 11. 8)됨에 따라 방송법 제38조제8호 및 제97조를 근거로 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 목적은 해외 한국어방송의 질적 제고를 통해 600만 재외동포들의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여 민족 정체성 유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해외 한국어방송을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 설정하여 방송을 통한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나. 추진실적

2005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총 12.3억원을 방송장비, 콘텐츠, 연수·교육 분야에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분	지원 세부내역	금액
방송장비	16개 해외한국어방송사에 405개 방송장비	8.7억원
콘텐츠	5개 해외한국어방송사에 30개 방송콘텐츠 멕시코 방송콘텐츠 재제작비 지원	3.04억원
연수·교육	동북3성 해외한국어방송관계자 추가교육 등	0.2억원
실태조사	3회 실시	0.33억원

다. 향후과제

방송을 통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은 재외동포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는 지원사업 초기로 방송장비·콘텐츠·운영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과 아울러 한민족의 동질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동 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평가 및 발전방향

1 평 가

방송위원회는 우리나라 방송의 해외 수출기반 확대를 위하여 무역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EFTA와의 FTA협정에 공동제작물에 대한 특혜부여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하였으며, 캐나다, 인도, EC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도 이 같은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2005년도 국제방송컨퍼런스는 'How Will Convergence Shape the Content of Tomorrow?'를 주제로 디지털 융합 환경에 대비한 산업·정책적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해 방송의 글로벌 마케팅을 촉진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MIPTV/Milia2005를 통하여 '한국의 날' 및 '한류', '디지털코리아', 'DMB' 등의 한국방송 관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의 주요 방송관계자들을 초청한 한국의 날 만찬, DMB 시연부스 운영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방송의 위상을 드높였다.

2 발전방향

신규 방송 서비스 도입과 새로운 규제모델 개발 등을 감안할 때, 무역

협상과의 관계에서 방송에 관한 국내 규제정책의 자율성과 탄력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종료된 칠레, 싱가포르, EFTA와의 FTA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관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WTO DDA 서비스협상, 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협상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방송 주무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재 구축을 위하여 양해각서의 체결과 같은 제도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양해각서의 체결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 당사국 사업자간 협력모델 개발과 인력교육, 연구개발 사업의 공동추진 등 협력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방송의 해외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005년부터 2006년 초까지 여러 차례 세계 유수 방송기기 박람회에 참가하여 DMB 서비스를 시연하는 전시관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회 기간 중 함께 개최되는 컨퍼런스에도 참가하여 DMB의 기술적 특징을 소개하였다. 또한 TV Korea Showcase 개최 및 방송교류협력단 파견을 통하여 국내 방송 콘텐츠의 전시와 미디어 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DMB 시연 및 발제도 진행하여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방송 산업의 해외진출은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당해 규제를 관장하는 기관 간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해당국 방송 규제기구와의 정책협의와 연계하여 이와 같은 행사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 록

1. 제2기 방송위원회 연표(2003. 5. 10～2006. 4. 30) / 380
2. 제 소속위원회 운용현황 / 389
3. 방송위원회 발간자료 / 398
4. 부서별 정책자료 / 405
5.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2003～2005) / 412
6. 방송위원회 대상 프로그램(2003～2005) / 419
7. 주요 보도자료 /425
8. 주요 사진자료(2003～2006.4) / 445
9. 방송매체별 사업자 현황 / 456
10. 지역별 방송사업자 현황 / 457
11. 유료방송 서비스별 지역 가입자 현황 / 458
12. TV 수상기 등록 현황 / 459
13. TV 보급률 / 460

1 제2기 방송위원회 연표(2003. 5. 10~2006. 4. 30)

2003

5. 10.	대통령 방송위원회 위원 9인 임명 (대통령 3인 : 盧成大, 柳淑烈, 趙庸煥, 국회의장 추천 6인 : 閔丙畯, 朴埈永, 成裕普, 梁輝夫, 尹鍾保, 李孝成)
5. 10.	대통령, 위원장(위원장 盧成大), 부위원장(부위원장 李孝成)임명
5. 20.	상임위원 구성(상임위원 朴埈永, 成裕普, 梁輝夫)
6. 3.	위원장, 사무총장 임명 (사무총장 表哲洙)
	법안검토소위원회 구성
6. 17.	방송위원회회의공개등에관한규칙 개정·의결
6. 19.	마산종합유선 검찰 고발
6. 24.	2003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확정
7. 1.	아름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보류
7. 8.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디지털방송 전환 320억 지원
7. 9.	PP산업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7. 11.	집중심의 내용 사전 예고 실시
7. 22.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사장 高錫晩)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감사 姜東淳)
7. 29.	방송법개정법률안(부처협의안) 수정 의결
8. 4.	분과별 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8. 13.	정보통신부와 제1차 「방송·통신분야 정책협의회」 개최
8. 19.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위원장 高興淑)
8. 25.	방송위원 워크숍 개최
9. 1.	방송위원회 위원 행동강령 및 직원윤리규정 제정·시행
9. 2.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추천 의결
9. 4.	한국교육방송공사 비상임이사(4인) 선임
9. 8.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위원장 梁輝夫)
9. 25.	전국 47개 지역 신규 중계유선 허가추천 거부
10. 15.	2003년도 남북방송인토론회 및 방송영상물 소개모임 개최

10. 17.	2003년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워크숍 개최
10. 20.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부 디지털TV 해외조사계획 합의
10. 21.	경남지역 민영방송 정책방안 확정
10. 22.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10. 23.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10. 30.	케이블TV 방송정책 및 기술워크숍 개최
11. 13.	일본방송 2차 개방정책 전문가토론회 개최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부 디지털TV 해외실태조사계획 합의
11. 19.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2차 전문가토론회 개최
11. 24.	2003년도 지상파중앙방송사장협의회 개최
11. 28.	기타 시 • 군지역 지상파TV 방송사 디지털방송 허가신청기한 연기 결정
12. 9.	제17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林尙源)
12. 22.	2003년도 방송위원회 대상 시상식 개최
12. 24.	DTV 전환일정 등 방송계 현안 등에 관한 방송4사 사장단 면담
12. 26.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관련 공청회 개최
12. 30.	일본방송 2차 개방계획 발표

2004

1. 6.	방송법 위반 44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과태료 처분
1. 19.	광역시 소재 지상파TV 디지털방송 개시시한 조정 결정
2. 2.	디지털TV 해외실태 주요 조사결과 발표
2. 6.	지상파방송의 미디어선거 관련 한시적 방송시간 연장 승인
3. 11.	2003년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 발간
3. 23.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활성화 정책 발표
5. 11.	승인기간 만료되는 3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주)우리홈쇼핑, (주)한국농수산방송, (주)현대홈쇼핑) 재승인
5. 12.	DVB-H 해외현황조사 결과 발표
5. 15.	방송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5. 18.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추천 의결
5. 19.	방송심의규정 개정시안 공청회 개최
6. 8.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위원장 尹鍾保)

6. 15.	방송사 자율심의확대·강화차원에서 '경고', '주의' 조치 삭제 결정
6. 25.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와의 정책 간담회
6. 30.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공청회 개최
	(주)큐릭스광진성동방송 등 7개사 재허가추천 의결
	재난방송 종합매뉴얼 확정, 방송사에 권고
7. 8.	디지털TV 전송방식 등에 관한 4인(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KBS,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대표 합의
7. 9.	광역시 및 기타 시·군지역의 디지털방송 전환일정 의결
7. 19.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부산·경남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7. 23.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 방향 대통령 보고
7. 26.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수립
7. 29.	소출력 라디오방송 도입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8. 4.	중국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실태조사 발표
8. 10.	각 부문별 심의위원 27인 위촉
8. 11.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 발표
8. 24.	2004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제작지원금 30억 확정
8. 31.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9인 위촉(위원장 朴竣永)
9. 1.	노성대 위원장, 美 FCC 위원장과 정책협의
9. 3.~9. 5.	디지털시대 선포식 행사 개최
9. 7.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梁輝夫)
9. 14.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정
9. 21.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업무정지 10일 부과
10. 5.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관련 채널정책방안 의결
10. 8.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및 심사계획 의결
10. 15.	데이터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0. 25.	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방안 확정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재허가추천 의결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개정
10. 26.	42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50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추천 심사결과 발표

11. 4.~ 11. 6.	제9회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라운드테이블 개최
11. 8.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 구성(위원장 李孝成)
11. 10.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기공식
11. 15.	(주)문화방송 재허가추천
11. 16.	8개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 선정
	(주)강원민방 재허가 추천심사 관련 청문실시
11. 2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기본방안 확정
	데이터방송 정책방안 의결
11. 25.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11. 26.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채널구성 기본방향 확정
11. 30.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 6.	(주)SBS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의결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 의결
12. 8.	방송통신융합시대 제도정비방향 마련 전문가토론회 개최
12. 10.	(주)강원민방 재허가추천 의결
12. 1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TU 미디어) 발표
12. 15.	지역채널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 개최
12. 21.	(주)경인방송 재허가추천 거부 의결
12. 23.	보도전문편성 채널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12. 2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서 교부
12. 27.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정책방안 확정
12. 29.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2005

1. 11.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세부심사기준 등 확정
1. 14.	전환승인관련 대법원 승소 판결
1. 17.	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 시행
1. 19.	싱가포르 미디어발전위원회(MDA)와 방송협력약정(MOU) 체결
1. 25.	싱가포르, 'Broadcast Asia' 위성 DMB 중계 방송위에 요청
1. 26.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지상파 디지털전환 2010년 완료 로드맵 합의

1. 27.~ 1. 29.	케이블TV 10주년 기념 전문가 워크숍 개최
1. 27.	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최초 승인
2. 1.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자 선정방안 확정
2. 4.	방송교류활성화협의회 구성·운영
2. 15.	공익성 제고 위한 전문편성 고시(안) 마련
2. 22.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2. 22.	KBS 비상임 이사(추천 白承憲), 시청자불만처리위원(위촉 申東玖),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위촉 朱哲煥) 의결
	HD방송 확대방안 의결
	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2. 23.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2. 24.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표
2. 25.	2005년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자 선정
2. 28.	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 정책방안에 관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3. 2.	시청자불만 알림이 서비스 실시
3.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계획 보정 요구
3. 11.	방송위원회 대상 선정 및 시상식 개최
3. 15.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사장 權寧晩)
3. 22.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3. 25.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 콘텐츠 활용방안 마련 전문가토론회 개최
3. 28.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발표
3. 30.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지상파 DMB 전국확대 방안 등 정책방안 마련
4. 1.	방송발전기금 징수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토론회 개최
4. 4.	방송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토론회 개최
4. 6.	2004년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 발간
4. 11.~ 4. 15.	MIPTV/MILIA2005 한국전시관 개관(프랑스 칸)
4. 12.	경남지역 민영방송 방송권역 광역화 추진방안 확정
4. 19.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방안 확정
4. 2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개선방안 마련
4. 27.	보도전문편성채널 운용 관련 공청회 개최
5. 9.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마련 토론회 개최

5. 11.	지자체 방송채널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5. 16.~ 5. 18.	방송평가에관한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5. 17.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사업자 선정방안 등 확정
5. 18.	말레이시아 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장과 정책 협의
5. 26.~ 6. 2.	TV코리아 쇼케이스 2005 실시(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6. 14.~ 6. 17.	Broadcast Asia2005, 지상파 및 위성DMB시연·홍보(싱가포르)
6. 21.	공익성 제고위한 전문편성분야 고시 시행
	2005년 방송사업자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
6. 28.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발표(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주)YTNDMB, 한국DMB(주))
7. 1.	주 5일근무제 대비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7. 2.~ 7. 4.	금강산에서 제2차 남북방송인 토론회 개최
7. 11.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사업자 선정 발표((주)부산방송)
7. 13.	캐나다 통신정책점검위 의장 방송위원회 방문
7. 26.~ 8. 2.	브라질·멕시코 방송교류협력단 파견
7. 26.	공익성방송 14개 채널 선정
	브라질 통신부 장관과 방송정책 회담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 위촉
7. 28.	브라질과 방송협력약정서 체결
8. 2.	한-멕시코 정책협의회 및 Media Forum 개최
8. 5.	한-중 방송기관장 정책협의
8. 8.	서울산업대와 관학협약 체결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8. 11.	경남지역 광역화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의위원회(보도교양, 연예오락, 상품판매) 위원 27인 위촉
8. 23.	방송채널사용사업(PP)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8. 30.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 임명(센터장 愼鏞憲)
8. 31.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위원장 朴埈永)
9. 1.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정책공조 합의

9. 7.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기본정책 결정
9. 8.	방송위원회·베트남 문화공보부, 방송협력 MOU 체결
9. 12.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9인 위촉(위원장 成裕普)
9. 29.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 공청회 개최
10. 4.	충남연합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취소
10. 5.	호주 방송통신위원회(ACMA)와 교류협력 논의
10. 12.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 허가추천 거부소송 승소
10. 14.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0. 18.	HomeCGV에 방송심의 관련 첫 시정명령 조치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확정
10. 21.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중 일부 정정
10. 24.	지상파방송 운용시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0. 25.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보류
10. 28.	방송품격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10. 31.~ 11. 2.	남북방송영상물 소개모임, 북측과 공동 개최(금강산)
11. 2.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 개시
11. 4.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 허가추천 거부 소송 승소
11. 7.	방송위원회-KOTRA간의 MOU체결
11. 9.	지상파TV 방송시간 단계적 자율화 추진
11. 15.	지상파DMB, 지상파PP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행정예고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안 공청회 개최
11. 16.~ 11. 18.	BCWW 국제방송컨퍼런스 개최
11. 18.	한-뉴질랜드 방송·영화분야 협력 약정서 체결
	말레이시아와 방송협력 공동성명 채택
11. 23.	13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추천 의결
11. 25.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부산)
11. 29.	방송평가에관한규칙 개정
11. 30.	태광MSO와 한국레저낚시방송(FSTV) 분쟁조정
12. 6.	YTN, MBN, GS홈쇼핑, CJ홈쇼핑 재승인 의결
12. 8.~ 12.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대표자 워크숍 개최

12. 10.~12. 14.	EABEX2005에서 동아시아 16개국에 국내 방송콘텐츠 및 DMB 소개(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12. 13.	2005년도 지상파방송책임자회의 개최
12. 14.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 평가 토론회 개최
12. 16.	전문편성 TV채널 품질평가에 관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12. 15.	러시아 사할린의 '우리말 방송' 등 해외 한국어방송사에 방송콘텐츠 지원
12. 20.	공익성채널 추가 선정(순수문화예술, 사회적소수대변)
12. 27.	(주)우리방송 등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조건부 재허가 추천
	방송광고심의규정 및 협찬고지규칙 개정

2006

1. 4.	편성비율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1. 18.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1. 17.	방송광고시간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金景根)
1. 23.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 재추진 결정
	(주)우리넷, (주)하나방송, SO 재허가추천 거부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개정
1. 26.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차)개최
	휴먼TV에 대한 공익성채널 지정 취소
2. 7.	인도 뭄바이 TV Korea Showcase 개최
2. 9.	인도 통신위원회와 MOU 체결
2. 20.	지상파 디지털방송 조기 정착 전문가토론회 개최
2. 21.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재추진 의결
2. 28.	지역 지상파 DMB 전문가 토론회 개최
3. 7.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 재허가추천 거부
3. 10.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공포
	방송위원회 대상 시상식 개최
3. 14.	독일 주(州)미디어청 연합과 양해각서(MOU) 체결
3. 16.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기공식 개최

3. 20.	지역 지상파DMB 방송권역 획정 공청회 개최
3. 21.	2006년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자((주)서초케이블, (주)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선정
3. 26.	방송발전기금 징수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3. 31.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권역 의결
4. 3.~ 4. 7.	프랑스 칸느에서 DMB Showcase 개최
4. 1.	제4기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
4. 3.	2005년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 발간
4. 18.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활성화 방안 마련
4. 28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로 (주)경인티브이 선정

2 제 소속위원회 운용현황

가. 법정 소관위원회

1) 보도교양심의위원회

■ 위촉기간 : 2005. 8. 16. ~ 2006. 8. 15.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신 대 근	남	1943. 12. 8.	前 대구MBC 사장
위 원	윤 재 홍	남	1946. 6. 15.	경기대 정치매체관리학과 교수
위 원	김 재 봉	남	1945. 4. 4.	前 문화일보 수석논설위원
위 원	목 진 자	여	1943. 5. 7.	단국대 방송영상학부 교수
위 원	문 미 원	여	1962. 11. 25.	미디어교육연구소장
위 원	안 영 도	남	1946. 7. 8.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변호사
위 원	김 경 희	여	1964. 8. 9.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수
위 원	국 성 호	남	1952. 3. 8.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위 원	최 대 열	남	1956. 9. 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교육선전부장

2) 연예오락심의위원회

■ 위촉기간 : 2005. 8. 16. ~ 2006. 8. 15.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김 순 길	남	1942. 2. 10.	중앙대 신문대학원 교수
위 원	윤 대 작	남	1945. 2. 11.	前 KBS 전주방송 총국장
위 원	이 건 세	남	1946. 4. 3.	에이원 감정평가법인 이사
위 원	장 낙 인	남	1952. 2. 2.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 원	이 경 화	여	1956. 11. 14.	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 책임연구원
위 원	최 민 수	남	1958. 6.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위 원	김 다 은	여	1962. 12. 13.	추계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
위 원	이 웅	남	1969. 7. 14.	이웅 법률사무소 변호사
위 원	전 미 희	여	1966. 6. 17.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3)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

■ 위촉기간 : 2005. 8. 16. ~ 2006. 8. 15.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이 시 권	남	1947. 8. 23.	前 SBS 관리본부 협력사 지원팀장
위 원	김 봉 현	남	1962. 1. 27.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위 원	이 수 범	남	1963. 8. 15.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 원	김 진	여	1972. 12. 27.	법률사무소 이안 변호사
위 원	엄 애 선	여	1960. 10. 20.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위 원	신 석 우	남	1940. 4. 12.	한국제약협회 전무이사
위 원	하 병 조	남	1958. 8. 5.	서울보건대학 뷰티아트과 교무위원
위 원	이 춘 근	남	1954. 10. 8.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장
위 원	김 연 화	여	1953. 5. 1.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4) 방송평가위원회

■ 위촉기간 : 2005. 9. 7. ~ 2006. 9. 6.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성 유 보	남	1943. 6. 28.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김 두 석	남	1940. 7. 21.	前 KBS 창원방송 총국장
위 원	조 영 철	남	1946. 4. 26.	前 CJ홈쇼핑 대표이사
위 원	전 상 금	여	1952. 5. 28.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대표
위 원	유 숙 렬	여	1953. 3. 1.	방송위원회 위원
위 원	유 철 근	남	1957. 5. 7.	대성회계법인 이사/공인회계사
위 원	유 세 경	여	1959. 12. 17.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위 원	유 선 영	남	1962. 1. 22.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위 원	김 수 욱	남	1965. 5. 25.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5)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 위촉기간 : 2005. 6. 10. ~ 2006. 6. 9.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윤 종 보	남	1945. 7. 9.	방송위원회 위원
위 원	윤 호 찬	남	1944. 2. 19.	전 충주MBC, 원주MBC 사장
위 원	조 의 진	남	1951. 8. 1.	전 KBS 제주방송총국장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 원	신 동 구	남	1952. 8. 19.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상임위원
위 원	김 주 원	남	1953. 6. 6.	김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위 원	최 정 우	남	1954. 2. 26.	(주)우리방송 사장
위 원	김 훈 순	여	1955. 5. 2.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 원	권 미 혁	여	1959. 1. 10.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위 원	양 성 희	여	1965. 1. 8.	중앙일보 JES 엔터테인먼트팀장

6)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 위촉기간 : 2004. 4. 1. ~ 2006. 3. 31.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이 효 성	남	1951. 5. 1.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위 원	이 기 홍	남	1936. 12. 20.	前 광고업협회 회장
위 원	박 내 희	남	1940. 8. 18.	서강대 경상대학원장
위 원	박 용 식	남	1942. 3. 18.	前 KBS 경영본부장
위 원	진 행 섭	남	1946. 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위 원	주 철 환	남	1955. 5. 29.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위 원	김 사 인	남	1956. 3. 30.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위 원	손 석 춘	남	1960. 1. 17.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위 원	송 경 희	여	1961. 8. 24.	前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위 원	김 재 영	남	1968. 2. 7.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7)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위촉기간 : 2006. 1. 31. ~ 2006. 6. 30.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김 경 근	남	1939. 1. 15.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부위원장	이 권 영	남	1946. 12. 30.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위 원	마 권 수	남	1946. 6. 5.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위 원	고 승 우	남	1948. 4. 21.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위 원	박 인 주	남	1950. 2. 9.	공명선실천시민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
위 원	김 형 태	남	1952. 12. 10.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공동의장 겸 사무총장 前 KBS 시청자센터 주간
위 원	하 창 우	남	1954. 2. 13.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변호사
위 원	한 상 연	남	1959. 4. 6.	경희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위 원	김 영 철	남	1960. 10. 3.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1국장

8)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 위촉기간 : 2005. 9. 22. ~ 2006. 8. 31.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성 유 보	남	1943. 6. 28.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박 희 정	남	1953. 11. 10.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장
위 원	홍 재 형	남	1955. 5. 6.	통일부 회담사무국 상근대표
위 원	김 문 희	남	1951. 12. 1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위 원	남 성 우	남	1949. 11. 20.	KBS 편성본부장
위 원	정 흥 보	남	1956. 4. 3.	MBC 보도본부장
위 원	이 남 기	남	1949. 12. 10.	SBS 기획본부장
위 원	이 종 복	남	1952. 1. 15.	EBS 방송본부장
위 원	고 광 남	남	1954. 9. 16.	YTN 상무
위 원	김 현 수	남	1960. 3. 15.	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위 원	홍 성 규	남	1948. 4. 21.	TU 미디어 부사장
위 원	김 용 태	남	1948. 1. 3.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위 원	이 우 승	남	1961. 5. 12.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위 원	임 수 경	여	1968. 11. 6.	한국언론인권센터 이사

나. 직무특성에 따른 소관위원회

1)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 위촉기간 : 2005. 5. 26. ~ 2006. 8. 31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박 준 영	남	1940. 11. 23.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한 진 만	남	1954. 9. 6.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 원	길 환 영	남	1954. 9. 14.	한국방송공사 편성기획팀장
위 원	김 응 숙	여	1956. 8. 13.	전북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위 원	이 연 수	남	1957. 8. 6.	광주문화방송 기획실장
위 원	신 종 원	남	1961. 5. 14.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부장
위 원	윤 희 상	남	1962. 1. 16.	CJ사운드 상무대우
위 원	전 규 찬	남	1962. 2. 2.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위 원	김 정 수	남	1966. 1. 25.	방송위원회 뉴미디어부장
위 원	김 명 희	여	1966. 1. 26.	방송위원회 평가분석부장
위 원	임 정 수	남	1969. 2. 20.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2) 분쟁조정위원회

■ 위촉기간 : 2005. 9. 1. ~ 2007. 8. 31.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박 준 영	남	1940. 11. 23.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권 오 승	남	1950. 1. 12.	서울대학교 법학교수
위 원	표 철 수	남	1950. 2. 13.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위 원	강 상 현	남	1956. 6. 18.	연세대 신문방송학 교수
위 원	임 영 철	남	1957. 4. 15.	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
위 원	이 윤 희	남	1957. 8. 27.	충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 원	오 승 돈	남	1960. 12. 8.	한로법률사무소 변호사

3) 행정심판위원회

■ 위촉기간 : 2006. 3. 2. ~ 2008. 3. 1.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 원 장	이 효 성	남	1951. 5. 1.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내부위원	박 준 영	남	1940. 11. 23.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내부위원	성 유 보	남	1943. 6. 28.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내부위원	양 휘 부	남	1943. 6. 28.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내부위원	표 철 수	남	1950. 2. 13.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내부위원	박 희 정	남	1953. 11. 10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장
내부위원	김 춘 식	남	1954. 6. 17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장
내부위원	박 흥 식	남	1952. 6. 28	방송위원회 평가심의국장
내부위원	정 진 우	남	1955. 2. 27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장
내부위원	황 부 군	남	1957. 9. 6	방송위원회 시청자지원실장
외부위원	임 동 진	남	1943. 12. 24.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서울중앙지법 판사)
외부위원	양 삼 승	남	1947. 4. 4.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외부위원	백 윤 기	남	1955. 8. 15.	아주대 법대 학장
외부위원	오 준 근	남	1957. 5. 5.	경희대 법학과 교수
외부위원	홍 정 선	남	1951. 1. 19.	연세대 법학과 교수

4) 규제심사위원회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 원 장	표 철 수	남	1950. 2. 13.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당연직위원	박 희 정	남	1953. 11. 10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장
당연직위원	김 춘 식	남	1954. 6. 17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장
당연직위원	정 진 우	남	1955. 2 .27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장
당연직위원	박 흥 식	남	1952. 6. 28	방송위원회 평가심의국장
외 부 위 원	김 동 욱	남	1959. 12. 25.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외 부 위 원	우 지 숙	여	1967. 3. 25.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외 부 위 원	배 금 자	여	1961. 2. 2	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외 부 위 원	홍 대 식	남	1965. 9. 20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외 부 위 원	장 낙 인	남	1952. 2. 2	우석대 교수

5) 법률자문위원회

■ 위촉기간 : 2006. 3. 1. ~ 2007. 2. 28.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 원	임 동 진	남	1943. 12. 24.	법무법인 남산
위 원	김 상 기	남	1945. 2. 11.	김상기 법률사무소
위 원	양 삼 승	남	1947. 4. 4.	법무법인 화우
위 원	강 용 현	남	1950. 9. 11.	법무법인 태평양
위 원	윤 세 리	남	1953. 11. 20.	법무법인 율촌
위 원	박 형 상	남	1959. 8. 21.	박형상 법률사무소
위 원	김 기 중	남	1965. 1. 12.	동서 법률사무소

6) 방송언어특별위원회

■ 위촉기간 : 2005. 10. 25. ~ 2006. 10. 24.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이 주 행	남	1944. 10. 24.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위 원	손 석 기	남	1952. 4. 18.	SBS 아나운서팀 부국장
위 원	박 창 원	남	1954. 11. 19.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위 원	지 영 서	여	1956. 4. 9.	KBS KBS한국어팀 팀장
위 원	서 정 신	여	1956. 9. 3.	한국영상문화학회 이사(언어철학박사)
위 원	김 백	남	1956. 10. 26.	YTN 보도국 해설위원
위 원	구 현 정	여	1958. 5. 6.	상명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위 원	김 영 찬	남	1959. 11. 17.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위 원	강 영 은	여	1963. 10. 22.	MBC 아나운서국 우리말 담당 팀장

7)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위원회

■ 위촉기간 : 2005. 6. 1. ~ 2006. 5. 31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박 준 영	남	1940. 11. 23.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유 숙 렬	여	1953. 3. 1.	방송위원회 위원
위 원	유 성 화	남	1942. 4. 22.	청운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승 수	남	1949. 3. 2.	배우학교 한별 교장
위 원	홍 순 철	남	1955. 5. 5.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위 원	박 인 규	남	1962. 1. 26.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위 원	남 지 향	여	1971. 8. 1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문화부장
위 원	윤 정 주	여	1971. 11. 1.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 연구부장

8) 국내제작애니메이션판정위원회

■ 위촉기간 : 2005. 6. 1. ~ 2006. 5. 31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윤 종 보	남	1945. 7. 9.	방송위원회 위원
위 원	김 성 남	여	1955. 9. 28.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위 원	민 영 문	남	1957. 11. 2.	KBS 영화/만화팀 선임 팀원
위 원	장 동 렬	남	1959. 8. 2.	한서대학교 영상미술학과 교수
위 원	김 영 애	여	1961. 8. 16.	(주)희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위 원	곽 영 빈	남	1962. 1. 21.	(주)대원디지털방송 이사
위 원	최 종 일	남	1966. 11. 5.	(주)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대표

9)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 위촉기간 : 2004. 10. 6. ~ 2005. 3. 28.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 • 현직
위원장	양휘부	남	1943. 6. 28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김춘식	남	1954. 6. 17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장
위 원	신용섭	남	1958. 12. 10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
위 원	신용언	남	1957. 8. 9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
위 원	이기섭	남	1955. 4. 18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장
위 원	이상요	남	1956. 4. 15	KBS 정책기획센터 기획팀장
위 원	이상근	남	1955. 2. 1	MBC 방송인프라국 국장
위 원	박희설	남	1960. 10. 22	SBS 정책팀장
위 원	정복수	남	1956. 10. 25	CBS 정책국장
위 원	성기현	남	1958. 10. 24	C&M커뮤니케이션 전략기획실장
위 원	송동일	남	1953. 10. 26	삼성전자 DM연구소 전무
위 원	지승림	남	1949. 1. 23	한국데이터방송협회장
위 원	안치득	남	1956. 8.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방송연구단장
위 원	서경학	남	1956. 1. 1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위 원	박종원	남	1966. 10. 5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부회장
위 원	석원혁	남	1961. 10. 8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위 원	강상현	남	1956. 6. 18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 원	최충웅	남	1942. 2. 5	경희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위 원	최성진	남	1960. 1. 1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3 방송위원회 발간자료

2003

순번	자 료 명
1	(2002)방송 프로그램 조사 자료집
2	(2002년)방송심의사례집
3	(2002년)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4	(2002년)시청자불만 보고서
5	(2002년)제16대 대통령 선거방송 심의백서
6	(2002년도)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7	(2002 • 2003년도)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백서
8	(2003)방송 프로그램 조사 자료집
9	(2003)방송관련법령집
10	(2003)방송영상물 소개 목록집
11	(2003년)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2	(2003년)방송심의사례집
13	(2003년)TV시청행태 연구(정책연구 2003)
14	(제1기)방송위원회 백서 : 2000년 2월 - 2003년 2월
15	다매체 시대 방송산업의 성장전략 : 디지털화의 영향(방송조사자료 2003-2)
16	디지털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17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종합보고서(부록)
18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 제1차 : 디지털케이블TV 시스템의 진화방향
19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 제2차 :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 및 요금
20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 제3차 : 디지털케이블TV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지
21	방송 관련 법령집
22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규제 체계의 국가간 비교 : 기자세미나 자료집
23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 공개토론회 자료집

24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정책 연구
25	방송법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6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 관련 규제방안 연구
27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관련 규제방안' 전문가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28	방송·통신 체계정비 및 위원회 대응방안
29	방송채널사용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30	방송통신법제정비위원회 종합보고서
31	방송편성실무책임자 편성관련 교육 편람
32	방송평가제 실효성 향상방안 연구
33	방송프로그램 편성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34	신규 방송 서비스 도입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35	영국 커뮤니케이션법. 상(방송조사자료 2003-3)
36	영화채널 '선정성 심의' 이대로 좋은가 :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37	외주정책 개선방안 연구
38	유료방송 요금규제 정책방안 :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 이용요금 승인기준 관련
39	일본방송 2차 개방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40	전문편성의 방송분야 고시 관련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41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백서
42	지상파 방송 운용시간에 관한 공청회
43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종합보고서
44	참여적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방안 : 우리가 만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45	채널별 차별화 심의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46	케이블 산업의 수평집중 : 실험적 분석(방송조사자료 2003-1)
47	케이블 TV·위성방송사업자 공정거래법 교육 : 교육 자료집
48	케이블TV 방송정책 및 기술 워크숍 : 디지털방송기술워크숍 자료집
49	DMB·데이터방송 및 DMC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 : 디지털방송 추진위원회 종합보고서
50	KI 방향성에 관한 기초 연구
51	PP산업 활성화방안 토론회

2004

순번	자 료 명
1	(2003년)남북방송인토론회및 방송영상물 소개모임
2	(2003년)시청자불만처리 보고서
3	(2003년도)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4	(2004)케이블TV 수용성 조사연구
5	(2004년)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6	(2004년)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7	(2004년)TV시청행태 연구(정책연구 2004-1)
8	(2004년도)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백서
9	(2004년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재승인 백서
10	데이터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11	디지털TV 해외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2004.1
12	말·소리·빛 풍경을 나누다 : 2003 남북방송인토론회 및 방송영상물 소개모임 화보집
13	말·소리·빛 풍경을 나누다 : 2003 남북방송인토론회 및 방송영상물 소개모임 화보집
14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5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 보고서
16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17	방송발전기금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연구 : 방송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사업을 중심으로
18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19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
20	방송심의관련규정
21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개정시안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22	방송·통신 융합 및 구조개편 방향
23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24	방송위원회 소관 법령
25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26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공익과 경쟁 :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정책연구 2004-3)

27	방송통신융합시대 제도정비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28	보도전문편성채널의 운용 및 편성범위에 관한 전문가토론회 : 전문가토론회 자료집
29	소출력 라디오방송 도입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 토론회 발제집
30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 워크숍 :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 워크숍 자료집
31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32	영국 커뮤니케이션법. 하(방송조사자료 2004-1)
33	영국의 디지털 전환정책(방송조사자료 2004-2)
34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35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36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신청 요령
37	잠깐! TV를 시청하기 전에 꼭이오!
38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39	재난방송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여름철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40	제9회 아시아 - 태평양 규제기관 라운드테이블 결과보고서
4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42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 방송평가제연구
43	해외 한국어 방송 실태 조사 보고서 : 독립국가연합, 중국,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44	해외방송 발전전략 연구(정책연구 2004-2)
45	DVB-H 해외현황조사 결과보고서
46	KI 도입기반 구축연구 : 방송평가제 개선연구 최종보고서 : 방송평가제연구
47	KI 도입기반 구축연구 : 수용자평가지수 개발연구 최종보고서 : 방송평가제연구
48	SO지역채널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토론회 발제집

2005

순번	자 료 명
1	(2004)정책연구자료집
2	(2004년)방송심의사례집
3	(2004년)시청자불만처리 보고서
4	(2004년도)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5	(2004년도)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경영분석
6	(2004년도)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경영분석
7	(2004년도)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백서
8	(2004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 경영분석
9	(2005)방송영상물 소개모임 출품목록집
10	(2005)방송인토론회
11	(2005)지상파 방송 내용 분석 및 자체심의 현황 자료집
12	(2005년)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3	(2005년)TV시청행태 연구(정책연구 2005-3)
14	(2005년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백서
15	(2005년도)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백서 :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16	(케이블TV 지난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모색을 위한)매체정책 전문가 워크숍
17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사업자 선정 백서
18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사업자 선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19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사업자 선정방안 및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20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21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22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 세부심사기준 및 허가추천 신청 요령
23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24	국제방송의 효율적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25	뉴미디어 서비스 도입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계획 :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종합보고서

26	동아시아 지역의 방송산업 진출 전략 : 용역보고서
27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평가보고서
28	미국 1934년 통신법(방송조사자료 2005-3)
29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안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30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31	방송발전기금 징수관련 개선방안 연구
32	방송발전기금 징수관련 개선방안 연구
33	방송법개정안 관련 제2차 전문가토론회
34	방송시장의 경쟁상태 조사연구
35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류체계 정비방안 연구(정책연구 2005-10)
36	방송·통신 융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정책연구 2005-9)
37	방송 • 통신 융합시대의 지역방송 위상재정립 연구(정책연구 2005-1)
38	방송언어 조사자료집
39	방송통계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정책연구 2005-5)
40	방송통신 기술동향 연구자료집(2005.12)
41	방송통신 기술동향 연구자료집(2005.7)
4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비지상파방송 부문)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43	방송평가에관한규칙 개정안(지상파방송 부문)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44	방송행정의 법구조와 과제(방송조사자료 2005-2)
45	방송허가·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정책연구 2005-8)
46	보도전문편성채널의 운용 및 편성범위에 관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47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개정안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48	소출력 라디오 시범사업 평가 연구
49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사업자 선정 세부심사기준 및 허가추천 신청 요령
50	어린이 매체중독 연구(정책연구 2005-2)
51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52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 보고서
53	우리 방송이대로 좋은가? : 방송환경의 변화와 바람직한 방송문화 : 토론회 자료집
5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백서
55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 콘텐츠 활용방안 마련 전문가토론회

56	유료방송 이용요금 산정기준 제정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57	융합시대 콘텐츠 산업의 전망과 미래 : BCWW 2005 컨퍼런스 2차 발제 자료집
58	이동수신방송 시장과 이용행태 분석(정책연구 2005-6)
59	재난방송체계 구축방안 연구 : 지진 및 지진해일을 중심으로
60	전문편성 TV채널 품질평가에 관한 전문가토론회 : 토론회 발제문
61	중장기 방송발전기금 재원배분 전략 연구
62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63	지방자치단체의 방송채널 운영 해외 사례 분석 및 정책방안 : 토론회 자료집
64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수요 분석 연구(정책연구 2005-7)
65	지상파방송 운용시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66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백서
67	케이블TV 10년
68	프로그램 수급관련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방안 연구
69	한류 지속을 위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정책연구 2005-4)
70	BBC 왕실 칙허장에 대한 검토(방송조사자료 2005-1)
71	MIPTV/MILIA 2005 spotlight on Korea

4 부서별 정책자료

순번	발간년도	보고서명	저자	발간부서
1	2003	(2003년)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책총괄부
2	2003	(2003년)TV시청행태 조사(정책연구 2003)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리서치플러스 연구소	정책총괄부
3	2003	KI 방향성에 관한 기초연구	홍기선(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주정민(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평가분석부
4	2003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정책 연구	김선구(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 연구위원), 류근관(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상승(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재홍(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 연구위원), 조은기(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 연구위원)	정책2팀
5	2003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 관련 규제방안 연구	김도연(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정책2팀
6	2003	방송채널사용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식(계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7	2003	방송평가제 실효성 향상 방안 연구	홍기선(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주정민(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혜선(방송위원회 평가분석부 선임조사관)	평가총괄부
8	2003	방송프로그램 편성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안정임(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전경란(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강사)	

순번	발간년도	보고서명	저자	발간부서
9	2003	신규 방송 서비스 도입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원용(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김효근(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준(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김 미(이화여자대학교 뉴미디어기수연구소),박지수(이화여자대학교 뉴미디어기수연구소), 배혜진(이화여자대학교 뉴미디어기수연구소)	정책1팀
10	2003	외주정책 개선방안 연구	조항제(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석제(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변동환(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정책총괄부
11	2003	참여적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방안 : 우리가 만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강명구(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류한호(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기형(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 최영묵(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시청자지원팀
12	2004	(2004)케이블TV 수용성 조사연구	최용준(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선방송부
13	2004	(2004년)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윤재식(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최용준(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센터
14	2004	(2004년)TV시청행태 조사(정책연구 2004-1)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코리아 리서치 센터	연구센터
15	2004	DTV전송방식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연구	산업연구원	정책총괄부
16	2004	DVB-H 해외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기술정책부
17	2004	KI 도입기반 구축연구 : 방송평가제 개선연구 최종보고서 : 방송평가제연구	강남준(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권상희(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강형철(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안태식(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평가총괄부

순번	발간년도	보고서명	저자	발간부서
18	2004	KI 도입기반 구축연구 : 수용자평가지수 개발연구 최종보고서 : 방송평가제연구	배현석(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성호(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허경호(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주창윤(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평가총괄부
19	2004	디지털TV 해외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기술정책부
20	2004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 보고서	전범수(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책2부
21	2004	방송발전기금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연구 : 방송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신태섭(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김서중(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정호(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진흥정책부
22	2004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	장하용(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책2부
23	2004	방송언어조사자료집	방송위원회 심의운영부	심의운영부
24	2004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박구만(서울산업대학교 매체공학과 교수), 김도연(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기술정책부
25	2004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공익과 경쟁 :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04-3)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신동희(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정보통신대학 조교수)	연구센터
26	2004	재난방송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여름철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송종길(한국방송산업진흥원 연구원), 이 연(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조원철(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지상파방송부
27	2004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 방송평가제연구	주창윤(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평가분석부
28	2004	해외 한국어 방송 실태조사 보고서 -독립국가연합, 중국,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방송위원회	정책3팀

순번	발간년도	보고서명	저자	발간부서
29	2004	해외방송 발전전략 연구 (정책연구 2004-2)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연구센터
30	2005	(2005년)TV시청행태 연구 (정책연구 2005-3)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정용찬(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중앙리서치	연구센터
31	2005	(2005년)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이종원(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윤재식(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연구센터
32	2005	'한류'지속을 위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5-4)	이종원(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원용진(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센터
33	2005	동아시아 지역의 방송산업 진출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교류부
34	2005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평가보고서 -연구 보고서	박은희(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누리리서치	뉴미디어부
35	2005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평가원	기금정책부
36	2005	방송발전기금 징수관련 개선방안 연구	안태식(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소라(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김도연(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기금운영부
37	2005	방송시장의 경쟁상태 조사연구	노기영(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정책2부
38	2005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류체계 정비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5-10)	송종현(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신동희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조교수), 송민정 (한국통신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성호 (호남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김진웅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조교수), 이연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부교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교수)	연구센터

순번	발간년도	보고서명	저자	발간부서
39	2005	방송·통신 융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5-9)	지성우(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윤석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장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홍석경(프랑스 보르도 3대학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한영학(일본 北海學園대학교 법학부 교수), 유의선(이화여자대학교 언론영상홍보학부 교수)	연구센터
40	2005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지역방송 위상재정립 연구 (정책연구 2005-1)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윤석년(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관규(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성민(브루넬 대학 박사과정), 박진우(파리 5대학 박사과정)	연구센터
41	2005	방송통계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5-5)	정용찬(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강현철(호서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조교수), 오세성(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소 연구위원), 허지수(미국 미네소타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김설아(프랑스 파리 2대학 미디어·정보·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 안임준(영국 러프버러대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박사과정), 정수영(일본 상지대학 신문학과 박사과정)	연구센터
42	2005	방송통신 기술동향 연구자료집 (2005. 7)	전한얼(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연구센터
43	2005	방송통신 기술동향 연구자료집 (2005.12)	전한얼(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허선종(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연구센터

순번	발간년도	보고서명	저자	발간부서
44	2005	방송허가·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05-8)	지성우(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강종근(미국 Illinois 주립대학 교수), 김대호(인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하윤금(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형성(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영덕(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창규(한국문화재관리학교 교수)	연구센터
45	2005	소출력 라디오 시범사업 평가 연구	한국방송공학회	기술정책부
46	2005	어린이 매체중독 연구 (정책연구 2005-2)	나은영(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송종현(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연구센터
47	2005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임정수(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정책2부
48	2005	유료방송 이용요금 산정기준 제정방안 연구	박문식(제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도현(제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상윤(제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뉴미디어부
49	2005	이동수신방송 시장과 이용행태 분석 (정책연구 2005-6)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 박흥식, 이종원, 송종현, 전한얼, 정용찬	연구센터
50	2005	재난방송체계 구축방안 연구 : 지진 및 지진해일을 중심으로	이 연(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지상파방송부
51	2005	중장기 방송발전기금 재원배분 전략 연구	김국진(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 주정민(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기금정책부
52	2005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수요 분석 연구 (정책연구 2005-7)	이은미(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김광호(서울산업대학교 매체공학과 교수), 구문모(한라대학교 미디어홍보학부 교수), 이재호(동아방송대학 방송보도과 교수), 정재하(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연구센터

순번	발간년도	보고서명	저자	발간부서
53	2005	케이블TV 10년	조재구(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제도분과위원장), 조은기(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철근(대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승권(한양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박형상(변호사)	뉴미디어부
54	2005	프로그램 수급관련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방안 연구	오정호(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뉴미디어부

5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2003~2005)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

2003

수상시기	방송사	프로그램 명
2003년 5월	KBS-1TV 춘천방송총국	장애인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여정
	포항 MBC-TV	포항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남산 4부작
	KBS-3R	장애인의 달 특별기획 미국 특수교육 현장을 가다 장애 아동 조기교육, 빠를수록 좋다
2003년 6월	마산 MBC-TV	특집 다큐멘터리 윤이상, 나비의 꿈
	부산방송 PSB-FM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앙방송	민족과학 대발견 과학의 나라, 오천년의 비밀
2003년 7월	SBS-TV	다큐스페셜 청계천
	PSB, CJB, JIBS, UBC, JTV, TBC, KBC 7개 지역 민방공동제작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KBS-1R	소리로 쓴 태아 육아보고서 3부작
2003년 8월	KBS-1TV	취재파일 4321 믿고 마셔야 하나? / 어떤 물을 마셔야 하나?
	MBC-TV	정전 50주년 특집 2003 新 견우 직녀
	KBS KOREA	KBS 월드넷 세계를 공략하는 젊은이, 나만의 특별한 방학 보내기

2003년 9월	목포MBC-TV	목포문화방송 창사특집 충격보고, 서해안 바닷모래
	불교방송	8·15 특집 통일로 하나로 북한 문화 속 여성 이야기
	CBS-TV	이주노동자, 노예인가 친구인가?
2003년 10월	KBS-1TV	일일연속극 노란 손수건
	안동 MBC-TV	천년주초 (千年柱礎)
	여수 MBC-TV	여수MBC 창사33주년 특집 한국의 색, 오방색(五方色)
2003년 11월	iTV-TV	iTV 100년 프로젝트 자연다큐멘터리 노랑부리 백로
	CBS-R	21세기 보육 백년지대계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보육의 비밀을 푸는 세가지 열쇠
	중앙방송	논픽션 커버스토리 60 어느 탈북자들의 자본주의 실험, 3년간의 기록
2003년 12월	MBC-TV	2003 MBC 창사특집 5부작 중국
	KBS-1TV 전주방송총국	KBS전주 방송 65년 특별기획 역사발굴 4부작 新 백제사
	대구 MBC-TV	대구MBC 창사40주년 특별기획 3부작 세계화 시대, 농업을 말한다

2004

수상시기	방송사	프로그램 명
2004년 1월	MBC-TV	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티벳 대탐사
	청주 MBC-TV	청주MBC 창사33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류를 찾아서
	KBS-1FM	KBS 열린 토론
2004년 2월	SBS-TV	SBS 2004 신년대기획 환경의 역습
	KBS-1TV	KBS 스페셜 이제는 동반성장이다 3부, 4부
	KBS KOREA	특별기획 일본이 사랑한 마에스트로 정명훈
2004년 3월	부산 MBC-TV	HD특별기획 3부작 생명수의 진실
	SBS-TV	그것이 알고싶다 죽음의 섬 실미도, 8·23 군특수범 난동사건의 진실
2004년 4월	EBS-TV	특집 EBS 자연다큐멘터리 2부작 공존의 그늘
	KBS-1TV	동아시아 철새네트워크
	중앙방송 (히스토리채널)	다시 읽는 역사, 호외 북으로 간 사람들
2004년 5월	EBS-TV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마이크로의 세계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수명을 단축시키는 3가지 설탕, 소금, 지방
	KBS-1TV	수요기획 웰빙사회학, 나눔의 행복(타임프로덕션 제작)
	춘천 MBC-FM	춘천MBC 특집 작은 학교 아이들의 꿈

2004년 6월	KBS-1TV	KBS스페셜 미래의 코드, 여성
	부산 MBC-TV	창사45주년 특집 금관가야의 비밀
	CBS-TV	CBS 창사50주년 특집 다큐 가족의 발견
2004년 7월	MBC-TV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들
	KBS-2TV	검정고무신 제2화 어머니 날
	KBS-1TV	일일연속극 백만 송이 장미
2004년 8월	대구 MBC-TV	대구MBC 특별기획 2부작 포로의 딸
	MBC-TV	2004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특집 3부작 한국전쟁과 포로
	KBS-1TV	KBS스페셜 한국경제 제3의 길
2004년 9월	KBS-1TV	KBS일요스페셜 최초공개 베일 속의 한일협정 문서 한일양국 정부는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KBS-2FM	KBS 쿨FM 특별기획 문명과 신화의 나라 그리스 음악기행 3부작
	KBS-1AM	KBS무대 옛사랑의 그림자
2004년 10월	마산MBC-TV	토지 완간 10주년 특별대담 작가 박경리
	부산방송 PSB-FM	아름다운 동행
	대구방송 TBC-TV	연중 기획 시리즈 3부작 아름다운 대구 경북을 만듭시다
2004년 11월	중앙방송 Q채널	이것이 미래교육이다
	KBS-1TV	2004 KBS 특별기획 위대한 여정 한국어 3부작

	광주 MBC-R	창사 40주년 특별기획 10부작 남도소리기행
2004년 12월	SBS-TV	창사특집드라마 홍소장의 가을
	CBS-R	오숙희 변상욱의 행복한 세상 겨울맞이 특별기획 2004 한국의 사회안전망
	시민방송	RTV스페셜 신 시민사회의 조건 - 녹색의 행복

2005

수상시기	방송사	프로그램 명
2005년 1월	KBS-1TV	KBS스페셜 도자기
	KBS 사회교육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경계를 넘은 사람들
	CJ홈쇼핑	CJ홈쇼핑 특별기획 사랑을 주문하세요
2005년 2월	대구 MBC-TV	창사42주년 특집 HD2부작 생명의 소리 아날로그
	국악방송	명창 정정렬 특집 기획드라마 5부작 광대의 사랑
	동아TV	한국 화장 변천사
2005년 3월	MBC-TV	특집 다큐3부작 에네껜
	KBS-3R	특별기획 희망원정대 히말라야에 가다
	아리랑TV	Taenghwa, Another Nirvana
2005년 4월	국악방송	국악방송 개국4주년 광복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아리랑의 재발견
	MBC-TV	MBC특별기획 다큐멘터리 곰팡이

	KBS-1TV	감성 과학 다큐멘터리 '사랑' 3부작
	TBC대구방송	TBC Dream FM 라디오세상 가족사랑 캠페인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2005년 5월	KBS-1TV	저요!저요! - 다시 보는 저요! 저요! 제2편 초등학생 문화의 현주소
	EBS-R	특집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1% 이주 노동자의 노래 '스톱 크랙다운'
2005년 6월	중앙방송 Q채널	또 하나의 우주, 뇌(Brain)
	KBS-2TV	HD특별기획드라마 해신
	MBC-TV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2005년 7월	MBC-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끝나지 않은 비밀 프로젝트 일본의 원폭개발
	KBS-2TV	비타민 100회 특집
	EBS-TV	EBS창립5주년 기념 특집 자연다큐멘터리 흙
2005년 8월	MBC-TV	MBC 특집 기획 다큐멘터리 아! 에베레스트
	TJB대전방송	TJB 창사10주년 특별기획 백제금동대향로, 그 1400년 전의 소리
	KCTV 제주방송	특집 해양다큐멘터리 바다목장
2005년 9월	KBS-1TV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기획특집 3부작 내 몸을 바꾸는 감각 건강법
	MBC-TV	광복60주년 특별기획 천황의 나라, 일본
2005년 10월	SBS-TV	SBS스페셜 나는 가요-도쿄, 제2학교의 여름

	CBS-TV	광복60주년 특집 사할린리포트2005
	여수 MBC-R	즐거운 오후3시 특집방송 만원사랑-그 희망의 보고서
2005년 11월	KBS-TV	광복60주년 특별기획 110년만의 추적 명성황후 시해사건
	MBC-TV	HD뮤직다큐 하루
	SBS-TV	SBS스페셜 유언-죽음을 기억하라
	불교방송	장애여성의 성, 문을 열자
2005년 12월	마산MBC-TV	HD특별기획 다큐멘터리 5부작 문명을 새기다 대장경
	강남케이블TV	도시로 온 자연 양재천

6 방송위원회 대상 프로그램(2003~2005)

2003 방송위원회 大賞 수상작

1. 올 해의 좋은 프로그램 부문

■ 총 4편 (대상 1편/최우수상 1편/우수상 2편)

구분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명	상 금
대 상	중앙방송	민족과학 대발견 과학의 나라, 오천년의 비밀	1,000만원
최우수상	한국교육방송공사	아기성장 보고서	500만원
우 수 상	문화방송	MBC 창사특집 자연다큐멘터리 야생의 초원 세렝게티	300만원
우 수 상	SBS	창사특집 3부작 미래의 TV 세상을 바꾼다	300만원

2.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 부문

■ 올 해의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상(1편)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명	상 금
청주방송	클릭 하이틴 세상	500만원

3.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부문

■ 올 해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상(1편)

제작자	프로그램 명	상 금
김이찬	동행 (KBS 프로그램 '열린채널' 방송)	500만원

4. 특별상 부문

■ 특별상(1인) : 송재극(宋在克) 現 한국방송공학회 부회장(前 KBS기술본부장)

5. 프로그램 기획 부문

가. 지상파 중앙방송사업자 부문 (5편)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명	제작비 지원금
한국교육방송공사	TV와 인간	5,000만원
기독교방송	원자력, 지속 가능한 대안인가?	2,000만원
한국방송	판소리 인류무형유산 걸작 선정기념 國唱 '10일간의 판소리 여행	3,000만원
한국방송	삼색연작다큐 사랑(3부작)	4,000만원
SBS	특집다큐멘터리 로봇의 시대	4,000만원

나. 지상파 지역방송사업자 부문(6편)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명	제작비 지원금
강원민방	GTB특별기획 HDTV 다큐멘터리 2부작 - 白頭로부터 大幹을 이루다	4,500만원
여수문화방송	여수MBC 창사 34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 항해와 표류의 역사	3,500만원
강릉문화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 우주나무와 하늘새 '솟대'	3,000만원
마산문화방송	마산MBC 특별기획 3부작 - 대장경	3,000만원
울산문화방송	귀신고래(Korean grey whale)	3,000만원
목포문화방송	목포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 "섬" 3부작	3,000만원

다.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사업자 부문(4편)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명	제작비 지원금
한국케이블TV 영동방송	바다만이 살 길이다 인공어초, 그후 30년	2,500만원
한국케이블TV 서남방송	민족극	2,000만원
KCTV 제주방송	해양다큐멘터리 - 생명의 새로운 터전, 바다목장(2부작)	3,500만원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한국의 종가(宗家)	2,000만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6편)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명	제작비 지원금
월드와이드넷	다큐멘터리 3부작-나무이야기	1억원
매일경제TV	농촌 신성장 동력을 찾다 3부작	3,000만원
YTN	21세기 '신약', 150살에 도전한다	4,000만원
국제방송 교류재단	다큐멘터리 2부작 - 한국 불교미술의 꽃, 탱화	4,000만원
CBS-TV	21세기 가족 리모델링 - 세상의 모든 가족을 위하여	4,000만원
중앙방송 Q채널	과학 新프로젝트 4부작 - 21세기 미래경쟁력, 과학교육	5,000만원

마. 독립제작사 부문(14편)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명	제작비 지원금
젠터닷컴	삶으로서의 죽음(3부작)	3,000만원
비전 5	생물의 건축학 - 인간의 둥지	5,000만원
봄 프로덕션	다큐멘터리 2부작 천년의 기다림, 침향(沈香)	3,000만원
다큐서울	KBS특별기획 "동아시아 격동 20세기" 前史 2부작	4,000만원
서울인디즈	첨단과학, 한국인이 간다	3,000만원
한국방송 제작단	세계로 가는 고추장	3,000만원

락티비닷컴	티베트의 아이들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곳)	3,000만원
인디유니온	아이야 놀자! 내일이 열린다	3,000만원
미딕스코리아	TABU of Asia 한·중·일 터부 다큐르뽀	3,000만원
프로덕션 해오름	6부작 다큐 한국 미술 오천년사	1억원
한솔미디어	한민족의 기원, 유전자로 찾는다	3,000만원
낙미디어	마지막 샹그릴라, 중국 애뢰산	3,000만원
키네프로	녹색혁명, 위기인가? 기회인가?	3,000만원
디지털캐스트	존경받는 부자의 조건	3,000만원

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부문(4편)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명	제작비 지원금
청주문화방송	대전·청주·충주MBC 3사 공동 특집 학교 숲에 미래가 있다	2,000만원
한국교육 방송공사	특집 2부작 - 삶과 꿈의 소리, 자장가	2,000만원
KBS KOREA	<애니멘터리 한국설화> 2004년 여름방학 특집 - 여신들의 섬, 제주도	3,000만원
JEI스스로방송	샤론의 장미이야기 (The Story of Rose of Sharon)	3,000만원

사. 소외계층프로그램 부문(4편)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명	제작비 지원금
한국씨네텔	3부작 다큐멘터리 - 더불어 사는 희망 프로젝트!! 2004 자활보고서	4,000만원
서울인디즈	세계 난민의 날 특집 - 한국 속의 난민	1,000만원
한국방송 제작단	아름다운 선물	3,000만원
마이어스 미디어	15萬의 또 다른 한국인, 입양아!	2,000만원

2005 방송위원회 大賞 수상작

1. 우수프로그램 부문

부문		방송사업자	프로그램명	상금
대 상		KBS-1TV	KBS 스페셜 도자기	1,000만원
최우수상	지상파TV 부문	마산 MBC-TV	토지 완간 10주년 특별대담 작가 박경리	500만원
		SBS-TV	SBS 2004 신년대기획 환경의 역습	500만원
	지상파라디오 부문	부산방송-FM	아름다운 동행	500만원
	뉴미디어 부문	중앙방송 (Q채널)	이것이 미래교육이다	500만원
우수상	지상파TV 부문	SBS-TV	창사특집 드라마 홍소장의 가을	400만원
		MBC-TV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들	400만원
	지상파라디오 부문	KBS-1AM	KBS무대 옛사랑의 그림자	400만원
	뉴미디어 부문	충청방송	대전이 변화한다 - It's Daejeon	400만원

2. 어린이 • 청소년프로그램 부문

방송사업자	프로그램명	상금
KBS대구방송총국-TV	새로 쓰는 장난감 이야기	500만원

3.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부문

제작자	프로그램명	상금
환경운동연합(대표 : 최열)	평화의 상징, 멸종위기 저어새 (KBS 프로그램 '열린채널' 방송)	500만원

4. 특별상

대상	상금
KBS 한국어팀	500만원

7 주요 보도자료

날짜	제 목
2003. 05. 02	방송위, 4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3. 05. 07	동아TV(PP)에 '시청자사과' 조치
2003. 05. 07	방송위, 선정·폭력 프로그램에 사과·중지·징계조치
2003. 05. 10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 선출
2003. 05. 20	방송위, 상임위원회 구성
2003. 05. 29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 취임식
2003. 05. 30	제2기 방송위원 취임식
2003. 06. 02	방송위, 5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3. 06. 03	방송위 법규위반 광고방송물에 시정명령
2003. 06. 03	방송위, '법안검토소위원회' 구성
2003. 06. 03	방송위, 스카이라이프에 과태료 2천만원
2003. 06. 03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에 표철수씨 임명
2003. 06. 05	노성대 방송위원장 기자회견문(전문)
2003. 06. 11	방송위, 편성비율 위반 방송사에 과태료
2003. 06. 12	방송사 및 유관기관 인사 공개모집 결과
2003. 06. 13	방송위, KBS·방문진·EBS이사 직접 선정
2003. 06. 16	방송유관기관 인사관련 방송위원장 기자회견문
2003. 06. 18	방송위, CJ홈쇼핑에 '시청자사과' 명령
2003. 06. 18	방송위, 법규위반 광고방송물에 시정명령
2003. 06. 18	상정안건·회의속기록 홈페이지 게재
2003. 06. 19	방송위, EBS이사에 안정임 교수 선임
2003. 06. 19	방송위, 마산종합유선 검찰 고발
2003. 06. 23	방문진·KBS이사진 임명장 수여 및 전달식...
2003. 06. 25	케이블TV 음악채널 m-net 시청자사과·징계
2003. 06. 25	방송위, 2003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확정
2003. 07. 02	방송위 법규위반 광고방송물에 시정명령
2003. 07. 02	케이블TV 영화채널 OCN 시청자사과·중지
2003. 07. 02	아름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보류
2003. 07. 07	방송위, 6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날짜	제 목
2003. 07. 08	방송위, PP산업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2003. 07. 08	방송위, 디지털방송 전환 320억원 지원
2003. 07. 09	방송위, EBS 사장 재공모
2003. 07. 09	방송위, 영화채널 선정성에 중징계
2003. 07. 09	방송위, 지비에스·열린방송에 과태료
2003. 07. 09	방송위, 불법채널 운용 SO에 행정처분
2003. 07. 11	방송위, 집중심의 내용 사전예고
2003. 07. 16	스파이스TV·미드나잇채널 중징계
2003. 07. 22	방송위, EBS 사장에 고석만씨 임명
2003. 07. 22	방송위, KBS감사에 강동순씨 임명
2003. 07. 23	방송위, 스카이라이프에 과태료 2천만원
2003. 07. 23	방송위, 법규위반 광고방송물에 시정명령
2003. 07. 30	방송위, 방송법개정법률안(부처협의안) 수정 의결
2003. 08. 01	방송위, 디지털방송전환(PP부문)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2003. 08. 04	방송위, 분과별 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003. 08. 04	방송위, 7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3. 08. 06	방송위, (주)한빛아이앤비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조건부 재허가 추천
2003. 08. 06	방송위,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분야 정책협의회」 정례화 추진
2003. 08. 13	방송위, 정통부와 제1차 방송·통신분야 정책협의회 개최
2003. 08. 18	방송위,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추천 심사
2003. 08. 18	방송위, '불륜드라마' 집중 심의하기로 결정
2003. 08. 19	방송위,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2003. 08. 20	방송위,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공모
2003. 08. 21	'불륜드라마'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2003. 08. 22	방송위, 위원 워크숍 개최
2003. 08. 22	방송위, 홈쇼핑방송 허위, 과대·과장표현 집중 단속하기로 -LG홈쇼핑 등 5대 홈쇼핑의 '추석특집 프로그램' 대상
2003. 08. 25	방송위, '가학내용' 중점 심의하기로
2003. 08. 29	방송위, 8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3. 08. 29	가학 프로그램 내용 예상보다 심각 -연예오락제1심의위, 심층 논의 거쳐 9월 4일 결론짓기로

날짜	제 목
2003. 09. 01	어법도 발음도 맞지 않는 방송뉴스 -방송언어의 지침이 되어야 할 방송뉴스, 우리말 오용 심각
2003. 09. 02	'방송위원회 위원행동강령' 및 '직원윤리규정' 제정·시행
2003. 09. 04	가학 프로그램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결정 -방송3사 주말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2003. 09. 04	방송위, 한국교육방송공사 비상임이사(4인) 선임
2003. 09. 05	방송위,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추천 의결 -㈜한국케이블TV전남방송 등 7개사 조건부 재허가추천 .
2003. 09. 05	MBC 주최 '볼쇼이 쇼' 간접광고 지나쳐
2003. 09. 06	홈쇼핑방송 허위·과장 및 충동구매 유발표현 줄어 -홈쇼핑방송에 대한 기획심의 사전예고제 실효성 거둬 .
2003. 09. 08	방송위,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2003. 09. 08	지상파 방송사, '유료ARS'로 돈벌이 -프로그램 이용, 비정상적 수익 도모
2003. 09. 08	2003년도 하반기 불법유선방송 집중단속 실시
2003. 09. 18	방송위, MBC 드라마에 '중징계' -공영방송 채널을 상업적 홍보도구로 이용
2003. 09. 19	방송위, 추석연휴 방송 '중점심의'결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품위훼손' '선정성' 대상
2003. 09. 19	방송위, 소비자 피해 예상되는 불법 광고방송 집중 조사하기로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운영채널 대상-
2003. 09. 22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지상파TV 프로그램의 외국어 제명과 호칭 오용사례 조사키로...
2003. 09. 23	2003년도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자료(첨부파일)
2003. 09. 26	방송위, 9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3. 09. 27	방송위, 신규 중계유선 허가추천 거부 -유선방송 시장 일원화 정책 일관성 확보 차원 .
2003. 9. 30	방송위·정통부, 디지털TV 방송현황 해외조사단 구성키로
2003. 10. 07	지상파 프로그램에 영어제목이 판친다
2003. 10. 08	방송위, 언어파괴적 문자서비스(SMS) 방송에 대해 "경고" 조치
2003. 10. 08	방송위,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에 "의견진술"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여부 심층 논의

날짜	제 목
2003. 10. 15	방송위, 정통부와 제2차 방송·통신분야 정책협의회 개최
2003. 10. 15	방송위, 2003년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워크숍 개최
2003. 10. 15	방송위, KBS "한국사회를..."에 "권고" 결정 -심의위, 다양한 심의의견 효과적으로 전달
2003. 10. 16	방송위, 유료정보서비스(ARS)에 무더기 "경고"
2003. 10. 16	방송위, "KBS 슈퍼TV..."에 "경고및관계자경고" -진행·출연자에 대한 "가학성"과 영화 간접광고 지적
2003. 10. 20	방송위,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3회 연속 개최
2003. 10. 20	방송위,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03. 10. 20	방송위·정통부, 디지털TV 해외조사계획 합의
2003. 10. 20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방송인 토론회 및 방송영상물 소개모임" 결과
2003. 10. 21	방송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영화채널 "선정성 심의" 이대로 좋은가-
2003. 10. 22	방송위, 경남지역 민영방송 정책방안 확정
2003. 10. 22	방송위, KBS1라디오 "시사플러스"에 "경고" .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일방의견 다뤄 -
2003. 10. 23	방송위, 불법광고 방송사업자에 무더기'중징계' -총 22개 케이블TV사에 "사과" 및 "징계"-
2003. 10. 24	방송위, 10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3. 10. 24	방송위, KBS에 "권고" 공문 시행 -"한국사회를 말한다" 프로그램 관련-
2003. 10. 27	방송위, 우수프로그램 제작기획안 공모 -우수 제작기획안에 최고 1억까지 지원-
2003. 10. 28	방송위, 케이블TV 방송정책 및 기술 워크숍 개최 -케이블TV 디지털화 정책방향 제시-
2003. 10. 30	특정영화 "홍보의 場" 프로그램 중점심의
2003. 11. 03	"방송이 시청자는 안중에 없는 연예인들 사교장인가?"
2003. 11. 06	KBS가 당사자인 사안을 보도하는 것이 적정한가? -방송위, "KBS 수신료 분리" 보도의 적절성 검토
2003. 11. 07	방송위, 영화홍보 프로그램에 "경고" -MBC "출발비디오여행", SBS "접속 무비월드"

날짜	제 목
2003. 11. 11	방송위, “일본방송 2차 개방정책” 전문가토론회 개최
2003. 11. 12	방송위, “의료·건강”프로그램 중점심의 예고 -특정 질병에 대한 단정적 진단·처방 내용 대상
2003. 11. 13	방송위·정통부, 디지털TV 해외실태조사계획 합의
2003. 11. 18	방송위,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3차 전문가토론회 개최”
2003. 11. 20	방송위, “KBS 열린토론” 프로그램에 “의견진술” -인터넷 설문결과 여과없이 다뤄, 여론조사 관련규정 위반
2003. 11. 24	방송위, “2003년도 지상파 중앙방송사장협의회 개최” 결과
2003. 11. 26	방송위, “표절 시비” 프로그램 본격 심의 -“표절·모방 방송프로그램 심의지침”(가제)도 함께 검토
2003. 11. 28	방송위,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3. 11. 28	방송위, 기타 시·군지역 지상파TV 방송사의 디지털방송 허가신청 기한 연기 결정
2003. 12. 04	방송위, “인터넷 여론조사 보도”에 권고 -KBS, MBC, 교통방송 등 3사의 여론보도 객관성 지적
2003. 12. 05	방송위 우수프로그램 제작기획안 공모에 총 258편 접수
2003. 12. 08	방송위, “표절 시비 프로그램”에 “표절증거 없음”
2003. 12. 08	시·군지역 DTV방송 허가신청기한 연기결정 관련 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
2003. 12. 10	방송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2003. 12. 10	방송위, MBC “희로애락” 프로그램에 “의견진술” -군무이탈 “탈영병” 위법행위 여과없이 방송
2003. 12. 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상원 고려대 신방과 교수 선출
2003. 12. 15	자막의 홍수 여전... -반말·외국어 자막과 출연자의 음성언어 인용 자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03. 12. 17	노성대 위원장,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융합시대 방송정책방향’발표
2003. 12. 17	방송위, MBC “휴먼다큐...”에 “주의”
2003. 12. 18	지상파 방송3사 2003년 가을 정기개편 편성분석결과
2003. 12. 18	방송위, “2003 방송위원회 대상” 기획부문 및 특별상 선정

날짜	제 목
2003. 12. 19	방송위, “2003 방송위원회 대상”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부문 선정
2003. 12. 23	방송위, 편성의 다양성 분석을 통해 방송 3사의 프로그램 질 평가 시도
2003. 12. 24	방송위, 협찬고지 위반 프로그램에 “제재” 결정 -KBS 시사보도 관련 프로그램 등 지적
2003. 12. 24	방송위,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관련 공청회 개최
2003. 12. 24	방송4사 사장단, “DTV 전환일정” 관련 방송위원장 면담 결과
2003. 12. 29	방송위, 1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3. 12. 30	방송위, SO·PP 방송광고 시간 실태 일제 조사하기로
2003. 12. 31	방송위, 일본방송 2차 개방계획 발표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추가 계획 관련)
2004. 01. 02	노성대 위원장 2004년도 신년사
2004. 01. 05	“DTV 전송방식” 관련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정책협의 결과
2004. 01. 06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중점심의사항과 여론조사보도기준 공표
2004. 01. 07	방송위, 방송법 위반 44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
2004. 01. 08	방송위, KBS 드라마 간접광고에 “의견진술” -KBS. 2TV “그녀는 짱” 제작지원사 직접 광고
2004. 01. 13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출연 못해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90일부터
2004. 01. 13	방송위, 방송정책실장에 김춘식(金春植)씨 임용
2004. 01. 15	방송위, 방송심의규정 개정키로 -1월 31일까지 개정의견 수렴
2004. 01. 15	KBS. 2TV “그녀는 짱” 드라마에 중징계 -심의위, 드라마 제작지원사 직접 광고 지적
2004. 01. 19	방송위, 광역시 소재 지상파TV 디지털방송 개시시한 조정
2004. 01. 20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여론조사 보도시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방송사에 “경고”, “주의” 조치
2004. 01. 26	노성대 위원장 2004년 신년기자회견(사진첨부)
2004. 01. 28	방송위,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무더기 방송중지명령
2004. 01. 29	방송위, 동아TV “도전 신데렐라”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키로
2004. 02. 02	방송위, 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4. 02. 02	“디지털TV 해외실태 주요 조사결과 발표”
2004. 02. 03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대구방송 및 RTV(시민방송)에 의견진술 청취 결정

날짜	제 목
2004. 02. 05	방송위, 동아TV “도전 신데렐라”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 결정
2004. 02. 06	방송위, 지상파 3사 영화 간접광고에 “의견진술” -아침 토크프로그램에서 개봉영화 노골적 홍보
2004. 02. 06	방송위, 지상파방송의 미디어선거관련 한시적 방송시간 연장승인
2004. 02. 10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정성 등을 지키지 못한 RTV(시민 방송) 등에 “시청자에대한사과”조치
2004. 02. 11	방송위, 동아TV 성형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 -성형 관련 동일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키로
2004. 02. 12	지상파3사 영화간접광고에 “경고및관계자경고” -아침시간대 방송프로그램 “개봉영화 노골적 홍보” 지적
2004. 02. 16	비속어, 인터넷 채팅용어, 불필요한 외국어가 판치는 심야 FM 방송
2004. 02. 18	방송위, 전직 대통령 비하발언 방송 “의견진술”
2004. 02. 19	얼짱·몸짱 방송 외모지상주의 우려. “몸짱”이 곧 건강인양 시청자 오도할 수 있어
2004. 02. 25	「2004년도 상반기 불법방송 집중단속」 실시
2004. 02. 25	방송위, 전직 대통령 비하 방송 “중징계”
2004. 02. 25	노성대 방송위원장, 미 국무성 소속 David A. Gross 대사(장관급) 면담
2004. 02. 27	방송위, 불법광고 송출 방송사에 무더기 중징계 예고
2004. 02. 27	방송위, 유료 ARS 및 SMS 서비스 제공 방송사에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결정
2004. 02. 27	방송위, 2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4. 02. 28	선거방송심의위원회, MBC “PD수첩. 친일파...”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관계자 의견 청취키로
2004. 03. 03	방송위, 무분별한 체험사례 소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 “의견진술”
2004. 03. 04	방송위, 범죄사건 보도의 “선정성”에 권고 -흥미위주·구체적 재연, 모방범죄 가능성 우려
2004. 03. 04	선거방송심의위원회, MBC(TV) “PD수첩. 친일파는...2”에 대해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경고” 결정
2004. 03. 08	방송위, 방송광고 시간 위반사업자(SO·PP)에 과태료 부과 결정
2004. 03. 10	방송위, 지상파 3사 “아침드라마”에 권고. “불륜·치정” 등 극단적 비윤리성 표현 우려
2004. 03. 10	방송위,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킨 방송프로그램 “중징계”

날짜	제 목
2004. 03. 11	방송위, 『2003년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 발간』
2004. 03. 11	방송위, 소비자피해 유발 불법광고 "중징계"
2004. 03. 15	제3차 방송통신정책협의회 관련 보도자료
2004. 03. 15	이효성(李孝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한국케이블TV방송포럼 기조연설
2004. 03. 16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정성과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
2004. 03. 17	방송위, 방송 3사 "탄핵방송" 심층논의키로
2004. 03. 18	OCN 등 선정적 영화 프로그램 38편 "사과", "프로그램 중지", "편성책임자 징계" 명령 등 중징계 결정
2004. 03. 22	"방송평가제개선협의회" 1차 회의 개최
2004. 03. 23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의 독립성과 독자성 강조
2004. 03. 23	방송위, SBS "인간시장" 프로그램 등에 제재
2004. 03. 23	방송위,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활성화 정책 발표
2004. 03. 24	방송위, 탄핵 관련 방송 심의결과
2004. 03. 25	방송위, MBC "대한민국통화중" 프로그램에 "경고"
2004. 03. 26	방송위, 3월「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4. 03. 30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각 방송사에 선거기간중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당부
2004. 03. 31	탄핵관련, 지상파 3사에 향후 신중보도 "권고"
2004. 04. 06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 위반 방송사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 등 4건 제재조치
2004. 04. 07	방송위, MBC "신강균…" • KBS "뉴스 9" 등 임시 심의관련 회의에서 심층논의하기로 결정
2004. 04. 08	방송위, KBS2 "일요일은 101%", SBS "폭풍속으로" 프로그램에 "경고"
2004. 04. 09	선거방송심의위원회, KBS에 권고
2004. 04. 10	방송위, MBC "신강균의…" "주의" 결정
2004. 04. 13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당선확정자막 방송사고를 낸 서대구방송(so)에 의견진술 청취키로
2004. 04. 14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낙선대상자 명단을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주의" 조치
2004. 04. 20	방송언어특위, 토론방송에서 불필요한 외국어와 약어 사용자제 권고

날짜	제 목
2004. 04. 20	선거방송심의위, 서대구방송(SO)과 광주PBC에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
2004. 04. 21	방송위,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에 “경고 및 관계자경고”
2004. 04. 22	방송위, SBS드라마 “폭풍 속으로”에 “경고”
2004. 04. 2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3사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개표방송과 관련하여 의견진술 듣기로
2004. 04. 26	방송위, 2004년 4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4. 04. 26	제4차 방송·통신정책협의회 결과
2004. 04. 26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총선개표방송과 관련하여 KBS, MBC에 ‘시청자에대한사과’, SBS에 ‘경고’조치
2004. 04. 28	KBS “국민대토론…”, 자료검토 후 심층논의키로
2004. 04. 29	방송위, SBS “실제상황 토요일”에 “주의”
2004. 04. 30	방송위, 문화관광부와 정책협의회 정례화하기로
2004. 05. 07	방송위, KBS “폭소클럽”에 “주의” -코미디라도 성 표현은 방송품위 고려해야
2004. 05. 11	방송위, 승인기간 만료되는 3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재승인 및 조건부재승인 의결
2004. 05. 12	“DVB. H 해외 현황조사 실시”
2004. 05. 13	방송위, 허위사실 방송한 농수산홈쇼핑 등에 제재조치 -5개 TV홈쇼핑방송사, 건강기능식품 등 총 9건 .
2004. 05. 14	방송위,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2004. 05. 17	방송위, 「방송심의규정 개정시안 공청회」 개최
2004. 05. 19	방송위,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추천 의결 -7개 사업자는 재허가 추천 보류
2004. 05. 20	방송위,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작업 착수
2004. 05. 24	방송위,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04. 05. 31	방송위, 2004년 5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4. 05. 31	방송3사 2004년 봄 정기개편 편성분석 결과
2004. 06. 08	방송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2004. 06. 10	방송위, “탄핵 관련 방송” 심의 -언론학회 “분석결과” 제출에 따라 논의 재개
2004. 06. 10	방송언어특위, 어린이 만화 프로그램에서의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자제 권고

날짜	제 목
2004. 06. 14	제5차 방송통신정책협의회 결과
2004. 06. 16	방송위, “탄핵 관련 방송” 심의내용. 지상파 3사의 의견진술 기일 연기요청 수용
2004. 06. 16	방송위원회, 방송사 자율심의확대·강화차원에서 “경고”, 주의“조치 삭제키로
2004. 06. 24	방송위원회, 프랑스방송위원회와 정책간담회
2004. 06. 28	방송위, 2004년 6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4. 06. 29	방송위,「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공청회」개최
2004. 06. 29	날씨·교통정보 프로그램, 비논리적이고 부적절한 어법 사용 많아
2004. 06. 30	방송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신청 접수 및 시청자의견 공개청취
2004. 07. 01	탄핵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위원회 결정문
2004. 07. 02	방송위, ㈜큐릭스광진성동방송 등 7개사 재허가추천 의결
2004. 07. 02	방송위, 재난방송 종합매뉴얼 확정, 방송사에 권고
2004. 07. 06	방송위, 해외 한국어방송 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
2004. 07. 06	탄핵방송프로그램 개별심의 관련
2004. 07. 08	디지털TV 전송방식 등에 관한 4인 공동대표 합의
2004. 07. 09	방송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안 확정 -심의위원 선정시 각계 추천·공모제 시행 .
2004. 07. 09	방송위, 광역시 및 기타 시·군지역의 디지털방송 전환일정 의결
2004. 07. 14	방송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부산·경남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2004. 07. 16	방송위,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4. 07. 22	방송위, 소출력 라디오방송 도입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2004. 07. 23	‘탄핵소추 관련 방송’ 심의결과 등
2004. 07. 23	방송위,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 추진 및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구성·운영
2004. 07. 26	방송위,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수립
2004. 08. 03	2004년 7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
2004. 08. 04	방송위, “중국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실태조사 실시”
2004. 08. 10	방송위, MBC·SBS . TV 간접광고에 법정제재

날짜	제 목
2005. 11. 21	말레이시아와 방송협력 공동성명 채택
2005. 11. 21	'시청자미디어센터' 오는 25일 부산서 첫 개관
2005. 11. 21	'아태규제기관 라운드테이블' 참석
2005. 11. 21	BCWW2005 국제방송컨퍼런스 폐막
2005. 11. 24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 신청 접수 결과
2005. 11. 25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 부산서 개최
2005. 11. 25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의결
2005. 11. 30	태광MSO와 한국레저낚시방송(FS. TV) 분쟁조정
2005. 12. 01	방송평가에관한규칙 개정
2005. 12. 06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12. 07	'YTN, MBN, GS홈쇼핑, CJ홈쇼핑' 재승인 의결
2005. 12. 07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대표자 워크숍 개최
2005. 12. 08	동아시아 16개국에 국내 방송컨텐츠 및 DMB 소개
2005. 12. 08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신청서류 보완요청
2005. 12. 13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 평가 토론회 개최
2005. 12. 14	2005년도 지상파방송책임자회의 개최
2005. 12. 14	전문편성 TV채널 품질 평가에 관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2005. 12. 15	해외 한국어방송사에 방송콘텐츠 지원
2005. 12. 21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 관련 시청자의견 수렴
2005. 12. 21	공익성 채널 추가 선정
2005. 12. 21	XTM에 시정명령 처분
2005. 12. 28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12. 28	(주)우리방송 등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조건부 재허가 추천
2005. 12. 28	방송광고심의규정 및 협찬고지규칙 개정
2006. 01. 02	노성대 위원장 2006년 신년사
2006. 01. 04	편성비율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2006. 01. 16	'06년 조사·저술·연수교육 등 사업 공모 실시
2006. 01. 16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06. 01. 17	방송광고시간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2006. 01. 18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2006. 01. 19	MIPTV/Milia2006 'DMB 공모전' 개최
2006. 01. 20	<공지>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 의견청취와 관련한 방송위원회 입장

날짜	제 목
2004. 08. 11	방송위,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 발표
2004. 08. 11	방송위, 각 부문별 심의위원 27인 위촉
2004. 08. 26	노성대 위원장, 북미 방송규제기구 방문 -미국FCC • 캐나다CRTC
2004. 08. 26	방송위, 올해 PP 제작 지원금 30억 확정
2004. 08. 30	방송위, '장애인방송아카데미'지원사업 첫 결실 맺어
2004. 08. 30	방송위, '디지털시대' 선포식 행사 -본격 디지털 방송시대 도래 기념
2004. 08. 31	방송위,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4. 09. 01	노성대 방송위원장, 美 FCC위원장과 정책협의
2004. 09. 01	방송위, 방송평가위원 9인 위촉
2004. 09. 02	방송위, '디지털방송 온에어' 행사 주요내용
2004. 09. 08	방송위,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구성
2004. 09. 09	방송위, 디지털방송 관련 제반 정책방안 중점 논의키로
2004. 09. 15	방송법위반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2004. 09. 15	방송위,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 추진
2004. 09. 16	방송위, 케이블TV 이용요금 실태조사 결과
2004. 09. 21	방송위,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업무일부정지 10일
2004. 09. 23	방송위, 디지털방송전환 융자 지원사업자 결정
2004. 09. 24	방송위, 시청자불만처리 현황 분석결과
2004. 10. 06	방송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관련 채널정책방안 의결
2004. 10. 06	방송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시상
2004. 10. 07	방송위, 2004년 PP콘텐츠 제작비 지원대상 선정
2004. 10. 08	방송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및 심사계획 의결
2004. 10. 14	방송위, 데이터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4. 10. 19	방송위, 불법 방송광고물 일제 단속 실시
2004. 10. 25	방송위, '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방안' 확정
2004. 10. 26	방송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결과 발표
2004. 10. 27	"방송위,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재허가추천 의결"
2004. 10. 27	방송위,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개정
2004. 10. 28	방송위, "제9회 아시아. 태평양 규제기관 라운드테이블" 개최
2004. 10. 29	방송위, 지상파방송 3사 2004 아테네올림픽 편성 현황 분석
2004. 11. 01	노성대 위원장, 정보통신부 장관 조찬 결과
2004. 11. 04	방송위,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날짜	제 목
2004. 11. 06	제9차 아시아태평양 방송규제기관 라운드테이블 개최결과
2004. 11. 08	방송위,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 구성
2004. 11. 09	방송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기공식
2004. 11. 10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신청 접수결과
2004. 11. 15	방송위, (주)문화방송 재허가추천키로
2004. 11. 16	방송위, 8개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 선정
2004. 11. 16	방송위, 강원민방 청문실시
2004. 11. 22	방송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기본방안 확정"
2004. 11. 23	방송위, '데이터방송 정책방안' 의결
2004. 11. 24	방송위,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04. 11. 26	방송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채널구성 기본방향 확정"
2004. 11. 29	방송위, (주)SBS, (주)강원민방, (주)경인방송 재허가추천 논의결과
2004. 11. 30	방송위,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04. 12. 02	칸느에서 '한국의 날' 개최
2004. 12. 06	방송위, (주)SBS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의결
2004. 12. 07	방송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 구성
2004. 12. 07	방송위,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 의결
2004. 12. 07	방송위, "방송통신융합시대 제도정비방향 마련" 전문가토론회 개최
2004. 12. 09	방송위,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4. 12. 10	선정적 영화프로그램에 중징계
2004. 12. 10	(주)강원민방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의결
2004. 12. 13	방송위, '대상' 및 '2005년 콘텐츠 제작비 지원' 신청·접수
2004. 12. 14	'지역채널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04. 12. 1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발표문
2004. 12. 21	(주) 경인방송 재허가추천 거부 의결
2004. 12. 22	'보도전문편성 채널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04. 12. 2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서 교부
2004. 12. 27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정책방안 확정
2004. 12. 28	불법광고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2004. 12. 29	지상파3사 프로그램 편성분석 결과
2004. 12. 29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2005. 01. 03	노성대 위원장 2005년 신년사

날짜	제 목
2005. 01. 07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01. 12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 세부심사기준 등 확정
2005. 01. 18	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 시행
2005. 01. 19	싱가포르와 방송협력약정(MOU) 체결
2005. 01. 25	싱가포르, 'Brodacast Asia' 위성 DMB 중계요청
2005. 01. 26	'지상파 디지털전환 2010년 완료' 로드맵 합의
2005. 01. 26	케이블TV 10주년 기념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05. 01. 27	디지털 케이블TV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최초 승인
2005. 01. 27	방송위, 전환승인관련 대법원 승소판결
2005. 01. 29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접수 결과
2005. 02. 01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자 선정공고
2005. 02. 02	경남지역 민영방송 정책 추진방안 3월 중 확정 추진
2005. 02. 04	방송교류활성화협의회 구성·운영
2005. 02. 14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02. 1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 신청 접수 결과
2005. 02. 16	공익성 제고 위한 전문편성 고시(안) 마련
2005. 02. 16	제6차 방송통신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05. 02. 17	2005년 대학방송실습기자재 지원사업 실시
2005. 02. 21	시청자불만『알림이 서비스』시행
2005. 02. 21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05. 02. 22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2005. 02. 23	방송위, KBS 이사 추천 등
2005. 02. 23	HD방송 확대방안 의결
2005. 02. 24	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2005. 02. 24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공표
2005. 02. 25	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 정책방안에 관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2005. 02. 27	2005년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자 선정
2005. 02. 28	2005 방송인 전문 연수·교육 지원
2005. 02. 28	케이블TV 가입자 현황 조사결과 공표
2005. 03. 02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공모 실시
2005. 03. 0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계획 보정 요구
2005. 03. 03	'2005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대상' 선정

날짜	제 목
2005. 03. 07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03. 07	「방송위원회 대상」 선정 및 시상
2005. 03. 15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2005. 03. 17	한국 방송프로그램 해외 쇼케이스 개최
2005. 03. 22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2005. 03. 2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 콘텐츠 활용방안 마련 전문가토론회 개최
2005. 03. 28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발표
2005. 03. 29	해외한국어방송 인력교육
2005. 03. 30	지상파DMB 전국 확대 방안' 등 합의
2005. 03. 30	"인터넷 언론사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지분 참여 관련 사실관계"
2005. 03. 31	방송발전기금 징수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토론회 개최
2005. 03. 31	디지털방송전환 • 우수콘텐츠 육성 위해 170억 융자 지원
2005. 03. 31	방송법개정안 관련 전문가토론회 개최
2005. 04. 06	『2004년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 발간
2005. 04. 07	노성대 위원장 "MIPTV/MILIA 2005" 행사 출국
2005. 04. 07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04. 08	지상파방송, 자체심의시스템 정비 필요
2005. 04. 12	방송위, 프랑스 칸에서 한국전시관 개관
2005. 04. 12	MIPTV/MILIA2005 첫째날 행사 개요
2005. 04. 12	프랑스 칸에서 '한국의 날' 개최
2005. 04. 12	경남지역 민영방송 방송권역 광역화 추진방안 확정
2005. 04. 13	MIPTV/MILIA2005 두번째날 행사 개요
2005. 04. 14	MIPTV/MILIA2005 세번째날 행사개요
2005. 04. 14	2005년 방송인 전문 연수 • 교육 지원 대상 선정
2005. 04. 15	MIPTV/MILIA2005 네번째날 행사개요
2005. 04. 19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방안 확정
2005. 04. 20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사업자 선정방안 및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5. 04. 25	보도전문편성채널 운용 관련 공청회 개최
2005. 04. 27	『2005년 대학방송실습기자재』지원대학 선정

날짜	제 목
2005. 04. 27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개선방안 마련
2005. 04. 27	제7차 방송·통신 정책협의회 결과
2005. 05. 04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관련 공청회 개최
2005. 05. 04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 보고서』 발간
2005. 05. 06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마련 토론회 개최
2005. 05. 06	디지털방송전환지원 융자 실시
2005. 05. 09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05. 10	지자체 방송채널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2005. 05. 11	방송평가에관한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05. 05. 17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사업자 선정방안 등 확정
2005. 05. 18	프로그램제작비 28억 1,300만원 융자 지원
2005. 05. 18	말레이시아 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장과 정책협의
2005. 05. 19	'TV 코리아 쇼케이스 2005' 개최
2005. 05. 25	2005년도 시청자권익보호사업 수시지원 실시
2005. 05. 27	인도네시아에서 TV Korea Showcase 2005 개최
2005. 05. 31	태국에서 TV KOREA Showcase 2005 성황리에 개최
2005. 06. 01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06. 02	인도 델리에서 방송교류의 새장 열어
2005. 06. 07	2005년 봄 TV개편 분석 결과
2005. 06. 13	싱가포르에서 DMB 우수성 소개
2005. 06. 15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사업자 허가추천 신청서류 접수 결과
2005. 06. 15	싱가포르에서 DMB 시연 성황리 진행
2005. 06. 16	싱가포르에서 한국 DMB 집중 조명
2005. 06. 17	싱가포르 DMB 시연 행사, 성황리 마쳐
2005. 06. 21	방송위·정통부 고위정책협의회 결과
2005. 06. 22	공익성 제고 위한 전문편성분야 고시 시행
2005. 06. 22	2005년 방송사업자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
2005. 06. 27	주5일근무제 대비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2005. 06. 28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추천 발표
2005. 06. 30	BCWW2005 컨퍼런스 주최로 행사 확대
2005. 06. 30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07. 01	전국 SO 지역채널 편성 분석

날짜	제 목
2005. 07. 01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공모
2005. 07. 05	금강산에서 제 2차 남북방송인 토론회 개최
2005. 07. 08	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실시
2005. 07. 11	캐나다 '통신정책점검위'의장 방송위 방문
2005. 07. 11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 대상 사업자 선정 발표
2005. 07. 14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2005. 07. 20	브라질 • 멕시코 방송교류협력단 파견
2005. 07. 27	공익성 방송 14개 채널 선정
2005. 07. 27	방송위, 브라질 통신부 장관과 방송정책 회담
2005. 07. 28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 위촉
2005. 07. 28	브라질과 방송협력약정서 체결
2005. 07. 29	한. 브라질 Media Forum 개최
2005. 08. 01	'음악캠프', '올드미스 다이어리' 의견진술 결정
2005. 08. 02	한. 멕시코 정책협의회 및 Media Forum 개최
2005. 08. 03	한. 중 방송기관장 정책협의
2005. 08. 04	서울산업대와 관학 협약 체결
2005. 08. 05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5. 08. 08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 공모
2005. 08. 08	MBC. TV '생방송 음악캠프', KBS. 2TV '올드미스 다이어리' 제재조치 건의
2005. 08. 09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08. 11	M. TV '생방송 음악캠프', K. 2TV '올드미스 다이어리' 중징계
2005. 08. 12	경남지역 광역화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2005. 08. 12	심의위원 위촉
2005. 08. 17	'2005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대상' 선정
2005. 08. 23	국제방송의 효율적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2005. 08. 24	방송채널사용사업(PP)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2005. 08. 29	디지털 방송 전환 • 콘텐츠 제작에 61억 융자 지원
2005. 08. 30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 임명
2005. 08. 31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2005. 09. 01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09. 01	방송위 • 정통부, 방송 • 통신 융합에 대응한 정책공조 합의

날짜	제 목
2005. 09. 07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기본정책 결정
2005. 09. 08	불법광고 송출한 방송사 등에 과태료 부과
2005. 09. 08	방송위원회 • 베트남 문화공보부, 방송협력 MOU 체결
2005. 09. 12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9인 위촉
2005. 09. 22	공익성 채널 인정신청 추가접수
2005. 09. 27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05. 09. 29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10. 04	충남연합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취소
2005. 10. 05	호주 방송통신위와 교류협력 논의
2005. 10. 10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5. 10. 12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 허가추천 거부소송 승소
2005. 10. 19	HomeCGV에 방송심의 관련 첫 시정명령 조치
2005. 10. 19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확정
2005. 10. 20	방송광고 시간 초과운행 실태조사 실시
2005. 10. 21	「디지털방송전환추진점검단」 운영
2005. 10. 21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중 일부 정정
2005. 10. 21	지상파방송 운용시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5. 10. 25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보류
2005. 10. 26	「방송 품격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05. 10. 31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개정안 입안 예고
2005. 11. 01	케이블TV "광고연동 프로그램" 중징계
2005. 11. 02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 개시
2005. 11. 03	북측과 '남북방송영상물 소개모임' 공동 개최
2005. 11. 07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 허가추천 거부 소송에서 잇단 승소
2005. 11. 07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5. 11. 07	방송위. KOTRA, 한국방송 해외진출 손잡는다
2005. 11. 09	지상파TV 방송시간 단계적 자율화 추진
2005. 11. 10	국내 최대 국제방송컨퍼런스 16일 코엑스 개막
2005. 11. 15	지상파DMB, 지상파PP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행정예고
2005. 11. 15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05. 11. 17	BCWW2005 국제방송컨퍼런스 개막
2005. 11. 17	한. 뉴질랜드 방송 • 영화분야 협력 약정서 체결

날짜	제 목
2006. 01. 23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 재추진키로함
2006. 01. 23	2개 SO 재허가추천 거부
2006. 01. 24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
2006. 01. 26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차) 개최
2006. 01. 27	정통부가 주장하는 소위 ‘광대역융합서비스’에 대한 검토
2006. 01. 27	휴먼TV에 대한 공익성채널 지정 취소
2006. 01. 31	인도에 방송교류협력단 파견 및 TV 쇼케이스 개최
2006. 01. 31	YTN에 ‘시청자 사과’ 명령
2006. 01. 31	음란성 음성정보 자막광고한 MGM에 과태료
2006. 02. 0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경근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선출
2006. 02. 03	<동정> 노성대 방송위원장 인도 방문
2006. 02. 06	’06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 실시
2006. 02. 06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6. 02. 07	뭄바이 TV Korea Showcase 2006 개최
2006. 02. 07	YTN 재심 신청 기각
2006. 02. 07	해외한국어방송 연수•교육 실시
2006. 02. 09	인도 통신규제위와 MOU 체결
2006. 02. 13	디지털방송전환 및 프로그램제작비 융자 실시
2006. 02. 14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재추진 관련 논의경과
2006. 02. 15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자선정 공고
2006. 02. 15	’06년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
2006. 02. 15	‘방송광고 시간 위반’ 실태 조사키로
2006. 02. 15	대학 방송실습기자재 지원사업 공모
2006. 02. 15	‘지상파 디지털방송 조기 정착 ’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06. 02. 16	공익성분야 콘텐츠 제작 32억원 지원
2006. 02. 21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 제정 등 범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방송 활성화방안 추진
2006. 02. 21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재추진
2006. 02. 23	선거방송심의위, ‘5대 중점 심의사항’ 공표
2006. 02. 23	지역 지상파DMB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06. 02. 24	『방송위원회 대상』 선정
2006. 03. 02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날짜	제 목
2006. 03. 21.	2006년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자 선정
2006. 03. 22	방송위, 리빙TV • 스피드스포츠 • 동아TV에 과태료
2006. 03. 22.	디지털방송전환 및 제작비 84억 융자 지원
2006. 03. 27.	소방방재청 • 기상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2006. 03. 27.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 신청 접수 결과
2006. 03. 27.	방송발전기금 징수관련 연구 전문가토론회 개최
2006. 03. 30.	2006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대상 선정
2006. 03. 31.	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권역 의결
2006. 04. 03.	깐느에서 DMB Showcase 개최
2006. 04. 03.	제4기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
2006. 04. 03.	「2005년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 발간
2006. 04. 03.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06. 04. 08.	프랑스 깐느에서 'DMB 콘텐츠 360' 국제 공모전 개최
2006. 04. 10.	6개 대학 방송실습 기자재 지원
2006. 04. 13.	케이블TV 이용요금 민원 적극 대응하기로
2006. 04. 18.	케이블TV 요금 민원 관련 전국 SO 대표자회의 및 토론회 개최
2006. 04. 19.	방송광고시간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2006. 04. 21.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활성화 방안 마련
2006. 04. 25.	2006년 공익성방송분야 콘텐츠제작지원 대상 선정
2006. 04. 27.	공정위의 케이블TV 시장 경제분석 결과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
2006. 04. 28.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로 (주)경인티브이 선정

8 주요 사진자료(2003~2006.4)

9 방송매체별 사업자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2005년 6월	비 고
지상파 방송	소 계		42	42	43	43	TV 32, R 11 사업자
	공 영		22	22	22	22	
	민 영		12	12	12	12	iTV TV방송중단, iFM재개
	특 수		8	8	9	9	국제방송교류단 라디오FM 2003. 9 개국
위성방송	일반위성 방송		1	1	1	1	2002. 3 개국
	위성이동멀티 미디어방송		-	-	-	1	2005. 5 개국
유선방송	소 계		748	527	418	317	
	종합유선		110	119	119	119	
		1차	53	53	53	53	
		2차	24	24	24	24	
		3차	33	33	33	33	
		4차	-	9	9	9	
	중계유선		638	408	299	198	전환, 폐업에 따른 감소
방송채널 사용사업	소 계		165	123	159	144	법인 기준
	허가 승인		7	7	7	7	
	등록		158	116	152	137	
전체 사업자수			956	693	621	506	

※음악유선방송	104	78	72	63	2005년 5월 등록기준
※전광판방송	51	53	42	45	2005년 5월 등록기준

주1) 사업자수: 해당 연도 연말기준.
법인/재단/단체 등 사업체 기준 (단, 중계유선은 허가업체 기준)

10 지역별 방송사업자 현황

구 분	방 송 사 업 별						(조사사업자)
	지상파		채널 사용	종합 유선	중계 유선	합 계	전광판
	TV	라디오					
전 국	32	11	144	119	198	504	30
서 울	4	8	119	32	2	165	23
부 산	2	0	4	14	9	29	1
인 천	0	1	0	5	6	12	0
대 구	2	0	0	12	2	16	3
광 주	2	0	0	4	0	6	0
대 전	2	0	1	4	2	9	0
울 산	2	0	0	2	3	7	0
경 기	0	1	19	13	14	47	1
강 원	5	0	1	4	8	18	2
충 남	0	0	0	6	6	12	0
충 북	3	0	0	3	20	26	0
경 남	2	0	0	4	65	71	0
경 북	2	0	0	6	21	29	0
전 남	2	0	0	5	33	40	0
전 북	2	1	0	4	7	14	0
제 주	2	0	0	1	0	3	0

주1) TV 및 TV와 라디오 동시운영업체는 “지상파TV”사업으로 분류함.
주2) 중계유선 : 허가사업자수 기준
주3) 방송권역이 전국인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역별 방송사업자 수에서 제외함.

11 유료방송 서비스별 지역 가입자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일반위성	종합유선	중계유선	유료방송합계 2005년 6월 (A+B+C)
	2005년 6월(A)	2005년 6월(B)	2005년 6월(C)	
전국	1,825,538	11,694,162	519,149	14,038,849
서울	308,482	2,344,407	17,525	2,670,414
부산	50,759	1,077,213	46,587	1,174,559
인천	126,867	621,717	4,745	753,329
대구	40,325	636,114	3,229	679,668
광주	18,802	422,868	0	441,670
대전	31,775	373,107	52,440	457,322
울산	15,401	351,682	2,797	369,880
경기	475,042	2,541,914	112,393	3,129,349
강원	107,420	335,394	7,641	450,455
충남	134,078	294,721	4,010	432,809
충북	63,181	355,324	22,474	440,979
경남	118,631	773,707	117,661	1,009,999
경북	100,318	627,534	21,111	748,963
전남	110,622	425,097	97,886	633,605
전북	96,285	378,861	8,650	483,796
제주	27,362 (황해:개성공단) 188	134,502	0	162,052

12 TV 수상기 등록 현황

연도	연말 등록대수		전년대비 증감	TV 수신료
1982년	(흑백) 4,820,009 (칼라) 2,299,243	7,119,252	△91,1430 1,101,335	800원 2,500원
1983년	(흑백) 4,603,046 (칼라) 3,181,168	7,784,214	△21,6963 881,925	800원 2,500원
1984년	(흑백) 3,498,374 (칼라) 4,178,730	7,677,104	△110,4672 997,562	800원 2,500원
1985년	(흑백 등록폐지) (칼라) 4,773,993	4,773,993	- 595,263	(면제) 2,500원
1986년	4,925,413		151,420	2,500원
1987년	5,390,075		464,662	2,500원
1988년	6,019,131		629,056	2,500원
1989년	6,384,984		365,853	2,500원
1990년	7,438,423		1,053,439	2,500원
1991년	8,344,420		905,997	2,500원
1992년	9,181,053		836,633	2,500원
1993년	10,696,426		1,515,373	2,500원
1994년	14,408,012		3,711,586	2,500원
1995년	14,516,686		108,674	2,500원
1996년	15,258,386		741,700	2,500원
1997년	15,746,180		487,794	2,500원
1998년	16,421,422		675,242	2,500원
1999년	16,896,400		474,978	2,500원
2000년	17,174,396		277,996	2,500원
2001년	17,709,432		535,036	2,500원
2002년	18,365,221		655,789	2,500원
2003년	18,975,642		610,421	2,500원
2004년	19,485,829		510,187	2,500원

13 TV 보급률

구분	대상가구수 (행정자치부 세대수)			TV수상기 등록대수 (연말, 가정용+일반용)			가구당 평균 TV보급률 (대)		
	2002년	2003년	2004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국	16,489,115	16,987,703	17,391,762	18,365,221	18,975,642	19,485,829	1.11	1.12	1.12
서울	3,623,931	3,714,769	3,780,133	3,835,808	3,923,930	3,986,651	1.06	1.06	1.05
부산	1,219,902	1,236,262	1,251,069	1,569,777	1,604,443	1,637,705	1.29	1.30	1.31
인천	872,057	891,605	908,673	1,405,630	1,475,736	1,508,502	1.61	1.66	1.66
대구	827,177	845,242	853,142	1,3664,89	1,401,089	1,431,844	1.65	1.66	1.68
광주	449,469	460,647	469,847	771,782	789,293	800,166	1.72	1.71	1.70
대전	463,270	479,916	492,068	841,693	876,139	915,448	1.82	1.83	1.86
울산	338,845	348,058	356,143	477,378	498,292	513,506	1.41	1.43	1.44
경기	3,394,937	3,592,144	3,748,325	3,005,975	3181044	3,341,249	0.89	0.89	0.89
강원	538,613	552,319	563,355	660,244	672,374	692,991	1.23	1.22	1.23
충남	666,201	691,966	736,323	449,085	462,190	480,999	0.67	0.67	0.65
충북	508,561	522,501	534,231	579,680	610,053	617,071	1.14	1.17	1.16
경남	1,043,704	1,074,001	1,096,069	999,754	1,024,073	1,053,861	0.96	0.95	0.96
경북	964,032	974,100	985,475	798,360	816,315	830,069	0.83	0.84	0.84
전남	731,092	737,207	741,775	599,052	609,491	621,395	0.82	0.83	0.84
전북	658,564	672,111	675,145	777,882	792,922	802,722	1.18	1.18	1.19
제주	188,760	194,855	199,989	226,632	238,258	251,650	1.20	1.22	1.26

제2기 방송위원회 **방송백서** 편찬위원회

위 원 장 : 표 철 수(사무총장)

위　　원 : 박 희 정(기획관리실장)　최 준 근(연구센터장)
김 춘 식(방송정책실장)　정 진 우(매체정책국장)
이 종 대(방송진흥국장)　박 흥 식(평가심의국장)
황 부 군(시청자지원실장)　정 순 경(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장)
김 춘 희(연구위원)　김 양 하(공보실장)

간　　사 : 김 춘 희(연구위원)

주　　무 : 나 현 준(혁신기획부 선임조사관)

제2기 방송위원회 **방송백서** (비매품)

발행처 : 방송위원회
우편번호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14~19층
전화 (02)3219-5600, 5114
홈페이지 www.kbc.go.kr

발행일 : 2006년 5월 9일

인　　쇄 : 크리홍보(주) (02)737-5377

* 본 백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 혁신기획부 ((02)3219-5071~6, 팩스 (02)3219-53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2기 방송위원회 방송백서」는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www.kbc.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